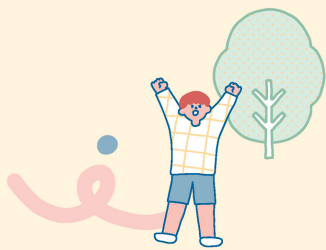


2026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



- 부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 부록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원
- 부록 3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유형 안내
- 부록 4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 부록 5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총괄
공통업무안내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 개요**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절차**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주요 사업별
급여·서비스 기준**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2026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 개요



적용시기

-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대상

- 사회보장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실시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영유아보육법

입양특례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



용어의 정의

-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보장급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의해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
- **수급자**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수급권자**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 **지원대상자**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
- **보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에게 각종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
- **보장기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수급권자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시스템
- **바우처** 사회보장급여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
- **전자바우처** 전자적인 형태를 가지는 바우처를 의미하며, 급여의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과정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조사** 수급자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소득, 재산, 자격 등의 각종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지원대상자의 경제력을 판단하기 위한 소득, 재산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
- **소득** 수급자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조사대상 소득을 의미하며,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이 해당됨. 급여별로 조사대상 소득항목은 급여의 목적·취지 등에 따라 다름
- **재산** 수급자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조사대상 재산을 의미하며, 크게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및 항공기, 동산,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 금융재산(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자동차(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가 해당됨. 급여별로 조사대상 재산항목은 급여의 목적·취지 등에 따라 다름
- **소득인정액 방식** 소득과 재산을 개별 항목별로 조사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단일값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경제력 평가 방식. 선정기준선 역시 단일값
- **재산평가분리(cut-off) 방식** 소득과 재산을 개별 항목별로 조사하고, 소득과 재산 별로 각각의 선정기준선을 가지는 경제력 평가 방식

| 구분 | 소득인정액 | 재산평가분리(Cut-Off) 방식 |
|-----------|--------------------------------|---|
| 소득 재산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평가액 |
| 대상자 선정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선) → 경제력 기준 부합 | (소득평가액 < 소득기준선) (재산평가액 < 재산기준선) → 각 요건 충족 시 경제력 기준 부합 |

- **건강보험료 부과금 방식** 국민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 부과보험료에 대해 대상자 선정 기준선을 마련하여 경제력을 평가하는 방식
- **자격 확인** 특정 복지급여의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경제력 평가를 갈음하는 방식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II

사회보장급여 업무처리 절차



01 | 사업별 업무처리 절차

| 구분 | 통합조사팀 조사 후 사업팀 이송 | 읍·면·동 조사 후 사업팀 이송 | 읍면동, 시·군·구 또는 보건소 접수 | 읍·면·동 즉시 처리 |
|-------|--|---|---|---|
| 대상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시설입소포함) · 기초연금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 · 한부모가족지원 · 차상위·청년 자산형성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 바우처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 긴급돌봄 지원사업 · 노인일자리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복지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장시간 상담상담 바우처 <p>※ 사업별 신청·조사처리기관 등 상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록 · 각종발급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차량표지 -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 각종 감면 등 |



* 장애인연금 :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장애정도 심사 실시 대상자를 조회하고 장애정도 심사는 읍·면·동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및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경우 보훈지청(문화재청)에서 신청·접수, 선정·통지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02 | 통합조사 대상 사업 세부 업무처리 절차

신규 신청자 급여지급 절차

상담·신청

- **상담**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여 수급 가능한 급여·서비스 안내, 필요시 통합사례관리 등 의뢰
- **일괄 신청** 급여·서비스 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 신청
 - ▶ 개별 사업 각각 신청, 개별 조사 → 일괄신청, 통합조사
- **신청서 기재항목 최소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관계정보, 주민정보를 정보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 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이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제출
 - ▶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 가능한 소득재산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추후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액을 반영
- **민원등록 절차 간소화** 신청서 접수 시 민원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 등록, 접수번호 자동 부여

조사

-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관계,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요청
-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가구방문 시 징구 (기초생활)하거나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함
 - ▶ 기초생활보장 신청의 경우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 가구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실시

* 지출실태조사표 징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징구 및 활동능력평가 정보수집, 부양의무자의 부양 여부 확인 등

● 조사결과 반영(공적자료 우선 적용)

- ▶ 신청서 접수 시 신고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실태조사 결과, 근로능력 판정결과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
- ▶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사업은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반영
 - ※ 긴급복지지원은 금융재산조사를 실시하되, 선 지원 후 사후 적정성 심사 시 반영

● 해당 사업팀에 보장결정 요청



보장결정 및 결과 통지

-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팀에서 선정 기준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 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통지
 - ※ 기초생활보장사업 신청자 중 보장결정 전 긴급히 생계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생계지원 실시
-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통지 가능



급여지급

● 급여지급자료 생성

- ▶ 급여 지급자료(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월 정보 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

●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

- ▶ 급여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급여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 ▶ 결재된 급여 지급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부서로 지급의뢰

●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 결제원)’ 또는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하여 급여 입금
 -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 인증) 후 지급

기존수급자 급여지급 절차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 * 소득재산 변동사항 : 확인조사 시 알림
 - * 거주지 변동사항, 가구원 변동사항 : 매일 알림
-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공적자료가 아닌 자료로 소득 산정된 자는 연간조사 계획에 의해 확인조사 실시
- 긴급지원대상자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 요청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소득·재산 변동
 -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예 : 보유 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후 반영
- 가구원 인적변동
 - ▶ 거주지 변동(전출·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 시 알림
 - ▶ 전출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장가구 재구성
-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당월 미반영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됨
 - * 통합조사팀에서는 급여 변동사항이 발생될 경우 사업팀에 통지하고 사업팀에서는 해당 월 급여 변동 사항의 상계·소급절차를 진행하여 익월급여에 반영

※ 소득인정액 재산정(정보시스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팀에 보장 중지 요청
→ 보장중지 및 결정(사업팀), 보장비용 징수(사업팀/회계부서)

각종 공제액 반영 및 수정

- 각종 공제액이 반영된 개인별 급여예상액 확인
- 예상급여액 확인 시 급여생성 이상자(상계금액 이상, 양곡공제 이상)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제사항 재수정

급여지급

- 급여지급자료 생성
 - ▶ 급여 지급자료(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월 정보 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
-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
 - ▶ 급여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급여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별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 ▶ 결재된 급여 지급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부서로 지급의뢰
-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 결제원)’ 또는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하여 급여 입금
 -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 인증) 후 지급

Ⅲ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01 | 복지급여

| 기준 | 기초 생활보장 | 기초 연금 | 장애인연금 | 보육료 | 양육수당 | 장애(아동)수당 | 긴급복지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
| 소득·재산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26년 단독 247만원, 부부 306.2만원)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 (26년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 - | -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 소득 5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 241~310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52~194백만원 이하 - 농어촌 : 130~16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에 600만원 합산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 소득 65% (청소년 한부모는 기준 중위 소득 72%) |
| 부양 의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X | X | X | X | X | X | X |
| 기타 자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 • 직역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닐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닐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이용 • 0-5세 (0-2세는 기본보육반 또는 연장 보육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미이용 • 84개월 미만 미취학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4개월 이후 출생한 아동은 2세 이후 양육수당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등록 경증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의한 위기 상황에 처한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참고 주요 사업별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 : 원/월)

| | 기준중위소득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
| 1인 가구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가구 | 4,199,292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가구 | 5,359,036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가구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가구 | 7,556,719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가구 | 8,555,952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 7인 가구 | 9,515,150 | 3,044,848 | 3,806,060 | 4,567,272 | 4,757,575 |
| 8인 가구 | 10,474,348 | 3,351,791 | 4,189,739 | 5,027,687 | 5,237,174 |
| 9인 가구 | 11,433,546 | 3,658,734 | 4,573,418 | 5,488,102 | 5,716,773 |
| 10인 가구 | 12,392,744 | 3,965,677 | 4,957,097 | 5,948,517 | 6,196,372 |

■ 한부모가족지원

(단위 : 원/월)

| 구 분 |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 기준 중위 소득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72%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02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구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역사회 서비스 | 일상돌봄 서비스 | 가사간병 방문지원 | 긴급돌봄 지원사업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
| 소득·재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중위 소득 150% (건보료 판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중위소득 120% 또는 140% 압축 (건보료로 판정) • 사업별로 상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다만 기준중위소득 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중위소득 70% * 바우처형 소득 재산조사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다만,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적용 (건강보험료 판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다만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건보료 판정) |
| 서비스 욕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예외 지원 대상 선정 가능 - 화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 (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 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미숙아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등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 가정 | <p>사업별 상이</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필요 청중장년 (13~64세) 또는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공통) 돌봄 필요성 : 질병, 부상 고립, 재난피해 등으로 독립적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 돌봄 필요 중장년 : 돌봄자 부재 - 가족돌봄청년 : 증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미만 •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화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법정보호세대) -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재난피해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긴급성(아래 ①~④ 요건 중 하나 이상 만족 필요) ①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한시적 돌봄 필요 ④ 재난피해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 - 돌봄 필요성 :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봄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보충성 ①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②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욕구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이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록 회원(사례관리 대상) |

| 구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역사회 서비스 | 일상돌봄 서비스 | 가사간병 방문지원 | 긴급돌봄 지원사업 | 정신건강 심리상담 bauer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 대상 : 아래와 같은 경우는 긴급돌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타 서비스로 연계 - 즉시 개입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인 경우 → 필요한 긴급조치 및 서비스로 연계 - <u>화재·거처 불명 등 거주지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한 경우</u> → 재가 서비스 불가능 - 소득 상실로 인한 생계곤란 등의 경우 →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연계 - <u>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u>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등 안내 - 입원 중인 경우 → 퇴원 후 또는 퇴원이 예정된 경우 신청 | |

| 구분 | 장애인 활동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
|----------------|--|--|--|
| | | 발달재활 서비스 | 언어 발달지원 |
| 소득 · 재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다만 기준중위소득 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건보료 판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건보료로 판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건보료로 판정) |
| 서비스 ·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 이상·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에 의한 방문 조사 결과 일정 점수(42점) 이상인 자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의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미만 으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 아동 (중복 장애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쪽 부모 및 조손 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를 가진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 IV |

주요 사업별 급여·서비스 기준



01 | 주요 복지급여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 | | | | |
|-----------|--|------------|---|--|---------------------|---------------------|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출산 시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
| 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 급여 지급 자가가구: 주택 보수 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수선 유지급여 지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학금·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 502,000원/년 - 중등: 699,000원/년 - 고등: 860,000원/년 | 1인 - 70만원 | 80만원 |
| 지급일 | 매월 20일 | 수급자로 결정된 날 | 매월 20일 | 분기별 25일까지** | 사유 발생 시 | |
| 급여 개시일 | 신청일 | - | 신청일 | 신청일이 속한 달 | - | - |
| 최초급여 산정방법 | 신청일이 속한 달 급여 전액 지급 | - | 신청일이 속한 달 급여 전액 지급 | 월할 계산 | - | - |
| 중지 시 급여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중지일까지 지급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 - | - |
| 전출입 시 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일 이전 - 신겨주지 16일 이후 - 구겨주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일 이전 - 신겨주지 16일 이후 - 구겨주지 | 전입일이 속한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 - | - |

* 부정수급자의 경우 부정수급자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 중지

**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바우처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사를 통해 지급(신불카드는 수령 확인 후 별도 지급)

| 구분 | 기초연금 | 장애인복지 | | 장애인연금 |
|--------------|--|---|--|--|
| | | 장애수당 | 장애아동 수당 | |
|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기준대상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4조 3항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상자 |
| 급여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단독 - 349,700원 노인부부 - 559,52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6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차상위 경증 - 6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3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22만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11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중증 - 17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경증 - 11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9만원 시설(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3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64세 : 최대 349,700원[*] * 부부장애인 - 최대 559,520원[*]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 하여 지급 부가급여[*] |
| 지급일 | 매월 25일 | 매월 20일 | | 매월 20일 |
| 급여 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 (사전 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 | 신청일이 속한 달 | | 신청일이 속한 달 |
| 최초급여 산정방법 | 100% | 100% | | 100% |
| 중지 시 급여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 전출입 시 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일 이전 - 신거주지 16일 이후 - 구거주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일 이전 - 신거주지 16일 이후 - 구거주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일 이전 - 신거주지 16일 이후 - 구거주지 |

* 부가급여

|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
| 기초(생계·의료) | 9만원 | 439,700원 [*] |
| 차상위계층(일반/주거·교육) ※ 생계·의료수급자 제외 | 8만원 | 8만원 |
| 차상위초과 | 3만원 | 5만원 |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구분 | 부모급여 (현금) | 양육수당 | 한부모가족지원 | | | |
|----------------------|--|---|--------------------------------|---|---|--------------------------------------|
| | | | 아동교육비 | 아동양육비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 대상 | 24개월 미만 가정 양육 영유아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 급여 지원, 24개월 이상 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고등학교 재학생 | 고등학생 이하 재학자녀 | 초·중·고등학생 |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입소자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 급여 액 | 0~11개월 - 월 100만원 12~23개월 - 월 50만원 | • 0~11개월 - 월 20만원 • 12~23개월 - 월 15만원 • 24개월~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장애아동 : 0~35개월- 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월 10만원 ※ 농어촌양육수당 : 0~86개월 미만 아동 10~20만원 | 급지(지역)별 | • <u>자녀아동양육비</u> 월 23만원 • 추가지원: - 5세 이하 아동 양육하는 35세 이상 미혼모부자 가 족, 조손가족 월 10만원 - 18세 미만 아동 양육하 는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당 월 10만원 | 연 10만원 | 월 10만원 |
| 지 급 일 | 매월 25일 | 매월 25일 | 분기별 납입기한 전 | 매월 20일 | 연 1회 * 7월 급여지급일 (7. 20.)에 지급. 단, 7월 급여지급일 이후에 신규보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날 이후 급여지급일에 지급 | 매월 20일 |
| 급여 개시일 | 신청일 | 신청일 | 신청일이 속한 달 | 신청일이 속한 달 | 신청일이 속한 달 | 신청일이 속한 달 |
| 최초 급여 산정 방법 | 100% | 100% | 월할 계산 | 100% | 100% | 100% |
| 중지 시 급여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중지일이 속한 분기까지 지급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시설퇴소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 전출입 시 급여 | • 15일 이전 - 신거주지 • 16일 이후 - 구거주지 | • 15일 이전 - 신거주지 • 16일 이후 - 구거주지 | 전입일이 속한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급 | • 15일 이전 - 신거주지 • 16일 이후 - 구거주지 | 급여지급 전에 전출한 경우에는 신거주지에서 지원 | 미정 |

02 | 주요 사회서비스바우처

| 구분 | 영유아보육료지원(국민행복카드) | | | |
|--------------|--|----------------------|-------------------------------------|--|
| | 0~2세아 보육료지원 | 3~5세아 보육료지원 | 장애아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지원 |
| 대 상 | 0~2세 전계층 | 3~5세 전계층 | 기준대상자 중 0세~12세의 미취학 장애아 | 기준소득액 이하 (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 서비스 내용 | 소득수준 무관지원 연령별 정부 지원단가 전액지원 | 소득수준 무관지원 월/280천원 | 월 634천원 * 누리 3-5세 장애아 : 634천원 | 정액 100천원 * 방과후장애 아동 : 317천원 |
| 지급일 | 바우처카드 결제 후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 | |
| 급여 개시일 | 신청일 | | | |
| 최초급여 산정방법 | 지원유형에 따라 일할계산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 | | | |
| 중지 시 급여 | 중지된 달까지 지급 | | | |
| 전출입 시 급여 |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소재지 보장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집에 지원 | | | |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구분 | 사회서비스(바우처) | | | | |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지역사회 서비스 | 가사간병 방문지원 | 일상돌봄 서비스 | 긴급돌봄 지원사업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준에 따른 선정기준 개별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법정보호 세대)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 필요 청 중장년 또는 가족돌봄청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재난피해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사업」 통해 의뢰된 자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등록 회원(사례관리 대상) |
| 서비스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서비스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태아 : 첫째(10일), 둘째(15일), 셋째 이상(15일) - 쌍태아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미숙아 단태아 출산 산모 : 15일 - 삼태아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미숙아 쌍태아 출산 산모 : 25일 - 사태아 이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미숙아 삼태아 출산 산모 : 25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별, 지역별 상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 : 24시간, 27시간, 4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시간 서비스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에 한함 내용 : 가사 간병 서비스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를 단력적으로 제공 특화서비스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지역별 상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8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 구분 | 사회서비스(바우처) | | | | |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지역사회 서비스 | 가사간병 방문지원 | 일상돌봄 서비스 | 긴급돌봄 지원사업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제공인력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 상이(세부 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지원 사업 안내 참고) | | | | | |
| 급여 개시일 | 매월(27일) 대상자 결정처리 및 전송완료된 대상자에 대해 익월 바우처 생성 원칙 (단, 산모·신생아사업 및 긴급돌봄 지원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경우 수시신청이며, 결정통보 후 익일부터 생성 가능) | | | | | |
| 중지 시 급여 | 익월 바우처 사용 중지(1개월 미사용, 본인부담금 미납, 부정행위자 등) | | | | | |
| 전출입 시 급여 | 바우처생성 시 거주하는 보장기관에서 월 단위 바우처 지급원칙 단, 지역사회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전출 시 해당 바우처 중지되며, 산모·신생아사업의 경우 1회성 사업으로 전출입처리 없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별도 전출입 처리 없이 기존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위탁금에서 지속 지급됨 | | | | | |

| 구분 | 사회서비스(바우처) | | |
|-------------|--|---|--|
| | 장애인 활동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 언어 발달지원 |
| 대 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6세 이상~65세 미만)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쪽 부모 및 조손 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를 가진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 서비스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장애인의 사회 활동 지원 위해 지급 (개인별 본인 부담금 차등 부과) - 활동지원급여 : 1,040~8,293천원 - 특별지원급여 : 349~1,385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18~26만원 상당의 언어 치료, 미술·음악 치료 등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금액 지원(지역별 상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18~24만원 상당의 언어 발달진단 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 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 지도의 프로그램 제공 |
| 급여 개시일 | 매월(27일) 대상자 결정처리 및 전송완료된 대상자에 대해 익월 바우처 생성 원칙 | | |
| 중지 시 급여 | 익월 바우처 사용 중지(1개월 미사용, 본인부담금 미납, 부정행위자 등) | | |
| 전출입 시 급여 | 바우처생성 시 거주하는 보장기관에서 월 단위 바우처 지급원칙 | | |

| V |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01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구 분 | | 내 용 |
|------|----------|--|
| 지원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 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
| 신청 | 신청권자 |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 | 신청장소 |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 | 처리기한 |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

| 구 분 | | 내 용 |
|-----|----------|--|
| | 부양의무자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상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판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계급여 :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2) 의료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
| 조사 | 조사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 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육구·주택조사(LH시행) 등 |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02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구 분 | | 내 용 |
|------|----------|--|
| 지원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u>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u> |
| 신청 | 신청권자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 | 신청장소 | • 거주지 관할 읍면동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진단서 1부(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
| | 처리기한 | • 30일(접수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u>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자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는 제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동일하게 조사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차감액 - 일반재산 차감잔액) × 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기본재산공제액 : 서울(13,500만원), 경기(13,500만원), 광역·세종·창원(13,500만원), 그 외 지역(8,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
| | 부양의무자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 미적용) -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 |
| 조사 | 조사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기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준세대의 소득재산 • (부양요건)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기타요건) 기타 신청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 급여 | 지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지원내용 : 대상자는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 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

03 | 차상위자활

| 구 분 | | 내 용 |
|------|----------|---|
| 지원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이면서 자활근로 참여를 신청한 자 |
| 신청 | 신청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 | 신청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 | 처리기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접수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소득조사 등에 준용 단,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진폐위로금은 반영하지 않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13,500만원), 경기(13,500만원), 광역·세종·창원(13,500만원), 그 외 지역(8,5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4.17%), 자동차(월 100%) |
| 조사 | 조사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
| 급여 | 지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근로 유형별 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하며 급여 수령 |

04 | 차상위자산형성(희망저축계좌)

| 구 분 | | 내 용 | |
|-------|----------|--|---|
| 사업명 | |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 II |
| 지원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 수급가구 • (근로기준)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가구원 중 신청 당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 신청 | 신청권자 | • 본인 직접 신청 | |
| | 신청장소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관련 서류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② 희망저축계좌 I·II 자가진단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기타 필요서류 | |
| | 처리기한 | • 30일 | • 70일 |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일부 상이) | |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일부 상이) | |
| 조사 | 조사내용 | • 수급권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의 소득·재산 등 | |
| 급여 | 지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본인 저축액(월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 대비 월30만원 지원 • (만기수급액) 1,440만원 + 이자(계좌이자) + 추가지원금* * ① (자활사업참여자) 내일키움장려금 (20만원)·수익금(15만원) 지원 ② (탈수급) 생계·의료 탈수급 시 장려금 지원(가입연도별 지원액 상이) • (지원요건) ① 근로활동 지속, ② 생계·의료수급 모두 탈수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본인 저축액(월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 대비 월10~30만원 지원 * '25년 가입자부터 연도별 차등지원 (1년차 10만원 → 2년차 20만원 → 3년차 30만원) • (만기수급액) 720만원 + 이자(계좌이자) + 추가지원금* * (자활사업참여자) 내일키움장려금 (20만원)·수익금(15만원) 지원 • (지원요건) ① 근로활동 지속, ② 교육 이수 (총10시간) 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05 | 청년자산형성(청년내일저축계좌)

| 구 분 | | 내 용 |
|-------|----------|--|
| 지원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15세 이상~39세 이하 •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p>* '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50~100% 차상위초과자 신규모집 중단 / 기존 가입자 지원은 계속</p> |
| 신청 | 신청권자 | • 본인 직접 신청 |
| | 신청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관련 서류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②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기타 필요서류('참고' 제출서류 목록 참조) |
| | 처리기한 | • 100일 |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일부 상이) |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일부 상이) |
| 조사 | 조사내용 |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 확인 |
| 급여 | 지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최대 50만원) 대비 월 30만원 지원 • (만기수급액) 1,440만원 + 이자(계좌이자) + 추가지원금* * ① (생계급여 가구 청년)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지원 ② (자활사업참여자) 내일키움장려금(20만원)·수익금(15만원) 지원 ③ (탈수급) 생계·의료 탈수급 시 장려금 지원(가입연도별 지원액 상이) • (지원요건) ① 근로활동 지속, ② 자립역량교육 이수(총 10시간) 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06 | 차상위계층 확인

| 구 분 | | 내 용 |
|------|----------|--|
| 지원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으로 정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 신청 | 신청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권자·친족·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 | 신청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확인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 | 처리기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접수일로부터 60일까지 연장 가능)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 조사 | 조사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
| 급여 | 지원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자원 등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최종 지원여부는 개별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 |

07 | 장애(아동)수당

| 구 분 | | 내 용 | |
|-------|----------|---|--|
| 지원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포함)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18~20세인 「초·중등교육법」상 재학 중인 장애아동은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 |
| 신청 | 신청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당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 장애아동수당 : 보호자 또는 대리인 | |
| | 신청장소 |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
| | 처리기한 |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 |
| | | 부양의무자 기준 | • 차상위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수급권자 선정 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 | | 기타 기준 | • 등록 장애인 |
| | 조사 | 조사내용 |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
| 급여 | 종류 및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 월 6만원 -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월 22만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월 11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차상위 중증 : 월 17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차상위 경증 : 월 11만원 -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중증 : 월 9만원 - 보장시설입소(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경증 : 월 3만원 | |

08 | 기초연금

| 구 분 | | 내 용 |
|-------|----------|--|
| 지원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 신청 | 신청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대리신청(동의필요) |
| | 신청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재산 확인서류, 이력관리신청서 등 |
| | 처리기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 이상 노인 |
| | 소득인정액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노인단독 247만원, 노인부부 395.2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times (\text{근로소득}^* - 116\text{만원})\} + \text{기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금융재산} - 2,000\text{만원}) - \text{부채}] \times \text{재산의 소득환산율}(\text{연 } 4\%) \div 12\text{월}\}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재산액 : 대도시·특례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P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 | 직역연금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 - 장애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 (특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권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기준연금액의 50% 산정) |
| 조사 | 조사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직역연금 등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사항 국민연금급여액, A급여액 등 기초연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 |

| 구 분 | | 내 용 |
|-----|-----|--|
| 급여 | 지원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급여액 : 월 최고 단독가구 <u>349,700원</u>, 부부가구 <u>559,520원</u> •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연금액(349,700원), 부가연금액(174,850원) 또는 국민연금급여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 연금액을 산정 가.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200% 이하 : ❶과 ❷ 중 큰 금액 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 초과 : ❶로 산정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상 A급여액 적용 산식을 통해 기초연금액 산정(A급여액 적용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항상 큼)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 1/2)} + 부가연금액 ❷ 국민연금 급여액등 적용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div> - 개인별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대상자의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를 감액 하여 최종 기초연금 급여액 결정 * 부부 2인 수급자인 경우 부부감액 적용 *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소득역전방지 감액 적용 |

09 | 장애인연금

| 구 분 | | 내 용 |
|------|--|--|
| 지원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상자 |
| 신청 | 신청권자 |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직권신청(동의필요) |
| | 신청장소 |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확인 서류(해당자에 한함) - 중증장애인 본인명의로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예외적인 경우, 제3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통장 사본 필요)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등 |
|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26년 선정기준액 장애인단독 140만원, 장애인부부 224만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 - 95만원)}+기타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상시근로소득에서 95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은 월 4만원 공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특례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P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
| 기타기준 | •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 | |
| 조사 | 조사내용 |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

| 구 분 | | 내 용 | | |
|--|-----|--|--------|---------------------------|
| 급여 | 지원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되, 합산하여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급여 : 349,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 20% 감액 지급 ※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감액하여 지급(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감액구간 미적용) - 부가급여(차등) :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 | | |
| | | 구 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재가 / 생계, 의료수급) | 9만원 | 439,700원 ¹⁾ |
| |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 생계, 의료수급) | 0원 | 0원 |
| |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 생계, 의료수급) | 0원 | 8만원 ²⁾ |
| | |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8만원 | 8만원 |
| |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 교육수급)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 | 8만원 15만원 ³⁾ |
| | | 차상위초과(일반) | 3만원 | 5만원 |
|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수급액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보전하여 지급 2)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수급자 3) 차상위계층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계속 차상위계층을 유지하다가 2017. 8. 8.까지 65세에 도래한 자(1952. 8. 8.이전 출생자) (급여특례/주거·교육수급자 포함) | | | | |

10 | 영유아 지원(아동수당, 부모급여)

| 구 분 | | 내 용 |
|------|----------|---|
| 지원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세 미만의 아동(0~107개월) - 9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108개월 간 지급 • 부모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세미만의 아동(0~23개월)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 신청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 | 신청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거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 • ‘복지로’, ‘정부24’ 온라인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신청은 부모에 한함, 아동수당의 경우에는 친인척(3촌이내) 신청 가능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공통서식)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 • 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대리신청 시)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등 사본제출, 대리인 신분증 |
| | 처리기한 |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불가피한 경우 60일) |
| 조사 | 조사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요건, 가구구성, 보호자 등 확인 • 가구원 및 실질적 보호자 확인 후 접수 처리 |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 수급아동 1인당 월 10~13만원(최대 108개월 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우대} 11만원(지역사랑상품권 12만원), 특별^{특별} 12만원(지역사랑상품권 13만원) • 부모급여(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원,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원 • 부모급여(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부모급여 차액 41.6만원 지급 - 1세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부모급여 차액 2.5만원 지급(1세반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24년생, 보육료 54만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은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23년생, 보육료 47.5만원)에 재원하는 경우 월 2.5만원 부모급여 차액 지급 •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11 | 영유아 보육(보육료, 양육수당)

| 구 분 | | 내 용 |
|------|----------|---|
| 지원대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 -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 신청 | 신청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 | 신청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단, 출생신고를 아동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하는 경우 양육수당에 대한 신규 신청 건에 한해 해당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가접수 가능 ※ 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발급 전에 이루어진 신청은 정식 신청이 아닌 '가신청'이며, 주민번호발급 이후 담당자는 주민번호를 보완하여 정식신청접수하되, 정식 신청일은 '가신청'일로 소급하여 처리(신청인은 가신청 시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신청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함)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
| | 처리기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 |
| 급여 | 종류 및 지원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수당(24~85개월) : 100천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24~85개월) : 100~200천원 · 농어촌 양육수당(24~85개월) : 100~156천원 · 영유아(0~2세반)보육료 : 소득무관 전(全)계층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 280천원 * 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634천원 · 장애아 보육료 : 인건비지원시설 634천원,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 12세 이하 차상위(법정 포함) 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317천원 · 다문화 보육료 : 소득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12 | 긴급복지지원

| 구 분 |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대상 | |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신고 | 요청인 |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요청장소 | • 거주지 읍·면·동,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신청서 없음 • 기본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 요구자료(해당자에 한함): 위기상황별 요건확인자료,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 요구자료 제출거부 시 긴급지원심의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기한 | • 지체 없이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정기준 (사후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소득 재산 기준 |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923,179원, 4인기준 4,871,054원)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241백만원), 중소도시(152백만원), 농어촌(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에 600만원 합산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기준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8조, 제14조에 따른 위기상황, 현장확인, 적정성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 | 조사내용 | •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의 소득, 재산의 합계액(부채 포함), 금융재산 • 위기상황 해당 여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급여 | 종류 및 내용 |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류</th> <th>지 원 내 용</th> <th>지 원 금 액</th> <th>최 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금전· 현물 지원</td> <td rowspan="2">주 지 원</td> <td>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td> <td>월 1,994,600원(4인)</td> <td>6회</td> </tr> <tr> <td>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백만원 이내(본인부담금·비급여)</td> <td>300만원 이내</td> <td>2회</td> </tr> <tr> <td>주거 • 국가·지자체·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td> <td>월 662,500원 이내 (대도시, 4인)</td> <td>12회</td> </tr> <tr> <td>시설 이용</td> <td>• 사회복지시설 입소·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td> <td>월 1,494,100원 이내 (4인)</td> <td>6회</td> </tr> <tr> <td rowspan="2">부 가 지 원</td> <td>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td> <td>- 초 127,900원/분기 - 중 180,000원/분기 - 고 214,000원/분기 및 입학금·수업료</td> <td>2회 (주거지원 시 최대 4회)</td> </tr> <tr> <td>기타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td> <td></td> <td>1회 (연료비 6회)</td> </tr> <tr> <td>민간 연계 등</td> <td>•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td> <td></td> <td>횟수제한 없음</td> </tr> </tbody> </table> |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 원 금 액 | 최 대 | 금전· 현물 지원 | 주 지 원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월 1,994,600원(4인)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백만원 이내(본인부담금·비급여) | 300만원 이내 | 2회 | 주거 • 국가·지자체·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월 662,500원 이내 (대도시, 4인) | 12회 | 시설 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월 1,494,100원 이내 (4인) | 6회 | 부 가 지 원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 초 127,900원/분기 - 중 180,000원/분기 - 고 214,000원/분기 및 입학금·수업료 | 2회 (주거지원 시 최대 4회) | 기타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 1회 (연료비 6회) | 민간 연계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 횟수제한 없음 |
| | |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 원 금 액 | 최 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전· 현물 지원 | 주 지 원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월 1,994,600원(4인) | 6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 3백만원 이내(본인부담금·비급여) | 300만원 이내 | 2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거 • 국가·지자체·타인 소유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월 662,500원 이내 (대도시, 4인) | 12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 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월 1,494,100원 이내 (4인) | 6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가 지 원 |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 초 127,900원/분기 - 중 180,000원/분기 - 고 214,000원/분기 및 입학금·수업료 | 2회 (주거지원 시 최대 4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 1회 (연료비 6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간 연계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 횟수제한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포함)

| 구 분 | 내 용 | |
|-------|---|--|
| 지원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원칙) 가구단위 지원 | |
| 신청 | 신청권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 | 신청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 신청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 | 처리기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은 72%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 창원(7,700만원), 기타(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
| | 부양의무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없음 * 조손가족의 경우 손자녀 친권자(아동의부모)의 부양능력 확인 |
| | 기타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미혼모·부 가족 포함) |
| |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내용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재산 정도 |
| 급여 | 지급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 | 종류 및 지원액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양육비(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3만원 ※ 5세 이하 아동 양육하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월 10만원 추가 지원 ※ 18세 미만 아동 양육하는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월 10만원 추가 지원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10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10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 1인당 월 370천원 * 단, 0~1세 자녀는 1인당 월 400천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간 154만원 이내 - 검정고시 응시생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지원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 지원 |

2026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 주요 개정사항

| 주요 내용 | 2025년 | 2026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온라인 신청 p.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2종 복지서비스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5종 복지서비스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 - (수정)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 (추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자활성공지원금,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별 소득조사 항목 p.37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항목별</th> <th style="width: 35%;">사업명</th> <th style="width: 50%;">기초연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2. 사업소득</td> <td>농업소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임업소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어업소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기타사업소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 항목별 | 사업명 | 기초연금 |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 × | 임업소득 | × | 어업소득 | × | 기타사업소득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항목별</th> <th style="width: 35%;">사업명</th> <th style="width: 50%;">기초연금</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2. 사업소득</td> <td>농업소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임업소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어업소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기타사업소득</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 항목별 | 사업명 | 기초연금 |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 ○ | 임업소득 | ○ | 어업소득 | ○ | 기타사업소득 | ○ |
| 항목별 | 사업명 | 기초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항목별 | 사업명 | 기초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장기관 확인소득 p.52 | <p>나) 산정기준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80,24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25년 최저임금) ※ '25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기준 | <p>나) 산정기준 금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82,56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25년 최저임금) ※ '26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지가격 적용률 p.60 | <p style="text-align: center;">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지 역</th> <th style="width: 70%;">토지가격 적용률</th> </tr> </thead> <tbody> <tr> <td>서울특별시</td> <td>0.9(전지역)</td> </tr> <tr> <td>부산광역시</td> <td>0.9(전지역)</td> </tr> <tr> <td>대전광역시</td> <td>0.9(전지역)</td> </tr> <tr> <td>(생략)</td> <td>(생략)</td> </tr> </tbody> </table> | 지 역 | 토지가격 적용률 | 서울특별시 | 0.9(전지역) | 부산광역시 | 0.9(전지역) | 대전광역시 | 0.9(전지역) | (생략) | (생략) | 삭제 | | | | | | | | | | | | | | |
| 지 역 | 토지가격 적용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 0.9(전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광역시 | 0.9(전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전광역시 | 0.9(전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생략) | (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유형별 반영 기준 p.75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사업</th> <th style="width: 85%;">일반재산(월 4.17%) 환산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초 생활 보장(생계, 의료), 차상위분인 부담 경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용자동차 (생략) - 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재원을 둔 가구,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합·화물자동차 - 1,000cc 미만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백만원 미만 </td> </tr> </tbody> </table> | 사업 | 일반재산(월 4.17%) 환산율 | 기초 생활 보장(생계, 의료), 차상위분인 부담 경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용자동차 (생략) - 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재원을 둔 가구,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합·화물자동차 - 1,000cc 미만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백만원 미만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사업</th> <th style="width: 85%;">일반재산(월 4.17%) 환산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초 생활 보장, 차상위분인 부담 경감, 차상위장애 수당, 한부모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용자동차 (생략) - 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2명 이상의 재원을 둔 가구,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합·화물자동차 -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백만원 미만 </td> </tr> </tbody> </table> | 사업 | 일반재산(월 4.17%) 환산율 | 기초 생활 보장, 차상위분인 부담 경감, 차상위장애 수당, 한부모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용자동차 (생략) - 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2명 이상의 재원을 둔 가구,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합·화물자동차 -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백만원 미만 | | | | | | | | | | | | | | |
| 사업 | 일반재산(월 4.17%) 환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초 생활 보장(생계, 의료), 차상위분인 부담 경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용자동차 (생략) - 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재원을 둔 가구,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합·화물자동차 - 1,000cc 미만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백만원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 일반재산(월 4.17%) 환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초 생활 보장, 차상위분인 부담 경감, 차상위장애 수당, 한부모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용자동차 (생략) - 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2명 이상의 재원을 둔 가구,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합·화물자동차 -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백만원 미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내용 | 2025년 | | 2026년 | | | |
|-----------------|---|---|--|---|--|---|
| | 사업 | 일반재산(월 4.17%) 환산율 | 사업 | 일반재산(월 4.17%) 환산율 | | |
| | | - 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 | - 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 | |
| | 기초 생활보장 (주거,교육) 차상위장래 수당, 한부모지원 | <아래 외 생계·의료와 동일> • 승합·화물자동차 -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백만원 미만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 형성 | <아래 외 생계·의료와 동일> • 승용자동차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 | |
|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 형성 | <아래 외 주거·교육과 동일> • 승용자동차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 | | | |
| 자연적 소비금액 p.79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 ('25년 기준) 단독가구 2,512,677원, 부부가구 3,048,887원 |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 ('26년 기준) 단독가구 2,679,518원, 부부가구 3,247,369원 | | | |
| 소득인정액 산정 p.88 |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기초연금 {0.7×(근로소득-112만원)} + 기타소득 - 장애인연금 {0.7×(근로소득-92만원)} + 기타소득 | |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기초연금 {0.7×(근로소득-116만원)} + 기타소득 - 장애인연금 {0.7×(근로소득-95만원)} + 기타소득 | | | |
| 근로사업 소득 공제 p.92 | 사업구분 | 근로사업소득 공제 내용 | 공제액 및 공제율 | 사업구분 | 근로사업소득 공제 내용 | 공제액 및 공제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문화재)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의 가정위탁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29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 및 사업소득 30세 이상 초·중·고등학교생 근로 및 사업소득 30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 |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문화재) | 삭제 삭제 삭제 34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 및 사업소득 35세 이상 초·중·고등학교생 근로 및 사업소득 35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 |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30% |
| | 기초연금 | 상시소득 전체 | 112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기초연금 | 상시소득 전체 | 116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 | 장애인연금 | 상시소득 전체 | 92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장애인연금 | 상시소득 전체 | 95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주요 내용 | 2025년 | 2026년 | | | | | | | | | | | | | | | | | | | | |
|--|---|---|-------------|--------|--|--|---|--|-----------|-----------|--|---|----------|-----------------------------|------|-------------|-------|--|------|-----------|---------------------------------------|---------------------------------------|
| 유형별 소득재산 조사 항목 p.10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구분</th> </tr> <tr> <th>종</th> <th>소</th> <th>세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소득공제</td> <td rowspan="2">가구 특성별 지출</td> <td>(추가)</td> </tr> <tr> <td>(추가)</td> </tr> </tbody> </table> | 구분 | | | 종 | 소 | 세목 | 소득공제 | 가구 특성별 지출 | (추가) | (추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구분</th> </tr> <tr> <th>종</th> <th>소</th> <th>세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소득공제</td> <td rowspan="2">가구 특성별 지출</td> <td>국가유공자 상이군경(공상, 전상, 재해부상 군경) 보상금 일부 공제</td> </tr> <tr> <td>보훈대상자 상이군경(공상, 전상, 재해부상 군경) 보상금 일부 공제</td> </tr> </tbody> </table> | 구분 | | | 종 | 소 | 세목 | 소득공제 | 가구 특성별 지출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공상, 전상, 재해부상 군경) 보상금 일부 공제 | 보훈대상자 상이군경(공상, 전상, 재해부상 군경) 보상금 일부 공제 |
|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종 | 소 |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소득공제 | 가구 특성별 지출 |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종 | 소 | 세목 | | | | | | | | | | | | | | | | | | | | |
| 소득공제 | 가구 특성별 지출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공상, 전상, 재해부상 군경) 보상금 일부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 | 보훈대상자 상이군경(공상, 전상, 재해부상 군경) 보상금 일부 공제 | | | | | | | | | | | | | | | | | | | | |
| 바우처 지급절차 p.133 | <table border="1"> <thead> <tr> <th>사 업</th> <th>본인 부담금 납부</th> <th>바우처 생성</th> </tr> </thead> <tbody> <tr> <td>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최종중발달장애인</td> <td>지정계좌 납부 (1차) 전월 말일 (2차) 당월 1~15일 (3차) 당월 16~25일</td> <td>(1차) 전월 말일 (2차) 당월 1~15일 (3차) 당월 16~25일</td> </tr> </tbody> </table> <p>*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본인부담금 없음</p> | 사 업 | 본인 부담금 납부 | 바우처 생성 |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최종중발달장애인 | 지정계좌 납부 (1차) 전월 말일 (2차) 당월 1~15일 (3차) 당월 16~25일 | (1차) 전월 말일 (2차) 당월 1~15일 (3차) 당월 16~25일 | <table border="1"> <thead> <tr> <th>사 업</th> <th>본인 부담금 납부</th> <th>바우처 생성</th> </tr> </thead> <tbody> <tr> <td>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최종중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td> <td>본인부담금 없음</td> <td>(정기) 매월 말일 (수시) 당월 1~15일</td> </tr> </tbody> </table> <p>*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최종중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본인 부담금 없음</p> | 사 업 | 본인 부담금 납부 | 바우처 생성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최종중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본인부담금 없음 | (정기) 매월 말일 (수시) 당월 1~15일 | | | | | | | | |
| | 사 업 | 본인 부담금 납부 | 바우처 생성 |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최종중발달장애인 | 지정계좌 납부 (1차) 전월 말일 (2차) 당월 1~15일 (3차) 당월 16~25일 | (1차) 전월 말일 (2차) 당월 1~15일 (3차) 당월 16~25일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 본인 부담금 납부 | 바우처 생성 | | | | | | | | | | | | | | | | | | | |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최종중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본인부담금 없음 | (정기) 매월 말일 (수시) 당월 1~15일 | | | | | | | | | | | | | | | | | | | | |
| 국민행복 카드발급 p.135 | <p>- 카드 발급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 5사</p> <p>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신용 카드</th> <th rowspan="2">체크 카드</th> <th>전용카드</th> </tr> <tr> <th>카드사 발급 전용카드</th> </tr> </thead> <tbody> <tr> <td>발급 방법</td> <td colspan="3">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 (BC카드 발급기관)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구, 대구 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한</td> </tr> </tbody> </table> | 구 분 | 신용 카드 | 체크 카드 | 전용카드 | 카드사 발급 전용카드 | 발급 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 (BC카드 발급기관)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구, 대구 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한 | | | <p>- 카드 발급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 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 6사</p> <p>* '26.7.1.부터 신청·발급</p> <p>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신용 카드</th> <th rowspan="2">체크 카드</th> <th>전용카드</th> </tr> <tr> <th>카드사 발급 전용카드</th> </tr> </thead> <tbody> <tr> <td>발급 기관</td> <td colspan="3">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 국민카드**, 현대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신한 포함 ** 전북은행 포함 *** 유효기간까지 제발급 및 사용가능, 신규발급 불가 ※ 우체국 카드발급 시 IC기능(교통카드) 탑재 되어있는 카드는 발급 불가</td> </tr> </tbody> </table> | 구 분 | 신용 카드 | 체크 카드 | 전용카드 | 카드사 발급 전용카드 | 발급 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 국민카드**, 현대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신한 포함 ** 전북은행 포함 *** 유효기간까지 제발급 및 사용가능, 신규발급 불가 ※ 우체국 카드발급 시 IC기능(교통카드) 탑재 되어있는 카드는 발급 불가 | | | | |
| | 구 분 | | | | 신용 카드 | 체크 카드 | 전용카드 | | | | | | | | | | | | | | | |
| 카드사 발급 전용카드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 (BC카드 발급기관)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구, 대구 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한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신용 카드 | 체크 카드 | 전용카드 | | | | | | | | | | | | | | | | | | | |
| | | | 카드사 발급 전용카드 | | | | | | | | | | | | | | | | | | | |
| 발급 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 국민카드**, 현대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신한 포함 ** 전북은행 포함 *** 유효기간까지 제발급 및 사용가능, 신규발급 불가 ※ 우체국 카드발급 시 IC기능(교통카드) 탑재 되어있는 카드는 발급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내용 | 2025년 | 2026년 | | | | | | | | | | | | |
|-----------------------------------|--|---|-------|----|----|----|------|--|----|-------|----|----|-------------------------|---|
| 국민행복카드발급 p.157 | 누락서비스 관리 ☞ 연령도래자 (추가) | 누락서비스 관리 ☞ 연령도래자 중증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인 중증장애아동 중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자(18세) (추출기준) : 중증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인 중증장애아동이 18세 도래로 장애인연금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 | | | | | | | | | | | |
| 서식 p.173-248 | 2025년 고시개정사항 반영·수정 -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별지 제2호서식]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결정(대상제외)·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결정(적합)·결정(대상제외) 통지서 | 2026년 고시개정사항 반영·수정 -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별지 제1호의3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별지 제2호서식]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결정(대상제외)·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 [별지 제15호서식]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 [사업별 서식 제2호]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사업별 서식 제3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업별 서식 제3-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사업별 서식 제4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사업별 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 | | | | | | | |
| 부록. 시스템 자료보정 유형 p.292 |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보정 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추가</td> <td>추가</td> <td>(추가)</td> </tr> </tbody> </table> | 번호 | 보정 유형 | 내용 | 추가 | 추가 | (추가) |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보정 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9</td> <td>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유효종료 일자 보정</td> <td>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요청 ※ 관련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 아동수당,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 초·중등교육 등 </td> </tr> </tbody> </table> | 번호 | 보정 유형 | 내용 | 19 |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유효종료 일자 보정 |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요청 ※ 관련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 아동수당,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 초·중등교육 등 |
| 번호 | 보정 유형 | 내용 | | | | | | | | | | | | |
| 추가 | 추가 | (추가) | | | | | | | | | | | | |
| 번호 | 보정 유형 | 내용 | | | | | | | | | | | | |
| 19 |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유효종료 일자 보정 |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요청 ※ 관련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 아동수당,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 초·중등교육 등 | | | | | | | | | | | | |
| 부록 p.330-348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원 -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유형 안내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신설>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원 -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유형 안내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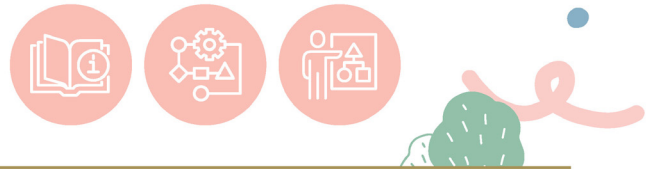
2026 주요 개정사항

01

Part

공통업무절차

| | | |
|------------|----------------------------|------------|
| 제1장 | 상담·신청 | 3 |
| Ⅰ. | 상 담 | 4 |
| Ⅱ. | 신 청 | 7 |
| Ⅲ. | 접 수 | 20 |
| 제2장 | 조사 | 21 |
| Ⅰ. | 조사개요 | 22 |
| Ⅱ. | 보장가구의 확정 | 27 |
| Ⅲ. | 소득조사 | 35 |
| Ⅳ. | 재산조사 | 55 |
| Ⅴ. |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 84 |
| Ⅵ. | 소득인정액 산정 | 88 |
| Ⅶ. | 부양의무자 조사 | 97 |
| Ⅷ. | 연령산정 방식 | 98 |
| Ⅸ. | 4유형군(바우처형사업군) 소득재산조사 방안 | 99 |
| 제3장 | 보장결정 | 111 |
| Ⅰ. | 개 요 | 112 |
| Ⅱ. | 보장결정 | 112 |
| Ⅲ. | 통 지 | 113 |
| Ⅳ. | 이의신청 | 114 |



02

Part

부록

| | | |
|------------|-------------------------------|------------|
| 제4장 | 급여·서비스 실시 | 117 |
| | Ⅰ. 복지급여 | 118 |
| | Ⅱ.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133 |
| 제5장 | 사후관리 | 147 |
| | Ⅰ. 개요 | 148 |
| | Ⅱ. 변동사항 관리 | 149 |
| | Ⅲ. 기타 관리 | 156 |
| | Ⅳ. 보장비용 환수 | 165 |
| | Ⅴ. 반환명령 | 169 |
| 제6장 | 서식 | 171 |
| 제1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 253 |
| 제2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원 | 289 |
| 제3장 |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유형 안내 | 295 |
| 제4장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 309 |
| 제5장 |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 329 |

01

Part

공동업무절차

2026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



제1장 상담 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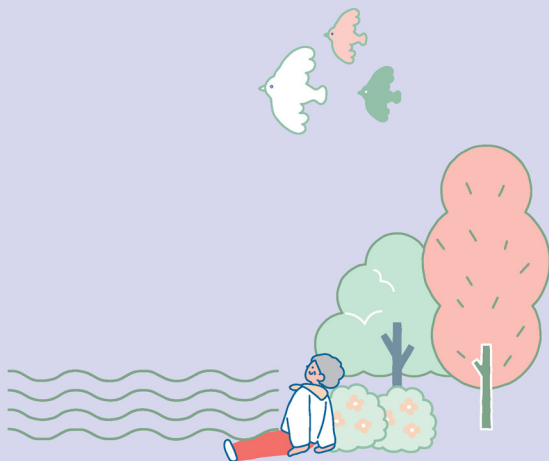
제6장 서식



제1장

상담·신청

- Ⅰ. 상담
 - Ⅱ. 신청
 - Ⅲ. 접수
-



제1장

상담·신청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 상담

1. 목적

- » 지원대상자의 주요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적합한 사회보장급여의 안내 및 사례관리 연계를 위해 실시

2. 상담유형

- » 내방상담 : 지원대상자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내방하여 실시하는 상담
- » 방문상담 : 담당 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상담
- » 전화상담 :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전화로 걸려온 상담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부터 시·군·구로 이관된 상담

3. 상담내용

- » 지원대상자 및 가구의 특성
 - 인적사항, 가구원, 부양의무자 유무 등
- » 개인 및 가구의 주요 문제와 복지욕구
 - 건강상태, 소득·재산,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 원하는 사회보장급여
- » 사회보장급여 신청안내
 - 지원 가능한 급여·서비스의 지원기준, 신청서, 구비서류 등

4. 상담 절차

| 단 계 | 업 무 내 용 |
|----------|--|
| 지원대상자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자의 인적정보, 가구구성, 소득재산, 수급이력 등을 확인하여 상담을 준비 |
| 상 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주요문제, 복지욕구,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서비스 탐색 |
| 상담 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내용을 정보시스템에 등록 |
| 연계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 연계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경우 등은 사례관리 의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 요청 민간 서비스 등 연계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5. 유의사항

- ▶▶ 상담을 통해 가구 특성, 주요 문제 및 욕구 등을 통합적으로 충분히 파악
 - 이를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 유형을 판단하고 제공가능한 각 분야의 사회보장급여를 점검하여 안내
- ▶▶ 해당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조사 시 요구되는 서류를 충분히 안내하여 재방문을 최소화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항목만 기재하여 제출토록 안내
- ▶▶ 둘 이상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일괄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 ▶▶ 구비서류나 재방문이 필요치 않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은 상담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리
- ▶▶ 공적 사회보장급여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민간 서비스 연계 등 안내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 출생미등록 아동, 행려환자, 시설수급자 중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 출생미등록 아동 및 주민등록불명자에 대해 지자체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상담·안내 등의
조치 필요(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 제2항)

참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 정의 및 부여대상

- (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로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및 각급 공공기관과 업무연계 및 편의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로 구성
 - (활용)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보장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책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 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 시
 - (부여 대상)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①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 ②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④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사용하며, 임의 부여·사용 불가

■ 제공가능 급여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3조의2(신설)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부모급여)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의 지원
 -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II 신청

1. 신청 유형

- » 본인신청 : 지원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 대리신청 : 지원대상자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 » 직권신청 :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참고 변경신청

- 기존 수급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변경 시, 신규신청이 아닌 변경신청으로 정보시스템에 입력
 - 가구원(부양의무자) 추가 및 정보의 변경, 보장의 추가·변경, 첨부서류 변경 및 신고소득·재산의 변경

2. 신청절차

| 단 계 | 업 무 내 용 |
|---------|--|
| 신청 안내 | 지원대상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의 신청방법, 절차 안내 |
| ↓ | |
|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사업별 구비서류 등 제출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정보 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
| ↓ | |
| 등록·접수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 정보시스템에 등록 시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 부여 |
| ↓ | |
| 서류보완 안내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를 보완요청 -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3. 신청권자

1) 본인신청: 지원대상자

2) 대리신청: 지원대상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그 밖의 관계인

- 지원대상자의 위임장 지참

| 구 분 | 지원대상자, 친족, 담당공무원 이외 신청권자 |
|--|--|
| 기초생활보장 | - 기타관계인(위임장 필요)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 사회복지시설장 등(위임장,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 한부모가족지원 | - 그 밖의 이해관계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 장애(아동)수당 | -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 장애인활동지원 | -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필요)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인 지정서 필요)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필요)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증 필요) |
| 영유아보육· 양육수당·부모급여 |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 일상돌봄서비스, 긴급돌봄지원사업,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 처 사업 등 | - 법정대리인·후견인, 그밖의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필요) |

3) 직권신청: 복지 담당공무원(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

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1) 의미

- 지원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조사 및 누락서비스 관리 등을 통해 급여변경·추가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사후동의를 가능한 사업수행 시 직권신청 이후 동의의사 확인

(2) 요건

- 지원대상자 또는 가족, 후견인 등의 동의를 있어야 가능하고
- 신청조사·확인조사 결과 또는 보유자격에 따라, 다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확인된 경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또한, 각 개별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대리신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3) 절차

- 행복이음 신청·확인조사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사업 또는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 발견 시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에게 연락(전화, 문자 등)하여 동의의사 확인
- * 전화 등을 통해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확인일시 및 시간, 담당공무원 및 대상자, 동의내용 등을 시스템에 입력
- ※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2항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에 의거, ‘동이가 완료된 날’을 ‘신청일’로 산정하되, 개별사업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개별지침에서 따라 산정
- 기존 신청서(참고)를 활용하거나 추가 동의를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입력·제출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참고 기존신청서 활용의 근거(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의 '선택적 동의'에 의거

| 선택적 동의 | | 동의 (√ 체크) |
|----------------------------|---|--------------|
| 기초생활 보장 | 1.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 2.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 3.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한 것에 동의합니다. | [] |
| 부모급여 | 4.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만2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장애인 연금 | 5.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
| 서비스 연계 |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7.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 멤버십) | 8.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

나)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하고 신청

(1) 의미

-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
- 이 경우 지원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권신청에 대한 본인동의 절차 생략

(2) 본인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3항)

: 요건 1, 2에 둘다 해당하는 경우 가능

- 요건1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경우, ③ 미성년자인 경우
- 요건2 :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대리인이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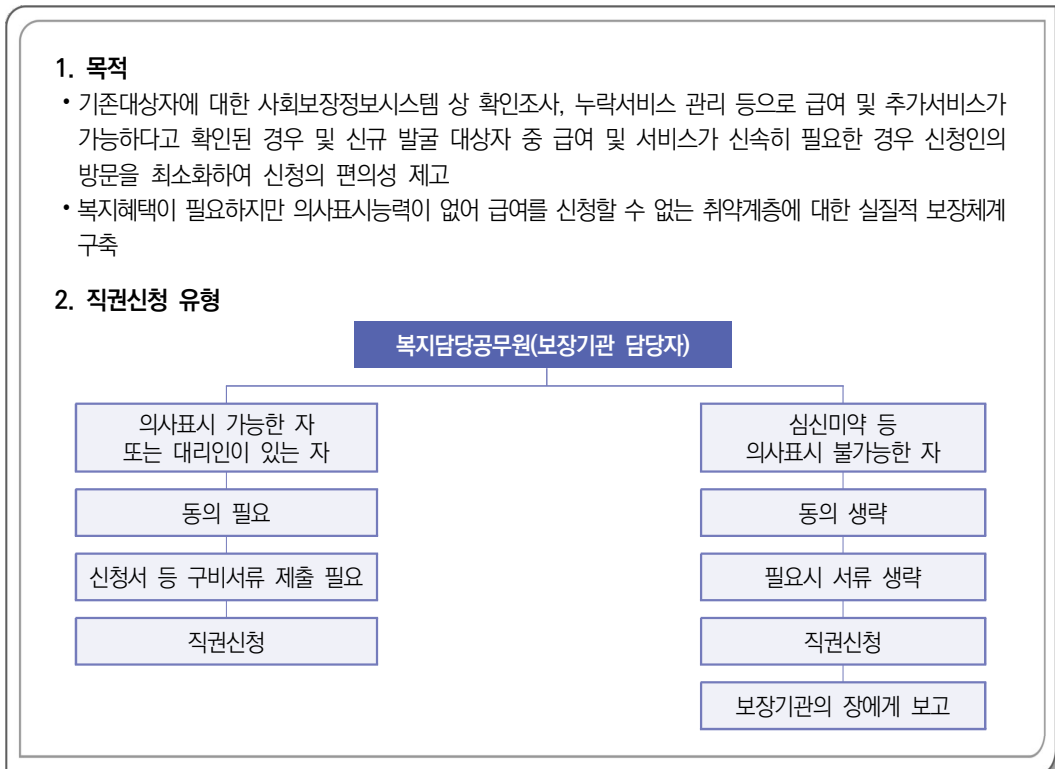
(3) 절차

- 행복이음 신청·확인조사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사업이 확인된 자 또는 위기 (긴급상황) 가구(개인)로 확인된 자 중 동의를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본인동의 절차 생략
- 담당공무원이 신청서 등 관련서류 작성/신청/제출
- 선 직권 신청 후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 보장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하나, 업무처리의 위임에 따른 경우 직권신청을 수행한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해당
- 조사, 보장결정, 급여지급, 사후관리 등 이후 절차는 본인 신청과 동일하게 관리

(4) 대상사업

- 금융재산조사가 필요없는 복지 급여·서비스(현금현물지원, 사회서비스 등)
 - * 직권신청 불가한 사업 : 금융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한 사업, 소송수행 지원,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 의사무능력자가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사업

| 업무처리절차 |



제1장
상당·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일부 사업의 경우 시·군·구(청소년특별지원 등), 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에서 신청 가능
- ※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 55종 복지서비스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가능

- 기초연금, 보육료, 유아 학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정보화 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요금감면서비스, 아동수당,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급여, 해산급여, 결식아동급식, 여성장애인출산지원, 아동발달지원계획, 청소년특별지원, 에너지 바우처,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월세, 방과후보육료지원, 차상위계층확인, 다문화가족방문교육 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의료급여(임신출산, 요양비, 본인부담면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긴급돌봄 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자활성공지원금,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30종 서비스는 비관할(실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전국신청 대상 사업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장애급여, 해산급여)
- 실거주지 대상 사업 :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장애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지원, 장애아동수당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초중고교육비지원,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 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첫만남이용권,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자산형성지원

참고 비관할 신청 관련 업무처리절차

1. 목적

-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원 대상자가 있는 실거주지 또는 가까운 지자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2. 주소지 관할·비관할 시·군·구의 역할

가. 주소지 비관할 시·군·구의 역할

- 안내 및 상담
 - 안내 가능한 사업내용 및 수급자 선정 관련 일반적인 상담 진행
- 신청
 - 민원인의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 전부를 스캔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서류의 이송
 - 신청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은 급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 전부를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
- 서류의 보완
 -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요구 가능
 - 신청인의 주소지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이관 후 신청인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에서도 이를 제출받아 시스템에 스캔 등록 가능

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역할

- 접수
 - 타 주소지에서 신청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접수처리
 - 관할 주소지 보장기관은 이송받은 문서(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급여신청의 접수 및 보완 여부 결정
- 접수처리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흠결이 없을 시 접수 처리하며 이때 접수일자(민원처리 산정의 기준일이 됨) ※ 급여지급기준일은 신청일이 되므로 혼선되지 않도록 유의
- 서류보완
 - 주소지 보장기관의 확인 결과 신청서류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해 서류보완을 요청*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완이 안 될 경우는 반려 처리
 - 서류의 보완 요청 시 온라인(복지로 사이트), 주소지 지자체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비관할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 가능함을 안내
 - * 신청인은 온라인 복지포털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여 보완 요청받은 내용을 확인 후 구비서류 제출 가능
- 보장결정
 - 보장기관의 장은 신청자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보장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사업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통지
 - * 통지의 방법, 통지기일, 통지의 내용 등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3. 신청처리 절차

| 단 계 | 업 무 내 용 | 주 체 |
|----------------------------------|--|-------------|
| 비관할지 방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하여 주소지와 상관없이 실거주지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민원인 |
| ↓ | | |
| 급여신청서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은 방문한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서를 작성 | 민원인 |
| ↓ | | |
| 급여신청서 제출 및 비관할지 수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은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한 주민센터에 제출 비관할지 주민센터는 급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수령 | 민원인 비관할지 |
| ↓ | | |
| 급여 신청 서류 시스템 등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관할지 주민센터는 민원인의 신청서를 시스템에 등록 비관할지 주민센터는 급여신청 관련서류를 스캔하여 시스템 등록 | 비관할지 |
| ↓ | | |
| 문서이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관할지 주민센터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급여신청서류 이관 (3일 이내) | 비관할지 |
| ↓ | | |
| 관할지 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지 지자체는 전산정보로 이관된 급여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추후 이관된 서류에 대한 구비 여부 등 확인 후 접수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 관할지 |
| ↓ | | |
| 서류보완 요청 또는 급여지급 여부 결정 및 지급 절차 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인에게 서류 보완 요청, 서류 보완 요청기간 동안은 민원처리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경우, 접수를 재개하고 급여 지급 여부 결정 및 지급절차 진행 - 신청자가 서류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한 차례 더 서류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이 안 될 경우 반려 처리 | 관할지 |
| ↓ | | |
| 보장결정 및 통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주소지 지자체에서 기존처럼 조사 및 결정처리, 통지 | 관할지 |

5.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별도로 명시한 서식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서식을 따름

참고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 신청서,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 부적합),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 명령) 통지서, 이의신청서 등

» (보존기한)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으로 설정하되, 전산적 보존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최소 1년까지 보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보존기한에 대한 예외 설정 가능

| 사 업 | 필수서류 |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만 제출) |
|----------------------------|--|---|
| 기초생활 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포함)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기초생활보장)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수급희망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산확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통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확인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부채)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등 |

제1장
상당·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사 업 | 필수서류 |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만 제출) |
|------------------|--|---|
| 사회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14세 미만)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19세 이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동의서(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등급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 의사소견서, 비만 지수·심리결과 확인서, 추천서 등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증빙서류 등 |
| 영유아 보육·양육수당·부모급여 | <p>[보육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p>[양육수당·부모급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아종일반 신청 시) 종일반 사유확인서 및 종일반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보육료) 장애인등록증, 장애소견의사 진단서(5세 이하 장애인복지카드 미소지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8세 이하) 중 1부 - (다문화보육료) 혼인관계증명서* * 행복이음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난민)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난민여행증명서 등)] 등 입증서류 제출 - (농·어촌양육수당)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 *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6. 신청 시 안내사항

» 처리기한

- 사업별로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민원처리 후 통지예정임을 안내
 - 기초생활보장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 기초연금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 장애인연금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 한부모가족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 부모급여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 보육료지원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 사회서비스이용권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 통지방법

-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통지 가능

» 신고의 의무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기초연금 신청자** 아래의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음을 안내
 - 수급권 상실사유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 변경사유 : 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지급정지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연금 신청자** 「장애인연금법」 제16조에 따라 아래의 변동사항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안내

- 수급권 소멸 사유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및 장애등급의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변경사유 : 장애인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주민등록번호정정,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장애인연금 지급 정지사유* 소멸한 경우

* 지급정지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 제외)

- **보육료 종일형 신청자** 종일형 자격의 중지·소멸 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 **보장비용의 환수 및 처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환수함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의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제49조)
- 의료급여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5조제4항)
- 기초연금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9조제3항)
- 장애인연금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5조제3항)
- 아동수당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4조)
- 영유아보육법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4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제29조제4항).
-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또는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조치(기초생활보장 지침)
- 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 서비스 신청 접수(대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 고지사항 안내

-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 선정을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
- 수집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됨을 안내
 - * 다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 가능

» 복지멤버십 신청 안내

- 복지멤버십*을 동시에 신청하면 수급가능성 있는 급여를 수시로 안내받을 수 있음을 안내
 - * 맞춤형 급여 안내를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주는 제도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의 '선택적 동의'란에 동의하면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III 접수

1. 신청 등록

- »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 서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 제출된 각종 서류는 정보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
- » 정보시스템에 접수 시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 부여
 - 민원 접수처리(행복이음), 접수확인(민원행정시스템), 처리완료(행복이음)
- » 신청일자는 급여기준일, 접수일자는 민원처리기한 산정 기준일이 됨

2. 접수의 효력발생 시기

- »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별 해당자에 한함) 제출일을 '신청일'로 함
 - 복지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
-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조사담당공무원은 접수된 신청에 대해 즉시 조사 실시

제2장

조사

- I. 조사개요
 - II. 보장가구의 확정
 - III. 소득조사
 - IV. 재산조사
 - V.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 VI. 소득인정액 산정
 - VII. 부양의무자 조사
 - VIII. 연령산정 방식
 - IX. 4유형군(바우처형사업군)
소득재산조사 방안
-



제2장

조 사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 조사개요

1. 조사유형

- ▶ 신청조사 : 급여 신청 시 급여자격 및 급여액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
 - ▶ 확인조사 :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 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공적자료를 통해 실시하는 조사
 -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확인 대상자, 보장기관 확인소득부과자 등 별도조사가 필요한 수급자에 대하여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조사
-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고 소득이 산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는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봄

2. 조사대상

| | | |
|-------|--------------------|-------|
| 구 분 | 생계·의료급여, 차상위분인부담경감 | 그 외 |
| 조사 대상 | 보장가구원 + 부양의무자 | 보장가구원 |

3. 조사내용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 ▶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조사원칙

- ▶▶ 자산조사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반영 되나, 일부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므로 조사확인 후 반영
 - * (자동반영 자료)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자동으로 적용되며, 조사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반영
 - * (참고용 자료) 가액산정에 필요한 자료 중 일부(예: 보유정보)만 입수가능하거나 가액정보의 신뢰도가 충분히 높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추가자료 조사 후 반영(또는 제외)
 -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종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 ▶▶ 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 이 경우 반드시 증빙자료를 정보시스템에 등록
 - ** 확정일자외의 경우 제공기관 자료 수정(삭제) 불가, 증빙서류 받아 확인 필요
-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지출 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으며,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시 직권으로 근로소득 반영

5. 대상자 선정 방법

- ▶▶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 → 소득조사 및 재산조사 실시(통합조사관리팀)
- ▶▶ 자격확인으로 대체하는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자격확인으로 대상자 여부 판단 (읍·면·동)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6. 조사절차(신청조사)

| 단 계 | 업 무 내 용 |
|----------------------------|---|
| 조사대상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내용 확인 -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
| ↓ | |
| 공적자료 조회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
| ↓ | |
|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사실과 다름을 소명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자료 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가 신청 |
| ↓ | |
| 자료제출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자료제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 ↓ | |
|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기초생활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소득출처 파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 항목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 -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 여부 판단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 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의뢰 |
| ↓ | |
| 조사결과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 및 사업팀에 통보 |

7. 자료 제출 요구

- »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정보시스템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가급적 추가 내방 최소화
- »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직권으로 추가 신청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 제출서류 목록 |

| 제출 목적 | 제출 서류 | 비 고 |
|----------------|--|---|
|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 - 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수용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 |
| 소득확인 | - 고용·임금확인서 - 월급명세서 | - 근로소득 파악 |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 - 취업·퇴직사실 확인 |
| | - 소득금액증명원 - 휴·폐업 확인서 | - 사업자 소득 파악 ※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
| | - 어종별 및 양식업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 - 어업 및 양식업 소득 파악 |
| | -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 - 임업소득 파악 |
| | - 임대차 계약서 | - 임대소득 파악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된 경우) |
| | - 사용대차 확인서 | - 사적이전소득 파악 - 주거급여 대상 확인 |
| |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 |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처리 |
| |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소득파악 |
| 재산확인 | - 일용근로소득 사실 확인서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신고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확인조사 지침에 따라 적용 |
| |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 - 임차보증금 파악 |
| 부채 | -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 개인 간 부채 확인 |
| | - 임대차계약서 | - 임대보증금 |
| 근로능력 판정 | -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최근 2개월분) | - 근로능력 판정 |
| 급여계좌 확인 | - 통장사본 | - 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 |

II 보장가구의 확정

1. 목 적

- »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가구 단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신청 시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보장단위가 되는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 보장결정 이후에도 인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를 재확인

2. 사업별 보장단위

- » 선정단위 : 가구
- » 급여단위 : 가구 또는 개인

| 구분 | 1유형군 | | 긴급복지 지원 | 2유형군 | | |
|----|--------|---------------|------------|-------------|-------------|-------------|
| |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 차상위 자산형성 | 차상위 자활근로 | 차상위 장애수당 |
| 조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 지급 | 가구/개인* | 개인 | 가구/개인* | 개인 | 개인 | 개인 |
| 구분 | 3유형군 | | 4유형군 | | | |
|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결식아동급식지원 | 가사간병방문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
| 조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가구 | |
| 지급 | 개인 | 개인 | 개인 | 개인 | 개인 | |

* [생계] 가구 원칙(중증 장애인은 개인)/[의료] 가구(국기초), 개인(행려, 의사상자 등)/[주거,교육] 개인/[긴급복지] 가구 원칙(의료, 교육은 개인)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3. 사업별 가구의 범위

» 급여지원 사업

| 구분 | ① 동일 주민등록 | ② 별도 주민등록 | ③ 외국인 |
|-------------|---|--|---|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 민법상 가족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 미만 자녀(취업 시 제외)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 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19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거나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인 사람 |
| 기초 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 노인과 그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사실혼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사실혼 포함) - 고유식별 번호*가 있는 자 * 고유식별 번호 : 외국인 등록번호, 말소 전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 등 |
| 영유아 보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함 ※ 조부모(가정 해체로 조부모 양육 시)와 아동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 및 형제자매 - 성인(19세 이상)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 여부를 신청자가 선택 하도록 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부 또는 모 |
| 장애 (아동) 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 미만 자녀(취업 시 제외)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 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거나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 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 중인 사람 |

| 구분 | ① 동일 주민등록 | ② 별도 주민등록 | ③ 외국인 |
|-----------------|---|---|--|
| 장애인 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이상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사실혼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사실혼 포함) - 고유식별 번호*가 있는 자 * 고유식별 번호 : 외국인 등록번호, 말소 전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 등 |
| 긴급 복지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비동거 중인 배우자 포함) 「민법」 제77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 등의 사유로 다른 가구 구성원과 분리된 가구의 주(부) 소득자 교육, 양육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주민등록표상 거주확인 불가 하나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 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 |
| 한부모 가족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아동 *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사람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불명등록자인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 가정폭력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또는 퇴소 후 배우자와 별거 중인 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모 또는 부 * 「재외동포법」에 의해 국내거소 신고를 완료한 '외국국적동포' 포함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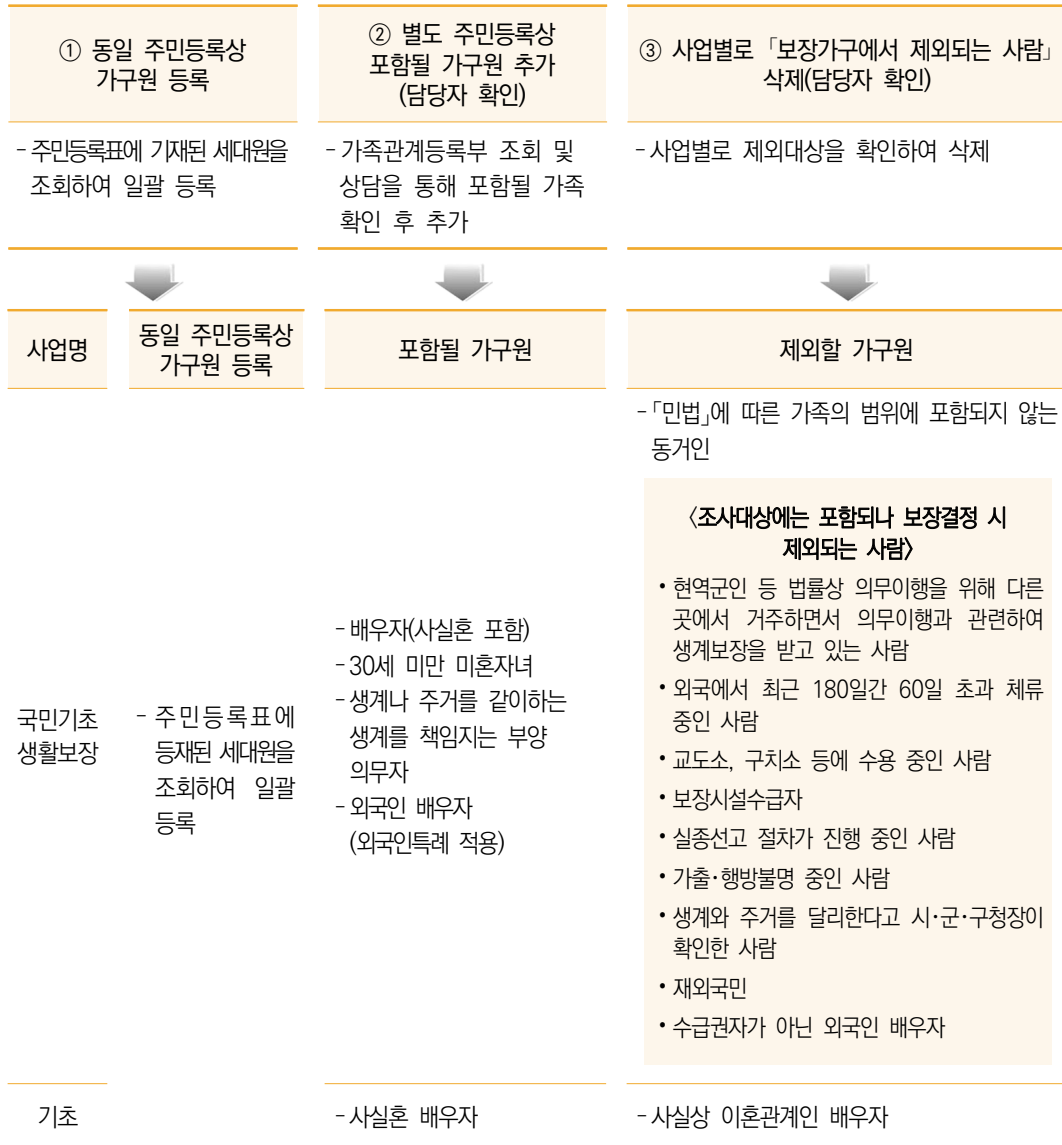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구분 | ① 동일 주민등록 | ② 별도 주민등록 | ③ 외국인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모, 서비스이용 대상자 배우자 미혼자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 가족 :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사실혼 포함) 출생신고 전 출생아(산모신생아) 미혼자녀(단, 자녀가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인 경우에 한함 |
| 지역사회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아동의 경우 형제자매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또는 부모·형제(특히 아동의 경우) 이용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
| 가사간병 방문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간병 서비스이용 대상자 배우자 미혼자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 가족 :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사실혼 포함) 미혼자녀(단, 자녀가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 제외) | |
| 발달재활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 |
| 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 |
| 장애인 활동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1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아동의 경우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 및 배우자(사실혼 포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람 | |

4. 가구 범위 확정 절차

- ①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 ②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구성원 추가
- ③ 사업별로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 가구구성 처리 절차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사업명 |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 포함될 가구원 | 제외할 가구원 |
|----------|-----------------|---|---|
| 연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배우자 -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 <p>〈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행방불명·실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 중인 사람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고유식별번호가 있는 외국인배우자 중 혼인신고 후 2년 경과된 사람 |
| 영유아 보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부모 및 형제자매 - 외국인 부 또는 모 - 조부모(가정해체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및 형제자매외의 세대원 - 20세 이상 성인 형제자매(신청인 선택 시) ※ 재혼가정의 배우자의 자녀(별도 주민 등록 시) - 2촌이내 혈족 외의 동거인 |
| 장애(아동)수당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30세 미만 자녀 - 사실혼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 동거인(「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 <p>〈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 •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
| 장애인 연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혼 배우자 - 외국인 배우자 -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이혼관계인 배우자 - 고유식별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 <p>〈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행방불명·실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감 중인 사람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

| 사업명 |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 포함될 가구원 | 제외할 가구원 |
|----------|-----------------|---|---|
| 긴급복지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사실상 혼인관계의 배우자 - 자녀(생계·주거 의존) - 외국인 배우자(생계·주거 의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병역법」상 병역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의무복무로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단, 사회복지요원이나 상근예비역은 가구원에 포함) -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보장시설 입소자 - 가출행방불명자 - 재외국민 |
| 한부모 가족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외국인 포함) - (외)조모부 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의 자녀외의 세대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18세 이상(취학 시 22세)을 초과하는 혼인 전 자녀 </div> |

※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결정 시 제외되는 자'는 조사 시 가구원으로 등록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보장결정 시 급여·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5. 부양의무자의 범위 및 확정방법

» 부양의무자 범위

| 구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
| 부양의무자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촌의 직계혈족 •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 부양의무자 확정방법

| ① 신청인의 보장가구 구성 | ② 부양의무자 확인(담당자 확인) | ③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 등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가구 구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급권자의 가구범위 확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여 부양의무자 확인 • 가구구성형태(재혼한 부모, 부모가 다른 자녀 등)에 따라서 제적등본 확인 * '08.1.1. 전 가족관계 변동 자료는 제적등본으로 확인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된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 조희를 통해 부양 의무자가구원 등록 |

III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소득평가액'*을 의미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사업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조사대상 항목에서의 '소득') '실제소득'을 의미

2. 실제소득의 범위

»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 사업소득(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
-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보장기관 확인소득

※ 실제 소득에 포함하는 소득종류는 사업별로 다름(“4. 사업별 소득조사항목” 참조)

»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수 없는 금품 → 재산으로 산정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 보육, 교육 기타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기타 유사 금품
 -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양육수당,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적 금품

※ 실제 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의 종류는 사업별로 다름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3. 소득 산정기준

가. 공적자료 반영기준

* 근로상태 변경 없이 공적자료에 대한 소명 시에도 동일 기준 적용

»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¹⁾'을 반영

» 일용근로자소득

-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전월 소득' 반영

나. 변동자 소명 시 처리 기준

»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월 소득액(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급여지급월부터 바로 적용)을 산정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보수만 변동되는 경우는 변경된 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평균소득을 반영

※ 확인조사(정기) 시 일용근로자소득 산정 기준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를 반영할 경우 '최근 6개월간 평균소득' 반영

(상반기 확인조사는 전년도 2·3분기, 하반기 확인조사는 전년도 4분기, 당해연도 1분기 월평균소득 반영)

4. 사업별 소득 조사 항목

» 수급권자가 신청한 사업과 관계없이 공적자료는 모든 소득항목에 대해 조회됨

- 다만 각 사업별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항목은 사업별로 다름

1) 상시근로소득자는 일시적인 월보수 변동으로 인해 급여가 빈번하게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연 평균소득을 반영하고 있으며 실직·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를 바로 반영하여 급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수급권자가 신청한 사업별로 공적자료 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 소득항목 결정

- 한 사업만 신청 시 : 아래 표의 (x) 해당 소득항목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조사할 필요 없음
- 둘 이상의 사업 신청 시 : 각 사업의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을 모두 조사하고, 사업별로 (x)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미적용

예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 ①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의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을 모두 조사
- ②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은 모두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
- ③ 기초연금의 경우 (○)에 해당하는 소득항목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되고, (x) 소득항목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미적용

| 항목별 | 사업명 | 국민기초 | | 기초 연금 | 장애 수당 | 장애인 연금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 자활 지원 | 차상위 자산 형성 | 한부모 가족 |
|--------------|---------|------|----|----------|----------|-----------|-------------------|-----------------|-----------------|-----------|
| | | 생계 | 의료 | | | | | | | |
| 1. 근로소득 | | | | | | | | | | |
| | 상시근로자소득 | ○ | ○ | ○ | ○ | ○ | ○ | ○ | ○ | ○ |
| | 일용근로자소득 | ○ | ○ | x | ○ | x | ○ | ○ | ○ | ○ |
| | 자활근로소득 | ○ | ○ | x | ○ | x | ○ | ○ | ○ | ○ |
| | 공공일자리소득 | ○ | ○ | x | ○ | x | ○ | ○ | ○ | ○ |
| 2. 사업소득 | | | | | | | | | | |
| | 농업소득 | ○ | ○ | ○ | ○ | x | ○ | ○ | ○ | ○ |
| | 임업소득 | ○ | ○ | ○ | ○ | x | ○ | ○ | ○ | ○ |
| | 어업소득 | ○ | ○ | ○ | ○ | x | ○ | ○ | ○ | ○ |
| | 기타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3. 재산소득 | | | | | | | | | | |
| | 임대소득 | ○ | ○ | ○ | ○ | ○ | ○ | ○ | ○ | ○ |
| | 이자소득 | ○ | ○ | ○ | ○ | ○ | ○ | ○ | ○ | ○ |
| | 연금소득 | ○ | ○ | ○ | ○ | ○ | ○ | ○ | ○ | ○ |
| 4. 기타소득 | | | | | | | | | | |
| | 공적이전소득 | ○ | ○ | ○ | ○ | ○ | ○ | ○ | ○ | ○ |
| | 사적이전소득 | ○ | ○ | △* | x | △* | x | x | x | ○ |
| 5. 보장기관 확인소득 | | | | | | | | | | |
| | | ○ | ○ | x | x | x | x | x | x | ○ |

* 4. 기타소득 중 사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기초연금)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장애인연금) 1촌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의 집(6억원 이상)에 무료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5.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가. 근로소득

1) 정 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단, 비과세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더목에 따른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포함

2) 유 형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 :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지키(고용노동부)의 일경험지원 프로그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3) 조사방법

가) 상시근로자 소득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 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 시만 자료 제공

⑤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다만, 사회보험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근로소득자료와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가 동시에 확인된 사람(고용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반영*

* 나. 사업소득 반영기준 참고

-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상시근로 소득만 반영

※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예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만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여 인정

»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 적용대상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예시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관광안내원 등

- (차상위·청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고용·임금 확인서」 제출 시 근로 소득으로 반영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나) 일용 근로자 소득

- ▶ 일용근로소득 자료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한 기관(국세청 또는 고용 노동부)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각각 입수됨(정보시스템에 공적자료 제공 기관 표시)
-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회 결과를 반영하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
 - 다만,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또는 확인서 제출 시 제한적으로 인정
 - ※ 고용주(사업주)가 분기별 또는 월별로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또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노동부)가 공적자료로 조회됨
 - ※ 일용근로소득 정보제공 기관에 따라 소명처리절차가 상이하니 아래 일용근로소득 자료 확인 지침 참고
 - ※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서 동일 근로자의 소득 자료가 다르거나 중복 수신된 경우 원천기관 및 사업주 확인 후 반영
- ▶ 공적자료를 통해서는 근로소득이 파악되지 않거나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 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적용대상 : 공적자료가 없거나 있어도 근로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파출부, 건설 인부 등 단순 일용노동자

참고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한 확인 지침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국세청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주장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신고한 자료라는 것을 설명 후 일용근로소득 사실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를 제출받아 처리하되 아래사항 안내
 - ① 근로하였으나 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사업주로부터 받은 증빙서류 첨부)
 - ② 근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③ 조회내역은 사실이나, 현재 다른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현재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신고서 첨부)
 - 수급자 본인이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받을 것
 - ※ ①, ②의 경우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사업주의 세액공제액이 조정됨을 민원인에 설명할 것
 - ※ ③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이후 타 공적자료에 의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설명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전국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피보험자용)”를 제출받아 처리

다) 자활근로소득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월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월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임금지급 내역을 반영
- 동일 사업장에서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자활근로소득만 반영
 - ※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판단

»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²⁾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고용노동부) 프로그램 및 자활사업 등 참여자로 얻는 수당 중 다음 금액
 -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25만원/월, 장애인 고용전환 촉진수당 30만원/월, 저소득층 장애인 구직촉진수당 50만원/월
 - 성과금 성격의 금액: 취업성공수당(1인당 최대 150만원, 장애인고용전환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자립성과금(분기당 최대 210만원), 자활기업 근로유지 성과금(최대 200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최대 11.6만원/월)
 - ※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직업훈련수당도 최대 11.6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나, 여러 개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라도 수급자 1인당 최대 11.6만원 범위 내 공제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고용노동부)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7만원/월
-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에 참여하는 구직단념청년에게 지급하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50만원/월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 열거되어 있는 사항 이외의 경우는 실비 및 훈련수당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라) 공공일자리 소득

-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³⁾의 임금은 별도로 확인(해당 사업부서 협조요청 등)하여 시스템에 등록 - 정보시스템의 참고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시소득, 자활소득, 일용소득 등의 기반영 소득자료와 비교하여 중복이 아닌 경우 해당 공공일자리 소득 금액을 직권으로 근로소득 반영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나. 사업소득

1) 농업소득

가) 정의

- ▶ 경종업(耕種業)⁴⁾,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⁵⁾,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⁶⁾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 공적자료(농지대장)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 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 정보시스템에 의해 「농산물 표준소득정보에 의한 작물별 단가」가 조회되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 농산물 소득정보 :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농업경영」-(농산물가격정보) 참조

$$\text{농업소득} = \text{경작면적} \times \text{작물별 단가}$$

* 경작면적 : 농지대장을 통해 확인

* 재배작물 확인 : 농지대장 또는 신고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 필요경비) : 농산물 표준소득정보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1항(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4)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5)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생산·판매하는 업

6) 종축(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판매하는 업

- »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 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
-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임업소득

가) 정의

- » 영림업(營林業)·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 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목재산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 신고를 유도
- » 수급(권)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 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3) 어업소득 및 양식업 소득

가) 정의

- » 어업 및 양식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 및 양식업가 어업 및 양식업 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 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나) 조사방법

- » 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업권 및 양식업권과 선박 보유 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 및 양식업 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 신고를 유도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 ▶ 수급(권)자에게 수협의 어가별 및 양식업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및 양식업종별 출하량,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 ▶ 공적자료를 통해서 소득이 과소 파악되는 대상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 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4) 기타 사업소득

가) 정의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나) 조사방법

- ▶ 아래 원칙에 따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일 사업장의 소득인 경우, 두 소득을 더하여 “사업소득”으로 반영
 -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와 사회보험 직장가입자소득 자료의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국세청 소득자료는 반영하지 않고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자료만 “사업소득”으로 반영
 -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자료 중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 소득이 참고자료로 회신된 경우, 상담을 통해 별도 파악된 소득으로 반영처리. 각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업별 처리방법을 우선 적용
 - ※ 단, 참고자료로 회신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반영하는 사회보험 자료의 반영순위는 상시근로소득의 순위로 반영하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②-1 고용보험, ②-2 산재보험 순으로 반영
 - 2개 이상 복수사업장의 사업소득 산정 시 발생한 손실을 반영하여 합산하나,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반영하지 않음
- ▶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 및 수급자 소유 사업장 피고용인수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 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예시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다. 재산소득

1) 임대소득

가) 정의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재산소득(임대소득)을 반영
-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 ※ 대법원, 국토교통부의 전월세거래정보를 정보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있으므로 성실신고하도록 안내 요망

2) 이자소득

가) 정의 : 예금·주식·채권 등 금융재산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금융정보,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등 결과 적용
 - 금융기관 이자소득 회신 대상 사업*은 금융기관 자료반영, 미회신 대상 사업은 국세청 자료 반영
 -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차상위사업(계층확인, 자활, 자산형성지원), 타법의료급여
- ▶ 금융기관 이자소득 회신 대상 사업은 금융기관 자료에서 이자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
 - 타법의료급여 : 월 1만원(연 12만원) 공제
 - 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사업 : 월 2만원(연 24만원) 공제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월 4만원(연 48만원) 공제
 - ※ 이자소득 발생 적금·저축 등의 가입기간을 확인(계약원장사본, 통장사본, 해지영수증 등) 하여 12개월 초과 상품인 경우 초과된 개월수(월단위산정)만큼 추가 공제 가능

| 금융 이자·배당소득 관련 처리 주의사항 |

- 민원인이 계좌 해지를 근거로 이자·배당소득을 소명하는 경우 받아들여야 하는지의 여부
 - ⇒ 이자소득은 금융상품의 만기, 해지를 통해 발생되므로, 민원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원천기관 정보 확인(소명)방법 : 민원인 개인이 각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개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출력)해서 접수, 이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처리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3) 연금소득

가) 정의

-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연금 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 연금 개시 후 고정 지급주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수시·자유출금식 등), 조회기준일 당시 잔액(연금저축 또는 해약환급금(연금보험) 회신(금융재산 산정). 잔액 또는 해약환급금 산출이 곤란한 경우, 개시 시점의 잔액 또는 해약환급금 회신 * 2025.4.1.부터 적용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4)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가) 정의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나) 조사방법

-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가입 여부 확인하여 적용
- ▶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되, 그중 50%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함. 또한, 지급받은 연금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은 부채로만 반영

라. 기타소득

1) 공적이전소득

- 가) 정의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나)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복지급여 연계 자료

-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 ‘아동분야사업안내’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 「입양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타 기관 연계 자료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직촉진수당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 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자녀 수당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상금)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에 관한 자료

제1장
상당·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지자체 지원)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 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 ※ 이·통장 직책수당은 20만원 범위 내 공제
- ※ 공적이전소득 세부항목의 소득산정 여부 및 기준은 사업별로 다름

다)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급여는 자동 반영되며, 조사 과정 중 추가 확인된 급여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소득 산정

참고 사업별 공적이전소득 반영 및 공제현황

| 분 류 | 소분류 | 기초생활보장 등* | | 기초·장애인연금 | |
|-------------------|----------------|-----------|----|----------|----|
| | | 반영 | 공제 | 반영 | 공제 |
| 생활조정수당 | 독립유공자 | ○ | ○ | × | - |
| | 국가유공자 | ○ | ○ | × | - |
| | 보훈대상자 | ○ | ○ | × | - |
|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 | ○ | × | -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 | ○ | × | - |
| 참전명예수당 | | ○ | △ | × | - |
| 기초연금 | | ○ | × | - | - |
| 장애수당 | 장애수당 | ○ | ○ | × | - |
|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 | ○ | × | - |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부가급여 | ○ | ○ | - | - |
| 아동양육비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 ○ | ○ | × | -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 ○ | ○ | × | - |
|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 ○ | ○ | × | - |
|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양육수당 | ○ | ○ | × | - |
| |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 | ○ | × | - |
| 연금급여 | 국민연금급여 | ○ | × | ○ | × |
| | 공무원연금급여 | ○ | × | ○ | × |
| | 군인퇴직연금급여 | ○ | × | ○ | × |
| | 사학퇴직연금급여 | ○ | × | ○ | × |
| | 별정우체국연금급여 | ○ | × | ○ | × |
| 실업급여 | | ○ | × | × | - |

| 분 류 | 소분류 | 기초생활보장 등* | | 기초·장애인연금 | |
|----------------------------|-------------------------|-----------|----|----------|----|
| | | 반영 | 공제 | 반영 | 공제 |
| 산재보험급여 | 휴업급여 | ○ | × | ○ | × |
| | 장해급여 | ○ | × | ○ | × |
| | 유족급여 | ○ | × | ○ | × |
| | 상병보상연금 | ○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 | 진폐보상연금 | ○ | × | ○ | |
| | 진폐유족연금 | ○ | × | ○ | |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 | ○ | △ | × | - |
| 국가유공자 급여 | 보상금 | ○ | × | ○ | △ |
| | 간호수당 | ○ | × | × | - |
| | 무공영예수당 | ○ | × | × | - |
| | 6.25 자녀수당 등 | ○ | × | ○ | △ |
| 독립유공자 보상금 | | ○ | × | ○ | △ |
| 진폐위로금 | | ○ | × | × | - |
| 국제경기대회입상 장애인의 연금 | | ○ | ○ | × | - |
| 대한민국체육공공자 | 유족연금 | ○ | × | × | - |
| | 장애연금 | ○ | × | × | - |
| | 간호수당 | ○ | × | × | - |
|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 | ○ | ○ | × | - |
| 보훈대상자급여 | 간호수당 | ○ | × | × | - |
| | 부양가족수당 | ○ | × | × | - |
| | 중상이부가수당 | ○ | × | × | - |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의료지원금 | | ○ | × | × | - |
| 석면피해자 영양생활수당 | | ○ | × | × | - |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 ○ | × | × | - |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수당 | | ○ | × | × | - |
| 고용노동부 구직촉진수당 | | ○ | - | × | - |
|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에 따른 지원금 | 재활보조금 | ○ | ○ | × | - |
| | 피부양보조금 | ○ | ○ | × | - |
| 지자체 지원 | 이·통장 직책수당 | ○ | △ | × | - |
| |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 ○ | × | × | - |
| | 조례 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 | - | × | - |
| | 조례 비(非)근거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 ○ | × | - | - |
|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 | 경영이양소득 보조금 | ○ | ○ | × | - |
| |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 ○ | ○ | × | - |
| |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 ○ | ○ | × | - |

* 기초생활보장, 타법 의료급여,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청년 자산형성지원 등

제1장
상당·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 사적이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가) 정의 :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나) 조사방법

- ▶ 사적이전소득(지원금) : 부양의무자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금품 등
 - 산정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 참조
- ▶ 사적이전소득(사용대차) :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무료 임차료)
 - 수급권자는 매월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 산정방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 기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사적이전소득, 「기초연금사업안내」 무료임차소득 산정방식 참조

3) 국외기타소득(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준용사업, 장학재단)

- ▶ 개념 :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 등
 - ※ 예시) 외국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
- ▶ 산정방식 : 확인되는 모든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산정

마. 보장기관 확인소득

1) 정 의

- ▶ 확인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 소득)을 사회보장시스템 등의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지출 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및 상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보장기관에서 확인한 소득을 의미함(이를 이하 ‘확인소득’ 또는 ‘추가소득’으로 표기)
 - ※ 당사자가 소득 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7) 정기적 지원이란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중 수급(권)자가 6회 이상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함

»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는 조사단계에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권자로서 조건부수급자 선정 대상이나,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실직, 폐업, 건강상태 일시 악화 등으로 근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조사 당시 수급권자의 소득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신청자에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에게만 산정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나 부양의무자에게는 산정할 수 없음

2)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대상자

» 산정가능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급여종류별 수급자 모두)에게 산정 가능

※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즉시 삭제

(가)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가능 대상자

(1)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취업 및 근로 여부가 불분명하고 공적자료로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 있다고 확인한 수급자
- 특히, 취업알선의 조건을 부여받아 구직등록을 한 취업대상자의 경우 구직 활동 사실만 증명하면 조건이행으로 판정되어 상당수가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여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추가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여부 검토

(2)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조건부과제외자이나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한 수급자

(3)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는 소득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은닉 또는 미신고한 채 소득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조건을 불이행할 수 있으므로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반드시 주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된 사유만으로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할 수 없으며,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음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

(1)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조건부과유예자로 선정된 자

※ 단, 근로무능력자, 조건부과유예자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이나 실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소득을 조사(지출 실태 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활용)하여 소득 산정

(2) 수급자가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하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3) 기타, 보장기관의 장이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기간 (교통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3)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기준

가) 소득관리 방법

» 보장기관이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 지 1년 이내에서만 유효

» 1년이 지난 후 산정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추가 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재확인(증빙 서류 첨부)되지 않으면 기 산정된 소득을 즉시 삭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해당 소득 유효기간 입력란에 1년 단위로 입력 관리

※ 단, 1년 이내라도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거나,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삭제

나) 산정기준 금액

» 1일 82,560원(「최저임금법」에 따른 2026년 최저임금)

※ '26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다) 유형별 산정기준

» 최소 월 15일 이상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소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은닉한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중 조건불이행자로서 주거 및 생활실태 사실조사로 추가 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수급자

▶ 월 15일 미만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로 조건을 이행하고 있으나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수급자
 - ※ 상기 수급자가 소득 추가 신고 시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삭제하고 해당 소득으로 반영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 조건부과유예자이나 주거·생활실태로 보아 추가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 단독가구 수급자가 추가소득 또는 은닉소득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 9일 이상부터 15일 미만까지 산정 가능

4) 유의사항

▶ 근거 없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금지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산정하는 소득이 아니라,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되지 않은 추가소득이나 은닉소득이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상담, 사실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우선적으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의 징구를 통해 실제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제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수급자에게 소명기회 부여절차를 이행한 후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 특히 상담 미실시, 소명기회 미부여 등으로 인해 부당한 소득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 ※ 보장기관이 지출실태조사표나 수급자와의 추가소득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등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산정한 근거를 확보하지 않고 동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등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조건부과를 유예하는 소득기준과의 차액 수준으로 산정하는 행위 금지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 조건부과유예하는 기준과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기준금액은 별개의 사항임
 - ※ 예를 들어,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일용근로로 월평균 80만원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 9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 조건부과유예자에 선정되지 않으므로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 지정 및 조건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월 90만원 초과에 미달하는 금액 10만원 등을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산정하고 조건부과를 유예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얻는 소득'이 아니므로 조건부과 제외 사유를 만족하는 소득의 종류가 될 수 없음. 근로 또는 사업소득과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다른 종류의 실제 소득임

▶▶ 거주지 이전 시 수급자 소명절차 이행 철저

- 수급자가 거주지 이전 시 현 거주지의 보장기관 확인소득 적용일수를 전 거주지보다 더 많이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명절차를 거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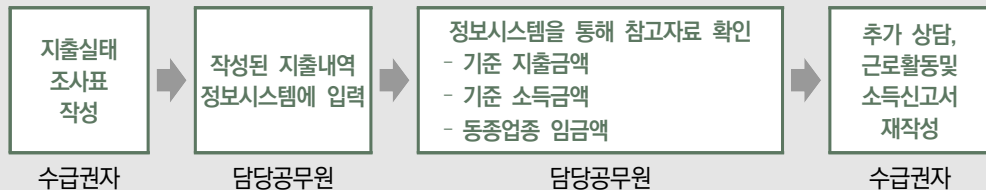
▶▶ 성실 소득신고 유도를 위한 안내 철저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보장 중이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에 이를 고지하여 성실 소득신고 유도

참고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적용 대상 :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파악된 소득 이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소득 :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관광안내원 등
 - 일용직근로자 소득 : 파출부·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소득이 없는 경우
 -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
 -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근로·사업소득 등에 비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 적용 절차



- 재신고된 소득을 그 출처에 따라 근로소득, 농·어·임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으로 부과
- 소득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신고소득이 기준 소득금액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를 검토

* 기준 지출금액 :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소득계층, 거주지역, 가구원수)을 가진 일반적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된 금액으로, 기준 지출금액보다 해당 가구 지출(합계)액이 적은 경우에는 지출실태조사표를 재작성하도록 함

* 기준 소득금액 : 가구원의 인적 구성, 경제적 특성, 지출실태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가구의 소득 수준 금액

* 동종업종 임금금액 : 수급권자와 동종 직업군에 종사하는 자의 평균임금액으로 조사된 소득금액

IV 재산조사

1. 재산의 종류

가. 일반재산

-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제104조제1호, 2호, 3호)
 -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 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은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공동재산에서 발생하는 금융재산은 단체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산정에서 제외함
-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제11호)
- ▶ 「지방세법」에 의한 어업권 및 양식업권(제6조제13호 및 제13조의2호)
- ▶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제14호~제18호)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제88조9호)
-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나. 금융재산

- »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다. 자동차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재산의 조사범위

-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용, 보장시설 수급자, 실종, 가출, 행방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수급(권)자의 재산에 포함

3. 사업별 재산조사 항목

| 항목별 | 사업명 | 국민 기초 | 기초 연금 | 장애 수당 | 장애인 연금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한부모 가족 | 차상위 자산 형성지원 |
|---------|-------------|-------|-------|-------|--------|--------|----------------|--------|-------------|
| 1. 일반재산 | | | | | | | | | |
| | 토지, 건축물, 주택 | ○ | ○ | ○ | ○ | ○ | ○ | ○ | ○ |
| | 임차보증금 | ○ | ○ | ○ | ○ | ○ | ○ | ○ | ○ |
| | 선박·항공기 | ○ | ○ | ○ | ○ | ○ | ○ | ○ | ○ |
| | 동산 | ○ | × | ○ | × | ○ | ○ | ○ | ○ |
| | 임목재산 | ○ | ○ | ○ | ○ | ○ | ○ | ○ | ○ |
| | 회원권 | ○ | ○ | ○ | ○ | ○ | ○ | ○ | ○ |
| | 조합원입주권 | ○ | ○ | ○ | ○ | ○ | ○ | ○ | ○ |
| | 분양권 | ○ | ○ | ○ | ○ | ○ | ○ | ○ | ○ |
|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 | ○ | ○ | ○ | ○ | ○ | ○ | ○ |
| 2. 금융재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 재산 항목 | | 산정 기준 |
|----------|---|----------------------------------|
| 일반 재산 | • 토지, 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 •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보정계수(0.95) |
| | •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 | • 가축·종묘 등의 동산 |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
| | • 입목재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 • 각종 회원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 • 어업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금융재산 |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기관 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 |
| 자동차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

※ 사업별로 보정률, 보정계수 적용 가능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 재산종류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 토 지 | |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당) | 표준지공시지가 × 면적 |
| | |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1㎡당)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 건 축 물 | 주 택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
| | |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
| | 건 물 |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시설물 |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선박/항공기 | |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입목재산 | |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회 원 권 | |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5.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가. 일반재산

1)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중 주거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함에 유의(수급권자가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같이 일반 재산으로 처리)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 정의 : 「건축법」(제2조제2항제1-2호)에 의한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주택 및 그 부속토지
- ▶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 ▶ 정의 : 단독주택·공동주택, 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및 제3자 명의 임대차계약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의 주택조사를 통하여 주택의 사용, 수익 사실관계를 확인한 임차보증금
- ▶ 조사방법 : 임차보증금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
* 주택 임차보증금이므로 보정계수 0.95를 적용

다) 기타 거주를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정의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한 곳만 인정(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
- ▶ 조사방법
 - 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방세법」상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거용 재산 여부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

-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주거용 재산으로 산정
* 주거용 재산 한도액까지만 인정

» 적용한도

- 수급권자는 수급권자가 해당 재산에 거주하는 경우 1호(또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 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 구 분 |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 창원 | 그 외 지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계층확인 • 차상위장애수당 • 차상위자활 • 차상위·청년 자산형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타법의료급여(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 주민) | 17,200 만원 | 15,100 만원 | 14,600 만원 | 11,200 만원 |

*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예시 경기지역에서 2억원 주택 보유 시, 주거용 재산 적용한도인 1억5,100만원까지는 주거용 재산으로 적용하고 4,900만원은 일반재산 환산을 적용, 경기지역의 기본공제액(8,000만원)은 주거용 재산 적용액(1억5,100만원)에서 차감하고 차액 7,100만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을 적용(순서에 유의)

- 부양의무자는 적용한도 없이 상기 주거용 재산 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은 모두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2) 토지, 건축물 및 주택

가) 정의 : 지방세법(제104조제1호~3호)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참고 유형별 시설종류

-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 옥외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 독시설 및 접안시설 : 독, 조선대
- 도관시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 급·배수시설 : 송수관, 옥외 하수도, 지하수, 복개설비
- 에너지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
- 기타시설 : 잔교, 주차시설,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 :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나) 조사방법

» 토지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건축물

- 건물, 시설물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참고 미등기 재산 처리방법

■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 등기가 안 된 경우 처리방법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일차적으로는 「민법」상 지분*대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이므로 신청자(수급자)가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을 원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 산정
 - ※ 미등기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신청자(수급자) 외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예시) 상속재산이 1억, 상속인이 배우자·자녀 3명인 경우 법정지분이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이므로, 상속 재산 1억을 지분합계(4.5)로 나누어 해당 지분만큼 계산
- 기초생활보장
 - 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안 된 재산을 수급(권)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재산세납세자 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반영
 - ※ 미등기 재산을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에 재산세납세자 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권)자의 재산에 반영
 -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 상속된 지분율에 따라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반영
 - 수급(권)자가 「민법」상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분율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음

3) 임차보증금

가) 정의

-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나) 조사방법

-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 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주택임차보증금), 국세청 상가임차보증금이 조회되며 아래 규칙에 따라 반영됨(참고 참조)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참고 임차보증금 시스템 반영 규칙

■ 주택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적용 우선순위 : (1순위) 대법원, (2순위) 국토부, (3순위) LH주택조사 정보
 - 대법원과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임차보증금)가 모두 조회되는 경우, 대법원 자료 우선 적용
 - ※ 대법원 자료는 등기 자료로서, 민사(민법)상 전세권의 인정을 우선 받음을 감안
- 다음의 경우에는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조사 정보를 반영
 - ①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가 없는 경우(미회신) 또는 계약종료일이 지난 경우
 - ⇒ 현재시점에서 계약기간이 유효한 자료만 반영함에 따라 전월세 계약 갱신을 안 할 경우 재산 산정 시 누락되는 문제 방지
 - ② 공공임대의 경우
 - ⇒ 성격상 공공임대는 주택조사 정보가 보다 공신력이 있으며, 전월세거래정보는 수급자의 재산이 과다 산정 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조사 정보 우선 반영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할 경우, 그 금액이 수급자의 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 상가 임차보증금

- 국세청 사업소득 신고관리를 목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상가임차보증금 신고금액 적용
- 금액정보를 재산으로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미적용
 -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된 경우, 주소정보가 없는 경우, 상가임차보증금정보가 중복으로 조회된 경우(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정동 전체주소가 동일한 경우 등)

»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보정계수⁸⁾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text{임차보증금가액} = \text{임차보증금} \times \text{보정계수}(0.95)$$

* 정보시스템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하면, 보정계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 반영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2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8) 보정계수 :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가액산정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5%를 공제함

4) 선박·항공기

가)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 선박(지방세법 제6조제10호) : 기선·범선·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 » 항공기(지방세법 제6조제9호)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나) 조사방법

-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⁹⁾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text{선박·항공기 가격} = \text{시가표준액} \times \text{보정계수}(3.5)$$

※ 보정계수 :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5) 동산

가) 정의

-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 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자동차로 처리
 - * 건설기계 중 12톤 이상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외의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캐리퍼, 기중기,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은 동산으로 처리

나) 조사방법

- » 가축·종묘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 » 건설기계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유 여부 확인하고 건설기계 가액 평가 방식에 따라 재산 반영

9) 보정계수 :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20%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참고 건설기계 시스템 반영 기준

1. 지방세정 자료 활용(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2. 국토부 취득가액 활용(국토부 취득가액에 잔존가치를 적용)
3. 실거래가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적용
 - ※ 현재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정보가 시스템에 입수가 안 됨에 따라 국토부 취득가액 정보에 행정안전부 공시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재산으로 반영
 - 예) 제조연도 2023년인 굴삭기의 취득가액이 27,000,000원인 경우 17,199,000원 반영
 - 취득가액(27,000,000원) X 잔가율(0.637) = 17,199,000원

| 2026년 기준 기계장비 연도별 잔존가치율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 자료 |

| 대 상 | 내용 연수 | 경 과 연 수 | | | | | | | | | | | | | | | | | |
|---|----------|----------|-------|-------|-------|-------|-------|-------|-------|-------|-------|-------|----------|-------|-------|----------|-------|----------|-------|
| | | 1년 미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수목이식기, 트럭지게차 | 10 | 0.832 | 0.708 | 0.637 | 0.545 | 0.439 | 0.349 | 0.290 | 0.231 | 0.184 | 0.146 | 0.100 | 이하 동일 | | | | | | |
|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13 | 0.871 | 0.768 | 0.709 | 0.603 | 0.543 | 0.455 | 0.381 | 0.318 | 0.279 | 0.234 | 0.196 | 0.165 | 0.138 | 0.100 | 이하 동일 | | | |
| 불도저, 기중기,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벙칭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향타및향발기,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15 | 0.885 | 0.793 | 0.736 | 0.644 | 0.603 | 0.511 | 0.439 | 0.376 | 0.323 | 0.290 | 0.249 | 0.214 | 0.183 | 0.158 | 0.135 | 0.100 | 이하 동일 | |
| 모터그레이더, 타워크레인 | 17 | 0.904 | 0.831 | 0.763 | 0.680 | 0.627 | 0.551 | 0.488 | 0.431 | 0.382 | 0.346 | 0.307 | 0.272 | 0.242 | 0.215 | 0.191 | 0.162 | 0.131 | 0.100 |

6) 입목재산

가) 정의

- » 「지방세법」에 의한 입목재산(제6조제11호)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나) 조사방법

- »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회원권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구분 | 내용 |
|-------------|--|
|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나) 조사방법

-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 시설이용 회원권, 요트 등에 대한 소유 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 표준액을 반영

8)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

- »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제1장
상당·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관리처분계획은 시군구에서 인가(승인)하므로,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조회(스캔 등)하여 입증자료로 갈음 가능

- 추가부담금(= 추가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반영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을 반영

9) 분양권

가)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10) 어업권 및 양식업권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6조제13의2호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등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에 대한 권리: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류 등 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외해양식업, 내수면양식업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 표준액을 반영

제1장
상담·신청

나. 금융재산

1) 조사대상

» (금융정보)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금융자산 :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 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제2장
조사

»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

» (보험정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저보험상품)

제3장
보장결정

2)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신용정보, 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3) 금융정보 등 조회

» 조회대상 사업 : 법률상 근거가 있는 다음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제23조의2)
 - ※ 차상위자활, 차상위·청년 자산형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사업 포함
- 주거급여(「주거급여법」 제15조)
- 기초연금(「기초연금법」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
-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제8조제3항, 제12조)
- 긴급복지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의2, 제13조)
- 한부모가족지원(「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제12조의3)
- 장애수당 등(「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제2항, 제50조의3)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지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지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2항, 제60조의6)
-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료급여법 제3조의3」)
- 암환자 의료비지원(「암관리법」 제13조제4항, 제13조의2)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희귀질환관리법」 제13조)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장학재단법」 제50조제2항, 제50조의3)
- 임대주택지원(「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4, 제48조의5)
- 주택금융지원(HUG)(「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 제34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지원(「보훈보상자법」 제14조제2항, 제16조)
-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4)
- 재외국민긴급지원비지원(「영사조력법」 제21조)
-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사회보장급여법」 제8조, 제22조의2)

» 조사대상자

- 보장가구원 및 그 부양의무자(해당 사업 한정)
※ 신청조사 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징구

»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조회기준일 : 조회 요청일로부터 3개월 전 말일)

» 금융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간 평균 잔액, 과거 3개월간의 입금액총액(입금액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조회기준일 당시의 계좌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계좌 : 조회기준일 당시의 계좌 평가금액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 외에 펀드·파생결합증권(ELS) 등 금융상품투자를 통합 운영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 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조회기준일 당시 최종시세가액(종가) 등으로 평가된 금액

- 비상장주식 : 조회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평가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정보가 있으면 그 금액을 회신, 평가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액면가액으로 회신
 - ※ 비상장주식은 금융기관을 통해 일부 입수되며 평가금액이 있는 경우 평가금액을, 없으면 액면가액으로 반영('17년 5월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의 양도/양수정보를 수신)
 - ※ 공적자료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자진신고 안내를 통해 액면가액을 적용하되, 명의신탁, 휴폐업 등의 경우 본인 소명에 따라 조치 / 상장폐지된 경우도 회신됨에 유의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CD(양도성예금증서) 등 : 조회 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 예수금 : 조회기준일 당시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연금 개시 후, 고정 지급주기 존재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월 수령액, 고정 지급주기 미존재 조회기준일 당시 잔액
 - ※ 고정 지급주기 미존재 상품 개정사항은 2025.4.1.부터 적용
 - ※ 개시 후 일시금 지급액은 미회신 /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금은 월평균 지급액으로 환산하여 반영
 - ※ 변액연금 또는 월 지급액 변동 시, 최근 1년 내(1년 미만인 경우 수급기간) 월평균 금액으로 산정하여 회신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만 회신하고,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회신 제외
 - ※ 개시 후 잔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 개시 시점의 잔액 회신
- 금융정보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전년도에 지급된 이자·배당소득
 - ※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증권거래, 비상장주식,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회신

» 신용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조회기준일 당시 대출 잔액
 - ※ 물적금융(리스·할부 등)은 자동차 담보만 회신,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및 카드론은 회신 제외
- 신용카드 미결제금 : 조회기준일 기준 미결제 금액이 3개월 이상 존재하고 그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원금만 회신
 - ※ 미결제 금액 내 할부금액이 포함된 경우, 할부금액 중 미결제 금액만 회신

» 보험정보

- 보험증권 : 조회기준일 당시 해약 시 환급금 및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 (유의사항)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의 경우, 회신 요청대상자가 보험금 수익자인 경우 회신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연금보험 : 조회기준일 당시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연금 개시 후, 고정 지급주기 존재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월 수령액, 고정 지급주기 미존재 조회기준일 당시 해약환급금
 - ※ 고정 지급주기 미존재 상품 개정사항은 2025.4.1.부터 적용
 - ※ 개시 후 일시금 지급액은 미회신/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금은 월평균 지급액으로 환산하여 반영
 - ※ 개시 후 해약환급금 산출이 곤란한 경우, 개시 시점의 해약환급금 회신

» 조회기준 금액 : 계좌당 10만원 이상

-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1천원 이상 조회

»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시·군·구(읍·면·동)에서 정보시스템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 조회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 : 신청 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 확인조사 : 연 1회 이상 조회 실시(정기 확인조사 본정비 시행일 기준 약 2개월 전 실시)

» 유의사항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 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신규신청, 보장추가 시 기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사용 금지(반드시 해당 보장에 대해 신규 작성 제출 요구 및 등록)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고정 지급주기가 존재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 시 법에 의해 처벌됨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정보 제공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용·보험정보 제공 누설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조회결과 적용

»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 (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 (도명계좌)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5)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사망일시금 :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등

»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보유 여부를 우선 확인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에 따라 반영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방법인 타 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 용 도 | 증빙서류 |
|-------------|-------------------------------|
| 일시금의 출금 확인 |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
|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

6) 금융재산 공제기준

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사업 등

» 생활준비금 공제 : 가구당 500만원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 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재산(ISA계좌 포함)

※ 금융재산 조사 시 3년 이상 가입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됨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기간이 3년 또는 5년인 상품으로 장기금융저축공제 대상에 해당

-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 또는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연도부터 적용(수급자 결정 이전 연도로 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음)하며, 개별상품에 관계없이 금융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연간 한도 내(잔여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에서 총액변동분을 반영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자립지원 적립금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과 생계를 같이하는 18세 미만의 자녀

※ 인정사유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새희망새꿈통장 계좌를 만들어 매월 6만원씩 적립하고 있으나 18세 이전에는 인출 불가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의 경비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2,0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제1장
상담·신청

다. 자동차

1)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제2장
조사

2)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를 반영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 지방세정 (3순위) 국토부 취득가액*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최초취득가액×잔가율과 취득가액×잔가율 중 큰 금액

※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과 확인조사 시 최근 자료를 반영(연 3회)하며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 시 갱신(연 1회)

제3장
보장결정

3) 조회결과 적용

»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 명의도용 등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법인등기 하지 않은 단체(대표자의 명의로 차량 등록)의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확인사항 - 단체명이 함께 표기된 자동차등록증, 법인·단체의 지출증빙서류(자동차세납부, 유류비 지출 여부 등) 등

»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

- 다만 동일 가구수급자 내 동일 차량이 2대 이상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1대만 재산으로 반영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동일 차량이 조회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재산으로만 반영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는 미반영)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 전기자동차도 조회된 차량가액(보조금 포함)만큼 재산으로 산정

- 단, 전기자동차를 처분하여 보조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금액만큼 재산에서 제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 자동차(영업용·비영업용/승용·승합) 가액산정은 차령 30년까지 잔가율 적용하여 산정

- 산정방식 : 행정안전부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잔가율을 적용하며, 잔가율 미적용 차령은 차량가액에서 매년 15%씩 차감하여 산정

참고 리스 차량의 반영방법

■ 타인 명의 차량을 리스하는 경우의 재산 반영방법

- 리스 차량 소유 여부 확인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현황' 정보가 있는 대상자는 리스차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
 - '리스대출' 정보가 있는 대상자는 리스차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
 - 기초연금·장애인연금사업 반영방법
 - 리스 자동차로 확인되는 경우 '리스계약서'의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
 - 리스 관련 대출이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도록 확인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사업 등 준용사업
 - 리스 자동차로 확인되는 경우 '리스계약서'의 차량가액을 자동차재산으로 100% 반영하고, 리스 관련 대출을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부채에 추가
 - 소명을 통해 해당 차량을 사용·수익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리스계약서'의 보증금액을 일반재산으로 반영하고, 리스 관련 대출은 부채로 반영하지 않음
- * 예) 수급자가 리스 계약은 했으나, 타인이 월 리스료를 부담하며 차량 운행

4)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에 대한 적용 기준은 각 사업별로 다름(자동차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하는 자동차 등)

참고 각 사업별 자동차 기준

| 기초생활보장 등 자동차 기준 |

| 사업구분 | 차량가액 산정 방식 | | |
|--|--|--|-------------------|
| | 제외 | 일반재산(월 4.17%) 환산율 | 100% 환산율 |
| <p><u>기초생활보장</u>, <u>차상위본인</u> <u>부담경감</u>, <u>차상위장애수당</u>, <u>한부모지원</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장애인* 사용 자동차, 배기량 2,000cc 미만 중형자동차로 가구당 1대 * 상이등급 1~3급 포함 생업용 자동차(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로 가구당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 11인 이상 승합차 - 화물자동차, 12톤 이상 덤프트럭 등 - 특수자동차(견인·구난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사용 자동차¹⁰로 가구별 1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량 2,000cc 미만 중형승용차 -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차 - 10인승 이하 승합차(봉고 등) - 1톤 이하 화물차 -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승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cc 미만 중형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 2,000cc 미만 중형자동차 중 질병·부상에 의한 거동 불편 등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승합·화물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백만원 미만 - 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0cc이하 중형 이륜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폐차 등으로 매매불가 자동차 -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자동차 - 불법명의(대포차 등) 자동차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처분 예정 또는 생업용으로 전환 예정 -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일반 재산으로 인정 | <p>그 외 모든 자동차</p>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사업구분 | 차량가액 산정 방식 | | |
|-------------------------|-------------|---|------------|
| | 제외 | 일반재산(월 4.17%) 환산율 | 100% 환산율 |
|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 | 〈생계·의료와 동일〉 | 〈아래 외 생계·의료와 동일〉 • 승용자동차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백만원 미만 | 그 외 모든 자동차 |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자동차 기준 |

| 사업구분 | 차량가액 산정 방식 | | |
|-------|---|---|--|
| | 제외 | 일반재산(연 4%)환산율 | 100% 환산율 |
| 기초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소유 차량 가구당 1대 * 모든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가 아닌 자동차 고급자동차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령이 10년 이상 - 폐차·매매로 운행 불가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 -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된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10년 미만 |
| 장애인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소유 차량 1대 | 〈기초연금과 동일〉 | 〈기초연금과 동일〉 |

| 전기자동차의 배기량 대체 기준 |

| 차량 종류 | 배기량 |
|----------|-----------|
| 경형 전기자동차 | 1000cc 미만 |
| 소형 전기자동차 | 1600cc 미만 |
| 중형 전기자동차 | 2000cc 미만 |
| 대형 전기자동차 | 2000cc 이상 |

※ 자동차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각 사업지침을 참고

- 10) 장애인사용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또는 보호처 훈령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급 등록장애인 또는 보호처 훈령 제2조제1호 각 호의 대상자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자녀가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에 유의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1) 정의

»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로 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처분(매매, 증여, 금융재산 감소 등)을 확인한 경우

-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으로 구분하여 본인재산으로 산정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일 및 처분(증여)일에 관계없이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단, 2021. 6. 30. 이전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조사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에 포함하지 않음)

**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 = (처분한) 재산 가액 - (타재산 증가분+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정보시스템에 기타 산정되는 재산가액은 타재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감소분을 차감한 금액을 일반재산은 일반재산의 기타(증여),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란에 입력함

» '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범위

- 신규신청자가 보유하고 있으나 보장 신청 이전에 처분한 재산으로 행복이음으로 조회되는 재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후 보장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가 재산을 처분한 후 재신청하였을 경우 기 등록된 재산

- 기존 수급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변경 신고한 재산

※ 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액 평가기준 : 처분 당시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

2) 조사방법

»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새로 취득한 재산의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기준
(기초생활보장) 새로 취득한 재산의 구입에 소요된 금액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확인, 기초·장애인연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소유재산 처분 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에 대하여 상환하였을 시에는 부채상환의 예외로서 해당금액에 대하여 타재산증가분으로 기타증여재산 차감 가능

» 본인소비분 확인

①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식장, 결혼식장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 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 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직계 존비속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 포함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본인 및 그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등 중증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의 의료비 포함

※ 증빙서류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화장장 등 포함) 및 결혼식장 영수증 등(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

②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자녀'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비로 사용한 경우 본인소비분으로 차감(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③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 (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양육비 포함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④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⑤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⑥ 재산 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취득에 따른 세금 납부금(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가능하나, 취득한 재산에 대한 확인 및 반영 철저

»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처분(증여, 매각, 감소 등)한 시점부터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 적용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참고 **사업별 자연적 소비금액**

| 사 업 | 자연적 소비금액 |
|------------------------------|--|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사업 등 | -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 ※ (기초의료급여) 부양능력판정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매월 차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단독가구는 3인 가구, 부부가구는 4인 가구 기준 * ('26년 기준) 단독가구 2,679,518원, 부부가구 3,247,369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2015년 12월 이전 기간의 적용은 '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120%'씩 차감 |

참고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상 소득·재산 항목별 정의**

| 소득·재산 항목 | 정 의 |
|----------|---|
| 1. 소득 | |
| 근로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 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소득·재산 항목 | 정 의 |
|----------|---|
| | <p>「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을 제외한다.</p> <p>-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가.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p> <p>-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p> |
| 사업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득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 소득·재산 항목 | 정 의 |
|---------------|--|
| 임대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 이자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다.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마.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카.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 연금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3호에 따른 소득 및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한다) |
| 주택연금, 농지연금 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공적이전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

제1장
상당·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소득·재산 항목 | 정 의 |
|--------------|--|
| 사적이전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
| 보장기관 확인 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및 근로 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보장기관 확인소득부과 제외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 등으로 근로활동이 곤란하거나 환경 변화를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건부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 2. 재산 | |
| 토지, 건축물,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나. 건축물 :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을 제외한다. |
| 임차보증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
| 동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
| 임목재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임목 :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
| 항공기, 선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및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항공기 :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滑空機)·회전익(回轉翼)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선박 :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선, 범선, 부선(解船)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한다.) |
| 회원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 규정에 의한 회원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한다. 라.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마.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 소득·재산 항목 | 정 의 |
|------------|--|
| 조합원입주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분양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6조제13호2호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가.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나. 양식업권, 「양식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한 양식업권을 말한다 |
| 금융재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보험업법」 제4조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을 포함한다)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再保險)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
| 자동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가.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V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 구 분 | 조사항목 | 공적자료 | 원천기관 변경시기 |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 | |
|-----|--------------|---|---|--|--|----------------------|------|
| 소득 | 근로 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4월 | 전월 보수월액 | 매월 | | |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 7월 | 전월 표준보수월액 | 매월 | | |
| | |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 4월 | 전월 보수월액 | 매월 | | |
| | |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 확인조사 시에만 제공 | 매월(수시) | 전월 보수월액 | 연 2회 | | |
| |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 11월 |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 연 2회 | | |
| | | 일용 근로소득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 매분기 매분기 | 신청조사 시 : 최근 3개월 자료 확인조사 시 : 최근 6개월 자료 | 연 2회 매분기 | |
| | 자활 근로소득 | 자활근로소득 | 매월 | 자활사업기관 및 시군구에서 등록한 임금지급 내역 | 매월 | | |
| | 공공일자리 소득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직접 일자리사업 근로소득 (고용노동부) | 수시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근로내역정보 (노인, 장애인 일자리 포함) | 연 2회 | | |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11월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 2회 | |
| | | 어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11월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 2회 | |
| | | 임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11월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 2회 | |
| | | 기타사업 소득 (자영업자)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소유사업장 직원수 | 11월 수시 수시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사업자등록자료 소유사업장의 직원수 | 연 2회 연 2회 연 1회 | |
|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11월 |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 연 2회 |
| | | | 이자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 11월 | 이자소득/12 | 연 2회 |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4월 | (이자소득-보장별공제금)/12 | 연 2회 | |
| | 연금(개인)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수시 | 연금(저축, 보험 등) 개시 후 연금의 월 수령액 | 연 2회 | |

| 구분 | 조사항목 | 공적자료 | 원천기관 변경시기 |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 |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국민연금급여 | 1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
| | | 사학퇴직연금급여 | 1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
|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1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
| | | 국방부퇴직연금급여 | 1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
| | | 별정우체국연금 | 1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
| | |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비정기 |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 매월 | |
| |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 비정기 |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 매월 | |
| | |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1월 |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 매월 | |
| | | * 농지연금 | 매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
| | |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 | 12월 | 직불금/12 | 연 1회 | |
| | | 구직촉진수당 | 매월 |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 매월 | |
| | | 재산 | 토지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세 : 3월, 11월 취득세 : 수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
| * 국토부 지적대장 | 수시 | | |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토지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 매월 | |
| 일반 재산 |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세 : 3월, 11월 취득세 : 수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 연 2회 (취득세 : 매월) |
| | | | 국토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 수시 |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건축물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 매주 |
| 선박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세 : 3월, 11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 연 2회 (취득세 : 매월) |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구 분 | 조사항목 | 공적자료 | 원천기관 변경시기 |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 |
|-----|------------|----------------|-------------------------------------|--|---|------|
| | | | • 취득세 : 수시 | (취득가액) | | |
| | 항공기 |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 재산세 : 3월, 11월 • 취득세 : 수시 | • 재산세 : 시가표준액 •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 연 2회 (취득세 : 매월) | |
|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지방세정(취득세) | 수시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 매월 | |
| | 입목재산 | 지방세정(취득세) | 수시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 매월 | |
| | 회원권 | 지방세정(취득세) | 수시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 매월 | |
| | 임차보증금 | 전월세 임차보증금(국토부) | 수시 | 세입자 임차보증금액 | 매월 | |
| | 분양권 | 분양권(국토부) | 수시 | 분양권 보유정보 | 매월 | |
| | 조합원 입주권 | 조합원입주권(국토부) | 수시 | 조합원입주권 보유정보 | 매월 | |
| | 건설기계 | 건설기계(국토부) | 수시 | 건설기계 보유정보 | 연 2회 | |
| | 금융 재산 | 요구불예금 | 금융정보 조회 결과 | 수시 | 과거 3개월간의 평균금액 | 연 2회 |
| | | 저축성예금 | 금융정보 조회 결과 | 수시 | 계좌잔액 | 연 2회 |
| | | 증권거래 | 금융정보 조회 결과 | 수시 | (1) 주식, 선물옵션, 펀드,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 신탁 등 : 최종시세가액 (2) 채권, 어음, 수표, CD (양도성 예금증서), 신주 인수권 증서 등 : 액면가액 (3) 예수금 : 잔액 | 연 2회 |
| | | 보험증권 | 금융정보 조회 결과 | 수시 | (1) 보험 해약 시 환급금 (계약자 기준) (2) 개시 전 연금보험, 연금 저축 해약 시 환급금 | 연 2회 |
| | | | | | | |

| 구분 | 조사항목 | 공적자료 | 원천기관 변경시기 |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
|----|---------------------|------------|--------------|---------------------------------|----------------------|
| |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금융정보 조회 결과 | 수시 | 1년 이내 지급된 사고 보험금 지급액(수익자 기준) | 연 2회 |
| | 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 수시 |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 연 2회 |
| | | 보험개발원 | 분기 | 차량기준가액 | 매분기 |
|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1월 | 시가표준액 | 매년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 결과 | 수시 | 대출 잔액 | 연 2회 |
| | 신용카드 연체금 | 금융정보 조회 결과 | 수시 | 신용카드 미결제액 | 연 2회 |
| | 임대보증금 | 국토부 임대보증금 | 수시 | 주택소유자 임대보증금액 | 매월 |

- * 굵은 글씨는 자동반영(일부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며 그 외는 참고자료로 제공
- * 국토부 선박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어선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확인 가능
- * 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은 전년도 자료를 소득으로 우선 반영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를 반영함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공적자료) 입수주기

| 구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사업주 신고 | 4월말 | 7월말 | 10월말 | 다음 연도 1월말 |
| 신청조사 입수 | 7월 | 10월 | 다음 연도 1월 | 다음 연도 4월 |
| 확인조사 입수 | 같은 연도 하반기 | 같은 연도 하반기 | 다음 연도 상반기 | 다음 연도 상반기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VI 소득인정액 산정

1.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구 분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환산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청년 자산형성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 월 1.04% 일반재산 : 월 4.17% 금융재산 : 월 6.26%* 자동차 : 월 100%*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 월 2.08%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 | $\{0.7 \times (\text{근로소득} - 116\text{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 $\{[(\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금융재산} - 2,000\text{만원}) - \text{부채}] \times \text{연 소득환산율} / 12\text{월}\} + P^*$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연 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연금 | $\{0.7 \times (\text{근로소득} - 95\text{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 | |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지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4.17%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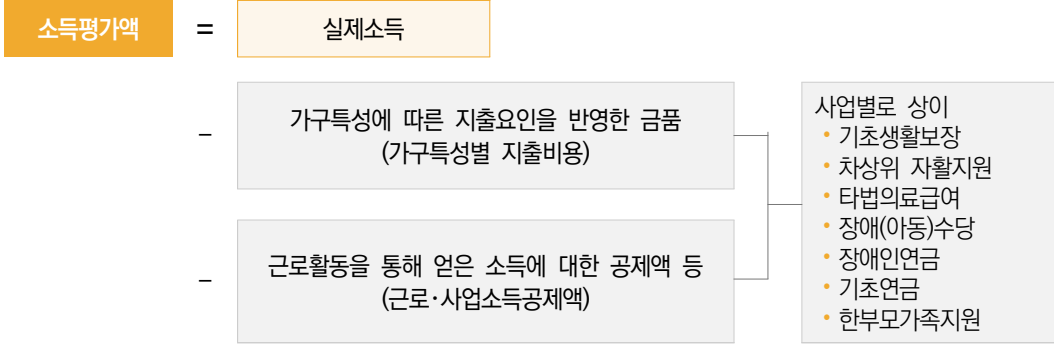
※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의료급여)

• (소득평가액) 상시·일용근로 소득 52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0.7 \times (\text{근로소득} - 52\text{만원})\} + \text{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재산액 등 재산의 소득환산 기초연금 준용(고급자동차 기준 미적용)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부양의무자는 재산 미적용

2. 소득평가액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사업구분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자활지원 •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자산형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타법의료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한 장애수당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의한 기초급여액 및 같은법 제7조에 의한 부가급여액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같은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 아동 양육비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축진수당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부가급여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조사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¹⁾의 월평균 금액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보조금 - 지원대상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인 수급자 |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사업구분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¹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익월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기력 성과포상금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0조에 따른 월정금 • 「입양특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위로지원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상·전상·재해부상 군경 본인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연금급여 • 농어업인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농어업인 가구 특례’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 미만 소유한 자(임차한 자 포함)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24조에 따라 받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7조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 농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이 근로·사업소득에서 본인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해당 지출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월 반영 소득에 대하여 ‘해당 월이 속한 학기(또는 직전학기~전전학기까지 인정 가능)에 해당하는 등록금 중 실제 지출한 금액 ÷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복지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로서 평균 1개월간 의료비, 약제비, 간병비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대학생의 등록금(입학금·수업료), 기성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납부한 입학금·수업료 등 월평균 지출액 •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로 주거를 임차한 경우 매월 지출되는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료 차감한도액: 가구구성원수별 긴급주거지원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또는 금융부채로 인하여 매월 지출되고 있는 원금 및 이자비용 |

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 내용

| 사업구분 | 근로사업소득 공제 내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 •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타법의료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휴학·졸업유예 시 최대 각 1년까지 근로소득공제 적용,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 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도 근로소득공제 적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소득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노인 부부로서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 중에 있는 경우도 근로소득에서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95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전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1년, 하역종사자) 미만자의 소득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 11)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함에 유의
- 12) 국민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율 및 시스템 자동공제 현황 |

| 사업구분 | 근로사업소득 공제 내용 | 공제액 및 공제율 | 시스템 자동공제 여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 •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지원 • 차상위(청년) 자산형성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문화재)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50% | X |
| | 34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 및 사업소득 |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O |
| | 대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 | X |
| |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근로 및 사업소득 | | O |
| |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 |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O |
| | 장애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 | | O |
| | 특례보호기간 중인 북한이탈주민 | | O |
|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30% | X |
|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대상 아님에 유의) | | |
| | 행정인턴에 참가하여 얻는 소득 | | |
| | 35세 이상~64세 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 | 30% | O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법의료급여 (국가유공자) | 상시, 일용 소득 | 52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O |
| |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 | 대상유형별 공제 적용 | X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 상시소득 전체 | 116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O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연금 | 상시소득 전체 | 95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 O |

* 한부모가족지원 미적용

** 기초생활보장 중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타법의료급여 미적용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값은 “0원”으로 처리

제1장
상담·신청

가. 기본재산액

» 개념 :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적용금액 :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

- 4급지 체계

|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창원 | 기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 자활지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13,500만원 | | | 8,500만원 |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 3급지 체계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 1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제5장
사후관리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 농어촌 : 도의 “군”

» 기본재산액 공제방식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음

※ 기초연금은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서만 공제함에 유의, 장애인연금은 자동차 및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서만 공제함에 유의

제6장
서식

나. 부채

1) 정의

»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2) 부채 인정범위 및 조사방법

| 항목별 | 업명 | 기초생활 보장 | 차상위지원 | | | |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
|--------------------------------|----|------------|------------|------|----|----------|-------------------|
| | | | 본인부담 경감 | 장애수당 | 자활 | 계층 확인 | |
| 금융기관 대출금 | | ○ | ○ | ○ | ○ | ○ | ○ |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 ○ | ○ | ○ | ○ | ○ | ○ |
| 임대보증금 | | ○ | ○ | ○ | ○ | ○ | ○ |
| 개인 간 부채 (법원 판결문·화해조정 확인 사채) | | ○ | ○ | ○ | ○ | ○ | ○ |
| 개인 간 부채 (공정증서 확인 사채) | | × | × | × | × | × | × |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 | ○ | ○ | ○ | ○ | ○ | ○ |
| 신용카드 미결제금 | | ○ | ○ | ○ | ○ | ○ | ○ |

» 금융기관 대출금

- 범위

- 금융회사 등에는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도 포함

참고 금융회사 등의 범위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 대부(중개업체)
※ 제도권금융회사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대부(중개)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http://www.clfa.or.kr>/등록업체조회)에서 조회

- 조사방법

-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확인
- 대부(중개)업체의 대출정보는 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대출금 증빙서류(부채증명서 등)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

☞ 참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 제공방법
 - 금융정보 등 조회 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대출내역 확인이 가능
- 제공내역
 - 금융기관 대출금 : 담보대출(부동산 등), 신용대출, 약관대출(보험) 등 개인이 받은 '개인대출'만 인정되며, 기업대출은 인정되지 않음
 - * 물적금융(리스, 할부 등)은 자동차 담보만 회신,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연금 누적액을 대출로 회신
 - 신용카드 미결제금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미결제액
 - ※ 일시불 또는 할부 사용액의 결제 잔액은 해당되지 않음

☞ 금융기관 외 대출금

- 범위
 - 공공기관 대출금(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부,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조사방법
 - 해당 기관에서 확인·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출금 확인

☞ 개인 간 부채(사채)

- 범위
 - 판결문(결정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조사방법
 -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조정조서를 제출받아 대출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자납입 증명(2회 이상)을 요구
 - ※ 공정증서에 의해서 공증된 사채 불인정(긴급복지지원은 인정)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현재 보유상태(금융재산, 또는 기지출 여부)를 파악
-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국토부의 전월세거래정보, LH 주택조사 자료가 조회 되는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타 재산 증가분(금융재산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반영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임대보증금은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 전세권 설정 등기된 금액, 전월세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중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 인정
- 산정방식 : 「기초연금사업안내」, 「장애인연금사업안내」의 임대보증금 산정방식 참조

3) 부채차감 순서

-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100%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업에서는 부채차감 순서가 없으며, 재산의 총액에서 차감

4)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
-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5) 부채로 인정 시 유의사항

-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사업명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 동 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 • 장애(아동)수당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한부모가족지원 •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 차상위계층 확인 • 차상위 자활지원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 월 4.17% * 주거용 재산 월 1.04% | 월 6.26%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월 4.17% | 월 100% |

| 사업명 | 재산의 종류 | | |
|---|-----------------------------|---------|--|
|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연 4% | 연 4% | 연 4% *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 적용 |
| 타법의료급여(국가유공자) | 연 4% | 연 4% | 연 4% |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 월 2.08% * 주거용 재산 월 1.04% | 월 2.08% | 월 2.08% |

제1장
상담·신청제2장
조사제3장
보장결정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제5장
사후관리제6장
서식

VII 부양의무자 조사

1. 대상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생계급여 : 필수 지출비용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미적용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경과 |

- ('17년 11월,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18년 10월,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19년 1월,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생계·의료)
 -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된 경우 적용
 - ※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생계·의료)
- ('22년 1월,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의료)
- ('24년 1월, 5단계)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의료)

2. 조사의 내용 및 방법

※ 부양 의무자 조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안내」 참조

가. 부양의무자 유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을 확인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조사*) - 의료급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소득만 조사

»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조사원칙 및 조사방법 적용

-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조사하지 않음

» 기본재산액

| 지역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기타 |
|-----|----------|----------|----------|----------|
| 금 액 | 36,400만원 | 29,400만원 | 28,300만원 | 19,500만원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은 월 1.04%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월 2.08% 환산율 적용

다. 부양여부 및 불능·거부·기피 확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

» 군복무, 해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확인

- 군복무, 해외이주, 교정시설 입소 등은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 처리

VIII 연령산정 방식

» 사업별 연령산정 방식 : 신청자(수급자) 또는 가구 구성원의 연령을 확인하고자 할 때 산정하는 방식

-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

- 단, 영유아보육,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사업은 현행대로 ‘출생년’ 기준으로 산정

IX 4유형군(바우처형사업군) 소득재산조사 방안

1. 소득재산 조사항목

- ▶ 소득·재산·공제 총 38개(수기 2개), 금융재산·부채 미포함
 - 공적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30여 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되, 금융재산·부채는 조사기간,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제외
 - 수기항목(2개)의 경우, 보유빈도는 낮으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전산으로 취득여부 확인 후 반영이 가능한 분양권, 회원권 등 포함

| 4유형 소득재산조사 세부내역 |

| 대 | 중(소) | 세목 | 대 | 중(소) | 세목 | | |
|------------|------------------|---------------|---------------|------------------|----------------------|------------------|--------|
| 소득 (14)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재산 (21) | 일반재산(토지) | 토지(논) | | |
| | | 사업소득 | | | 기타사업소득 | 토지(대지) | |
| | | | | | 재산소득 (임대소득) | 임대소득 | 토지(임야) |
| | | 이자소득(국세청) | | | | 토지(기타) | |
|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 |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 |
| | | 사학퇴직연금급여 | |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 상가보증금 | | |
|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 | 선박 | | |
| | | 군인퇴직연금급여 | | 항공기 | | | |
| | | 별정우체국연금 | | 일반재산 (임주권) | 조합원입주권 ^{수기} | | |
| | | 실업급여 | | 일반재산 (분양권) | 분양권 ^{수기} | | |
| | |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 | 일반재산 (회원권) | 골프회원권 | | |
| | |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 | | 콘도미니엄회원권 | | |
| | |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 | | 승마회원권 | | |
| | |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 |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 |
| | 일반재산 (건축물) | 건축물(건물) | | 공제 (3) |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요트회원권 | |
| | | 건축물(시설물) | | | | 자동차 | 자동차 |
| | | 건축물(기타) | | | |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 |
| 일반재산(주택) | | 주택 |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일반재산(토지) | 토지(밭) | | 34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 |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 조사방식

» 소득인정액 방식과 소득재산 분리평가(cut-off) 중 선택

3. 소득인정액* 산식

* 소득인정액 방식에 적용(소득재산 분리평가(cut-off) 시 미적용)

»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1~3유형 중 자산조사 엄격성이 가장 낮은 3유형(기초연금형 사업군)을 기초로 적용

- (소득환산율 및 근로소득공제) 건보료 활용 시와 달리 직장가입자의 재산 고려에 따른 수급자격 변동충격 완화를 위해, 가장 낮은 수준의 소득환산율(연 4%) 및 근로소득 정률 공제(30%) 적용
- (기본재산 공제) 4유형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타 제도와 동일하게 지역별 공제 적용
- (자동차 소득환산율) 바우처형 사업의 기초연금보다 대상 및 선정기준 범위가 넓음을 감안, 기초연금의 고급자동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재산과 같은 연 4% 소득환산율 적용

* 4천만원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 소득환산율 적용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0.7(근로소득공제 30%*) + 기타소득
* △장애인, △29세 이하자, △65세 이상 어르신은 근로 및 사업소득은 50% 공제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구분기준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4. 가구 구성

» 주민등록에 기재된 자료 서비스이용자 및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미성년 아동을 형제자매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예외 적용

* 타 주소지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포함(미성년자녀가 서비스이용자인 경우 부모 및 미성년 포함)

5. 전달체계

» 사업별 현행 전달체계 유지

참고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 유형 구분

1) 사업의 정의

• (유형군 분류) 주요 복지사업을 사업목적, 대상자 범위, 급여성격을 고려하여 4가지 유형군으로 분류

| 구분 | 대상사업 |
|---------------------|--|
| 1유형군 (기초생활보장사업군) |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보충급여로 엄격한 자산의 조사가 필요한 사업 유형 |
| 2유형군 (차상위사업군) | 차상위 계층의 지원을 포함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 유형 |
| 3유형군 (기초연금형사업군) |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준선이 높아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등 보편적인 지원에 가까운 사업 유형 |
| 4유형군 (바우처형사업군) | 단기간 또는 일회성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간소화된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유형 |

2) 유형군별 대상사업목록

| 구분 | 사업목록 |
|---------------------|--|
| 1유형군 (기초생활보장사업군) |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
| 2유형군 (차상위사업군) |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사업, 차상위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장애(아동)수당 |
| 3유형군 (기초연금형사업군)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 4유형군 (바우처형사업군)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치매검진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등 |

* 대상자 선정방식 상이

3) 소득재산조사항목

• 제1유형군

| 구분 | 조사 항목수 | 주요조사항목 |
|----|--------|---|
| 소득 | 78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
| 재산 | 47 | 건축물/주택/토지, 동산, 회원권, 금융재산, 자동차 |
| 공제 | 47 |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의료비,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재산 공제 |
| 부채 | 9 |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공공기관대출금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제2유형군

| 구분 | 조사 항목수 | 주요조사항목 |
|----|--------|--|
| 소득 | 39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
| 재산 | 42 | 건축물/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자동차 |
| 공제 | 28 |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의료비,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 소득, 금융재산 공제 |
| 부채 | 8 |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공공기관대출금 |

• 제3유형군

| 구분 | 조사 항목수 | 주요조사항목 |
|----|--------|--|
| 소득 | 23 |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
| 재산 | 40 | 건축물/주택/토지, 회원권, 금융재산, 자동차 |
| 공제 | 7 | 이자소득공제, 임대소득경비율공제, 상시근로소득공제, 일반재산자연감소분, 금융재산자연감소분, 한센인피해자국가보상금 |
| 부채 | 8 |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 공공기관대출금 |

• 제4유형군

| 구분 | 조사 항목수 | 주요조사항목 |
|----|--------|---|
| 소득 | 14 | 상시근로자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
| 재산 | 21 |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자동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회원권 |
| 공제 | 3 |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29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

4) 유형별 소득재산조사 항목

• 소득

| 종 | 구분 | | 1유형군(78) | | | | | 2유형군 (39) | 3유형군 (23) | 4유형군 (14) | |
|----------|-----------------------|---------------|--------------|----|----|----|-----|--------------|--------------|--------------|---|
| | 소 | 세목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본경 | | | | |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 ○ | ○ | ○ | ○ | ○ | ○ | ○ | ○ | |
| | 일용근로자소득 | 일용근로자소득 | ○ | ○ | ○ | ○ | ○ | ○ | × | × | |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소득 | ○ | ○ | ○ | ○ | ○ | ○ | × | × | |
| |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참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참여소득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소득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소득 | ○ | ○ | ○ | ○ | ○ | ○ | × | × |
| | | 공공근로소득 | 공공근로소득 | ○ | ○ | ○ | ○ | ○ | ○ | × | ×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농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 축산소득 | ○ | ○ | ○ | ○ | ○ | ○ | | × | |
| | 임업소득 | 임업소득 | ○ | ○ | ○ | ○ | ○ | | | × | |
| | 어업소득 | 어업소득 | ○ | ○ | ○ | ○ | ○ | | | × | |
| | 기타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임대소득 | ○ | ○ | ○ | ○ | ○ | ○ | ○ | ○ | |
| | 이자소득 | 이자소득(국세청) | × | × | × | × | ○ | × | × | ○ | |
| | | 이자소득(금융기관) | ○ | ○ | ○ | ○ | × | ○ | ○ | × | |
| | | 배당소득(금융기관) | ○ | ○ | ○ | ○ | × | ○ | ○ | × | |
| | 연금소득 | 연금(개인)소득 | ○ | ○ | ○ | ○ | ○ | ○ | ○ | × | |
| | | 주택연금 | ○ | ○ | ○ | ○ | ○ | ○ | × | × | |
| 농지연금 | | ○ | ○ | ○ | ○ | ○ | ○ | × | × | | |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 | ○ | ○ | ○ | × | × | × | × | | |
| | 무료임차료 (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 | ○ | ○ | ○ | ○ | × | × | × | × | | |
| | 외국인 배우자 소득 | ○ | ○ | ○ | ○ | × | × | × | × | | |
| | 무료임차료 (장애인연금·기초연금) | × | × | × | × | × | × | ○ | × | |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가유공자급여(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급여(간호수당)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급여 (무공영예수당) |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급여(기타) | ○ | ○ | ○ | ○ | ○ | ○ | ○ | × | | |
| | 독립유공자급여(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참전명예수당 | ○ | ○ | ○ | ○ | ○ | × | × | × | | |
|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급여 | ○ | ○ | ○ | ○ | ○ | ○ | ○ | ○ | |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종 | 소 | 구분 세목 | 1유형군(78) | | | | | 2유형군 | 3유형군 | 4유형군 |
|---|---|-----------------------------------|----------|----|----|----|-----|------|------|------|
| |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본경 | (39) | (23) | (14) |
| | | 사학퇴직연금급여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 ○ | ○ | ○ | ○ | ○ | ○ | ○ | ○ |
| | | 군인퇴직연금급여 | ○ | ○ | ○ | ○ | ○ | ○ | ○ | ○ |
| | | 별정우체국연금 | ○ | ○ | ○ | ○ | ○ | ○ | ○ | ○ |
| | | 실업급여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 | ○ | ○ | ○ | ○ | ○ | × | × | × |
| | | 장애수당 | ○ | ○ | ○ | ○ | ○ | × | × | × |
| | | 장애아동수당 | ○ | ○ | ○ | ○ | ○ | × | × | × |
| | | 소년소녀가정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아동양육비(한부모) | ○ | ○ | ○ | ○ | ○ | × | × | × |
| | | 입양아동양육수당 | ○ | ○ | ○ | ○ | ○ | × | × | × |
| | |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지원(아·통장직책수당)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지원 (출산·고령화관련수당)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지원(교통수당)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지원 (보훈대상자추가지원)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지원 (복지대상자추가지원) | ○ | ○ | ○ | ○ | ○ | × | × | × |
| | | 직업훈련수당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 (피부양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연금 | ○ | ○ | ○ | ○ | ○ | × | × | × |
| | | 육아휴직수당 | ○ | ○ | ○ | ○ | ○ | ○ | × | × |
| | | 한센인피해자생활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진폐위로금 | ○ | ○ | ○ | ○ | ○ | × | × | × |

| 종 | 소 | 구분 세목 | 1유형군(78) | | | | | 2유형군 | 3유형군 | 4유형군 |
|----------------------|--------------|-------------------------|----------|----|----|----|-----|------|------|------|
| |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본경 | (39) | (23) | (14) |
| | | 추가아동양육비(한부모) | ○ | ○ | ○ | ○ | ○ | × | × | × |
| | | 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 | ○ | ○ | ○ | ○ | ○ | × | × | × |
| |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급여 (부양가족수당)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급여 (중상이부가수당) | ○ | ○ | ○ | ○ | ○ | × | × | × |
| | | 대일항쟁기피해자(희생자) 의료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석면피해자요양생활수당 | ○ | ○ | ○ | ○ | ○ | × | × | × |
| | | 기초연금 | ○ | ○ | ○ | ○ | ○ | ○ | × | × |
| | | 경영이양 소득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진폐보상연금 | ○ | ○ | ○ | ○ | ○ | ○ | ○ | × |
| | | 진폐유족연금 | ○ | ○ | ○ | ○ | ○ | ○ | ○ | × |
| | | 체육유공자연금수당 | ○ | ○ | ○ | ○ | ○ | × | × | × |
| | | 구직촉진수당 | × | ○ | ○ | ○ | ○ | × | × | × |
| | |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보훈보상대상자급여(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급여(부가수당) | ○ | ○ | ○ | ○ | ○ | ○ | △ | × |
| | | 독립유공자급여(부가수당) | ○ | ○ | ○ | ○ | ○ | ○ | △ | × |
| | | 보훈보상대상자급여 (부가수당) | ○ | ○ | ○ | ○ | ○ | ○ | △ | × |
| | | 공적이전(기타지원) | ○ | ○ | ○ | ○ | ○ | × | × | × |
| | 국외기타소득 | 국외기타소득 | ○ | ○ | ○ | ○ | ○ | × | × | × |
| 보장 기관 확인 소득 | 보장기관 확인소득 | 보장기관 확인소득 | ○ | ○ | ○ | ○ | × | × | × | ×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재산

| 중 | 소 | 구분 세목 | 1유형군(47) | | | | | 2유형군 (42) | 3유형군 (40) | 4유형군 (21) |
|----------|--------------|-------------|----------|----|----|----|-----|--------------|--------------|--------------|
| |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본경 | | | |
| 일반 재산 | 건축물 | 건축물(건물)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시설물)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기타) | ○ | ○ | ○ | ○ | ○ | ○ | ○ | ○ |
| | 주택 | 주택 | ○ | ○ | ○ | ○ | ○ | ○ | ○ | ○ |
| | 토지 | 토지(밭) | ○ | ○ | ○ | ○ | ○ | ○ | ○ | ○ |
| | | 토지(논) | ○ | ○ | ○ | ○ | ○ | ○ | ○ | ○ |
| | | 토지(대지) | ○ | ○ | ○ | ○ | ○ | ○ | ○ | ○ |
| | | 토지(임야) | ○ | ○ | ○ | ○ | ○ | ○ | ○ | ○ |
| | | 토지(기타) | ○ | ○ | ○ | ○ | ○ | ○ | ○ | ○ |
| |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 ○ | ○ | ○ | ○ | ○ | ○ | ○ | ○ |
| | | 상가보증금 | ○ | ○ | ○ | ○ | ○ | ○ | ○ | ○ |
| | 선박/항공기 | 선박 | ○ | ○ | ○ | ○ | ○ | ○ | ○ | ○ |
| | | 항공기 | ○ | ○ | ○ | ○ | ○ | ○ | ○ | ○ |
| | 동산 | 가축 | ○ | ○ | ○ | ○ | ○ | × | × | × |
| | | 종묘 | ○ | ○ | ○ | ○ | ○ | × | × | × |
| | | 기계, 기구류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건설기계 | ○ | ○ | ○ | ○ | ○ | ○ | × | × |
| | 어업권 | 어업권 | ○ | ○ | ○ | ○ | ○ | ○ | ○ | × |
| | 입목재산 | 입목재산 | ○ | ○ | ○ | ○ | ○ | ○ | ○ | × |
| | 조합입주권 | 조합원입주권 | ○ | ○ | ○ | ○ | ○ | ○ | ○ | ○ |
| | 분양권 | 분양권 | ○ | ○ | ○ | ○ | ○ | ○ | ○ | ○ |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 ○ | ○ | ○ | ○ | ○ | ○ | ○ | ○ |
| | | 콘도미니엄회원권 | ○ | ○ | ○ | ○ | ○ | ○ | ○ | ○ |
| | | 승마회원권 | ○ | ○ | ○ | ○ | ○ | ○ | ○ | ○ |
| |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 | ○ | ○ | ○ | ○ | ○ | ○ | ○ |
| | | 요트회원권 | ○ | ○ | ○ | ○ | ○ | ○ | ○ | ○ |
| | 리스자동차 보증금 | 리스자동차 보증금 | ○ | ○ | ○ | ○ | ○ | × | ○ | × |
| | 기타(증여) 재산 | 기타(증여)재산_일반 | ○ | ○ | ○ | ○ | ○ | ○ | ○ | × |

| 종 | 구분 | | 1유형군(47) | | | | | 2유형군 (42) | 3유형군 (40) | 4유형군 (21) |
|----------|--------------|----------------------|----------|----|----|----|-----|--------------|--------------|--------------|
| | 소 | 세목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본경 | | | |
| 금융 재산 | 기타(증여) 재산 | 기타(증여)재산_금융 | ○ | ○ | ○ | ○ | ○ | ○ | ○ | × |
| | 금융재산 | 요구불예금 | ○ | ○ | ○ | ○ | ○ | ○ | ○ | × |
| | | 저축성예금 | ○ | ○ | ○ | ○ | ○ | ○ | ○ | × |
| | | 증권거래 | ○ | ○ | ○ | ○ | ○ | ○ | ○ | × |
| | | 보험증권 | ○ | ○ | ○ | ○ | ○ | ○ | ○ | × |
| | |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 | ○ | ○ | ○ | ○ | ○ | ○ | × |
| | | 비상장주식 | ○ | ○ | ○ | ○ | ○ | ○ | ○ | × |
| | 기타일시금 | 국민연금급여(반환일시금) | ○ | ○ | ○ | ○ | ○ | ○ | ○ | × |
| | | 군인퇴직연금급여(퇴직일시금) | ○ | ○ | ○ | ○ | ○ | ○ | ○ | × |
| | |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망일시금) | ○ | ○ | ○ | ○ | ○ | ○ | ○ | × |
| | | 사학퇴직연금급여 (퇴직일시금) | ○ | ○ | ○ | ○ | ○ | ○ | ○ | × |
| | | 별정우체국연금(퇴직일시금) | ○ | ○ | ○ | ○ | ○ | ○ | ○ | × |
| | | 산재보험급여(사망일시금) | ○ | ○ | ○ | ○ | ○ | ○ | ○ | × |
| | |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퇴직연금급여 (퇴직일시금) | ○ | ○ | ○ | ○ | ○ | ○ | ○ | × |
| 기타일시금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 자동차 | 자동차 | ○ | ○ | ○ | ○ | ○ | ○ | ○ | ○ |
| | | 리스자동차 | ○ | ○ | ○ | ○ | ○ | ○ | × | ×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공제

| 종 | 소 | 구분 세목 | 1유형군(45) | | | | | 2유형군 (28) | 3유형군 (6) | 4유형군 (3) |
|------|-------------|---|----------|----|----|----|-----|--------------|-------------|-------------|
| |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분경 | | | |
| 소득공제 | 가구특성별 지출 | 장애수당 | ○ | ○ | ○ | ○ | ○ | × | × | × |
| | | 장애아동수당 | ○ | ○ | ○ | ○ | ○ | × | × | × |
| | | 고업제후유증 중 중증장애인수당 | ○ | ○ | ○ | ○ | ○ | × | × | × |
| | | 소년소녀가정지원금 | ○ | ○ | ○ | ○ | ○ | × | × | × |
| | | 아동양육비(한부모) | ○ | ○ | ○ | ○ | ○ | × | × | × |
| | | 입양아동양육수당 | ○ | ○ | ○ | ○ | ○ | × | × | × |
| | |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의료비 | ○ | ○ | ○ | ○ | ○ | ○ | × | × |
| | | 중고등학생 입학료 및 수업료 | × | × | × | × | × | ○ | × | × |
| | | 국민연금 본인분담보험 75% 감면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 (재활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연금 | ○ | ○ | ○ | ○ | ○ | × | × | × |
| | | 추가아동양육비(한부모) | ○ | ○ | ○ | ○ | ○ | × | × | × |
| | | 자립지원촉진수당(한부모)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 (피부양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희귀질환자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등 | ○ | ○ | × | × | × | × | × | × |
| | | 국제경기대회 입상 장애인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 | ○ | ○ | ○ | ○ | × | × | × |
| | | 이자소득공제 | ○ | ○ | ○ | ○ | × | × | ○ | × |
| | | 학자금대출 채무변제액 | × | × | × | × | × | × | × | × |
| | | 임대소득 경비율 공제 | × | × | × | × | × | × | ○ | × |
| | | 참전명예수당 | ○ | ○ | ○ | ○ | ○ | × | × | × |
| | | 12개월 초과 이자소득 추가공제분 (국기초, 차상위)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려금 | ○ | ○ | ○ | ○ | ○ | ○ | × | × |
| | | 기초연금 보훈급여 공제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 보상금 공제 | × | × | × | × | × | × | △ | × |

| 종 | 소 | 구분 세목 | 1유형군(45) | | | | | 2유형군 (28) | 3유형군 (6) | 4유형군 (3) |
|--------------|-----------------------|---|----------|----|----|----|-----|--------------|-------------|-------------|
| | |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별경 | | | |
| 근로소득 공제 | 독립유공자 보상금 공제 | 독립유공자 보상금 공제 | × | × | × | × | × | × | △ | × |
| | |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보상금 공제 | × | × | × | × | × | × | △ | × |
| | |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공제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공상,전상,재해부상 군경) 보상금 일부 공제 | ○ | ○ | ○ | ○ | ○ | ○ | × | × |
| | | 보훈대상자 상이군경(공상,전상,재해부상 군경) 보상금 일부 공제 | ○ | ○ | ○ | ○ | ○ | ○ | × | × |
| | | 가구특성별지출기타 | ○ | ○ | ○ | ○ | ○ | ○ | × | × |
|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 ○ | ○ | ○ | ○ | ○ | ○ | × | × |
| | | 행정인턴 | ○ | ○ | ○ | ○ | ○ | ○ | × | × |
| | |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34세 이하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 예비역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 자립적립금(시설수급자) | ○ | ○ | ○ | ○ | ○ | × | × | × |
| | | (국기초, 차상위, 한부모)학생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 | ○ | ○ | ○ | ○ | ○ | ○ | × | × |
| | 농어민가구 특별공제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등록금 지출 | ○ | ○ | ○ | ○ | ○ | ○ | × | × |
| | | 보육료(농어민가구) | ○ | ○ | ○ | ○ | ○ | ○ | × | × |
| | | 대출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 ○ | ○ | ○ | ○ | ○ | ○ | × | × |
| 경영이양 소득 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 | ○ | ○ | ○ | ○ | ○ | × | × | × | |
| 일반재산 공제 | 농어민가구 특별공제 | 기본형 공익직불금-1ha 미만 | ○ | ○ | ○ | ○ | ○ | × | × | × |
| | | 50만원 이내의 농지, 가축, 종묘, 농기계 등 | ○ | ○ | ○ | ○ | ○ | ○ | × | × |
| 금융재산 | 장기저축 | 일반재산 자연감소분 | ○ | ○ | ○ | ○ | ○ | ○ | ○ | × |
| | | 장기저축 | ○ | ○ | ○ | ○ | ○ | ○ | × | ×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구분 | | | 1유형군(45) | | | | | 2유형군 (28) | 3유형군 (6) | 4유형군 (3) |
|----|---------|-----------------|----------|----|----|----|-----|--------------|-------------|-------------|
| 종 | 소 | 세목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본경 | | | |
| 공제 | 생활준비금 | 생활준비금 | ○ | ○ | ○ | ○ | ○ | ○ | × | × |
| | 자연감소분 | 금융재산 자연감소분 | ○ | ○ | ○ | ○ | ○ | ○ | ○ | × |
| | 한센인 피해자 | 한센인피해자 국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특별재난 지역 |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보상금 | ○ | ○ | ○ | ○ | ○ | ○ | ○ | × |

• 부채

| 구분 | | | 1유형군(9) | | | | | 2유형군 (8) | 3유형군 (8) | 4유형군 (0) |
|----|-------------|---------------------------|---------|----|----|----|-----|-------------|-------------|-------------|
| 종 | 소 | 세목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 | | | |
| 부채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 미결제금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 리스 및 할부잔액 | ○ | ○ | ○ | ○ | ○ | × | × | × |
| |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 ○ | ○ | ○ | ○ | ○ | ○ | ○ | × |
| | 개인간사채 | 법원인정사채 | ○ | ○ | ○ | ○ | ○ | ○ | ○ | × |
|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 ○ | ○ | ○ | ○ | ○ | ○ | ○ | × |
| | | 주택연금 | ○ | ○ | ○ | ○ | ○ | ○ | ○ | × |
| |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국민연금 실버론) | ○ | ○ | ○ | ○ | ○ | ○ | ○ | × |

제3장

보장결정

- Ⅰ. 개요
 - Ⅱ. 보장결정
 - Ⅲ. 통지
 - Ⅳ. 이의신청
-



제3장

보장결정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 개요

- ▶▶ 보장기관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기준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 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통지함
- ▶▶ 일반적인 보장결정 절차



II 보장결정

1. 조사결과 통보

- ▶▶ 조사담당자는 신청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반영하고, 사업팀에 통보
-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금융재산 조회를 거치는 사업은 동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보장결정 요청
 -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급여실시 여부 결정 전에 긴급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금융정보 조회 이전이라도 긴급 생계지원 실시
 - 민원처리기한(기초생활의 경우 30일) 내 금융 조회 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경우 처리기한 연장 안내

2. 보장결정 및 등록

- » 보장기관(시·군·구청장)은 보장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전자결재)
 - 통합조사팀에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해 보장 적합 여부 및 급여내용을 판단하여 사업팀에 보장 결정 요청
 - 해당 사업팀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보장결정 등록

III 통 지

1. 개요

- » 해당 사업팀 담당자는 보장결정 내용을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사회보장급여 결정 등 통지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

2. 통지방법

-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함
 -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3. 통지대상 및 내용

- » 통지대상 : 신청인, 부양의무자
- » 통지내용
 - 신청인 : 결정내용(적합, 부적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보장기간, 변경 신고 및 이의신청 안내 등
 -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비용 징수 관련 사항(기초생활보장)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4. 통지기한

-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 기초생활보장, 보육료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 사회서비스
 - ※상기 외 사업은 해당 사업별 지침 참고

IV 이의신청

1. 개요

- ▶▶ 보장기관의 보장결정 등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서면 등으로 이의신청 가능

2. 법적근거 및 신청방법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인복지 | 긴급복지지원 | 부모급여 | 보육료·양육수당 | 한부모가족지원 |
|---------|---------------------------------------|--|-----------------------|-----------------|--|---------------------------------|-----------------------|--------------------------------------|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40조 | 기초연금법 제22조 | 장애인연금법 제18조 | 장애인복지법 제84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 아동수당법 제19조 | 지침 | 한부모가족지원법 |
| 신청대상 처분 | 급여신청, 급여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 및 부작위 (급여 중지 포함) | 기초연금과 관련된 처분 (지급결정, 지급정지, 수급권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 | 장애인연금 지급결정, 신청에 대한 처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조치 | - 지원결정 내용 (연장 결정 포함)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 | 급여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에 대한 처분 | 급여신청, 급여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 및 부작위 (급여중지 포함) |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인복지 | 긴급복지지원 | 부모급여 | 보육료·양육수당 | 한부모가족지원 |
|------|-----------------------|-------------------------|----------------|------------------------------------|--|--------------|--------------|-------------------------|
| 신청인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 긴급지원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 -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을 고지받은 자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 |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대리인 | 장애인연금 신청자, 대리인 |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 긴급지원대상자 | 부모급여 지원 | 보육료지원 신청자 |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 관계인 |
| 신청기한 | 90일 이내 | 90일 이내 | 90일 이내 | - | 30일 이내 | 90일 이내 | 90일 이내 | 90일 이내 |
|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 | 서면 | 서면 | - | 서면 | 서면 | 구두 또는 서면 | 서면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3. 이의신청 절차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인복지 | 긴급복지지원 | 부모급여(현금) | 보육료·양육수당 | 한부모가족지원 |
|-------|---|-------------------------------------|-----------------------------------|----------------------|-----------------------|----------|------------------------------|---------|
| 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의료·주거 시·군·구청장 (사회복지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교육급여 시도교육감 (시군구청 신청 대행 가능) | 시·군·구청장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 (시·군·구청장) | 시·군·구청장 (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 | 시·군·구청장 | 시·군·구청장 (사회복지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 시·군·구청장 |
| 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일 이내 교육급여 신청 대행인 경우 15일 이내 | 즉시 | - | - | 10일 이내 | 즉시 | - | - |
| 확인·처분 | 처리기관 | 시·군·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 시·군·구청장 |
| | 처리기한 | 30일 이내 |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 15일 이내 | 1개월 이내 | 15일 이내 | 30일 이내 | 30일 이내 |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구분 | 국민기초 생활보장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인 복지 | 긴급복지 지원 | 부모급여 (현금) | 보육료· 양육수당 | 한부모 가족지원 | |
|----------|--|---|------------------------|-----------|------------|-------------------|----------------------|-------------|-------|
| 처분 효력 | 이의신청 대상 최초처분 결정 일자로 소급 | 급여신청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로 소급 - 급여신청 이외는 처분 결정월로 소급 | - | - | - | - | 신청일로 소급하여 지원결정 | - | |
| 통지 | 대상 | • 생계·의료·주거 이의 신청인, 시·군·구청장 • 교육급여 이의신청인 | 이의신청인 (시·군· 구청장) | 이의신청인 | 이의신청인 | 이의신청인, 시·군·구청장 | 이의신청인 | 이의신청인 | 이의신청인 |
| | 방법 | 서면 | 서면 | 서면 | 서면 | 서면 | 서면 | 서면 | 서면 |
| 불복시 | • 생계·의료 9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주거 90일 이내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교육 90일 이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 - | - | - | - | - | - | - | |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불복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

4. 이의신청 서식

» 이의신청서(공통서식)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I. 복지급여

II.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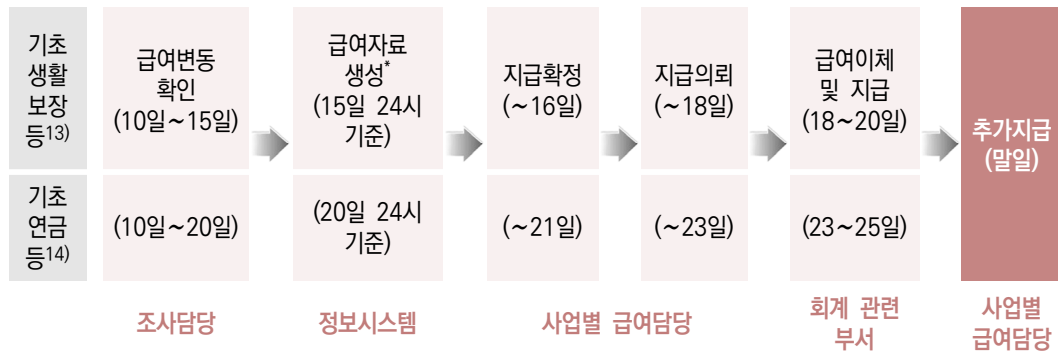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 복지급여

1. 급여 지급절차

가. 개요



* 급여자료 생성은 당월급여를 시스템에서 최종확정하는 행위로 생성이 끝난 이후에는 급여지급자료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 불가(단, 지급제외 처리는 가능)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지급의뢰(교육청→한국장학재단) 후 다음 달 1일부터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카드 포인트 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 가능

13)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청년)주거급여, 시설생계급여), 사활린한인특별지원금, 한부모가족지원(모자·부자·조손·청소년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아동복지(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인복지(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급여), 장애인연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14) 기초연금, 영유아보육(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현금, 현물)

나. 절차별 처리내용

1) 급여변동 확인

» 급여에 관련된 기초자료(소득인정액 변동, 가구원 변동, 전출입내역 등) 확인 및 변동자료 반영

- 조사담당자는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까지 변동자료 확인 및 반영

2) 급여자료 생성

» 정기 지급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생성

» 정가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는 급여이체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급여자료 생성 일자를 조정

» 급여자료 생성일(매월 15일) 이후 계좌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해당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사업별 담당자가 추가 급여기간 동안 수시생성 가능

3) 지급확정

» 급여담당자는 자동생성 처리된 급여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별 확정 처리 후 전자결재 요청

4) 지급의뢰

» 결재된 급여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 부서로 지급 의뢰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과 연계된 급여 및 서비스 목록은 별첨 참고

※ 교육급여는 교육행정시스템(NIES)을 통해 관리하되, 바우처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교육바우처시스템과 연동하여 지급 관리함

5)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 결제원) 또는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 전송 및 급여 지급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인증) 후 지급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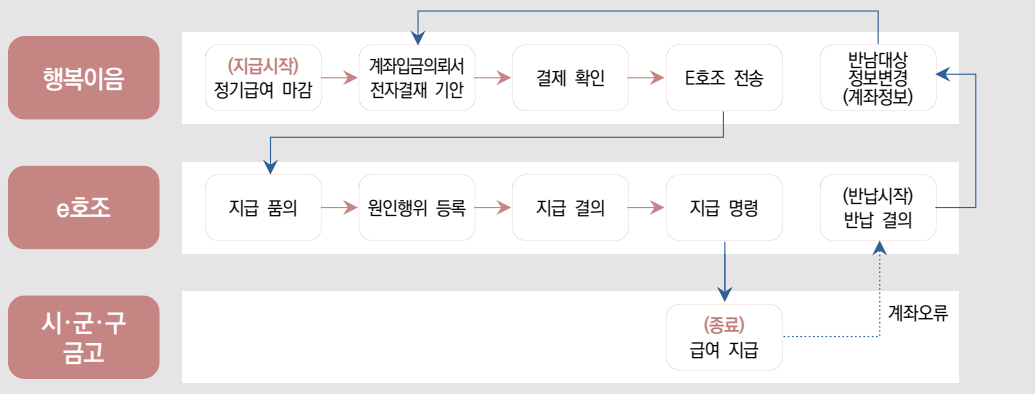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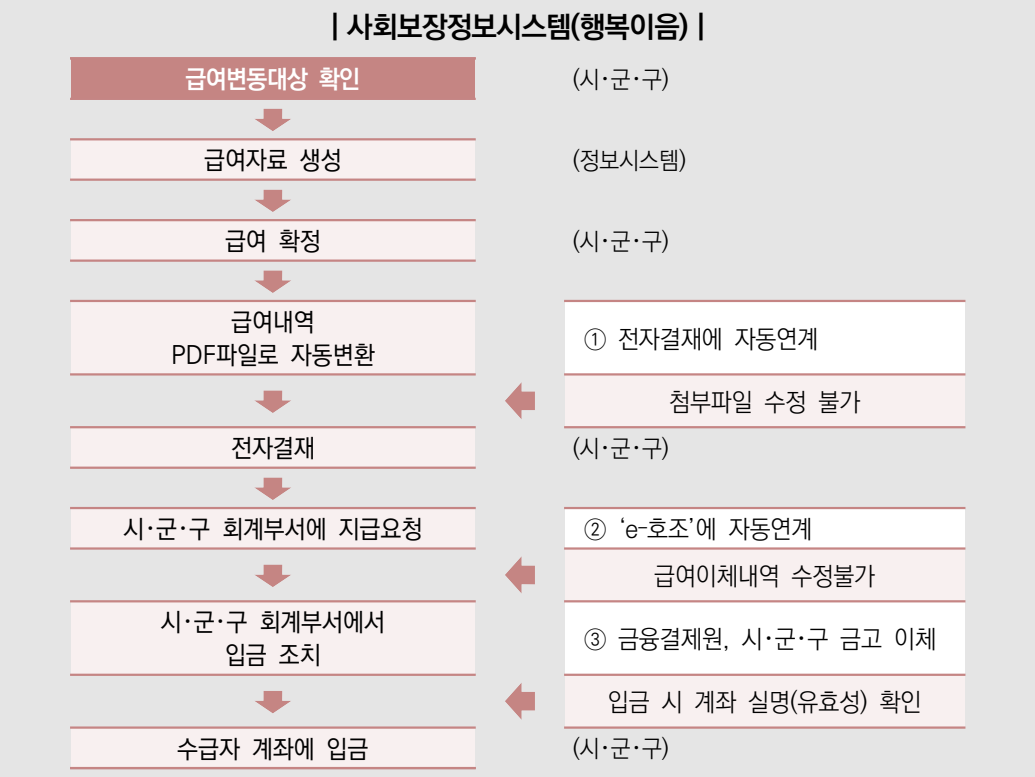
6) 추가지급

» 매월 급여자료 생성일 이후 보장결정자는 정기지급분과 동일한 절차로 매월 정기 지급일 이후 수시생성 후 추가지급 가능

참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급여지급 절차



참고 | 복지급여 지급 절차



참고 복지급여 지급 절차

■ 정기급여(매월) : 총 36종

| 연번 | 보장 단위 | 지급 단위 | 지급 시기 |
|----|-------------|-------------------|-------|
| 1 | 기초생계급여 | 기초생계급여(일반) | 매월 지급 |
| 2 | 기초의료급여 | 기초의료급여(생계-시설) | 매월 지급 |
| 3 | | 기초의료_사할린한인(특별지원금) | 매월 지급 |
| 4 | 기초주거급여 | 기초주거급여(보증금) | 매월 지급 |
| 5 | | 기초주거급여(월차임) | 매월 지급 |
| 6 | | 기초청년주거급여(보증금) | 매월 지급 |
| 7 | | 기초청년주거급여(월차임) | 매월 지급 |
| 8 | 영유아 보육 | 양육수당 | 매월 지급 |
| 9 | | 장애아동양육수당 | 매월 지급 |
| 10 | | 농어촌양육수당 | 매월 지급 |
| 11 | | 부모급여(현금) | 매월 지급 |
| 12 | | 부모급여(차액) | 매월 지급 |
| 13 | 아동복지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지원 | 매월 지급 |
| 14 | | 소년소녀가정지원금 | 매월 지급 |
| 15 | 아동수당 | 아동수당(현금) | 매월 지급 |
| 16 | | 아동수당(현물) | 매월 지급 |
| 17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매월 지급 |
| 18 | 기초연금 | 기초연금 | 매월 지급 |
| 19 | 한부모가족지원 | 모자가정아동양육비 | 매월 지급 |
| 20 | | 부자가정아동양육비 | 매월 지급 |
| 21 | | 조손가정아동양육비 | 매월 지급 |
| 22 | | 청소년한부모모자아동양육비 | 매월 지급 |
| 23 | | 청소년한부모부자아동양육비 | 매월 지급 |
| 24 | | 한부모가족추가양육비 | 매월 지급 |
| 25 | | 한부모가족생활보조금 | 매월 지급 |
| 26 | 입양아동지원 | 입양아동양육수당 | 매월 지급 |
| 27 | |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 | 매월 지급 |

제1장
상당·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연번 | 보장 단위 | 지급 단위 | 지급 시기 |
|----|-------|---------------------|-------|
| 28 |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 매월 지급 |
| 29 | | 장애수당(생계, 의료) | 매월 지급 |
| 30 | | 장애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매월 지급 |
| 31 | | 장애수당(시설) | 매월 지급 |
| 32 | | 장애인급여(지자체) | 매월 지급 |
| 33 | | 장애아동수당(생계, 의료) | 매월 지급 |
| 34 | | 장애아동수당(주거, 교육, 차상위) | 매월 지급 |
| 35 | | 장애아동수당(지자체) | 매월 지급 |
| 36 | | 장애아동수당(시설) | 매월 지급 |

■ 청구성급여 : 총 49종

| 연번 | 보장 단위 | 지급 단위 | 지급 시기 |
|----|--------|----------------|-------|
| 37 | 기초생계급여 | 기초생계 해산급여 | 수시 지급 |
| 38 | | 기초생계 장애급여 | 수시 지급 |
| 39 | | 생계급여(긴급) | 수시 지급 |
| 40 | 기초의료급여 | 기초의료 해산급여 | 수시 지급 |
| 41 | | 기초의료 장애급여 | 수시 지급 |
| 42 | 기초주거급여 | 기초주거 해산급여 | 수시 지급 |
| 43 | | 기초주거 장애급여 | 수시 지급 |
| 44 | 긴급복지지원 | 긴급복지(생계지원) | 수시 지급 |
| 45 | | 긴급복지(교육지원) | 수시 지급 |
| 46 | | 긴급복지(해산비 지원) | 수시 지급 |
| 47 | | 긴급복지(장제비 지원) | 수시 지급 |
| 48 | | 긴급복지(의료지원) | 수시 지급 |
| 49 | | 긴급복지(주거지원) | 수시 지급 |
| 50 | | 긴급복지(사회복지시설이용) | 수시 지급 |
| 51 | | 긴급복지(연료비) | 수시 지급 |
| 52 | | 긴급복지(전기료) | 수시 지급 |
| 53 | 자활지원 | 자활급여 | 수시 지급 |
| 54 | | 청년희망키움통장 | 수시 지급 |

| 연번 | 보장 단위 | 지급 단위 | 지급 시기 |
|----|----------|----------------------|-------|
| 55 | 의료급여 | 의료급여(요양비) | 수시 지급 |
| 56 | |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 수시 지급 |
| 57 | | 건강생활유지비 | 수시 지급 |
| 58 | | 본인부담보상금 | 수시 지급 |
| 59 | | 본인부담상한제 | 수시 지급 |
| 60 | 의사상자 지원 | 의사상자 장애급여 | 수시 지급 |
| 61 | 범부처 | 청년월세한시지원 | 수시 지급 |
| 62 | 특별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생활 지원) | 수시 지급 |
| 63 | | 청소년특별지원(건강지원) | 수시 지급 |
| 64 | | 청소년특별지원(학업 지원) | 수시 지급 |
| 65 | | 청소년특별지원(자립 지원) | 수시 지급 |
| 66 | | 청소년특별지원(상담 지원) | 수시 지급 |
| 67 | | 청소년특별지원(법률지원) | 수시 지급 |
| 68 | | 청소년특별지원(활동 지원) | 수시 지급 |
| 69 | | 청소년특별지원(기타 지원) | 수시 지급 |
| 70 | 노인복지 | 사할린한인지원(배우자 항공비) | 수시 지급 |
| 71 | | 사할린한인지원(아파트집기 비품) | 수시 지급 |
| 72 | 한부모가족지원 | 청소년한부모모자 검정고시 학습비 | 수시 지급 |
| 73 | | 청소년한부모부자 검정고시 학습비 | 수시 지급 |
| 74 | | 청소년한부모모자 자산형성계좌 | 수시 지급 |
| 75 | | 청소년한부모부자 자산형성계좌 | 수시 지급 |
| 76 | | 청소년한부모모자 자립 활동 촉진 수당 | 수시 지급 |
| 77 | | 청소년한부모부자 자립 활동 촉진 수당 | 수시 지급 |
| 78 | | 한부모가족학용품비지원 | 수시 지급 |
| 79 | 입양아동지원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수시 지급 |
| 80 | 장애인복지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수시 지급 |
| 81 | |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 수시 지급 |
| 82 | 사회서비스이용권 | 첫만남이용권(현금) | 수시 지급 |
| 83 | 사회복지시설 | 운영보조금(시설) | 수시 지급 |
| 84 | | 기능보강보조금(시설) | 수시 지급 |
| 85 | | 사업비(시설) | 수시 지급 |

※ 분류 단위는 보장 > 지급 > 급여 서비스 순으로, 급여 종수는 지급 단위 기준임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 급여기준

가. 급여지급일

» 정가지급일

- 매월 20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단, 기초연금 및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 교육급여는 분기별 25일까지 지급
 - ※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급되며, 급여자료 생성 다음 달 부터 바우처 이용이 가능함

» 추가지급일 : 매월 말일

- 보장결정일이 급여자료생성일 이후인 경우

나. 급여개시일

» 급여신청일이 개시일

- 즉,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 급여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의료급여, 긴급복지 |
|-------|----------|---|------------|
| 급여개시일 | 신청일 | 신청일이 속한 달 (사전신청인 경우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수급자로 결정된 날 |

» 급여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급여 전액 지급

» 교육급여의 경우 급여개시일(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학비는 월할 계산 지급

- 급여개시일(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학비를 월할 계산하여 생계비 등 첫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

다. 거주지변경 시 지급기준

» 전입일이 급여생성일(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전입지) 시·군·구청장이 지급

- ▶▶ 전입일이 급여생성일(16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전출지) 시·군·구청장이 지급
 - 단, 신규로 자격을 취득하는 대상자 또는 자격 중지 상태에서 신거주지 전입 후 자격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거주지(전입지) 시·군·구청장이 지급
- ▶▶ 가구주의 전출 없이 학비지원 대상자만이 학업·현장실습·예비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학비 지급

제1장
상당·신청

라. 급여중지자 지급 기준

- ▶▶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의 경우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분기까지 학비 지급
- ▶▶ 부정수급자의 경우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인 급여종류별 중지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을 중지(선정기준 초과사유 발생월의 급여는 지급)
 - ※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제외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3. 급여변경

가. 변경사유

- ▶▶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 ▶▶ 가구원의 사망·출생·결혼·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나. 변경내용

- ▶▶ 급여의 종류, 급여방법, 급여액 등

제5장
사후관리

다. 급여 변경자 지급 기준

- ▶▶ 소득재산, 인적사항 등의 변동 시 변동 당월 기준으로 급여 지급

제6장
서 식

라. 변경방법

- » 본인의 신청에 의한 변경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제출
- »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에 의한 직권 변경
 - ※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마. 통지

- » 통지내용 :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
- » 통지방법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통지 가능

4. 급여중지

가. 중지 사유

- »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복지대상자의 생활수준 등이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한 때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휴학·자퇴·퇴학·졸업 등의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 복지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 복지대상자가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 ※ 기초연금은 지급 정지로 처리

나. 중지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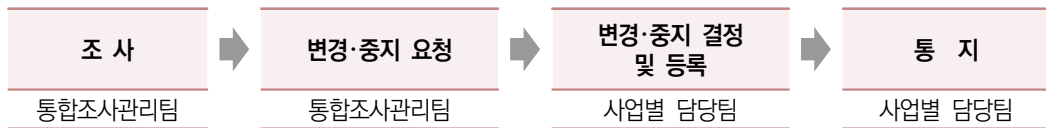
- » 중지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중지
 - 중지가 결정된 달은 시·군·구청장이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므로 중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
 - ※ 급여 중지는 수급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므로 급여 중지 후 서비스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 중지 절차

- » 급여의 중지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전자결재 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중지처리
- »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

제1장
상담·신청

| 급여 변경·중지 절차 |



제2장
조 사

※ 기초연금사업은 지급정지·상실에 따라 다르게 적용

5. 급여지급 계좌 관리

제3장
보장결정

가. 급여 계좌 명의·수급자 명의

1) 급여계좌 원칙

- » 모든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수급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급여형태를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포인트로 지급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2) 급여계좌 예외

- » 예외 사유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 대리 수령 가능인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 제출 서류

- 대리 수령 신청서
- 대리 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심판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금융기관에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치매**
 - 보건소(치매상담센터)의 치매진단이 내려진 병원진단서 또는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자의 경우**
 -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 그 외 법령상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료기관)에 지급이 가능한 경우

-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3항)
- 주거급여(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2조)
- 교육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 한부모가족지원(자녀학비) 기관(학교)계좌로 지급 가능
- 장제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제2항)
- 의료지원(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제3조제3항)
 - ※ 단, 기초연금사업에서 부부 수급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부부가 동의하면 배우자 일방의 계좌에 입금 가능함

3) 수급자 명의 확인방법

» 급여이체 시 수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금융기관에서 보유한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① 주거래은행을 이용한 계좌 적정성 여부 확인

시·군·구와 주거래 은행 간의 관련 시스템 자동연계로 대상자 금융정보(성명, 계좌번호)와 금융기관 보유 금융정보(성명, 계좌번호)를 비교 검증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② 금융결제원으로서의 대량지급을 통한 적정성 확인

지급결정이 끝난 급여지급 자료에 대해 시·군·구 회계과에서 'e-지로시스템'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이체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시·군·구로부터 입금 의뢰받은 수급자의 금융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해당 은행 금융정보(주민 등록 번호, 계좌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입금

- 일치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에 통보, 금융결제원은 다시 'e-지로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군·구로 통보하여 말일 추가지급대상으로 처리

나. 급여계좌 수

1) 배경

» 그동안 급여 관리 효율화를 위해 1인의 수급자가 2개 이상의 급여 통장(계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개의 계좌로 단일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

» 2개 이상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복지사업별로 수급자 명의의 압류방지 계좌를 사용하거나, 영유아복지 및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급여 확대 등에 따라 각 사업별로 계좌의 명의인을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급여계좌 수를 제한하는 데 한계

2) 급여계좌 등록

» 2개 이상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각 사업에서 규정하는 계좌 명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급여별로 계좌 지정 가능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 단, 기초생활보장, 한부모지원사업 등 동일 보장사업 내에서 여러 종류의 현금성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각 사업의 지침에서 요구하는 대로 1계좌 운영
- 예시 1: 한부모가정지원사업(모자가정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은 모두 1계좌로 수급
 - 예시 2: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개인단위 급여로 각각 다른 통장으로 지급가능. 양육수당은 A은행 통장, 아동수당은 B은행 통장 지급 가능

참고 복지급여 수급자

| 급여명 | 수급자(급여계좌 명의인) |
|------------------------------------|--|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 - 보장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
| 긴급복지지원금 | - 긴급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구구성원 |
| 장애인연금 |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중복 3급) |
| 장애수당 |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장애아동수당 | -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부모 등 보호자 |
| 기초연금 | - 65세 이상 노인 |
| 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 - 아동 및 부모 등 보호자 ※ 아동과 동일 가구 구성원인 부모 등 보호자에 한함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 입양아동의 부모 |
| 입양장애아동 양육보조금 | - 입양장애아동의 부모 |
|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 - 한부모 |

※ 제3자(기관)가 수급자가 되는 급여 : 장제급여, 교육급여, 의료비지원 등

참고 압류방지 전용 통장

1.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요

- 도입배경
 - 기존의 거래통장은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어 수급금까지 압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용통장 도입 (본인도 입금불가)
 -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
- 압류방지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35조(압류금지)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12조의2(요양비등 지급계좌), 제18조(수급권의 보호)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21조(기초연금 지급권의 보호)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 제19조(압류방지 등)
 - 장애(아동)수당,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 장애인복지법 제82조(압류 방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양도·담보 및 압류금지)
 - 아동수당, 부모급여 : 아동수당법 제18조(아동수당 지급권의 보호)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자립정착금 : 아동복지법 제64조(압류금지)
 - 양육수당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제6항

| 압류방지 전용통장 주요내용 |

- 가입대상 : 기초생활급여, 의료급여(요양비 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자립정착금,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수급자 중 희망자
- 상 품 명 :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 입금제한 : 지급기관이 특정코드를 부여한 자금만 입금가능
* 예금 원금의 입금만 제한(이자는 가능), 출금은 통상의 방식과 동일
- 통장표시 :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표제부(예금주, 계좌번호, 인감표시란)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임을 표시

2. 압류방지 전용통장 운영

-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
 - (신규발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은행·우체국·농협·새마을 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가능
 - (기존발급자) 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통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발급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수급계좌 변경만 가능(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사용 가능)
- 급여계좌 변경신청 및 등록
 - 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통장 표제부 사본을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관할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은 행복이음의 급여계좌를 일반계좌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계좌로 변경등록(상당·신청/계좌관리/계좌정보등록관리/압류방지계좌 등록관리)
 - *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력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하므로 등록 시 각별히 주의요망

제1장
상당·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 해당 시·군·구에 급여계좌를 변경등록한 이후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매월 급여 입금
- 해당 급여내역을 송부할 때 일정한 코드값*을 부여하여 전송
 - * (예시) 12(기초연금), 13(장애연금), 15(장애(아동)수당)
- 입금제한 및 압류거부
 - 참여 금융기관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일정한 코드값이 있는 경우에만 압류방지 계좌에 입금을 허용하고, 동 코드값이 없으면 입금을 차단
 - 참여 금융기관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대하여 (가)압류, 질권,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행위 방지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법으로 보호되는 통장으로 '압류명령서'를 제시, 압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거부해야 함

3. 입금오류 발생 시 처리방법

- 은행 이체 이후 입금 불능 처리된 경우(일반계좌 오류처리와 동일)
 - (오류내역 확인) 압류방지계좌임에도 압류 여부가 “NO” 되어 있거나, 일반계좌임에도 압류 여부가 “YES” 되어 있는 경우 및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성명 등 오류 확인
 - (반납처리) 오류대상자를 e-호조(지방재정시스템)에서 반납처리
 - (오류현황조회) 반납처리된 대상자는 행복이음 “지방재정 연계 처리현황” 메뉴, 오류현황 화면 에서 조회(오류 현황에서 변경한 계좌정보는 1회성임)
 - (계좌변경 후 재지급) 오류 현황에서 조회된 대상자를 확인하고 계좌정보만 변경 처리하여 재지급
 - (계좌정보변경) 지급 이후 오류발생 대상자의 “복지급여계좌신규·변경신청” 화면에서 계좌정보 정정처리

4. 기타 유의사항 안내

- 수급자가 카드 결제용, 대출금 납입용으로 사용 시 취소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 해당 급여의 수급금만 입금이 허용되므로 '카드 결제 후 취소 시 카드사의 카드 환급금'이나, '연체발생 시 연체 납부금'도 입금이 제한될 수 있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수급자 본인도 해당 복지급여 이외의 다른 금품을 입금할 수 없으므로 카드 결제 사용은 가급적 자제토록 안내
- 수급자가 채무나 신용불량 등으로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신청한 경우, 채무와 신용문제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복이음의 서비스의뢰 기능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연계 등록
 - * 행복이음 서비스 의뢰 메뉴 : 행복이음/상담신청/서비스의뢰관리/서비스의뢰 신청
 - * 서민금융진흥원(고금리 대출 전환, 맞춤형 대출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감면 지원)

II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1. 바우처 지급절차

가. 개요

| 사 업 | 예약금 납부 | 대상자 결정·통지 | 카드발급 (수시) | 본인 부담금 납부 | 바우처 생성 | 서비스 결제 | 비용지급 및 정산 |
|---|------------------|-----------|---------------------------------------|--|---|-----------|------------------------------------|
| | (시·군·구) | |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
| 장애인 활동지원 | | | | 지정계좌 납부 (1차) 전월 말일 (2차) 당월 1~15일 (3차) 당월 16~25일 | (1차) 전월 말일 (2차) 당월 1~15일 (3차) 당월 16~25일 | | (정기지급) 매월 3회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매월 서비스 비용지급 2일 전 | 매월 1~27일 |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 수시 사회서비스 전용 : 수시 | 본인부담금 없음 | (정기) 매월 말일 (수시) 당월 1~15일 | 매월 1일 ~말일 | (1차) 15일 (2차) 25일 (3차) 익월 5일 |
| 지역사회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 | | | 제공기관 직접납부 | (1차) 전월 말일 (2차) 당월 1~15일 (3차) 당월 16~25일 | | (수시지급) 시·군·구의 예약일 2~3일 이내 |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 | | | 지정계좌 납부 | 제공기관 직접납부 | | |
| 가시간병 방문 지원 | | | | |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긴급돌봄 지원, 정신건강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 | 수시 | 수시 | 제공기관 직접납부 | 행복이음 결정 통보 익일부터 가능 | |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금 없음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나. 절차별 처리내용

1) 예약금 납부

- » 시·군·구청장은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미리 예약하여야 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 시·군·구청장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서비스 비용을 사회 보장 정보원 지정계좌에 즉시 예약
 - 예산확정 후 즉시 예약하고, 국비·지방비 교부 시기 및 서비스 제공 비용지급 일정에 따라 예약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 예약 필요

2) 대상자 결정·통지

- » 결정자료 전송기한 : 매월 27일 18시
 - * 단, 신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긴급돌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수시 전송(전송기한 제한 없음)
- » 서비스 이용 가능 시점
 - 자료 전송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 단, 신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긴급돌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전송일 익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단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전 월 결정분이 미 전송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송일 다음날부터 바로 서비스 이용 가능
 - * 신규 대상자에 한하며 매월 10일까지(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매월 15일까지) 서비스 대상자 전송 시 '바우처승수신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로 선택하고 전송한 대상자에 한해 가능 (단 장애인활동지원은 전송일자 제한이 없음에 유의)
- » 시·군·구는 대상자 선정 및 등급변경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제공기관 정보를 함께 안내

3) 카드발급

- »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 카드 발급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카드 6사

*26.7.1.부터 신청·발급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발급

- 발급 대상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

| 구 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전용카드 | |
|------|--|---------|--|--|
| | | | 카드사 발급 전용카드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 발급기준 | (만 19세 이상) 본인 선택 (만 14-19세 미만) 체크카드 | |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 만 14세 미만, 만 7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
| 결제계좌 | 모든 은행계좌 | 해당은행 계좌 | 필요 없음 | |
| 발급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신한 포함 ** 전북은행 포함 *** 유효기간까지 재발급 및 사용가능, 신규발급 불가 ※ 우체국 카드발급 시 IC기능(교통카드) 탑재되어있는 카드는 발급 불가 |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발급방법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 (BC카드 발급기관)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한 | |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 14세 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또는 '금융형카드(신용·체크)'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가능

※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

|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현대카드 |
|-----|---|----------------------------------|----------------------------------|--|-----------------------------------|----------------------------------|
| 접수처 |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및 롯데카드 홈페이지 / APP | 신세계백화점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 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 / APP / 고객센터, 전북은행 | 신한카드 영업점 및 신한은행/ 홈페이지 / APP | 현대카드 홈페이지 / APP / 고객센터 |
| 문의 | 1899-4651 www.bccard.com | 1899-4282 www.lottecard.co.kr | 1566-3336 www.samsungcard.com | 1599-7900 www.kbcard.com | 1544-8868 www.shinhan-card.com | 1577-6000 www.hyundaicard.com |

»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신규 신청 시)

| 업무절차 | 처리내용 | 업무주체 |
|-------------|--|------------------------|
| 신청서 작성·제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제출(신청인 → 읍·면·동) (만 14세~19세 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및 홈페이지, APP, 고객센터 문의(현대카드는 영업점 없음) (만 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제출 | 신청인 |
| ↓ | | |
| 신청서 입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이음'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 읍·면·동 |
| ↓ | | |
| 카드 발급 정보 전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이음'에 입력된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 (시·군·구 → 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 | 시·군·구 |
| ↓ | | |
| 카드 제작·배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 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배송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 후 배송(수시) *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반송 | 카드사,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우체국) |
| ↓ | | |
| 바우처 결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우처 카드 수령 후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대상자 |

» 서비스 신청 또는 카드 재발급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기준에 따라 카드신청절차 진행 또는 안내

-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3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3-1호) 징구
- (만 14-19세 미만)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및 홈페이지, APP, 고객센터로 국민행복 카드(체크카드) 신청하도록 안내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 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에 사전 문의 필요

* 현대카드는 영업점 없으므로 홈페이지/APP/고객센터로 문의

» 만 19세 이상

- (신규 발급 시) ①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 제4호) 징구, ②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함을 함께 안내
- (재발급 시)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안내

» 읍·면·동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를 반드시 질문 하고,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불필요함을 안내

-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결제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① 만 14~19세 미만은 영업점 방문 및 홈페이지, APP, 고객센터에서 체크카드 발급받도록 안내

* 현대카드는 홈페이지/APP/고객서비스센터로 문의

② 만 19세 이상(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 제외)은 카드 발급을 위한 상담전화에 응대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배송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 (신용카드) 서비스 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TM)로 자격확인 및 심사 후 3~7일 이내 배송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 (체크카드)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나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배송 실시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 발급(매일)
 - 카드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 카드가 배송되며, 2회 방문 시에도 수취인 부재 시 행정복지센터로 배송
 - *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는 배송된 카드를 대상자에게 전달 요망(배송 봉투 겉면의 연락처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배송현황 조회 가능
 - * 조회결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1566-3232, 단축 4번)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국민행복카드 사용 등록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별 안내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나, 바우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등록은 불필요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별도의 사용 등록이 불필요

» 국민행복카드 재발급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서류 작성(신규 신청 시와 동일)

4) 본인부담금 납부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사업별 납부방식 및 기간

- 개인별 지정계좌에 납부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 1차- 전월 말일, 2차- 당월 1~15일, 3차- 당월 16~25일
- 제공기관 직접 납부
 - 지역사회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발달 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긴급돌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5) 바우처 생성

- » 바우처 생성은 시·군·구의 예약금과 본인부담금이 바우처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
 - 서비스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하기 위해서는 바우처카드에 바우처가 생성되어야 함

제1장
상담·신청

6) 서비스 결제

- » 서비스 제공 후 제공인력(또는 제공기관)은 결제단말기(전용 또는 스마트폰)를 통하여 실시간 결제

제2장
조 사

7) 비용지급 및 정산

-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비용을 결제단말기 등을 통해 시·군·구에 비용 청구
- » 사회복지정보원은 월 3회(5일, 15일, 25일) 서비스 비용을 제공기관 계좌에 입금
 - 입금내역은 전자바우처시스템(<http://news.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 사회복지정보원은 제공기관별, 서비스 이용자별 집행내역을 시·군·구에 정산
 - 시·군·구별 정산서 및 정산항목별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도록 정산지원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2. 바우처 생성 및 지급 기준

가. 바우처 생성일

- » 정기생성 : 매월 말일(월 1회 생성)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중 전월 말일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본인부담금이 '0원'인 대상자 포함)
 - 지역사회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서비스별 바우처 생성주기에 해당하는 경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최중중 발달장애인 대상자 중 전월 말일 18:00까지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대상자로 등록한 수급자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대상자 전체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및 바우처 생성 제한 대상자 제외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 수시생성 : 당월 1~15일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대상자 중 제공기관이 당월 1~15일 18:00까지 시스템에 계약 정보를 등록하면 익일에 바우처 생성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시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중 당월 1~15일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게 납부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 생성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는 제공기관이 매일 18:00까지 시스템에 계약 정보를 등록하면 기간 관계없이 익일에 바우처 생성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대상자는 시군구(보건소) 담당자가 행복이음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전송한 다음날 바우처 생성되며, 제공기관이 시스템에서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 확인 가능
-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는 시·군·구 담당자가 행복이음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전송한 다음날 바우처 생성

» 추가생성 : 당월 16~25일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시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중 당월 16~25일 중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제공기관이 25일 18:00까지 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나. 서비스 개시일

» 서비스 신청 후 익월 1일 서비스 개시

-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가시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 발달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 신청 후 본인부담금 납부 익일 서비스 개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대상자

» 서비스 신청 후 제공기관 지정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개시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 대상자

다. 바우처 유효기간

-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괄소멸 처리됨

 -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중지 처리 가능
 -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서비스는 정당한 사유(시군구청장 인정한 경우 등)없이 발달재활 6개월 이상, 언어발달 3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중지처리 가능
 - ※ 장애인활동지원은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중지처리 가능
- ▶ 서비스 유형별 생성주기에 따라 지원되는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서비스유형별 지원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 처리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은 1회 지원되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종료해야 함
 -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종료
 -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바우처가 1회 생성되며,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완료하여야 함(추가지원 기간 포함)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당해연도 1회 지원되며, 서비스 지원기간(120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처리

라. 거주지 변경 시 사업별 예산지급 기준

| 사업 | 생성 기준 |
|--|--|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 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u>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u> | 바우처 지원은 전출 월까지는 전출지 시·군·구 예산으로 지급 처리되며 전출 익월 부터는 전입지 시·군·구 예산으로 지급 |
| 지역사회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 - 바우처 지원은 전출 월까지는 전출지 시·군·구 예산으로 지급 ※ 전입지에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재신청해야 함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u>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u> 사업 | 바우처 결정시점의 관할 주소지 시·군·구 예산으로 지급 |
| <u>긴급돌봄 지원사업</u> | - 바우처 지원은 전출일 당일까지는 전출지 시·군·구 예산으로 지급 ※ 전입지에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재신청해야 함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마. 서비스 중지자 지급 기준

- » 서비스 중지(사유)가 결정(발생)된 달의 바우처 비용지급은 사유별 결제 유효 기간이 상이하므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중지 및 자격상실 정보 전송 시 해당 제공기관에 서비스 미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 후 전송
 - 사망, 말소 또는 본인 서비스 포기로 인한 서비스 중지의 경우 결제 유효기간이 즉시 중지되어 서비스 후 서비스 비용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 사망 또는 포기의 경우 미사용 본인부담금은 정산절차를 거쳐 익월에 지급

3. 서비스 대상자 자격(변경) 관리

가. 변경사유

- » 서비스대상자의 '전·출입'에 의한 거주지 변동
- » 서비스대상자의 이의신청 또는 변경신청에 의한 등급 재판정에 따른 '등급 변경'
- » 서비스대상자의 사망, 본인포기, 부정사용, 2개월 연속 미사용 등의 중지 사유에 따른 자격 상실

나. 변경내용

- » 서비스대상자의 서비스 등급(판정등급, 서비스 인정시간, 바우처 서비스 단가, 본인 부담금 등) 변경, 거주지 변경 및 자격 변경에 따른 서비스 상태 변경 등

다. 변경방법

- » 사업별 전·출입 시 처리

| 사업 | 처리 내용 |
|--|--|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 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대상자 전출 시 별도의 전송절차 없이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전송 • 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계속 여부는 전입지 시·군·구에서 결정하되, 부적합 대상일 경우 "판정결과 변경"으로 중지 처리하여 자격을 해지 |

| 사업 | 처리 내용 |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대상자 전출 시 해당 서비스가 자동 중지처리 전입지에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재신청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대상자 전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출 및 중지처리 없이 기존 서비스 지속 |

제1장
상담·신청

» 등급변경 시 처리

- 본인의 신청(이의신청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제출에 의한 등급 변경
 - 신청 결과 등급변경이 결정된 경우 행복이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에 의한 직권 변경 가능
 - ※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제2장
조 사

» 자격 상실

- 서비스 대상자가 사망, 서비스 포기 등 중지사유가 발생하여 자격 상실
- 바우처 부정사용, 2개월 이상 연속 미사용 또는 2개월 연속 본인부담금 미납 대상자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자격 상실 가능
 - ※ 발달재활서비스는 6개월, 언어발달지원은 3개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1개월 연속 미사용 시 자격 상실 가능

제3장
보장결정

라. 통지

-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통지 가능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4. 서비스 중지

가. 중지사유

- » 서비스 판정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
- » 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지원기간 중 아래 사유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 바우처 카드 매매·양도 등 부정사용
 - ※ 바우처카드 부정 사용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제공기관의 바우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거나 2개월간 본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임의해지 처리한 경우
 - ※ 장애인활동지원은 6개월 연속 미사용 시 수급자격은 유지하되 급여 중단 가능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성추행 등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나. 중지시기

» 즉시 중지가 원칙

- 서비스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시·군·구담당자는 상실 처리 후 행복이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함
- 사망이나 서비스 포기를 사유로 상실 전송할 때는 해당 제공기관에 서비스 미결제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상실 처리 후 즉시 중지됨

참고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 중지사유 | 요건 |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
|---------|---------------------------------|--|
| 본인포기 | 대상자 본인의 서비스 중지 요청 | 본인포기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
| 사망·말소 등 | 대상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
| 자격종료 |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지원기간 종료 등) |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
| 판정결과 변경 |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자격 탈락 |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
| 바우처 미사용 |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 바우처 미사용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잔여 바우처 소멸) |

다. 중지절차

- » 급여의 중지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 전자결재 후 행복이음을 통하여 중지처리
- »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

| 변경·중지 절차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제5장

사후관리

- Ⅰ. 개요
 - Ⅱ. 변동사항 관리
 - Ⅲ. 기타 관리
 - Ⅳ. 보장비용 환수
 - Ⅴ. 반환명령
-



제5장

사후관리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 개요

1. 목적

» 수급자 가구의 변동사항을 확인·반영하고, 확인조사 등을 수행하여 수급자격, 급여 종류, 급여액 등이 적정한지 관리하기 위함

2. 사후관리 절차

| 단 계 | 업 무 내 용 |
|-------------------|--|
| 급여 적정성 조사·확인 | 거주지, 가구원,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 변동 확인 급여 누락·중복, 의사무능력(미약)자, 사망의심자 정보 등 관리 |
| ↓ | |
| 보장결정 변경 및 등록 | 급여 변경·정지·중지·상실 여부, 급여수준 등 변경 및 등록 |
| ↓ | |
| 보장결정 변경 통지 | 변경·정지·중지·상실 일자, 내용, 사유, 이의신청 절차 등 통지 |
| ↓ | |
| 급여 변경·중지·정지·상실 처리 |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생성·중단된 급여의 확인 및 확정 확정된 급여의 이체 또는 지급 중지 등 |
| ↓ | |
| 급여 환수 및 반환 | 부정수급이 확인되거나,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수 및 반환 |

II 변동사항 관리

1. 개요

- » 수급자의 거주지, 소득·재산, 가구원 정보 등 급여의 수급자격과 종류, 금액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반영하는 절차
- » 수급자의 가구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관련 서류 등은 보관 관리

2. 변동사항 확인대상

-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종류, 급여액, 보장기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능력 유무, 부양 여부 등

3. 변동사항 확인방법

가. 일반적인 확인

- » 수급자의 신고
- » 수급자,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급여변경 신청
- »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나. 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 » 거주지 변경, 가구원 변동(교정시설 입소, 군입대 등), 소득·재산 변동 등
 - ※ 각 항목별 알림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정보시스템으로 통보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다.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 » 수급자의 거주 여부
- » 수급자의 가구구성원 일부 전출 시 동일 생계 여부와 동일 보장가구 범위에 대한 판단
- » 수급자의 공적자료 이외의 소득·재산
- » 부양의무자의 부양 여부
- » 수급자의 근로능력·가구 특이사항 등

4. 변동사항 확인항목 및 처리사항

가. 수급자 변동사항

| 변동사항 확인 항목 | |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 처리할 일 |
|------------|-----------------|-------------|--|
| 거주지 변동 | 세대 전부 | 알림 | |
| | 가구원 일부 | 알림 | ① 동일 보장가구 여부 판단 ② 전출대상자만 시스템에서 전출처리 ③ 시스템 자동반영 후 보장가구원 재구성 및 소득 인정액 재산정 - 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 등록 |
| | 미거주 (거주불명등록) | 알림 | 해당자 보호종지 등 |
| 가구원 변동 | 출생 | × | ①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② 해산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
| | 사망 | 알림 | ①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② 장제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
| | 실종 | 알림 |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
| | 말소 | 알림 |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
| | 결혼 | × |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후 재판정 |
| | 이혼 | × | 보장가구를 분리하고 현 보장가구원에서 이혼 대상자를 삭제(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 등) |
| | 출입국 내역 | 알림 | * 사업별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

| 변동사항 확인 항목 | |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 처리할 일 |
|------------|----------------|--|---|
| | 군 입대 | 알림 |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
| | 군 제대 | 알림 |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
| | 교정시설 입소 | 알림 |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
| | 교정시설 출소 | 알림 |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
| | 가출 | 알림 | 해당자 보호 중지(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
| | 사망의심자 | 알림 | 사망의심자의 실제 사망 여부 확인 및 등록 |
| 소득·재산 변동 | 소득·재산 공적자료 | 알림 | 변동자료 확인 반영 |
| | 공적자료 외 신고소득·재산 | ×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 기타 변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알림 |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조회하여 카드 등 재발급 처리 |
| | 부양의무자의 부양 여부 | ×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 | 근로능력 | - 65세 이상자 알림 - 18세 이상자 알림 - 진단서 유효기간 알림 - 장애인 등록 알림 | - 의료급여 종별 변경 및 근로능력 재판정 대상자 안내 - 근로능력 재판정 실시 |
| | 가구 특이사항 | ×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나. 부양의무자 변동사항

| 변동 항목 | |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 처리할 일 |
|--------|--------------|-------------|--|
| 거주지 변동 | 세대 전부 | 알림 | 부양의무자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부양능력 재판정 |
| | 가구원 일부 | 알림 |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 | 미거주 (거주불명등록) | 알림 | 해당자 보호중지 등 |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변동 항목 | | 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 처리할 일 |
|-------------|------------------|----------------|--|
| 가구원 변동 | 출생 | ×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 | 사망 | 알림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 |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출입 | 알림 | 부양의무자 가구원 여부 판단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 능력 재판정 |
| | 말소 | 알림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 | 결혼 | × | 부양의무자 가구원 등록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 | 이혼 | × | 부양의무자 가구원 삭제 후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 | 군입대, 군제대 | 알림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 | 교정시설 입출소 | 알림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조정 및 부양능력 재판정 |
| 소득·재산 변동 | 소득·재산 공적자료 | 알림 | 변동자료 확인 반영 후 부양능력 재판정 |
| 기타 변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인적사항 변경처리 |
| | 부양의무자의 부양 여부 | ×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 | 가구 특이사항 | × | 상담 등을 통한 변동사항 확인 반영 |

다.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 소득·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일을 알려줌 (알림기능)

* 사망·말소 시 자동으로 자격을 중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줌(알림기능)

»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 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종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 » 보장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 시스템에서 제공된 변동일을 기준으로 함
 - 변동사항에 대해 당월 미처리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되며, 변동처리 후 해당월 급여변동사항의 상계, 소급절차를 진행하여야만 익월 급여 변동 가능
- »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통보되는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
- » 공적연계자료의 변동사항에 대한 처리 현황은 중앙 전담기관에서 모니터링 실시
 - 가구구성 변동사항(가구원 인적, 소득·재산 등) 처리 현황
 - 부양의무자 변동사항(가구원 인적, 소득·재산 등) 처리 현황
 -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분에 대한 반영 시점

라. 입수자료별 처리 방법

- » (교정시설 입·출소자, 군 입·제대자) 정보시스템의 변동알림을 통해 변동사항을 확인
 - (교정시설 입소자) '입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중지(정지)
 - *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형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교정시설 입소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지급 중지
 - (군입대자*)입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 중지
 - * 공익근무원, 상근예비역등 제외
 - (교정시설 퇴소자, 군 제대자의 처리) 급여신청은 급여중지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가능
 - * 단, 장애인연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정 전까지는 이전 기준(소멸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을 적용
- » 장기 출국자 처리 방법
 - 비수급 조사가구원*에 대해서는 출·입국 사실 등을 변동알림으로 통보하고 소득·재산도 조사
 - * 기초연금의 65세 미도래 배우자(사실혼 포함), 보육·양육수당, 부모급여 수급자의 부모
 - 출입국 등에 따른 중지 대상자는 개인을 보장중지 처리하고, 보장가구원에서는 제외 처리하되 조사가구원에는 포함
 - * 기초연금의 장기출국자(해외체류 60일 이상자의 경우)는 지급정지 대상으로 처리하고, 입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출·입국 기록은 있으나 1회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정보 시스템에 중점관리자로 등록·관리하고, 방문조사를 통해 비용의 출처 등을 확인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경우 1회 해외체류기간의 기준을 60일로 함

참고 해외 장기 체류 의심자 관련 처리 절차

해외 장기체류 의심자 정보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제공

※ 해외 장기체류 의심자의 경우 급여 자동 미생성 및 변동 알림되므로 반드시 담당자가 확인 후 보장중지 여부 결정 필요

▶ 급여별 처리 방법

-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전제로 한 급여*
조사일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보장중지되며 해당 급여도 당연 중지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인 경우 조사일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하면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도 지급 중지
- 보육료·양육수당*·부모급여**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 지급을 정지하며 재입국 시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 보육료·양육수당 : 출국한 경우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급, 익월부터 지급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부모급여 : 출국한 경우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 지급, 익월부터 지급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

마. 거주지 변경 처리

▶ 보장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변경 시 처리방법

| 구 분 | 사업별 | 구 거주지에서 할일 | 신 거주지에서 할일 |
|------------------|--------------------|---|--|
| 가구 전체 거주지 변경 | 전체 * 긴급복지 제외 | ① 시스템에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 ①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②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급여 실시 |
| 가구원 일부 거주지 변경 | 국민기초 생활보장 | ① 시스템에서 전출사항 알림 ② 동일 보장가구 여부 판단 - 동일 보장가구 해당 : 전출 미처리 - 동일 보장가구 미해당 : 전출 처리 ③ 전출처리 한 경우 보장가구원수 변경 ④ 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 ① 시스템에서 전입 사항 알림 ② 동일 주소지내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동일 보장가구원 유무 확인 ③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 급여 실시 |

| 구분 | 사업별 | 구 거주지에서 할일 | 신 거주지에서 할일 |
|----|--------------------|--|---|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 ① 시스템에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 ①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②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급여 실시 |
| | 긴급복지 지원 | ① 시스템에서 전출사항 알림 ② 동일 보장가구 여부 판단 ③ 동일 보장가구에 미해당하는 경우에 전출 미처리 ④ 지원대상 가구원수 변경·급여변경 등 | ① 시스템에서 전입사항 알림 ②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의 위기상황 계속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 후 지원 결정(가구원 변동 시 사후조사 추가 실시) |
| | 영유아 보육 | ① 시스템에서 수급자(영유아)의 전출 시에만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② 수급자(영유아)의 전출 시 전출통보 | ① 시스템에서 수급자(아동)의 전입 시 자동처리 후 알림 ②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급여 실시 |
| |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 | ① 시스템에서 서비스 수급자의 전출 시에만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서비스자격 중지 ② 서비스수급자의 전출시 전출통보 | ① 서비스 수급자의 전입 시 시스템에서 알림 ② 대상자가 받던 서비스가 신거주지에서도 지원 가능한 서비스 여부 확인 |
| | 한부모 가족지원 | ① 시스템에서 부/모의 거주지로 전출 자동처리 후 알림 | ① 시스템에서 전입 자동처리 후 알림 ② 거주지 변경에 따른 확인조사 후 복지급여 실시 |

※ 원본서류 최초 신청지에서 보관,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하여 이송

» 복지사업별 보장기관의 기준

| 구분 | 국민기초 생활보장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 긴급복지 지원 | 영유아 보육 | 가정양육수당 | 사회복지 서비스이용권 대상(바우처) | 한부모가족 지원 |
|-------|----------------------------------|----------------------|---------------------------|----------------|----------------------|----------------------|------------------------------------|
| 보장 기관 | 동일 보장 가구의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이용시설 소재지 시·군·구 |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인 부나 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

예시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원 1인이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 보장가구로 보호받는 등록 장애인인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단위 급여이므로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지원하고, 장애인복지 급여는 개인단위 급여이므로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지원

예시 2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노인부부가 주민등록이 분리되는 경우 기초생활 보장급여는 가구단위의 급여이므로 존속인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지원하고, 기초연금은 개인단위의 급여이므로 각각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지원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III 기타 관리

1. 개요

- » 복지대상자별 자격 정보 및 급여·서비스 제공 내역을 분석하여 부정·중복 지원을 차단하고 누락 서비스를 발굴·지원하여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소득·재산, 근로능력, 부양관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을 통합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확인조사 실시

2. 누락·추가서비스 안내

- » 수급자 중 개별 급여·서비스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만 현재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누락 급여·서비스를 조회하여 안내
 - 정보시스템의 복지대상자별 자격 정보 및 급여·서비스 제공 내역을 분석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한 급여·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 안내
-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 : 교육급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의료급여 자격이 없는 경우 : 의료급여 자격 취득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이나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 기초연금 지급

참고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권리구제 서비스

| |
|---|
| 누락서비스 관리 ↔ 장애인누락서비스 대상자 |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중 서비스 확인 대상자 (추출기준) : 장애인연금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혜서비스는 일시 중지된 대상자 |
| 장애인연금(선정기준완화) 추가 신청가능자 (추출기준)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기준 3급 중복장애인) 대상자 중 장애인연금 서비스가 없는 대상 |
|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 기초연금수급자 중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 장애인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자 중,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연금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중 현재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참고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권리구제 서비스

| | |
|--|---|
| <p>누락서비스 관리 ☞ 장애인누락서비스 대상자</p> <p>기초생활수급자 경증장애인 중 장애수당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장애인</p> <p>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등록장애인(18세 미만) 중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8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장애아동수당 수급 자격이 없는 자</p> <p>확인조사 이후, 장애(아동)수당(기초) 탈락자이나 중위소득(50%) 범위안에 들어오는 대상자 (추출기준) 최근 1년 이내, 장애(아동)수당(기초) 탈락자 중 차상위(기준중위소득 50% 이내)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대상자</p> <p>수급희망이력제 사전신청자 중 장애(아동)수당 신청 가능자 (추출기준) •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수급권자 중 장애인등록 신청 시 수급희망 사전신청 동의한 대상 •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 장애인</p> | <p>제1장 상담·신청</p> |
| <p>누락서비스 관리 ☞ 연령도래자</p> <p>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자(만 21세) (추출기준) :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21세 도래로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이 됨</p> <p>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자(만 18세) (추출기준) :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18세 도래로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 * 학교 재학 여부 반드시 확인(학교 재학 중인 18~20세 이하는 장애아동수당 수급)</p> <p>중증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인 중증장애아동 중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자(18세) (추출기준) : 중증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인 중증장애아동이 18세 도래로 장애인연금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p> <p>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장애수당 전환 대상자(만 21세) (추출기준) :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21세 도래로 장애수당 전환대상이 됨</p> <p>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장애수당 전환 대상자(만 18세) (추출기준) :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18세 도래로 장애수당으로 전환해야 할 대상으로 예상되는 자 * 학교 재학 여부 반드시 확인(학교 재학 중인 18~20세 이하는 장애아동수당 수급)</p> <p>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신청 가능자(만 65세) (추출기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65세 도래자</p> <p>※ 연령도래자 제공시점 : 연령도래 1개월 전 및 2개월 전</p> | <p>제2장 조 사</p> <p>제3장 보장결정</p> <p>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p> <p>제5장 사후관리</p> |

» 신청 시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면 직권으로 추가 신청(보장결정 시에도 누락 서비스를 조회하여 안내)

» 연령 변동에 따라 추가서비스 신청 가능자를 조회하여 안내

- 예시 • 65세 도래자 : 기초연금 신청 안내, 의료급여 종별 변경(2종 → 1종)
- 기초생활수급자 중 학비지원 신청안내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변경 안내

제6장
서 식

- » 전년도 급여신청자 중 신년도 사업기준 변경으로 수급권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를 조회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기능
 -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가정 대상자에 대해 실시
 - 시·군·구에서는 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를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3. 중복 급여·서비스 방지

- » 정보시스템의 복지대상자별 급여·서비스 내역을 분석하여 동일 대상자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는 급여·서비스를 차단
 - 서비스 신청 시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들을 알림기능으로 제공하여 중복지원 사전 차단
 - 기존 수급자들의 급여·서비스 내역을 분석하여 중복지원되는 급여·서비스를 조회하여 알림으로써 사후차단

» 기타 지원제외 대상

| 사업명 | 급여 및 서비스명 | 지원 제외대상 |
|------------|----------------------|---|
| 기초생활 급여 | 생계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자활급여특례자 • 노숙자쉼터 또는 한국강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 | 주거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자활급여특례자 • 보장시설수급자 • 의료기관에 3개월 이상 입원한 1인 가구로서 사용대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주거(운영비 포함)를 제공하는 '공동생활 가정, 노숙자 쉼터, 한국강생보호공단시설' 등에 거주하는 수급자 |
| 자활지원 | 자활소득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 자활급여특례자 • 보장시설수급자 |
| |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교육·자활급여특례자 • 보장시설수급자 |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

| 사업명 | 급여 및 서비스명 | 지원 제외대상 |
|------------------------------|-----------------|--|
| 노인일자리지원 | 노인일자지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급여 |
| 저소득장애인 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도에 동 사업자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02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재(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 통신보조 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 시 행복이음을 통해 중복 여부 확인 |
| |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대상인 고등학생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단, 세부 지원 내용(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 |
| 장애인자립 자금대여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소금융사업 중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자금’, ‘자영업자 관련 대출 자금’ 융자 대상 |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 어린이집미이용 아동지원 | 양육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변동신청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아동이 당해 월에 보육료 신청을 할 경우 - 변경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양육수당은 지원하지 않고 보육료 지원(변경 신청일부터) - 변경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양육수당은 전액 지원하고 보육료 지원 불가(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제공 가능)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사업명 | 급여 및 서비스명 | 지원 제외대상 |
|--------------|-----------------------|--|
| 한부모가족지원 | 한부모가족 교육비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비 감면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음 |
| | 복지자금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행정기관과의 중복 용자 주택자금 용도로 대여는 불가함 |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 발달재활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재활서비스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 |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
|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 |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
| |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
| |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언어재활서비스 |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기본서비스 A형, B형, C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기요양서비스사업 긴급돌봄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사업 등 타 공적 돌봄 서비스 |

| 사업명 | 급여 및 서비스명 | 지원 제외대상 |
|------------------------|--------------------|--|
| 긴급돌봄 지원사업 | 긴급돌봄 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일상돌봄 기본돌봄 서비스 이용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퇴원후돌봄군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이용자 재가 의료급여 사업 돌봄 지원 이용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26.3.27. 시행) 內 재가돌봄 서비스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u>긴급돌봄 지원 사업과 유사한 재가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u> |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 중증장애아돌봄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급여대상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 왼쪽 사업의 급여·서비스는 오른쪽 “지원 제외대상”에게는 지원할 수 없음

4.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부적정 수급자 검색

-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별 선정기준(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선정 요건)과 개인·가구별 조건(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을 비교하여 기준 초과자 검색

※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자,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중지대상, 연령기준 초과, 장애 등 자격기준 변경,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중지되었는데 경증장애수당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으로 인해서 부가되는 복지급여에 대해서 중지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 조회결과 미적용 사례 등

》부적정수급 의심자 등록

- 부정·부적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등록하여 관리

유형 재산은닉, 부양의무자 누락, 위장이혼자, 차량명의도용, 사실혼 미신고, 기존부정수급이력자 등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 오프라인(off-line) 조사정보 제공

- 정보시스템에 미연계된 소득·재산 등 관련 자료를 필요시 보건복지부에서 입수하여 기준초과 또는 급여조정이 필요한 자의 명단 제공

예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골프장·콘도미니엄 등 각종 회원권, 복권당첨금, 전국 화장장 등의 사망자 정보 등

» 중점관리대상자 처리

-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확인 후 처리 내용(확인조사 시기 및 결과 등)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 보장비용 환수 절차를 따름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에 조사 의뢰
 - ☞ 복지부는 의뢰 건을 검토하여 자체처리 가능으로 판단 시 해당 지자체로 반송하고 중앙의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 후 결과를 송부

5. 급여중지자 관리

- » 급여중지(탈락) 후 5년 이내에 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서 5년 이내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 급여 중지자(탈락자)의 급여 재신청에 따른 조사 등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전입 후 즉시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상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된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 재신청 시 신청(상답) 화면에서 서비스 수혜이력 및 중지사유 확인 가능

6. 의사무능력(미약)자 관리

» 의사무능력 대상자 등록

- 기존 오프라인으로 관리되는 대상자를 정보시스템에 대상자 등록 및 이력관리
- 읍·면·동 담당자는 「인적정보 조회」를 통한 수급자를 조회하여 의사무능력 대상자 선택, 대상자·급여관리자·업무담당자 등 관련 정보 입력(의사무능력 대상자 유형)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등

» 의사무능력자 조회

- 등록된 의사무능력 대상자 조회 및 등록된 정보 수정
- 관외 대상자, 제외 대상자 조회
- 의사무능력자 관리 및 점검결과에 대한 개인별 점검 유무를 화면상 해당 연도 반기별 조회

» 의사무능력자 점검결과 등록

읍·면·동 담당자는 반기별 의사무능력자에 대하여 급여관리 상황 확인 및 점검 결과를 정보시스템 「점검결과표」에 입력 및 결과 수정 가능

※ 점검결과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점검표 [국기초 서식 43호] 참고

- 등록된 의사무능력자의 ‘대상제외’ 기능 부여, 제외사유 입력

※ 반기별 급여관리 점검결과를 정보시스템 「점검결과표」에 반기 이내 등록

예시 상반기 의사무능력자 관리 - 7월 15일까지 점검결과 등록 완료

7. 사망의심자 정보 관리

» 목적

- 화장장, 병원 등 사망 관련 정보를 ‘사망의심자 HUB’로 통합 관리하여, 사망신고 지연 및 기피에 따른 복지급여 과·오지급을 방지하고 사망자 관련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 사망의심자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모은 정보(화장·매장정보, 병·의원, 장기요양 시설 정보)

»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3조제2항([별표 1] 제26~27호)
- 「사회보장급여법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 처리 방법

- (입수) 사망의심자 정보를 보유한 행정망 내 5개 입수기관과 정보 연계, 행복이음 화면에서 사망의심자 정보 조회 기능 제공

※ 행복이음 > 변동·사후 > 사망의심자HUB > 사망의심자 사망확인조회

| 번호 | 입수 기관명 | 개통일자 | 입수자료 |
|----|----------------------|--------------|----------------------|
| 1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13. 3. 1. | (내국인 정보) e하늘 사망(화장)자 |
| | | '15. 8. 10. | (외국인 정보) 외국인 사망의심자 |
| 2 | 국민건강보험공단 | '13. 3. 1. | 장기요양시설 사망자 |
| | | '17. 12. 20. |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사망자 |
| 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3. 3. 1. | 병원 사망자 |
| 4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안장시스템) | '20. 10. 6. | 국립묘지 안장 신청자 |
| 5 | 행복이음 지자체 | '14. 1. 1. | 장제급여 신청자 |

- (변동알림 및 급여미생성) 사망의심자 정보 입수된 수급자의 경우 보장증지 등 처리를 위해 변동알림을 제공하며, 동시에 급여는 자동으로 다음 달부터 미생성 처리

※ 행복이음 > 변동·사후 > 변동관리 > 변동집계현황 : 처리할일 '사망의심자' 알림유형

- (지자체 검토) 사망의심자 정보 중 “사망의심” 정보의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직관*하여 수정 처리, “사망확정” 정보는 사망 처리에 준하여 조치

* (직관) 사망의심자 정보는 사망신고 지연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공적자료로 추가 확인이 불가능하며, 직접 업무담당자가 당사자의 사망을 직접 관찰(직관, 直觀)한 결과를 행복이음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사망의심) 입수기관으로부터 사망의심자 정보로 취급 중에 있으나, 타 처리기관에서 사망확인이 2차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지자체에서 실제 사망 여부를 직접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 (사망확정) 입수기관 및 타 처리기관에서 사망 확인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지자체에서 실제 사망 여부를 직접 확인이 사실상 불필요함(다만, 최근 사망확정자임에도 생존자가 사후 확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행복이음 > 변동·사후 > 사망의심자HUB > 사망확인 및 등록관리

- (검토결과 입력) 확인 결과 '사망' 및 '생존' 등 처리하며, 생존 등록 시 미지급 급여 소급 지급 처리(사망자가 아닌 수급자의 급여가 미생성 시 급여미생성 사유가 '사망확인대상자' 일 경우 사망확인등록에서 확인결과를 '생존'으로 입력)

* 확인결과가 '사망'으로 등록된 1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 자격 및 서비스가 자동 중지됨에 유의('15년 2월~)

* 급여가 미생성된 사망의심자가 '생존'으로 확인된 경우, 사망의심자 검토(확인) 결과를 '생존'으로 등록하여야 급여가 정상 생성됨

※ 행복이음 > 변동·사후 > 사망의심자HUB > 사망확인 및 등록관리

- (정보 최신화 및 공유) 처리 결과('사망', '생존')에 대해 타 활용기관에 해당 사실을 공유하여 부당한 민원인 불편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 방지

» 유의사항

- 사망의심자에 대해 현장 방문 또는 유선 통화를 통해 사망 사실 확인(건강을 묻는 등 우회적으로 질문)
- 등록된 사망의심자 확인결과는 타 기관에도 공유되며, 타 기관에서 등록한 확인 결과에 대해서도 조회 및 참고 가능
- 사망 확인자에 대해 자격·서비스 중지 등 사업별 업무지침에 따라 처리
(예 :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권 상실 조치)
-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확인 불가할 시 보장기관 판단하에 자격 일시정지 등 조치

IV 보장비용 환수

1. 보장비용의 정의

» (광의) 각 법령에 의해 지급된 급여 실시비용 및 인건비와 사무비 등 보장 업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 (협의·일반적 개념) 생계·주거급여 등 급여 실시비용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 보장비용 환수 관련 규정

| 구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인복지 | 긴급복지지원 | 보육료양육수당 | 한부모가족지원 |
|--------|---|--|---|--|--|--|---|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 기초연금법 제19조 | 장애인연금법 제17조 | 장애인복지법 제51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
| 용어 | 비용징수 | 환수 | 환수 | 환수 | 비용환수 | 비용환수 | 비용징수 |
| 환수대상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수급자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은 경우 - 장애인연금을 받은 후 그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 장애수당 등을 받은 후 그 장애수당 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잘못 지급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 심사 결과 적정하지 않은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 받은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 |
| 환수대상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연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증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포함) - 장애인자녀교육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주거지원 - 교육지원 - 해산비·장제비 - 연료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양육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양육비 - 학용품비/생활 보조금 • 청소년 한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자립지원수당 - 검정고시비/고교학습비 - 자산형성계좌 |

3. 보장비용 환수 절차

가. 대상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나. 환수절차

| | |
|-------------|--|
| ① 보호중지 등 처분 | •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한 보장중지 및 급여액 변경 등 처분 |
| ↓ | |
| ② 부정수급 확인 | • 선정기준 초과 및 소득변동자에 대한 부정수급 여부 확인 |
| ↓ | |
| ③ 처분사전통지 |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
| ↓ | |
| ④ 보장비용환수결정 | • 결정기관 - 보장기관이 결정 * 기초생활의 경우 필요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장기관이 결정 • 결정내용 - 환수부합 여부, 환수대상 - 부정수급 기간, 환수 금액 - 납부방법 : 일시납, 분할납부, 상계처리 등 |
| ↓ | |
| ⑤ 납부통지 | •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
| ↓ | |
| - 납부거부(1차) | |
| ⑥ 납부독촉 |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독촉 |
| ↓ | |
| - 납부거부(2차) | |
| ⑦ 체납처분 | •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 압류 : 환수대상자 소유 재산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 - 경매처분 : 지자체 장이 환수대상자 소유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하는 절차 |
| ↓ | |
| ⑧ 환수금액 처리 | • 당해 연도 급여분: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처리 • 과년도 급여분: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다. 환수 절차별 처리방법

1) 부정수급 확인

- » 선정기준 또는 급여기준 초과자에 대해 보장중지 또는 급여액 변경 등의 처분을 함
- » 선정기준 초과 또는 급여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
- » 부정수급의 확인은 수급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이 행함
- » 시·군·구 담당자는 부정수급자에게 보장중지 처분 통지서 발송

2) 보장비용 환수 결정

-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내용 검토결과 보장중지처분이 타당하고 부정 수급자인 경우 비용환수대상자로 등록
- » 부정수급에 대한 납부대상자 정보(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등록
- » 환수대상자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환수대상금액을 산정하여 등록
- » 환수대상자별 환수방법(일시납·분납·상계), 환수·반환 여부, 환수방법(일시납·분납·상계)에 따른 환수계획을 등록
 - 환수·반환 여부를 판단하여 반환인 경우 상계 여부를 결정하고, 상계처리인 경우 상계처리 계획을 등록(상계연도, 상계주기, 개월 수, 환수금액 등)
- » 필요시 산출내역을 심의기구에 상정하여 환수제외금액 및 제외대상 여부를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결정결과를 등록
 - 심의기구 : 생활보장위원회(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긴급복지)

3) 보장비용 환수절차

- »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발송함(납부기한 30일)
- » 납부대상자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 내 미납 시 납부독촉
 - 독촉 납부통지서 발송(2차 납부기한 30일)

» 체납처분

- 독촉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리 절차(압류, 경매처분 등)를 진행함
- 체납처분에 대한 법적조치내역을 등록함

» 정리보류

- 보장기관이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정리보류를 수행하고, 정리보류 내역을 등록함

» 환수처리내역등록

- 환수처리된 것을 확인 후 환수내역을 등록함

» 환수금액의 처리

- 당해 연도 급여분: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처리
- 과년도 급여분: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V 반환명령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1. 법적 근거

| 사 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 아동복지 | 한부모가족지원 |
|--------|----------------|--------------|------------|---------------|
| 관련 법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 아동복지법 제33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6조 |
| 용어 | 반환명령 | 반환 | 반환명령 | 반환명령 |

제5장
사후관리

2. 반환요건 및 대상

- »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거나 상계하여 반환 완료

※ 일부의 반환은 반환의 감면인 경우에 해당

제6장
서 식

3. 반환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 » 이미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반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반환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환금액의 감면 및 면제를 결정
 - 위의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 경과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반환의 감면 결정 후 개최되는 당해 연도 첫 회의)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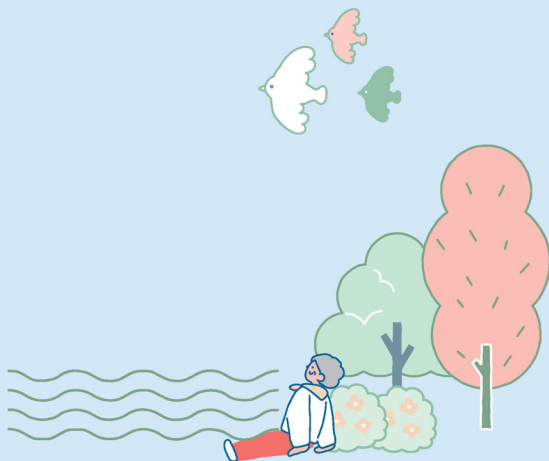
4. 반환 절차 및 처리방법

| | |
|------------|---|
| ① 과잉지급분 발생 |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 |
| ↓ | |
| ② 반환 결정 | 반환의 감면사유 해당 여부 확인 |
| ↓ | |
| ③ 반환 통지 | 반환 결정 즉시(3일 이내) 통지(15일 이내의 납부 기한) |
| ↓ | |
| - 반환거부(1차) | |
| ④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수급자에게 납부를 독촉 |
| ↓ | |
| - 반환거부(2차) | |
| ⑤ 체납처분 |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 : 반환대상자가 소유하는 재산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 경매처분 : 보장기관의 장이 압류한 반환대상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하는 절차를 진행 |
| ↓ | |
| ⑥ 반환금액 처리 | 당해 연도 급여분: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년도 급여분: 지방자치단체(사·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

제6장

서식

- Ⅰ.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 Ⅱ. **사업별 개별서식**
-



서식 목록

I. 사회보장급여 공통서식

| | |
|---|-----|
|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173 |
|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신규·변경) | 177 |
| [별지 제1호의3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78 |
| [별지 제1호의4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180 |
| [별지 제1호의5서식]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183 |
| [별지 제2호서식]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 | 184 |
| [별지 제3호서식]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185 |
| [별지 제4호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 186 |
| [별지 제5호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 통지서 | 188 |
|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결정(대상제외)·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 189 |
| [별지 제7호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 207 |
| [별지 제8호서식]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 210 |
| [별지 제9호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 | 223 |
| [별지 제10호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 225 |
| [별지 제11호서식]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226 |
|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 227 |
|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228 |
| [별지 제14호서식]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결정(적합)·결정(대상제외) 통지서 | 231 |
| [별지 제15호서식]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 232 |
| [별지 제16호서식] 현장 조사서 | 234 |
| [별지 제17호서식]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 235 |

II. 사업별 개별서식

| | |
|--|-----|
| [사업별 서식 제1호]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 236 |
| [사업별 서식 제2호]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237 |
| [사업별 서식 제3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241 |
| [사업별 서식 제3-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242 |
| [사업별 서식 제4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243 |
| [사업별 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244 |
| [사업별 서식 제6호] 지출실태조사표 | 245 |
| [사업별 서식 제7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246 |
| [사업별 서식 제8호] 고용·임금확인서 | 247 |
| [사업별 서식 제9호]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 248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1.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쪽 중 1쪽)

| | |
|------|------|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 주소 (실거주지 주소 ¹⁾ : | | | 휴대전화 ²⁾ 전자우편 |

| 가족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 건강상태 (장애/질병) | 취업상태 | | 전화번호 (집/직장) |
|---|-------------|----|-------------------------------|-----------------|----------------------|-----------------|------|-----|----------------|
| | | | | | | | 직업 | 직장명 | |
| | | | | | | | | | |
| 1. 배우자 관계 ³⁾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2. 외국여권 소지자명 ⁴⁾ : 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 ⁵⁾ :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 ⁶⁾ : _____, _____ | | | | | | | | | |

| | | | | | | |
|---------------------|--------------|----|-------------------------------|----|------|------|
| 부양의무자 ⁷⁾ | 수급권자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 주소 | 가구원수 | 전화번호 |
| | 의 | | | | | |
| | 의 | | | | | |
| | 의 | | | | | |
| | 의 | | | | | |

| | | | | | |
|----------|-------------|--|-------|------|----------------------|
| 급여 계좌 | 신청인과의 관계 | 성명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비고(사유) ⁸⁾ |
| | | | | | |
| 통지방법 | |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 | | |

작성방법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를 모두 기재
- 2) 원활한 결과 통지를 위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3),4) 해당자에 한함
- 5),6)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 7)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8) 동일보장기구의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4쪽 중 2쪽)

| 보장구분 | 사회보장급여 내용 | |
|----------|--|--|
| 기초생활보장 |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차 ⁹⁾ <input type="checkbox"/> 기타 ¹⁰⁾) ※ 유의사항 -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로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보장결정된 이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을 방문하여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바우처 제공) | |
| 영유아 | <input type="checkbox"/> 부모급여(현금) (대상자 이름 : _____)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대상자 이름 : _____), (<input type="checkbox"/> 가정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농어촌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 이름 : _____)) | |
| 아동수당 | <input type="checkbox"/> 지급대상아동이름: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 |
| 아동 · 청소년 | <input type="checkbox"/>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② 급식(중식)비 ③ 고교학비지원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바우처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미신청 인터넷통신사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브로드밴드 <input type="checkbox"/> LG U+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_____ 주민번호 : _____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에 제공 동의(<input type="checkbox"/>) |
| |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년가정 보호비 |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특별지원 (<input type="checkbox"/> 연장신청) |
| 노인 |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동시신청) | |
| 장애인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input type="checkbox"/> 배우자 동시신청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부가급여)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이가족양육지원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
| 한부모 가족 |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족지원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 |
| 기 타 |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확인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자활급여 <input type="checkbox"/> 시설이용·입소 <input type="checkbox"/> 자산형성 <input type="checkbox"/> 타법 의료급여 () <input type="checkbox"/>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

| 복지대상자 요건 감면 (대행)신청 | | | |
|--------------------|--|--|--|
| 자격구분 |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의료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 | | |
| 감면 서비스 | 전체 신청 | <input type="checkbox"/>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 |
| | 선택 신청 |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 | <input type="checkbox"/> TV수신료 면제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요금 <input type="checkbox"/> 지역난방요금 <input type="checkbox"/> 도시가스요금 <input type="checkbox"/>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건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이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_____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_____ 이동통신사 KT SK 텔레콤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_____ 사업자명 : _____ 고객번호 : _____)
-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 _____ 전화번호 : _____ 사업자 :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 가족 상황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휴대전화 번호 | 이동통신사 |
|-------|----------|-----|------------------|---------|--|
| | | | | |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
| | | | | |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
| | | | | |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SK 텔레콤 <input type="checkbox"/> LG 유플러스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확 인 (√ 체크) |
|--|------------|
| <p>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정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사항, 가족관계등록사항, 기초생활보장신청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인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험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공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할 수 있습니다.</p> | [] |

(4쪽 중 3쪽)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4) |
|--|---|---|
| <p>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p> <p><input type="checkbox"/>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액번호</p> <p><input type="checkbox"/>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p> | | |
| <p style="text-align: center;">선택적 동의</p> <p style="text-align: center;">(아래 선택적 동의 항목은 각각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항목 미동의시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 |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4) |
| 기초생활보장 | 1.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생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 2.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부모급여 | 3.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신청한 것에 동의합니다. | [] |
| 장애편인금 | 4.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한 경우 만세 연령 도래시 양육수당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서비스연계 | 5.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 |
|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7.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외 및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8.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금융·신용·보장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
| 유의 사항 | |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4) |
| 공통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소멸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배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규약생 등 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요건이 하중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 6.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등 구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안내 및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에너지바우처 담당부서(산업부서 등)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
|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 7.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 |
| | 8.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사정보, 가족관계등록전사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9.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생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거부 의사가 없으면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¹²⁾ 성명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동사신청 시)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제6장
서식

9) 민간·공공인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10) 가정위탁(양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1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1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4쪽 중 4쪽)

| 안 내 사 항 | | |
|---|--|---|
| 신청기간 | -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인 경우 출생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에 신청하여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처리기한 | - 14일 :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시 30일) - 30일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부모급여(연장시 60일),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 60일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 |
| 관계법률 | 보장구분 | 해당 법률 |
|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
| | 영유아 |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
| | 아동·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
| | 노인 | 기초연금법 |
| |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
| | 기타 |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
| 신청시 구비서류 | | 추가 제출서류 |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¹³⁾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통장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청소년한부모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2.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권자에 한함)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 노인, 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분 일부담 경감, 자산형성) | 소득·재산신고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 |
| 제출하는 곳 |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 |

13)「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7.1>

|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 | | | | | | | | | | | | | |
|--|-----------------------|---|---|--|---|-----|-----|-----|-----|-----|--|--|--|--|--|
|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가구원 성명 ¹⁾ | | | | | | | | | | | | | | | |
| 소득 사항 | 근로 소득 | 상시근로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 |
| | | 일용근로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 |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임업소득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
| | | 어업소득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
| | | 기타(자영업)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
| | | 이자소득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
| | | 연금소득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
| | 기타 소득 |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
| 공적이전소득 ²⁾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 |
| 기 타 (자차채 지원금등) | | | | | | | | | | | | | | | |
| 재 산 사 항 |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 | 원 | 토 지 | 원 | | | | | | | | | | |
| | 선 박 | | 원 | 임 목 재 산 | 원 | | | | | | | | | | |
| | 항 공 기 | | 원 | 어 업 권 | 원 | | | | | | | | | | |
| | 자 동 차 | | <input type="checkbox"/> 차량명() <input type="checkbox"/>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기용) | | | | | | | | | | | | |
| | 임 차 보 증 금 | | <input type="checkbox"/> 전·월세보증금(원) <input type="checkbox"/> 상가보증금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 | | | | | | | | | | | |
| | 금 용 재 산 | | | | | | | | | | | | | | |
| | 동 산 | | <input type="checkbox"/> 소 (마리, 원) | 분 양 권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돼지(마리, 원) |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기타가축(마리, 원) |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종묘(원) | | | | | | | | | | | | |
| 기 타 산 정 되 는 재 산 | | <input type="checkbox"/> 기계·기구류(원) | 조 합 원 입 주 권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 | | | | | | | | | | | | |
| | | 회 원 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산 정 되 는 재 산 | | 소계 (A-(B+C+D)) | | | | | | | | | | | | | |
| | | (A) 일정기간 ³⁾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 | | | | | | | | | | | | |
| | |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 | | | | | | | | | | | | |
| | | (C) 부채 상환액 | | | | | | | | | | | | | |
| 부 채 | |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 | | | | | | | | | | | | |
| | | 금 용 기 관 대 출 금 | | 원 | 금 용 기 관 외 의 기 관 대 출 금 | | 원 | | | | | | | | |
| | | 임 대 보 증 금 | | | | | | | | | | | | | |
| | | 개 인 간 부 채 | | <input type="checkbox"/>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 | | | | | | | | | | |
| 가 구 특 성 지 출 비 용 ⁴⁾ | | <input type="checkbox"/>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원) |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원) | | | | | | |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원)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5.7.4.>

(양쪽)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 세대주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 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³⁾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간접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 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가능성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제1장
상답·신청

제2장
조 사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유 의 사 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및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간담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인돌봄 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획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6.1.1.>

(3쪽 중 1쪽)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첫만남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는 30일)

|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 |
| | 주소 | | | 휴대전화 전지우편 | | | |
| 가족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 | 동거여부 | 건강상태 (장애/질병) | 직장명 | 전화번호 (집/직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우자 관계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input type="checkbox"/>) | | | | | | | |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성명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사유) | |

| 제출처 | | 사회보장급여 내용 | | | | | |
|---------------|---|--|--|---|---|--|---|
| 예비신청인 주민센터 | [] 보육료지원 · 유아학비지원 *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포함 | 지원대상자 | 신청구분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기본(<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연장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3~5세)(<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6~12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input type="checkbox"/> 사업유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기본(<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연장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3~5세)(<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6~12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input type="checkbox"/> 사업유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기본(<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0~2세) 연장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방과후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3~5세)(<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장애아 보육료(6~12세)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유아학비(3~5세)(<input type="checkbox"/> 사업유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 | |
| | |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0, 1세 아동은 부모급여(보육료) 자격으로 어린이집(0~2세)로 신청하면 됩니다. | | | | | |
| | | * 동일보장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다량결제(OA) 또는 입류방지통지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 | | | | |
| | | [] 가사간병방문지원 | 지원대상자 | 신청요건(1개 선택) | | | 서비스시간 |
| | | | |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중증질환자 <input type="checkbox"/> 희귀난치성질환자 <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 <input type="checkbox"/> 조손가정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정(법정보호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군구정장이 인정하는 자 | | | <input type="checkbox"/> 월 24시간 <input type="checkbox"/> 월 27시간 <input type="checkbox"/> 월 40시간 |
| | | [] 장애아동 가족지원 | 지원대상자 | 장애유형 | <input type="checkbox"/> 뇌병변장애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시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언어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9세 미만) | | |
| | 발달장애 서비스 | 장애정도 |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미등록 | | | | |
| |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input type="checkbox"/> 언어재활 <input type="checkbox"/> 청능재활 <input type="checkbox"/> 미술심리재활 <input type="checkbox"/> 음악재활 <input type="checkbox"/> 행동재활 <input type="checkbox"/> 놀이심리재활 <input type="checkbox"/> 재활심리 <input type="checkbox"/> 감각발달재활 <input type="checkbox"/> 운동발달재활 <input type="checkbox"/> 심리운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언어발달 지원 (비장애아동) | 지원대상자 |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input type="checkbox"/> 언어발달진단 <input type="checkbox"/> 언어재활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 장애유형 (부모 또는 조부모) | <input type="checkbox"/> 뇌병변장애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시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언어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 | | | |
| | [] 발달장애 인 지원 | 지원대상자 | 자녀와의 관계 | |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발달장애 인 부모 상담 지원 | 장애 유형 및 정도 | 장애유형 |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미등록(영유아) | | | |
| |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 장애 유형 및 정도 | 장애유형 |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
| | | 지원유형 | <input type="checkbox"/> 주간활동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본형 <input type="checkbox"/> 확장형) ※ 확장형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input type="checkbox"/> 방과후활동서비스 | | | | |

1) 부모급여(차액) 지급계좌로도 활용됩니다. 0,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자격 신청 시 부모급여(차액)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2쪽)

| | | | | | |
|---|---|--|--|-------------------------------|--|
| [] 지역사회 서비스 | 지원대상자 | | 서비스명 | | |
| | 지원대상자 | | 서비스명 | | |
| [] 일상돌봄 서비스 | 지원대상자 | | | | |
| | 신청요건 (1개 선택) | [] 돌봄 필요 청년·중장년 [] 가족돌봄청년 [] 기타 사근구정장이 인정하는 자 | | | |
| | 지원 유형 | 서비스 유형 (중복체크 가능) | | 서비스명 | |
| | | [] 기본서비스 [] 특화서비스 | | | |
| ※ 기본서비스 유형별 특화서비스 이용가능 개수 : 1개(A형), 2개(B형), 선택 불가(C형) ※ 기본서비스 미이용시 특화서비스 이용가능 개수: 2개(D형) | | | | | |
| [] 긴급돌봄지원 | 지원대상자 | | | | |
| | 지원 유형 (중복체크 가능) | [] 기본돌봄 서비스 [] 방문목욕 서비스 | | | |
| | 신청 사유 (중복체크 가능) | []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등으로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필요한 경우 [] 타 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 중인 경우 [] 재난피해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 | | |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지원대상자 | | 지원신청 |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 |
| | 지원대상자 | | | | |
| [] 장애인활동지원 | 지원대상자 | | | | |
| | 신청요건 |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 | |
| | 활동지원급여 | 신청유형 | [] 신규신청 [] 변경신청 [] 갱신신청 [] 노인장기요양전환자 지원 | | |
| | |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장애상태의 변화 | [] 학교생활 | |
| | | | [] 직장생활 | [] 취업가구 | |
|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 | [] 거주지 이전 | | |
|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 조손가정 (19세 미만) | | | | |
| 특별지원급여 | [] 출산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 결혼 [] 사망 [] 출산 [] 입원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 | |
| [] 첫째남아이용권 | 지원대상자 | 출생정보 | [] 국외출생 [] 복수국적 | 출생순위 [] 첫째아 [] 둘째아 이상 | |
| | 지급방식 | [] 바우처(원칙) [] 현금(사설보호 아동 등) [] 현금(보호자명의 계좌) | | | |
| | 카드정보 (국민행복카드) | [] BC(은행) [] 삼성 [] 롯데 [] KB국민(은행) [] 신한 ※ 유의사항 - 신규신청자의 경우,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BC, KB카드를 선택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 | | |
|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 지원대상자 | | | | |
| | 지원 유형 | [] 1급 유형 [] 2급 유형 | | | |
| | 의료경로 (1개 선택) | 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성 인정 | [] 정신건강복지센터 [] 대학교상담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Wee클래스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사업사업 수행기관 [] 정신의료기관 [] 기타 기관 | | |
| 그 외 |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 확인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재난피해자 | | | | |
| 보 건 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지원대상자 | 출산(예정)일 | 년 월 일 | | |
| | 지원 유형 |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인력1명 [] 인력2명) [] 산태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쌍태아 ([] 인력2명 [] 인력3명) [] 사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산태아 이상 ([] 인력2명 [] 인력4명) | | | |
| | 신청요건 | 기본 지원대상 |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소득기준 이하 | | |
| | |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인 산모 [] 경호미인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미숙아 출산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 | |
| 서비스 제공 장소 | [] 자택 [] 기타 | | | | |
| 보건소 · 주민 센터 | 지원대상자 | | | | |
| | 지원 유형 (중복 체크 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의 경우만 단독 신청 가능) | 기본지원대상 | [] 기저귀 []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 |
| | 예외지원대상 (자녀체제 사업) | [] 기저귀 []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기타 | | |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3쪽 중 3쪽)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확 인 (√ 체크) |
|---|--------------------------|
| <p>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정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 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신정보·가족관계등록전신정보(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학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호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유)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 함을 고지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p> | [] |
| 유의 사항 | 확 인 (√ 체크) |
| <p>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하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 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하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p> | [] [] [] [] |

| | |
|-----------------|--|
| <p>추가 제출 서류</p> | <p>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p> <p>3.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해당자에 한함)</p> <p>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p> <p>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한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사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p> <p>6. 첫만남이용권 지원신청 시 시설입소아동,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복수구직자, 난민 인정자, 보호자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및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격확인 가능한 서류</p> <p>7. 정신건강 심리상담 비우려사업 신청의 경우, 신청요건에 따라 아래의 서류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의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의뢰된 경우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심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국가 정신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확인된 경우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이동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이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산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산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인정결정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p> <p>8.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의 경우, ①의사진단서, 소견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등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돌봄 제공자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p> <p>9.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퇴원)확인서, 주돌봄자의 사망신고서 등 긴급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²⁾)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2.1.1.>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 | | | | | | | |
|---------------|-----------|---|-------------------------|--------------|----------------|------|--|
| 자격 구분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 | | |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세대주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
| | 주소 | | | | | 휴대전화 | |
| 감면 서비스 | | 전체 신청 |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 | | | |
| | | 선택 신청 | [] 전기요금 | [] TV수신료 면제 | [] 휴대전화요금 | | |
| | | | [] 지역난방요금 | [] 도시가스요금 | []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 |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기 고객번호 :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 ◦ 이동통신사 []KT []SK 텔레콤 []LG유플러스
- 도시가스 (사용계약자명 : 사업자명 : 고객번호 :)
- 시내·외유선전화 (계약자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자 : []KT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서)

| 가족 사항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휴대전화 번호 | 이동통신사 |
|-------|-------------|-----|-----------------------|---------|----------------------------|
| | | | | |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 | | | | |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 | | | | |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 | | | | |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요금감면 및 복지지원 연계를 (대행)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및 복지지원 연계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 정보(교육식별정보 포함)를 상기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등)
- 복지대상자 요금감면을 받을 경우, 자격변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금감면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본 감면 신청과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시내·외유선전화요금 : 시내·외유선전화사업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장
상단·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

복지대상자 [] 해산급여 []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 | | | | |
|------|---|----|---|---------------------|------------------------------------|
| 처리기간 | | 4일 | | | |
| 신청인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급여대상자 와의관계 |
| | 주 소 (사설소재지) | | | | |
|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지급계좌 | 금융기관명 | | | 예금주 | 계좌번호 |
| 해산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주 소 (사설소재지) | | | | |
| | 해산(예정)일 | 년 | 월 | 일 | 해산원인 [] 출산 [] 사산 () 명 |
| 사망자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주 소 (사설소재지) | | | | |
| | 사 망 일 | 년 | 월 | 일 | 사망원인 |
| 통지방법 |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 | | |

복지대상자로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서는 의사·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감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
|------|--|

유의사항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으로 출생·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출생·사망신고 미실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출생·사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장
상답·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1.1>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 통지서

| | | | | | | |
|-------|----------------------------------|--|------|------|------|--|
| 유효기간 |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단,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2개월간) | | | | | |
| 용자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 | 주소 | | | | | |
| 용자기관명 | | | | | 전화번호 | |
| 용자목적 | | | | 추천금액 | | |

귀하를 자금대여 대상자로 결정하고 위 용자금용기관에 통보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자금대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용자된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문의전화번호 : _____

_____ 귀하

| | |
|------|---|
| 구비서류 | - 아래 ①, ② 중 택 1 ① 본인 및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② 본인 및 보증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급명세표(소속기관장 확인) 기타 구비서류 및 연대보증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자금대여 결정통지와는 별개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거나 용자금액이 추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추천) 통지서를 받은 금융기관에서는 **자금대여 결정 결과(용자금액, 용자일자, 용자기간(거치/상환), 이자율, 상환방법(상환주기), 용자불가결정시 사유 등)**을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대여 결정통보서는 공문 시행으로 갈음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1.1.>

(5쪽 중 1쪽)

사회보장급여 [] 결정(적합) [] 결정(대상제외) []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 | | | | | | | | | | | |
|-------------|------|------|--|--|------|----------|--|------|------|--|--|
| 신청인/ 세대주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
| | 주 소 | | | | | | | | 휴대전화 | | |
| | 신청내용 | 신청구분 | | | | 급여·서비스내용 | | 전자우편 | | | |
| 비고 | | | | | | | | | | | |

제1장
상답·신청

제2장
조 사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보장급여 | 급여개시일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제3장
보장결정

- * 생계·의료·주거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군·구청장이, 교육급여 보장결정사항은 시·도교육감이 각각 통지
-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정지), 변경 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 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임치 연체 등
 - 변경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임대차 계약조건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 급여감소 :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경우 등
-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 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5.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자는 적합통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주택노후도 등에 따라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사회서비스 이용권)로 제공됩니다.
 - 교육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후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카드 포인트가 배정(개별 문자 안내)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카드 포인트가 배정된 지급 학년도 이후 다음 학년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바우처 잔액은 회수됩니다.
(예시1) '23학년도 바우처' '23년 연내 수령 시, '24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예시2) '23학년도 바우처' '24년 6월 수령 시, '24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교육급여 바우처는 유흥·사행 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 등을 제외한 교육활동 수강,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자 및 신청 여부, 사용처, 결제·환불·취소 절차, 사용 기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 한부모가족 ([] 급여지급, [] 증명서 발급) [] 장애인복지 [] 기타()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보장구분 | 보장급여 | 보장기간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부모가족 또는 장애인복지(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증명서(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입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고 72%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자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됩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0, 1세의 경우 부모급여(현금)를 대신하여 부모급여(보육료)를 수급합니다. 부모급여(현금)과 부모급여(보육료)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육료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부모급여(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수급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급여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보장급여 | 보장기간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 가정양육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이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연장보육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입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가정양육수당 수급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하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의 경우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해당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직권으로 기본보육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지급 예정 장애인연금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성 명 |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본 인 | | | | |
| 배우자 | | | | |

- 연금금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장애정도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 :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하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입류방지 동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
|------|-----|----|-----|------|--|
| 보호자 | 성명 | 관계 | | 생년월일 | |
| | 주소 | | 연락처 | | |
| 지원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
| | 주소 | | 담당자 | | |
| | | | 연락처 | | |
| 지원내용 | | | | | |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연금지급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성명 | 기초연금 급여액*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본인 | | 원 | | |
| 배우자 | | 원 | | |

* 이 금액은 예상연금액으로 실지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상실, 변경되거나 지급정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권 상실**: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변경**: 기초연금 급여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기초연금 지급정지사유 소멸
 - **정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수급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법」 제11조, 제28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아동수당 급여액 및 지급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지급금액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급여개시일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3.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생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단,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찾기 위한 법원 절차 진행, 미혼부의 자녀로 법원에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하여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60일 기간 산정시 제외)

4.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해외출생 아동은 출생일을 출국일로 보고 국외 체류기간 산정)에는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지원이 정지되며,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5.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법」 제15조(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결정 철회, 수급아동 연령 초과 등
- 변경 : 보호자의 변경, 지급계좌 변경, 기타 정지사유 발생·소멸, 수급아동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 (복수국적), 보호자의 이혼 등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
- 정지 : 행방불명·실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실종선고가 진행 중인 자,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정지기간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조치).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아동수당법」 제2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8. 아동수당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입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 / 기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 | | | | |
|-----------|------|----------|--------------|--------------|
| 지원대상 | | 사회서비스명 | 정부지원액 (월) | 본인부담금 (월) |
| 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 | |
|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 이용권 유효기간 | 지원내역 | |
| | | | |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경우

| 활동지원등급 | 등급 | 종합점수 | 점 | |
|--------------|----------------------------------|--------|---|---|
| 결정 급여 | [] 활동지원급여 [] 특별지원급여 [] 긴급활동지원 | | | |
| 월 한도액 | 월 원 | 활동지원급여 | 월 | 원 |
| | | 특별지원급여 | 월 | 원 |
| | | 긴급활동지원 | 월 | 원 |
| 본인부담금 | 월 원 | | | |
|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 | | | |
| 급여개시일 | | | | |
| 유효기간 | | | |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의견 | | | | |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수급자인 경우

| | |
|---------|---|
| 이용 서비스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
| 서비스이용시간 | [] 시간 |
| 급여개시일 | |
| 유효기간 | |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용자인 경우

| | |
|--------|------------------------------|
| 이용 서비스 | [] 기본돌봄 서비스 [] 방문목욕 서비스 |
|--------|------------------------------|

2.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안내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희망e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기타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 계좌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서만 산정되고, 특별지원급여에서는 면제됩니다. 또한, 긴급활동지원 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차상위계층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 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됩니다.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나 방과후활동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서비스 종료 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 수급자가 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유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여성청소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생리대)을 국민행복카드(신청서 상의 신청인, 청소년 본인 명의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대상자 결정·통보받은 후 선택한 제공기관의 지정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 이용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바우처 발급 후 제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간 서비스가 제공되며, 기본 돌봄서비스 최대 72시간 및 방문목욕 서비스는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가능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5. 정보공개 청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이의신청) 및 영역별 접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지원제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는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연속하여 1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사업은 1인당 12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회(12개월) 연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해당 시·군·구에 연장을 요청해야 하며, 지원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 이용자 신고내용, 행정기관 확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차상위계층 등 보유자격의 상실, 영아의 사망, 연락처 변경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또는 부가서비스 수혜 여부 등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청소년의 사망, 수급자 자격 변동 등 지원자격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생리대 등 생리용품을,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함께 구매할 경우 각각 나누어 별도 결제하여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는 연속하여 6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연속하여 3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단,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제외)

제1장
상담·신청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생활비용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기재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출항목 | 금액(원) |
|--------|-------|
| 합계 | |
| 학자금 | |
| 전기료 | |
| 건강보험료 | |
| 정보·통신비 | |
| 기타 | |

제3장
보장결정

3. 제출된 지출서류를 심사한 후 60만원 ~ 100만원 한도로 귀하께서 신청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0. 1세의 경우 부모급여(현금)을 대신하여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을 수급합니다. 부모급여(현금)과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다시 부모급여(현금), 보육료 수급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급여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5장
사후관리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서비스유형 | 지원유형 | 보장기간/지원시간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제6장
서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 초과, 성평등가족부 및 시도·시군구가 규정한 '서비스 이용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타법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과의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보장유형 | 급여개시일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 | | | |

-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께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우선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진료 후 필요한 경우에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숙인 등은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다음 각 질환별 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0개 만성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및 10개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기타 질환을 모두 합하여 연간 365일
-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 됩니다.

-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과의관계 | 차상위 계층 | 생년월일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 | |

- 귀하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자격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급여액 및 지급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지급금액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급여개시일 |
|-------|------|------|------|------|-------|
| | | | | | |

3.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시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 아동은 수급권 상실·정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상실 :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난민인정 취소 등
- 정지 :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등
- ※ 국외체류 90일 이상 지급 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단, 공적자료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변경 : 거주지 변경, 지급계좌 변경 등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됩니다.

6.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입류방지동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입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5년)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지원되며, 귀하의 의료비 지원시작일과 지원종료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보호종료일 | 지원시작일 | 지원종료일 |
|----------|-------|------|-------|-------|-------|
| | | | | | |

※ 단, 18세 미만 보호종료된 자로서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원 결정하는 경우 18세가 된 날로부터 60개월(5년)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지원됩니다.

※ 단,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재보호조치 기간 동안 의료비지원은 중지됩니다. 재보호조치 종료 이후에는 보호조치 종료 이후, 자립지원이 제공되는 5년의 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은 지원시작일부터 지원종료일까지의 지원기간 중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으로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단, 지원기간 중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지원기간 중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적용
- 지원기간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 수급자가 된 날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적용 제외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4.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의 범위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며,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모두 적용됩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지원 제외) 약국은 병·의원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적용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외에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귀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부모급여(현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보장급여 | 보장기간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부모급여(현금) | |
| | | | | |
| | | | | |

2. 부모급여(현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3. 부모급여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 의해 해당 기간동안 부모급여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부모급여를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는 「아동수당법」 제15조(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중지: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 변경: 보호자의 변경, 서비스 변경, 지급계좌 변경, 기타 정지사유 소멸

- 정지: 행방불명 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자, 실종선고가 진행 중인 자, 해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부모급여(현금)↔부모급여(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자격변경 시 반드시 자격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은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차액지원 및 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소급 지원은 가능).

6.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7. 부모급여(현금) 수급권자는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부모급여 수급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입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아동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귀하는 **부모급여(현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만2세 연령 도래에 따라 **부모급여(현금) 자격이 중지되고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자로 자격이 자동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인과의 관계 | 급여대상자 | 생년월일 | 보장급여 | 보장기간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영아수당(현금) | |
| | | | 가정양육수당 | |
| | | | | |

2. 귀하가 사전에 신청하신 부모급여(현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23개월에 속하는 달까지 소급하여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일시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 또한, 결정 당시 아동의 만 2세 연령 도래에 따라 부모급여 자격은 자동 중지되며, 가정양육수당으로 별도 신청없이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4.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서비스 변경이용 시 반드시 서비스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자격신청 누락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 어린이집 연장보육반 수급 아동이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연장보육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입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가정양육수당 수급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수당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1. 귀하는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 예정 첫만남이용권 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우처 지급〉

| 보호자 | | 지급대상자 | | | 이용권 유효기간 | 이용권 지급금액 |
|----------|----------------------|----------|--------------|------|-------------|----------|
| 신청인과의 관계 | 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 |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 | |
| | ※ 신청인과 보호자가 다를 경우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현금지급〉

| 지급대상자 성명 | 생년월일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지급금액 | 입금일 | 비고 |
|----------|------|------|------|------|-----|----|
| | | | | | | |

제5장
사후관리

3. 첫만남이용권 발급 안내

- 첫만남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 등록된 카드사의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6장
서 식

- 단, 예외적인 경우(시설보호아동 등) 첫만남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 BC카드(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수협은행, 우리카드,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KB카드(KB카드, 전북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궁금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 4번)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등록된 1개 카드에만 바우처 이용권(포인트)을 지급, 생성합니다.(생성 후 이용가능)
- 첫만남이용권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유흥업소·사행업소 및 관련 유행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매금액이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미사용 이용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사용기간 종료 후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사용된 결제건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된 이용권 금액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타 바우처(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를 동시에 받으시는 경우 타 바우처 이용권이 우선 차감되며,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결제하여야 합니다.

☞ 중복수혜 대상자 결제 유형별 예시

- 사례 1 : 판매점에서 기저귀(또는 타 바우처) 2만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잔액 1만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1만원 차감 후, 초과 분 1만원 개인부담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 2만원 차감(초과 분 개인부담)
- 사례 2 : 판매점에서 기저귀(또는 타 바우처) 2만원과 생필품 1만원 동시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잔액 2만원인 경우) 기저귀 바우처 2만원 차감 후, 생필품 1만원은 개인부담
 - ※ 기저귀 2만원, 생필품 1만원을 각각 결제하는 경우 생필품 1만원은 첫만남이용권에서 차감 가능
 - (기저귀 바우처 잔액 0원인 경우) 첫만남이용권으로 기저귀, 생필품 3만원 차감(초과 분 개인부담)
- 사례 3 : 판매점에서 생필품 3만원 구입(결제) 시
 - 기저귀 바우처 유무에 관계 없이 첫만남이용권으로 생필품 3만원 차감(초과분 개인부담)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 준수사항

-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바, 반드시 이러한 목적하에 이용권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중 2쪽)

| [] 대상 제외 | |
|-----------|--|
| 신청내용 | 보장구분 |
| 대상 제외 사유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격심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기타() |
| 안내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경우 여성청소년이 만9세 이상 만24세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한 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1장
상담·신청

| [] 변경·정지·중지·상실 | | |
|-----------------|----------|--|
| 일자 | 년 월 일 부터 | 내용 |
| [] 변경 사유 | | [] 아동보호를 위한 보호자변경 []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 가구의원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조제분유 추가지원 [] 고난도 사례지원 [] 기타() |

제2장
조사

| 일자 | 년 월 일 부터 | 내용 |
|-----------|----------|---|
| [] 정지 사유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

제3장
보장결정

| 일자 | 년 월 일 부터 | 내용 |
|-----------|----------|---|
| [] 중지 사유 |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6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일상돌봄 서비스를 2개월 연속 이용하지 않은 경우 []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1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 [] 기타() |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 일자 | 년 월 일 부터 | 내용 |
|-----------|----------|--|
| [] 상실 사유 | | [] 사망 []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의 수급연령 초과(생후 96개월이 되는날) [] 부모급여 수급연령 초과(생후 24개월이 되는날)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장애정도의 변경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미해당 []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기타() |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4쪽)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결정

| | | | | | |
|----------------------------|----------|---|-----|------|---------------------------|
| 조 건 부 수 급 자 | 대상자 | 세대주와의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구 분 |
| | | | | |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유예자 |
| | | | | |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과유예자 |
| | 특이사항 | [] 가구원 일부보장() [] 조건부수급자() [] 기타() | | | |
| | 보장 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가구원은 근로능력·가구여건·취업상태 등이 기준에 해당하여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조건부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 중 자활노력을 조건으로 선정된 수급자임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원은 결정된 날부터 7일 이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야 합니다.(전화상담도 가능) 상단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불가피한 사유(건강문제 등)가 있는 경우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 |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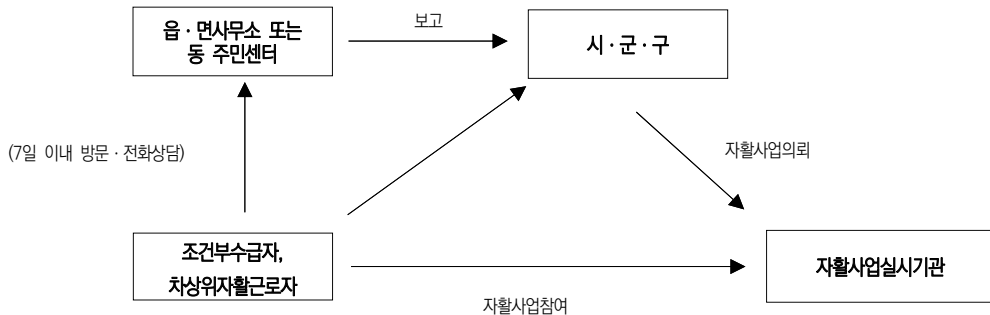
제3장
보장결정

유의사항

- 조건부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않거나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본인의 생계비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0조제2항)
※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한 경우 생계비가 다시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자활소득 발생에 따라 생계급여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처리절차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 | | |
|-------------|--------|---|
| 신청인/ 세대주 | 성 명 | |
| | 주 소 | |
| | 보장가구원수 | 명 |

|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 | 결정사항 |
|--------------|---|-------------------------------|---|------|
| 생계급여 | 원 | ○ 소득인정액 (가-나+다) | 원 | |
| | | - 소득평가액 ¹⁾ (나) | 원 | |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²⁾ (다) | 원 | |
| 의료급여 | 원 | ○ 소득인정액 (가-나+다) | 원 | |
| | | - 소득평가액 (나) | 원 | |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 원 | |
| 주거급여 | 원 | ○ 소득인정액 (가-나+다) | 원 | |
| | | - 소득평가액 (나) | 원 | |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 원 | |
| 교육급여 | 원 | ○ 소득인정액 (가-나+다) | 원 | |
| | | - 소득평가액 (나) | 원 | |
|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 원 | |

- 1)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세부 항목에 따라 급여별로 차이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부채 공제 적용하지 않으며, 주거용재산 한도액 및 기본재산액을 급여별·지역별 차이 있음

[참고]○○○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내역

<소득 금액>

(단위: 원)

| 근로·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 이전소득 등 | 부양비* |
|---------|------|-----------|-------|
| | | | 의료급여: |

* (부양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결과(미약구간)에 따라 수급(권)자 가구에 부과되는 소득

<재산 가액>

(단위: 원)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
| | | | | |

[1면]

서식4호-[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6.20>

|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 | | | | | | | | | | | | | | 전화 번호 | | | |
|----------------|--|-----|---------------------|--------------------|----------|-------|-----------------------|--------------------------|------------|-------------|-----------|------------|------------|----------|-------------|---|--|--|
| 접수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 | | 주 소 | | | | | | | | | | | | | |
| 신청인 (보호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보장 신청 |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 보장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제출서류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를 표기함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 건강상태 | 근로능력 | 학력·재학여부 (학교명, 학년반) | 자격증 복지급여계좌 (금융기관명) | 직업종류 | 취 업 상 태 | 보장상태 | | | | | | | |
| | 의 | | | 미동거 사유 (미동거 사유) | (장애, 질병) | 유무·사유 | (학교명, 학년반) | (경 력) | 직업종류 구분 | 직업 종류 | 직업 형태 | 직업 형태 | 직업 형태 | 직업 형태 | 직업 형태 | 직업 형태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부양 의무자 | 수급자와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가구원수 | 지 임 | 부양능력 판정소속액 | 재 산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액 | 원판교 지원금 | 부양능력 판정 | 사 유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 의 | | | | | | | | | | | | | | | | | |
| 조사 결과 |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부양의무자 성명) | | | | | | | | | | | | | | 부양능력자 유무 |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m(제할용품))

제1장
삼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금 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면]

| 성명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 재산소득 | | | 기타소득 | | | 보장기관 확인소득 | | |
|-------|------------------------------|-----------------------------|----------------|----------------|----------------|----------------|---------------|--------------------|--------------------|----------------|----------------|----------------|----------------|----------------|
| | 임의소득 | 임의소득 | 임의소득 | 임의소득 | 임의소득 | 임대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공적이전 | 사적이전 | 부양비 | 공적이전 | 사적이전 | |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성명 | 건축물 | | 선박/항공기 | | 자동차 | | 임대보증금 | | 금융재산 | | 회원권 등 | | 동산 | |
| | □건물 (m ² , 천원) | □토지 (m ² , 천원) | □선박 (대, 천원) | □선박 (대, 천원) | □자동차 (대, 천원) | □자동차 (대, 천원) | □임대보증금 (천원) | □예금·저금 (천원) | □채권 (천원) | □회원권 (천원) | □기타 (미리 천원) | □기타 (미리 천원) | □기타 (미리 천원) | □기타 (미리 천원) |
| | □주택 (m ² , 천원) | □대지 (m ² , 천원) | □선박 (대, 천원) | □선박 (대, 천원) | □자동차 (대, 천원) | □자동차 (대, 천원) | □상가보증금 (천원) | □보험 (천원) | □주식 (천원) | □보험권 (천원) | □중도·인도 (천원) | □중도·인도 (천원) | □중도·인도 (천원) | □중도·인도 (천원) |
| | □시설품 (m ² , 천원) | □대지 (m ² , 천원) | □항공기 (대, 천원) | □항공기 (대, 천원) | □배기량 (cc) | □배기량 (cc) | □기타 (천원) | □연금·수표·어음 등 (천원) | □조항임보증권 (천원) | □조항임보증권 (천원) | □조항임보증권 (천원) | □조항임보증권 (천원) | □조항임보증권 (천원) | □조항임보증권 (천원) |
| | □기타 (m ² , 천원) | □기타 (m ² , 천원) | □기타 (대, 천원) | □기타 (대, 천원) | □기타 (대, 천원) | □기타 (대, 천원) | □기타 (대, 천원) | □기타 (대, 천원) | □기타 (대, 천원) | □기타 (대, 천원) | □기타 (대, 천원) | □기타 (대, 천원) | □기타 (대, 천원) | □기타 (대, 천원) |
| 기초공제액 | | | | | | | | | | | | | | |
| 성명 | 가구특별 공여·지출 | | 근로·사업소득 | | 재산공제액 | | 생필품비금 | | 추가기본공제 | | 경로연금부채 (저소득노인) | | | |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 | 금융기관대출금 | |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 | 임대보증금 | | 개인 간 부채 |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 | | | |
|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 × 210mm(일반·용지 60g/m²(제활용품))

| | | | | | | | | | | | |
|------|-------------|--|--|--|--|--|--|--|--|--|--|
| 주거실태 | 주거유형 | <input type="checkbox"/> 자가(천원) <input type="checkbox"/> 미등기·무허가주택(소유권대장 등재자) <input type="checkbox"/> 전세(월세보증금 천원, 월 천원) <input type="checkbox"/> 보증부월세(보증금 천원, 월 천원)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천원) <input type="checkbox"/> 임대(월 천원) <input type="checkbox"/> 월세(월 천원) <input type="checkbox"/> 보증부월세(보증금 천원, 월 천원) <input type="checkbox"/> 영구임대(천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자가 인정) | | | | | | | | | |
| | 건축상태 |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개축 <input type="checkbox"/> 간담부수 <input type="checkbox"/> 편의도모부수 <input type="checkbox"/> 도배 등 환경개선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 |
| 보장결정 | 주거급여판정 | <input type="checkbox"/> 월세임차료 <input type="checkbox"/> 유지수선비(현금급여, 점검수선) <input type="checkbox"/> 전세지급대여 <input type="checkbox"/> 주거인정지원비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제외 | | | | | | | | | |
| | 가구유구 | <input type="checkbox"/> 안전 <input type="checkbox"/> 교육 및 직업 <input type="checkbox"/> 생활환경 및 권리보장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 <input type="checkbox"/> 가족생활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관계 <input type="checkbox"/> 경제 | | | | | | | | | |
| 보장사유 | 보장구분 | 자산 <input type="checkbox"/> 소득액 <input type="checkbox"/> 소득평가액 <input type="checkbox"/> 재산총액 <input type="checkbox"/> 재산부채액 <input type="checkbox"/> 공제액 <input type="checkbox"/> 순재산액 <input type="checkbox"/> 환산대상 <input type="checkbox"/> 환산대상재산액 <input type="checkbox"/> 소득환산액 | | | | | | | | | |
| | 기초생활보장 | <input type="checkbox"/> 연소득(18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연소득(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질병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임신 <input type="checkbox"/> 임신 <input type="checkbox"/> 심적·미취업 | | | | | | | | | |
| 보장사유 | 영양이보육·유아학비 |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보육료(0~4세)·유아교육비(3~4세) <input type="checkbox"/> 만5세이하 보육·유아교육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보육료 | | | | | | | | | |
| | 이동수당 |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이동보육 <input type="checkbox"/> 병과 후 보육 <input type="checkbox"/> 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 양육수당 | | | | | | | | | |
| 보장사유 | 청소년 특별지원 |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건강지원 <input type="checkbox"/> 학업지원 <input type="checkbox"/> 취업지원 <input type="checkbox"/> 자립지원 <input type="checkbox"/> 상담지원 <input type="checkbox"/> 상담지원 <input type="checkbox"/> 법률지원 <input type="checkbox"/> 법률지원 <input type="checkbox"/> 활동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지원() | | | | | | | | | |
| | 청소년 소년소녀 가정 | <input type="checkbox"/> 부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모가출 <input type="checkbox"/> 부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모사망 <input type="checkbox"/> 부모사망 | | | | | | | | | |
| 보장사유 | 한부모가족 |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사망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가출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유기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생사불명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 | | | | | | | | |
| | 장애인복지 | <input type="checkbox"/> 후천성: 유전성, 약물중독, 출산시 의료사고, 원인불명, 기타 | | | | | | | | | |
| 보장사유 | 노인복지 | <input type="checkbox"/> 후천성: 질병, 퇴행성장애, 영양부족, 교통사고, 산업재해, 전상, 기타 사고, 음향의상성난청, 미상, 기타 | | | | | | | | | |
| | 노인복지 |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 |

제1항
상담·신청

제2항
조사

제3항
보장결정

제4항
발식
핀여·서비스

제5항
사후관리

제6항
서비스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갑-1) <개정 2021.1.1.>

| 년도/분기 | |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 | | | | | | | | | 세대주 | | | |
|---------------|---------------------------|--------------|--------------------|-----------|-----------|----------------|-------------|--------|-------------|-------|------|------|--------|------|--|
| 세대주 및 주소 변동사항 | | 세대주 변동사항 | | | | | 주소 변동사항 | | | | | 전입일자 | | | |
| | | 세대주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변동일자 | 변동사유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 | | |
| 기구원 사항 | | | | | | | | | | | | | | | |
| 구분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가구원별 보장구분 | 가구원별 지원금어 | 부가급여계좌 (금융기관명) | 소득합계 | | 자산 | | | 재산 | | 산 | |
| 보장기구 | 본인 | | | | | | 전기구원 소득액 | 소득합계 | 건축물 | 장기저축 | 재산총액 | 공제 | 생활준비금 | 공제총액 | |
| | | | | | | | 소득공제액 | | 토지 | 생각준비금 | | | 추가소득공제 | | |
| | | | | | | | | | 어업권/임목재산 | 금융기관 | | | | | |
| | | | | | | | | | 자동차 | 금융기관 | | | | | |
| | | | | | | | | 신택/항공기 | 금융기관 | | | | | | |
| | | | | | | | | 임차보증금 | 금융기관의 기관대출금 | | | | | | |
| | | | | | | | | 금융재산 | 임대보증금 | | | | | | |
| | | | | | | | | 동신 | 개인부채 | | | | | | |
| | | | | | | | | 회원권등 | | | | | | | |
| 보장구분사항 | | | | | | | | | | | | | | | |
| 내용 | 기초생활 보장 (기초생활, 자활지원, 부양인) | 영유아보육·유아학비 | 아동수당 | 아동·청소년 |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 (장애연금) | 노인복지 (기초연금) | | | | | | | | |
| 개시일 | | | | | | | | | | | | | | | |
| 종지일 | | | | | | | | | | | | | | | |
| 정지일 | | | | | | | | | | | | | | | |
| 상실일 | | | | | | | | | | | | | | | |
| 보장유형(등급) | | | | | | | | | | | | | | | |
| 보장기구원수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갑-2)

| 관리번호 | 세대주 | | 성명 | 성명 |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작성일자 :) (서명 또는 인) | | | |
| 기초생활 보장사유 | <input type="checkbox"/> 연소(18세미만) <input type="checkbox"/> 인로(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질병(병명:) 정도:) <input type="checkbox"/> 임신 <input type="checkbox"/> 실직·미취업 <input type="checkbox"/> 사업실패 <input type="checkbox"/> 저임금·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양육·간병·보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 | | |
| 부양의무자 |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없음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명), 부양능력 미약(명), 부양능력 있음(명) <input type="checkbox"/>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 <input type="checkbox"/>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 | | |
| 특례수급자 | <input type="checkbox"/> 특례유형() <input type="checkbox"/> 특례수급자(가구원제, 가구원 일부) <input type="checkbox"/> 특례급여 개시일() <input type="checkbox"/> 특례급여 종료일() | | | |
| 근로능력판정 | 판정사유 | | | |
| 긴급급여 | <input type="checkbox"/> 급여액() <input type="checkbox"/> 급여일시() <input type="checkbox"/> 급여사유() | | | |
| 생계급여 |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수 () | | | |
| 주거급여 | <input type="checkbox"/> 월세임차료 <input type="checkbox"/> 유지수선비(현금급여, 점검수선) <input type="checkbox"/> 전세자금대여 <input type="checkbox"/> 주거임대지원비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제외 | | | |
| 교육급여 | 성 명 | 학 교 명 | 학 년 반 | 성 명 |
| | | | | 학 교 명 |
| | | | | 학 년 반 |
| 해산급여 | <input type="checkbox"/> 해산자 () <input type="checkbox"/> 해산일자 () | | 장 제 급 여 | <input type="checkbox"/> 사망자() <input type="checkbox"/> 사망일자() |
| 각 종 감면제도 | 복 지 진 화 | <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사유:) | | |
| | 상하수도요금 | 시정료감면고객번호 스펀지종량제봉투 기 타 | | |

210mm×297mm(백상지(80g/㎡))

제1장
상단·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판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갑-4)

| 관리번호 | 세대주 | |
|----------------|-----------|-----------|
| 영유아보육·유아학비 대상자 | | |
| (작성일자 :) | | |
| 성명 | 성명 | 성명 |
| 보육료·유아학비 감면아동 | 보육시설·유치원명 | 보육시설·유치원명 |
| | 이용기간 | 이용기간 |
| 아동·청소년 복지 대상자 | | |
| (작성일자 :) | | |
| 성명 | 성명 | 성명 |
| 아동급식 | 지원항목 | 지원항목 |
| | 이용기간 | 이용기간 |
| 아동·청소년 복지 대상자 | | |
| (작성일자 :) | | |
| 사유 | 사유 | 사유 |
| 성명 | 성명 | 성명 |
| 소년소녀가정 | 육구 및 문제 | 육구 및 문제 |
| | 보호 방향 | 보호 방향 |
| 아동·청소년 복지 대상자 | | |
| (작성일자 :) | | |
| 성명 | 성명 | 성명 |
| 청소년특별지원 | 지원항목 | 지원항목 |
| | 지원기간 | 지원기간 |
| | 지원금액 | 지원금액 |
| | 비고 | 비고 |

210mm×297mm(백상지(80g/㎡))

제1장
상단·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갑-5)

| | | |
|---|--------------|-------|
| 관리번호 | 세대주 | |
| (작성일자 :) | | |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작성일자 직명 | |
| 한부모가족사유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배우자사망 [] 배우자가출 [] 배우자유기 [] 배우자생사불명 [] 배우자 장기복역 [] 외국인 []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 배우자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 이혼 [] 미혼모 [] 미혼부 [] 조부모거장 [] 기타 () (해당되는 경우 체크) | | |
| | 성명 | 학년반 |
| 학비지원 | 성명 | 학교명 |
| 아동양육비지원 | 성명 | 지원기간 |
| 시설입소 (이용) | 대상자 시설구분 | 시설명 |
| 가구별 자산 형성계좌지원 | 성명 | 계좌명 |
| | 성명 | 계좌개설일 |
| 의료비부담액 | 성명 | 1차 |
| | 성명 | 2차 |
| 자립촉진수당 | 성명 | 1차 |
| | 성명 | 2차 |

210mm×297mm(백상지(80g/㎡))

(을-1)

| | | | | | | | | |
|---|--|--|----------------|--------|-----|------|------|-----|
| 관리번호 | 세대주 | | | | | | | |
| 장애인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 | |
| 장애인 성명 | 복지욕구 | () 보장구지원() 복지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장애수당 () 장애연금 () 장애연금인 기간활동서비스 () 장애아동수당 () 의료비 () 학비 () 저금대어 () 시설입소 () 활동지원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광고활동서비스 | | | | | | |
| | 종합장애정도 | 최초장애등록일 중복지애유무 | | | | | | |
| 장애 등록 사항 | 주 장 애 | | | | | | | |
| | 진단이력 | 정도 심사완료여부 결정일자 장애판정기관 | | | | | | |
| | 유형 | 정도 심사완료여부 결정일자 장애판정기관 | | | | | | |
| | 유형 | 정도 심사완료여부 결정일자 장애판정기관 | | | | | | |
| 장애사유 | 주 장 애 () 선천성 () [] 후천성 () [] 발생연령 | 부 장 애 () 선천성 () [] 후천성 () [] 발생연령 | | | | | | |
| | 보 장 구 | 종 류 | 교부일자 | | | | | |
| | 취업일선 | 직 종 | 기 관 | 일 자 | | | | |
| | 학 비 | 대상자 | 학교명 | 학년/반 | | | | |
| | 장애수당 | 대상자 | 지급개시일자 | 지급개시일자 | | | | |
| | 장애연금 | 대상자 | 지급개시일자 | 지급개시일자 | | | | |
| | 시설임소 (이용) | 대상자 | 시설명 | 소재지 | | | | |
| 지 원 | 발급일 | 모형상 장애유무 | 차종 | 차량번호 | 배기량 | 소유자 | 반납일자 | |
| | | | 차종 | 차량번호 | 배기량 | 소유자 | 반납일자 | |
| | | |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카드발급 | 발급일 | 차종 | 차량번호 | 배기량 | 소유자 |

210mm×297mm(백상지(80g/㎡))

제1장
삼단·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 상·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시후관리

제6장
서 식

| 관리번호 | | 세대주 | | | | | |
|-----------|---------------------|---|-----|--------------|--|--|--|
| 장래인연금 대상자 | | | | | | | |
| 작성일자 : | | 작성일자 직명 |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지급정지 | | 자격상실 | | 수급사실 | |
| | | 일 자 | 사 유 | 일 자 | 사 유 | 해당구분 | 지급액 구분 |
| 장래인 연금 | | | | |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단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부부 1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부부 2인 | <input type="checkbox"/> 전 액 <input type="checkbox"/> 감 액(원) <input type="checkbox"/> 부가급여 (원) |
| 이력 | 개인현황 |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 | 이의신청 | 사유 | <input type="checkbox"/> 수급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급여액 <input type="checkbox"/> 수급권 상실 <input type="checkbox"/> 부당이득 환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 | | 결과 | <input type="checkbox"/> 인용 <input type="checkbox"/> 기각 <input type="checkbox"/> 각하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이력 | 변동내역 소득·재산·부채 |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 | 부당이득 | 사유 |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 증가 <input type="checkbox"/> 해외체류 60일 <input type="checkbox"/> 재산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 | | 금액 | | |
| 이력 | 연금액 |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 | 과 태 로 부 과 | 환수 | <input type="checkbox"/> 환수완료 <input type="checkbox"/> 환수중 <input type="checkbox"/> 미환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 | | 금액 | <input type="checkbox"/> 30,000원 <input type="checkbox"/> 60,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0원 <input type="checkbox"/> 12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이력 | 변동사유 |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 | 사유 |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input type="checkbox"/> 거짓 자료제출 <input type="checkbox"/> 조사·결문 거부·방해 또는 기피, 거짓 답변 <input type="checkbox"/> 수급권 소멸 발생 미신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input type="checkbox"/> 1회차() <input type="checkbox"/> 2회차() <input type="checkbox"/> 3회차() | | | | | |

[] 신청성 () [] 후진성 ()

(을-3)

| 관리번호 | 작성일자 :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 | | | | | | | | | 세대주 | |
|--------------|---------------------------|---------------------|------|-------|--------|----------|----------|--|--|--|-----|--|
| 노인복지 대상자 | | | | | | | | | | | | |
| 구분 | 대상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검진일자 | 조치 의견 | 검진의료기관 | 비고 | | | | | | |
| 건강진단 | 1차 검진 | | | | | | | | | | | |
| | 2차 검진 | | | | | | | | | | | |
| 취업알선 | 대상자 성명 | | | | | 취업일자 | 취업기관 | | | | | |
| | | | | | | | | | | | | |
| 시설입소 (이용) | 대상자 성명 | 시설구분 | 시설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입소(이용)일자 | 입소(이용)기간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제1장
상단·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을-4)

| | | | | | | | |
|------|-----------------------|-------------------|-------------------------------------|----------------|--|---|---------|
| 관리번호 | 작성일자 : (작성일자 :) | | | | | 세대주 | 성명 (서명) |
|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지급개시일 | 지급정지일 및 지급정지 사유 | 상실일 및 상실 사유 | 수급사항 | | |
| | | | | | 해당구분 | 지급액구분 | |
| | | | |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1인 수급 [] 부부가구 2인 수급 | [] 전액 [] 감액(원) | |
| 이력 | 변동내역 | 인적사항 변동일 및 사유 |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 이의신청 | 사유 | [] 수급 미해당 [] 기초연금 급여액 [] 수급권 상실 [] 부당이득 환수 [] 기타 | |
| | | 소득·재산 변동일 및 사유 |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 부당이득 | 결과 | [] 인용 [] 기각 [] 각하 [] 기타 | |
| | | 기초연금 급여액 |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 과태료 부과 | 사유 | [] 사망 [] 소득·재산 증가 [] 해외체류 60일 [] 재소자 [] 기타 | |
| | | 변동사유 |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 | 환수 | [] 환수완료 [] 환수중 [] 미환수 [] 기타 | |
| | | |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 | 금액 | [] 30,000원 [] 60,000원 [] 100,000원 [] 120,000원 [] 200,000원 [] 기타 | |
| | | | [] 1회차 : [] 2회차 : [] 3회차 : | | 사유 | []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 거짓자료 제출 [] 조사·질문 거부·방해 또는 기피, 거짓 답변 [] 수급권 상실사유 발생 미신고 [] 기타 | |

210mm×297mm(백상지(80g/㎡))

(을-5)

| 관리번호 | 작성일자 :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 | | | | 보호자 | 성명 | |
|-----------|--------------------------|---------------------------|--------------------|------------|--------------------------------------|-----------------------------|---------------|
| (서명) | | | | | | | |
|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등) | 지급개시일 | 지급정지일 및 지급정지 사유 | 상실일 및 상실사유 | 기유유형 | 보호유형 | |
| 이동 내역 | 인적사항 변동일 및 사유 | [] 1회차 : | | | [] 부모 | [] 시설보호 | |
| | | [] 2회차 : | | | [] 한부모 | [] 가정위탁 | |
| [] 3회차 : | [] 단독 | [] 친인척 [] 조손(대리) [] 일반 | | | | | |
| [] 4회차 : | [] 조손 | [] 입양대기 | | | | | |
| [] 5회차 : | [] 친인척·제3자 | [] 기타 | | | | | |
| 이 력 | 인적사항 변동일 및 사유 | [] 1회차 : | | | [] 수급 미해당 | [] 아동수당금여액 | |
| | | [] 2회차 : | | | [] 수급권 상실 및 정지 | [] 수급수당금여액 | |
| | | [] 3회차 : | | | [] 부당이득 환수 | [] 기타 | |
| | 보호자 변경이력 | [] 1회차 : | | | | [] 인용 | [] 각하 [] 기타 |
| | | [] 2회차 : | | | | [] 사망 | [] 해외체류 90일 |
| | | [] 3회차 : | | | | [] 국적상실 | [] 기타 |
| 이 력 | 부담이득 | [] 1회차 : | | | [] 환수완료 | [] 환수중 [] 미환수 [] 기타 | |
| | | [] 2회차 : | | | [] 30,000원 [] 60,000원 [] 100,000원 | | |
| | | [] 3회차 : | | | [] 120,000원 [] 200,000원 | | |
| 이 력 | 과태료 부과 | [] 1회차 : | | | [] 거짓자료 제출 | [] 거짓자료 제출 | |
| | | [] 2회차 : | | | [] 조사·질문 거부·방해 또는 기피, 거짓답변 | [] 조사·질문 거부·방해 또는 기피, 거짓답변 | |
| 이 력 | 부과 | [] 3회차 : | | | [] 수급권 상실사유 발생 미신고 | [] 수급권 상실사유 발생 미신고 | |
| | | [] 4회차 : | | | [] 기타 | [] 기타 | |
| [] 5회차 : | [] 기타 | [] 기타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제1장
삼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상·징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을-6)

| | | | |
|---|------------|---|----------------------|
| 관리번호 | | 세대주 | |
| 노숙인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부랑인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복지유구 [] 시설입소 [] 취업일선 [] 직업훈련 [] 기초연금 [] 장애연금 [] 장애수당 | |
| | 시 설 입 소 | 대상자 | 시설명 |
| 시 설 입 소 | | 소재지 | 입소일자 |
| 시 설 입 소 | | 소제지 | 입소기간 |
| 후원·자원봉사 내용 | | | |
| 후원 원황 | 후원자 | | 후원방법 (정기, 일시) |
| | 성명/기관명 | 주소/전화번호 | 후원기간 |
| | | | 후원종류 및 후원내용 현금 물품 |
| | | | 후원용도 |
| | | | 소년소녀 가장 |
| | | | 월후원액 후원금관리자 관 계 |
| 자원 봉사 원황 | 자원봉사자 | | 자원봉사 대상자 |
| | 성명/기관명 | 주소/전화번호 | 자원봉사 내용 |
| | | | 비 고 |

210mm×297mm(백상지(80g/㎡))

(별-1) (관리번호 :) 세대주 :)

| 상 담 내 용 | | | | | | | | | | 주 요 변 동 사 항 | |
|---------|---------|---------|-----|----|-----------|----|------|-----|----|-------------|---|
| 구분 | 보 장 대상자 | 부 양 의무자 | 소 득 | 재산 | 성명 | 직명 | 상담일자 | 상담자 | 직명 | 성명 | |
| | | | | | | | 년 | 월 | 일 | | 년 |
| 1차 상담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2차 상담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 상 담 내 용 | | | | | | | | | | | |
|----------|--------|----|--------|--|----|----|------|---|---|---|----------|
| 3차 상담 | 구분 | | 보장 대상자 | | 성명 | 직명 | 상담일자 | 년 | 월 | 일 | 주요 변경 사항 |
| | | | 부양 의무자 | | | | | | | | |
| | 소득 | | 재산 | | | | | | | | |
| | 구분 | | 보장 대상자 | | 성명 | 직명 | 상담일자 | 년 | 월 | 일 | 주요 변경 사항 |
| | 부양 의무자 | | | | | | | | | | |
| | 소득 | | 재산 | | | | | | | | |
| | 구분 | | 보장 대상자 | | 성명 | 직명 | 상담일자 | 년 | 월 | 일 | 주요 변경 사항 |
| | 부양 의무자 | | | | | | | | | | |
| | 소득 | | 재산 | | | | | | | | |
| | 구분 | | 보장 대상자 | | 성명 | 직명 | 상담일자 | 년 | 월 | 일 | 주요 변경 사항 |
| 부양 의무자 | | | | | | | | | | | |
| 소득 | | 재산 | | | | | | | | | |

210mm × 297mm(백장지(80g/m²))

(붙-2)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1.>

[앞면]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

| | | | | | |
|--|--------|---------------------------|-----|-------------|-----|
| | | □ 기초생활 □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 | | 보장 구분 | |
| 용자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 영 대 포 중 인 | 01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용자자외의 관계 | 직 업 |
| | 02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용자자외의 관계 | 직 업 |
| 자금종류 및 용 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지원자금대여 (<input type="checkbox"/> 생업자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자금 <input type="checkbox"/> 생업용 자동차구입자금 <input type="checkbox"/> 자동차구입자금(장애인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사무보조기구임비 <input type="checkbox"/> 자기개발훈련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지원자금대여 (<input type="checkbox"/> 생업자금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시험 개요 용자금액 금 원 용자일자 년 월 일 용자기간 년 개월 년 상환 이자율 % 상환방법 □ 거차기간이자 (매월, 분기, 연2회, 연 1회) □ 원리금 (매월, 분기, 연2회, 연 1회)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제활용품))

제1장
삼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뒷면]

| 원리금상환 및 운영실태 (*용자일을 기준으로 매분기 1회 이상 작성 관리) | | | | |
|---|---|-------------|-------------|-------------|
| 조사회수 및 일자 | 1회(년 월 일) | 2회(년 월 일) | 3회(년 월 일) | 4회(년 월 일) |
| 상환여부 | | | | |
| 운영실태 | | | | |
| 조사자 | 직명: 성명: | 직명: 성명: | 직명: 성명: | 직명: 성명: |
| 조사회수 및 일자 | 5회(년 월 일) | 6회(년 월 일) | 7회(년 월 일) | 8회(년 월 일) |
| 상환여부 | | | | |
| 운영실태 | | | | |
| 조사자 | 직명: 성명: | 직명: 성명: | 직명: 성명: | 직명: 성명: |
| 조사회수 및 일자 | 9회(년 월 일) | 10회(년 월 일) | 11회(년 월 일) | 12회(년 월 일) |
| 상환여부 | | | | |
| 운영실태 | | | | |
| 조사자 | 직명: 성명: | 직명: 성명: | 직명: 성명: | 직명: 성명: |
| * 작성방법 | <input type="checkbox"/> 상환여부 (1:전액상환, 2:일부상환, 3:잔액미상환) <input type="checkbox"/> 운영실태 (1:성공, 2:현상유지, 3:운영부실, 4:중도폐지)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제철용종))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동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시행 2024.1.1>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 | | | | |
|---------------------|--------------------|--------|-----------|-----------|
| 수급자 (보호대상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 | 생년월일 | | | |
| | 거주지(소재지) | | | |
| 비용(부당이득) 납부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 |
| | 수급자·보호 대상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양의무자 | [] 기타() |
|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 | | | |
| 환수(반환) 사유 | | | | |
| 환수결정액 | | 원 | 납부장소 | |
| 기 납부액 | | 원 | | |
| 납부액 | | 원 | | |
|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산출내역 | 별첨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및 제47조, 「아동복지법」 제61조, 「장애인 복지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및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의료급여법」 제23조, 「주거급여법」 제20조, 「아동수당법」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에 따라 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안내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제 체납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
 -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서식] <시행 2023.1.1>

이의신청서

| 처리기간 | | 별도안내 | | | |
|---------------------------|----|--|-----------------------|-------------|--|
|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대리 신청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 신청인과의 관계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 처분내용 | |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 | | |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 | 년 | 월 | 일 | |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 | 년 | 월 | 일 | |
|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 | | | |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 | | |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 | | |
|------|---|-----------|
| 구비서류 |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안내사항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장
상단·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3호서식]

(3쪽 중 1쪽)

| | | | | | | |
|--|---|--|----|--|------|--|
| 가입연도 | | | | |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 희망저축 30일 - 희망저축II 70일 - 청년내일저축계좌 100일 |
| 가입기수 | | | | | | |
| 가입은행 |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 II / 청년내일저축계좌 | | | | | |
| 구분 | <input type="checkbox"/> 희망저축계좌 I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input type="checkbox"/> 희망저축계좌 II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input type="checkbox"/>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청년) | | | <input type="checkbox"/> 자활사업 참여시 사업단 유형 <input type="checkbox"/> 시장진입형 <input type="checkbox"/> 시간제일자리 <input type="checkbox"/> 예비자활기업 <input type="checkbox"/> 청년자립도전사업단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형(비수익형) <input type="checkbox"/> 인턴·도우미형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휴대전화 | |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 신청자 | 비상연락 | 관계 | 성명 | 연락처 | | |
| | 직업 | 근무지명 | | 근무기간 | ~ | |
| | 근무형태 | <input type="checkbox"/> 상용직(정규직) <input type="checkbox"/> 임시직(계약직, 기간제) <input type="checkbox"/> 일용직 <input type="checkbox"/>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 | | | |
| ※ 신청자와 가입자가 다를 경우 기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자와 가입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 | | | | |
| 가입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 | | | | | 휴대전화 | |
| 적립 및 기타 정보 | 1. 월별 저축액 (약정금액) | 최소 100,000 원 (*100,000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생성) ※ 저축기간 <input type="checkbox"/> 최대 36개월 <input type="checkbox"/> 최대 60개월(군입대한 경우) | | | | |
| | 2. 저축액 사용계획 | <input type="checkbox"/> 주택구입·임대 <input type="checkbox"/>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input type="checkbox"/> 창업·운영자금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개인자산형성(ISA·일반적금)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 본인부담금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돌봄비용 <input type="checkbox"/> 결혼자금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자립·자활 | | | | |
| | - 향후 자립·자활계획 | (자유롭게 기술) | | | | |
| ※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 미작성 및 중복참여 여부 확인 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 | | |
|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 여부 | 미참여 / 참여(사업명 : , 기간 : , 수령액 :) | | | | | |
| 희망·내일키움통장 등 재가입 여부 | 최초 / 재가입(사업명 : , 참여기간 : , 적립회수 :) | | | | |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 | | | |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
| 1.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신청자는 추후 지자체와 연락관계를 가지며, 선정 후 신용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합니다.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기간 동안 매월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내 입금하여야 당월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까지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쪽 중 2쪽)

저축 동의서

□ 동의

- 나는 희망저축 I · 희망저축 II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을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 나는 목적으로 설정한 적립수준을 달성하기 전까지 매달 저축할 것입니다.
- 지원금은 목적 달성 시에만 지급해지(지원금 수령) 할 수 있습니다.

□ 조건

1. 공통

- 가입 첫 월 본인적금계좌 개설 및 적금을 납입하여야 참여가 확정됩니다.
- 각 사업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본인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됩니다.
- 만약 저축목적을 달성하기 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2. 사업별

※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 I (생계·의료수급자통장)

[] 동의

| | |
|------------|--|
| - 지원금 적립기준 | 당월 본인적금 적립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 하한기준 이상 발생 |
| - 환수사유 | 3년 만기후 유예기간 6개월 내 탈수급 못한 경우, 일부지급해지 후 재가입하였으나 지급요건 미충족,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압류·가압류, 탈수급 전 본인 요청시 등 |
| - 지원금 지급요건 | 3년 이내 <u>탈수급</u> ※ <u>생계, 의료급여 모두 벗어나야 하며</u> , 본인 포기로 인해 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 <u>탈수급으로 인정하지 않음</u> |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저축 동의서

※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Ⅱ(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가구의 통장) [] 동의

| | |
|------------|--|
| - 지원금 적립기준 | 당월 본인적금 적립 |
| - 환수사유 |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이수시간 및 사례관리 횟수 미충족,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 압류·가압류,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 생계·의료 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 요청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 - 지원금 지급요건 | 3년 간 통장 유지 + <u>교육(총 10시간)</u> 이수 + <u>자금사용계획서 제출</u> |

※ 지급요건 중 밑줄친 부분을 자필로 작성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동의

| | |
|------------|--|
| - 지원금 적립기준 | 당월 본인적금 적립 |
| - 환수사유 |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교육 이수시간 미충족,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 압류·가압류, 3년만기 전 본인 요청시, 본인 사망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 - 지원금 지급요건 | 3년 간 통장 유지 + <u>교육(총 10시간)</u> + <u>자금사용계획서 제출</u> |

□ 계약

나는 위의 계약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지원 등에 대한 모든 효력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 **동 의 합 니 다.**

년 월 일

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 | | | | | | |
|---|--|--|---------|-------------------|------|--|
| 가입연도 |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 결정(적합) 통지서 [] 결정(대상제외)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 | | | |
| 가입기수 | | | | | | |
| 가입은행 | | | | | | |
| 구분 | []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 수급가구) | | | | | |
| | []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 | | | | |
| |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 | | | | |
| | [] 청년내일저축계좌(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 | | | |
| 신청자 | 성명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
| | 주소 | | | | 근무지명 | |
| 가입자 | (가입자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기재) | | | 신청인과의 관계 | | |
| | 성명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
| [] 적 합 | | | 근로소득장려금 | [] 30만원 [] 10만원 | | |
| 1. 귀하가 신청하신 통장사업에 대해 참여 대상으로 결정(추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적금 계좌 개설 및 저축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월별저축액 |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지원금 생성) | | | | | |
| 본인적금 개설기한 | 년 월 일까지 | | | | | |
| 본인적금 입금기한 | 매월 20일까지 자동이체 원칙 ※ 적립월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 | | | |
| 개설방법 | ○ 비대면: 하나은행 하나원큐 어플(대리인 신청 불가) ○ 대면(가입자 직접 방문시) : 신분증, 도장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위임장(인감증명서 1부), 가입자와의 관계증명서 ※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하나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대 상 제 외 | | | | | | |
| 1. 귀하가 신청하신 통장사업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로 변동이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참여기준에 적합할 경우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 | | | | 직인 | |
| 문의 전화번호 : | | | | | | |
| | | | | | 귀하 | |

제1장
상단·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7.4.>

(2쪽 중 1쪽)

|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등) | | | | | | | 처리기간 | |
|--|-------------|---------------------|---------------------|------|----------------------|-----------------|-------------------|-------------|
| <input type="checkbox"/> 신규(제공)신청 <input type="checkbox"/> 변경신청 | | | | | | | 별도안내서 까지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 관계 | | | 전화 번호 | | |
| | 주소 | | | | | 휴대 전화 | | |
| | | | | | | E-mail | | |
| 가족 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 |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 건강상태 (장애/질병) | 취업상태 직업 직장명 | 전화번호 (집/직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우자 관계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 | | | | | | | |

| 급여 계좌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비고(사유) |
|----------|----------|--|-------|------|---------|
| | | | | | ※대표계좌기재 |
| 통지방법 | |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문자메시지서비스(SMS)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위와 같이 의료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신청인과의 관계 : | | |
| 배우자 : | | (서명 또는 인) |
| 보훈지(방)청장,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장 귀하 | | |
| 신청시 구비서식 | 추가제출서류 | |
| 소득·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 |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3.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4.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
| 제출하는 곳 | 관할 보훈지(방)청,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 |

(2쪽 중 2쪽)

| 유의사항 |
|--|
| <p>1.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수급권자의 소득·재산, ③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청 및 국가유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p> <p>2. 「의료급여법」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의료급여법」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급여가 중지됩니다.</p> <p>3.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p> <p>4.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p> <p>5. 「의료급여법」제3조의3 등에 의거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p> <p>6.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p> <p>7.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p> <p>8. 본인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재산 정보 등을 국가보훈부 또는 국가유산청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동 정보를 활용하여 국가보훈부 또는 국가유산청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추천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9. 의료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10. 의료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p> |
| <p>동 신청서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
| <p>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대리신청의 경우)</p>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6.6.30>

| 현장 조사서 | |
|---------------|---|
| 조사 대상 | |
| 조사 목적 | |
| 조사 기간 | 20 . . . 부터 20 . . . 까지 |
| 조사 담당자 | 소속: 직급: 성명 : |
| 조사의 범위 | |
| 관계 법령 | |
| 제출자료 | |
| 기타 | |
| 년 월 일 | |
| 기 관 명 |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직인 </div>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업별 서식 제2호)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 | | |
|---|------------------------|--|----------------------|--------------------------------------|
| 카드 신청인 | 성명 | 한글 영문 | 대상자와의 관계 | |
| | 주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 | 자택주소 | | 집전화 | |
| | | | 휴대전화 | |
| 신청카드 | 카드 구분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임의선택불가)□ ※ 우체국, 신한은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 | 신청구분 | 신규□ 재발급□ |
| | 카드발급 금융기관 |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IBK기업은행□ 스탠 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한□) | 재발급사유 | 분실□ 훼손□ 유효기간만료□ 기타□ |
| 직장정보 (본인) | 직장명 | | 부서명 | |
| | 직장주소 | | 직장전화번호 | |
| 청구서류명지 | ① 자택 ② 직장 ③ 이메일 | | 이메일 | |
| 카드서류명지 |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 주민센터 | | 문자 알림 서비스(SMS) | ① 신청 ② 미신청 |
|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 ① 징구 ② 미징구 | | 현금카드기능 | ① 신청 ② 미신청 |
| | (※발급동의서 작성시만 징구 선택) | | | ※ 현금카드 기능 가능여부 및 연결계좌는 카드사별 상에 |
| 바우처 사용내역 e-mail발송 | ① 신청 ② 미신청 | | 체크카드명세서 e-mail 발송 | ① 신청 ② 미신청 |
| 결제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
| | 예금주성명 | | | |
| 1) 예금주는 반드시 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2) 전용카드일 경우 결제계좌 기입 불필요 3) 미성년자는(18세 미만) 별도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함 4) 카드비밀번호는 개통시 본인이 등록해야 함 5) 체크카드 연결계좌는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하나카드(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IBK기 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신한은행), NH농협카드(NH농협은행) 롯데카드(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 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C(IBK기업은 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한)로 가능함 6)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가 아동복지시설 입소자인 경우 "전용카드" 한정적으로 발급(보호자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밖에 없을 경우 카드 미신청) | | | | |
| 카드발급신청, 약관승인 등 | | | | |
| 본인은 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며 카드발급을 신청합니다. ① 금융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②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 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한□의 | | | | |
| 개인회원 약관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한□ | | | | |
| 귀하 | | | | |

제1장
상당·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
| <p>□ 신청카드사: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BC(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신한□)</p> <p>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거나 귀하의 영업목적으로 사용 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하가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및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등에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는 등 본인이 동의한 목적에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p> <p>■ 제공·이용할 신용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E-mail 주소 등) - 신용거래정보(카드번호, 거래일시, 사용금액, 승인/매입 정보, 사용처, 개인대출현황 및 보증채무 현황, 연체정보, 신용카드 한도 정보 등)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정보 - 신용능력정보(소득, 주거, 재산, 직장정보,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도의 판단에 필요한 개인 신용정보) - 기타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p>■ 정보제공 활용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휴서비스(무이자, 할인, 무료입장, 자동이체 서비스, 부가세 환급 지원 등) 및 각종 포인트(항공, 자동차, 정유 등)의 제공 정산 - 그린카드(에코머니 멤버십) 서비스의 제공 정산¹⁾ - 롯데멤버스 및 롯데마트 다동이클럽 가입 및 서비스 제공·관리²⁾ - 카드배송, 우편물/E-mail/SMS 발송업무, 전화상담업무, 채권추심업무, 인터넷관련 서비스 업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업무목적(매출표 접수, 반송업무, 회원과 가맹점간의 분쟁해결, 가맹점대금 정산업무) 등 귀하의 카드 관련 업무 - 카드회원유치, 카드상품소개, 카드가입 및 이용권유, 금융상품소개, 통신관련 서비스 소개, 보험대리점 업무(보험TM포함) 등 귀하의 영업목적 업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개인 해외 출입국 정보 확인 및 활용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료의 지급·정산의 확인 및 활용 <p>■ 제휴카드 관련 제휴기관: 국민행복카드 관련 제휴기관, 나이스 등 VAN사, 롯데멤버스 제휴사²⁾, 다동이 클럽 제휴사²⁾</p> <p>■ 개인정보 활용 공공기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수사기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¹⁾, 지방자치단체¹⁾</p> <p>■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 까지 유효), 다만 신용정보 제공,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p> <p>※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 귀하가 신청하신 카드를 접수/발급(승인) 가능합니다. ※ 카드가 재발급되거나 회원의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발급시에도 이 동의서는 유효합니다. ※ 신청카드관련 제휴기관은 별도의 안내장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p> |

| 신청서의 바우처카드 부분 작성 요령 |
|--|
| <p>1. 필수기재사항은 꼭 기재해야 합니다. (카드종류, 신청인정보, 자택정보, 대금결제, 신청인 성명/서명 등 모두 필수기재사항입니다.) * 필수기재사항 제외: 직장 관련정보</p> <p>2. 신청인이 작성해야 할 서류는 총 2장이며 앞면 발급신청서에 2회, 뒷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2회, 추가 동의서에 1회 등 5곳의 신청인란에 모두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해야 하며 서명 대신 인장 날인도 가능합니다)</p> <p>3.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분실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동사무소 직원은 발급신청서 하단부 '읍·면·동사무소기재란'을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A4용지에 복사하여 별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4. 발급신청서 항목별 기재요령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카드 중 하나에 √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월 1회 결제일에 청구되며, 바우처 신용카드는 신용등급에 따라 발급 ○ 체크카드: 사용시 마다 연결계좌 잔고 내에서 즉시 결제가능 ○ 전용카드: 신용불량자,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등 제한적으로 발급 가능 ■ 자택전화번호와 핸드폰번호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택전화의 경우 앞자리가 전국지역번호(DDD), 핸드폰의 경우 앞자리가 (010.011.016.017.019)필수코드로 지정되어 있으며 편의상 000-000-0000으로 기재할 경우 카드발급유료로 카드발급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여 작성 ■ 청구서 수령지 -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이메일 중 선택하여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자택, 직장, 이메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항목으로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별도의 대금청구는 없으며(즉시결제) 이메일 선택시 이용내역명세서를 기재되어있는 이메일로 발송 ○ 유의사항: 선택한 항목에 대한 정보기재 필수 ex) 이메일 선택시 이메일 주소 필수기재 ■ 카드수령지 - 바우처카드를 받으실 곳으로 자택/직장/읍·면·동 중 선택하여 표시하며 배송지별 관련배송정보기재 (예: 자택-보호대상자주소, 직장-직장주소, 전화번호, 읍·면·동-읍·면·동주소) ※ 거동불편노인, 중증장애인 등 자택 카드수령이 어려운 보호대상자 경우 읍·면·동주민센터로 카드수령 지정 가능 하나 이 경우 반드시 배송지 정보 중 읍·면·동정보(읍·면·동명, 담당자명, 읍·면·동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읍·면·동주민센터의 해당내용으로 상세 기재함. 예) 읍·면·동명: 교1동사무소, 담당자명: 홍길동, 읍·면·동주소: 서울 종로구 교1동 112, 읍·면·동전화번호: 02-1234-5678 ■ 문자알림서비스(SMS) - 카드사용시 이용내용을 실시간(즉시)으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핸드폰번호 필수)로 신청/미신청 중 선택하여 표시 ■ 체크카드명세서 이메일발송 - 체크카드의 이용내역을 받아보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 (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바우처사용내역 이메일발송 - 바우처서비스의 이용내역을 받아보고 싶을 때 선택하며, 발송 방법은 이메일로만 가능 (이메일 주소 기재 필수) ■ 결제은행/계좌번호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대금을 납부하실 계좌로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 ■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세 이상은 체크카드 발급가능. ○ 14세 미만은 카드발급 불가 ■ 현금카드 기능 - 카드사 및 은행별로 상이하여 카드발급 과정에서 별도 안내 <p>5.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하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종 발급되는 카드의 종류, 결제일, 결제계좌가 각 카드사 별도 기준에 의거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카드실물과 함께 우송해드리는 카드정보와 종합안내장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p> |

(사업별 서식 제3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 | | |
|--------|------------|---------------------------------------|------------------|
| 발급 대상자 | 대상자 | 성명(한글) | 주민등록번호 |
| | 대리인 | 성명(한글) |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
| |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 ① 장구 ② 미장구 ※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

| | | | |
|-------|--|-------|---|
| 신청 구분 |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 재발급사유 |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
|--------|-----|--|---------------------------------|
| 카드 수령지 | 수령인 | <input type="checkbox"/> 발급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보호자(가족 등) | 대상자와의 관계 : ※ 수령자가 보호자인 경우 기재 |
| |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
| | 수령지 |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 자택, 직장, 읍·면·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 |
| | 자택 | □□□□□ | 전화번호 - |
| | 직장 | □□□□□ | 전화번호 |

| | | | |
|--------------|-------------------------------|-----|------|
| 본인 부담금 환급 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작성 대상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 | |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 : 만 14세 미만 아동, 만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대상자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1장
상담·신청

제2장
조 사

제3장
보장결정

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

제5장
사후관리

제6장
서 식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사업별 서식 제3-1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 | | | |
|------------------------|--------|--|--|--|
| 카드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 성명(한글)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법정대리인 | 성명(한글) | | | |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상기 본인(법정대리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행복카드의 발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사업별 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 자산조사 및 자격정보 일체 : 소득·재산 등 자산정보 및 장애유형·등급 등 자격정보
 - 국민행복카드 정보 일체 : 신청정보·카드번호·이용내역 등
- 수집·이용 목적
 - 전자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 및 자격 결정에 관한 업무
 - 바우처포인트 생성 및 이용대금 정산(본인부담금 납부·환급 포함)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공·결제(보육료 및 유아학비 호환결제 포함)에 관한 업무
 - 국민행복카드 카드 제작 및 배송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기타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보유 기간 : 전자이용권 이용자격 종료 후 5년까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 근거 안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 감 정 보 : 장애 및 질병 등 건강정보
- 관 련 법 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항목·제공처)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성명, 주소, 연락처 : 해당 카드사
- 보육료·유아학비 호환결제
 - 국민행복카드번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등 제도 운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내역 : 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전자이용권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사업별 서식 제8호)

| 고 용 · 임 금 확 인 서 | | | | | |
|--|----------------------------------|--|---------------------------|----|----|
| 피 고 용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 |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고 용 기 간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근로시간 | | 일시간 오전 : ~ : (시간) 일시간 오후 : ~ : (시간) 주 당 근로일수: 일 주 근로시간 : 총 시간 | | | |
| 임 금 지 급 형 태 | | 일당제 | 1 일 임 금 : 원 | | |
| | | | 월평균 고용일수 : 일 | | |
| | | 월급제 | 월분 | 월분 | 월분 |
| | | | 기 본 급 | | |
| | | | 각 종 수 당 | | |
| | | | 기 타 금 액 (여비, 자동차유지비 등) | | |
| | | 합 계 금 액 | | | |
|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 | <input type="checkbox"/> 가 입 <input type="checkbox"/> 미 가 입 | | | |
|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 | | | |

제1장
상담·신청제2장
조 사제3장
보장결정제4장
급여·서비스
실시제5장
사후관리제6장
서 식

2026 사회복지급여 공동업무안내

(사업별 서식 제9호)

|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 | | | | 처리기간 | |
|---|--|------------|--|------|-------|--|
| | | | | | 즉 시 | |
| 신 청 인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연락처 :) | | | |
| 복 지 급 여 ① | 복지대상자 (신청인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보장구분 | |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영아수당·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기타 (급여명:) | | | |
| | 계좌 | 현 행 | 금융기관 | | 예 금 주 | |
| | | | 계좌번호 | | | |
| | | 변 경 | 금융기관 | | 예 금 주 | |
| | | 계좌번호 | ※ 압류방지계좌여부(<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 | | |
| 복 지 급 여 ② | 복지대상자 (신청인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보장구분 | |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영아수당·양육수당 <input type="checkbox"/> 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기초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기타 (급여명:) | | | |
| | 계좌 | 현 행 | 금융기관 | | 예 금 주 | |
| | | | 계좌번호 | | | |
| | | 변 경 | 금융기관 | | 예 금 주 | |
| | | 계좌번호 | ※ 압류방지계좌여부(<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부) | | | |
| 위와 같이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하오니,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 10px 0;">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p> | | | | | | |
| 구비서류 | | 급여통장 사본 1부 | | | | |

210mm×279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02

Part

부 록

2026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



제1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유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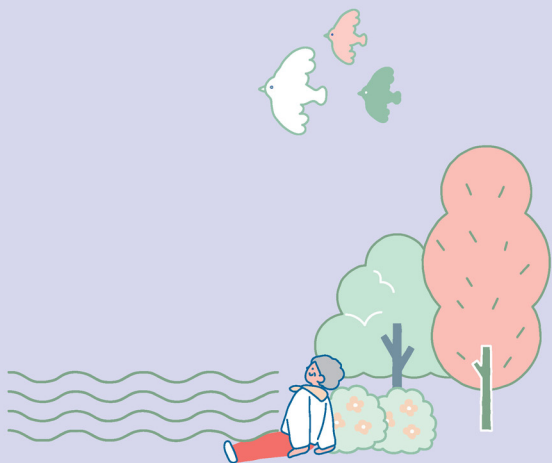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제1장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1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안내

1. 이용·연계 사전협의 절차

»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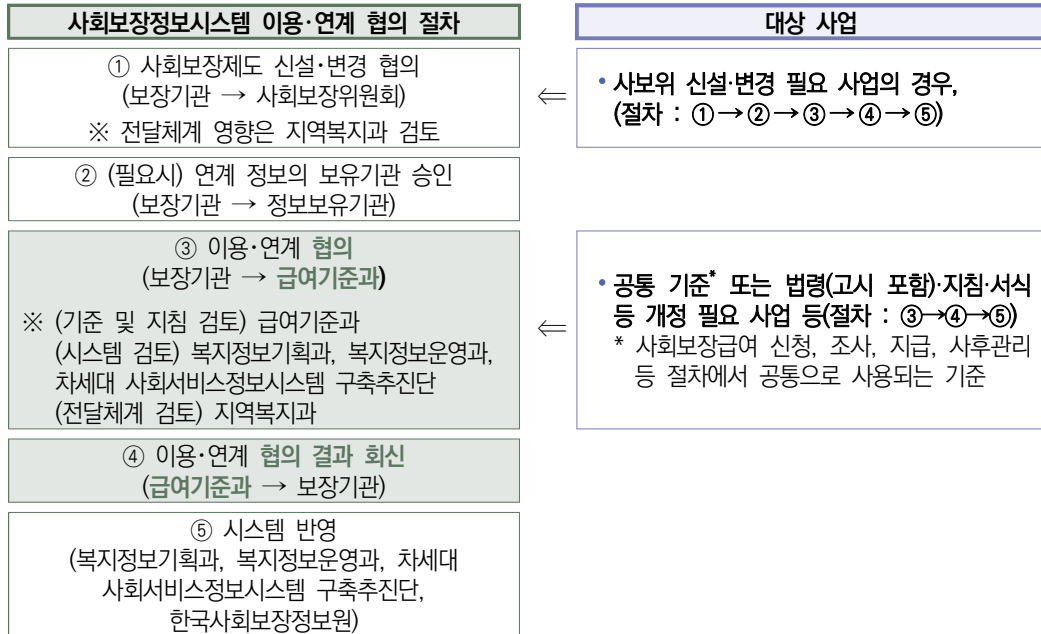
-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급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이용 또는 다른 업무시스템과 연계하는 경우 처리정보, 방식, 적용시기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협의절차

- (1) (보장기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를 위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급여기준과)로 공문 발송
 - * 요청 사항 사전 논의 등을 위해 서류 준비 시 급여기준과로 우선 문의
- (2) (보건복지부) 제도, 시스템, 전달체계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의견을 종합한 최종 검토 결과를 신청기관으로 회신
- (3)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적용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변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 주요 검토사항

※ 법적 근거·기준+시스템 종합 검토(서식3 이용·연계협의 점검표 참고)

- (중앙부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관련 제도·시스템·전달체계 관련 사항 확인
- (지자체) 지자체 사회보장급여 해당 여부, 지자체 행복이음 표준업무 프로세스 (유형1~10)해당 여부, 개인정보보호절차 준수, 통합조사관리팀 업무 협의 내용 등 확인
- (제도) 시스템 이용·연계 법적 근거 및 기준표준화 사항 이행 여부 등 기준 관련 검토
- (시스템) 서비스 확대, 정보화 가능성·효과성, 적정예산 편성 및 개발기간 고려 여부, 시스템 이용방식 및 사회보장정보의 제공방법, 시스템 보안 및 안전대책, 정보연계 및 인프라 등 검토

※ 신규 또는 기능변경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예산 및 개발기간 확보** 필수, 개발예산 및 기간 미확보시 지원 불가

- ① 행복이음 기능개선 예산-정부안(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회보장정보원운영(정보화))에 반영
- ② 이용·연계 협의 신청기관(부서)의 자체 정보화예산 활용 및 자체 사업 추진

* 기획예산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다수의 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은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 예산편성 주체는 사업내용, 관련 법령, 기능별 사용주체, 이용지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신청기관(부서)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위탁하거나 자체 예산으로 소관 시스템 개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 추진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전달체계) 지자체 업무 증가량 등 전달체계 관련 검토*(필요시)

* 사회보장위원회 신설·변경 협의 결과로 대체하며, 필요시 추가 검토 실시

» 제출 서류

- (보장기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요청서(서식1) 및 관련 서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관련 서류 |

| 제출 서류 | 검토 사항 (급여법 시행령 제14조)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요청서 | 제1항 |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결과 자료 | 제2항 제1호~제3호, 제6호~제7호 |
| 사회보장급여 관련 사업설명 자료 | 제2항 제1호~제7호 |
|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령 및 조례 전문 | 제2항 제1호, 제7호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 포함) | 제2항 제1호~제3호, 제6호~제7호 |
| 개인정보보호 지침 | 제2항제6호, 제3항 |
| (필요시)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 * 지자체 업무량 검토, 사업 지침 관련 교육 실적 등 | 제1항제5호 |
| 관할 업무시스템 권한관리 및 정보보호 지침 | 제2항제6호, 제3항 |
| 연계 대상 정보 원천관리기관의 이용 승인 자료 | 제1항제5호 |
| 연계 대상 항목의 데이터 정의서 및 연계 방법 등이 구체화된 참고자료 | 제1항제5호, 제3항 |

* 신규·확대 또는 기존 사업 제도 개편 시, 사회보장급여 이용·연계 점검표(서식3) 필수 제출

» 기타 사항

- 연도 중에 기준이 변경되거나, 시스템 기능개선이 수반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행 3개월 전까지 이용-연계 협의 완료 필요

* 연도전환으로 인한 기준값 변경 등 시스템 반영사항은 9월말까지, 지자체 행복이음 활용(구, 오픈마켓)은 시스템 활용 3개월 전까지 제출

| 정보시스템 변경내용별 협의 사례 |

| 구분 | 주요 내용 | 사례 | 개발 적용기간 |
|--|---|--|---------|
| 기준 변경 | 선정기준, 급여액 근로소득 공제율 등 사업관리 기준값 변경 | 근로소득 공제율 상향조정, 소득재산 조사항목 요율 변경 | 1~3개월 |
| 제도의 신설· 변경 및 시스템 기능개선 수반 | 복지제도 도입, 법령·지침 개정 등으로 인한 신규 기능개발 | 부모급여(복지부), 청년월세지원(국토부) 등 신규 제도 도입 | 10~12개월 |
| | | 기초생활보장 금지 변경 (3금지 → 4금지) | 3개월 |
| | 제도 변경이 있는* 추가 기능개발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요건 중 '가구 재산' 삭제 | 1~3개월 |
| | 정보시스템 간 연계 | 〈신규연계〉 - 사회보장급여 '000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신청인의 수급자격여부 확인 정보를 행정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표준자격정보 등 연계 | 10~12개월 |
| 〈기존 연계 변경〉 - 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준자격정보 등 연계 항목 추가(3종→5종) | | 3~6개월 |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II 중앙부처 복지사업 이용·연계 협의

» 대상사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를 통해 신청조사결정 등 업무를 처리하는 복지부 및 타부처 소관 사회보장사업

» 활용 요건

① 법·기준 관련 요건

- (사회보장급여 해당 여부) 사회보장위원회(사회보장조정과)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결과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기 반영된 사업으로 사보위 신설·변경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추가 검토 해당없음
- (법적 근거) 이용·연계하려는 업무의 조사정보 요청 근거, 행복이음 연계 근거, 조사업무 위탁 근거
 -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사보위 협의 완료 시) 사회보장급여법(제7조, 제23조, 제24조) 적용 가능
 -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 등이 이용·연계하는 경우 개별법 근거 필요
 - * 개별법 근거규정이 필요한 정보의 경우(금융재산 등) 법적 근거 필요
 - * 이와 별도로, 신청 시 **개인정보활용 동의 필요**
- (원천기관 보유기관 동의 여부) 이용·연계하고자 하는 정보의 원천정보 보유기관(예: 국세청 등) 정보제공 승인 내역
- (기준 표준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조사·결정·사후관리 등 업무처리 절차에서 공통 기준 사용여부

② 시스템 관련 요건

- (적정예산 편성 여부) 시스템 추가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 여부
 - ※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다수의 기관이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은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 * 예산편성 주체는 사업내용, 관련 법령, 기능별 사용주체, 이용자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신청기관(부서)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위탁하거나 자체 예산으로 소관 시스템 개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 추진
- (적정개발기간 고려 여부) 시스템 개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추진일정 수립 여부
- (이용 방식, 사회보장정보 제공 방법 협의 여부) 시스템 이용방식(시스템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등)을 사전에 협의 여부

- (개발가능성 및 타당성 고려) 요구내용을 시스템으로 구현 가능한지, 시스템 활용이 효율적인지 등 검토
- (보안 및 안전(개인정보보호 포함)대책 마련 여부)

③ 기타 요건

- (전달체계) 사업 신설 또는 사업 수행주체·수행방법 등 변경 시, 사업수행 주체가 지자체인 경우 지자체 업무량 분석 및 관련 대책 등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 사회보장위원회의 신설·변경 협의 결과를 참고하되, 필요시 추가 검토 실시

| 사회보장급여 공통기준 범위 |

| 분야 | 세부 내용 |
|---------|---|
| 1. 선정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단위 및 조사단위(가구의 범위)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소득·재산기준의 기준금액 산정방식 - 소득·재산 평가방법 - 연령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경우 연령산정 방법 - 급여 및 서비스 신청 시 처리기한 등 |
| 2. 조사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과 재산의 종류, 소득·재산 항목별 정의 및 조사·적용방법 - 사업별 부채 인정 기준 - 사업별 자동차 인정 기준 등 |
| 3. 지급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지급 및 서비스 제공 절차 - 급여 지급계좌 관리 - 급여의 개시일 산정기준 - 급여지급일 - 전출입 시 급여 지급 기관 등 |
| 4. 사후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비용의 환수 요건 및 절차 - 전출입 시 처리 방법 - 수급자의 소득·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 관리 - 이의신청 등 수급자의 권리구제 - 부적정 수급 등 중점관리대상자 관리방안 등 |
| 5.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 보고통계 등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III 지자체 행복이음(구 오픈마켓) 이용 협의

» 개요

- 지자체 사회보장급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조사·결정·급여·지급 등 표준 업무유형 기능제공

* 지자체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개별 복지사업

| 지자체 사업 표준 업무유형(10종) |

| 업무유형 | 표준업무절차 적용 단계 | | | | | | | | | | |
|-------|--------------|---|----|---|----|---|----|---|------|---|-----|
| 유형 1 | 신청 | → | 조사 | → | 결정 | → | 급여 | → | 현금 | → | 정기 |
| 유형 2 | 신청 | → | 조사 | → | 결정 | → | 급여 | → | 현금 | → | 비정기 |
| 유형 3 | 신청 | → | | → | 결정 | → | 급여 | → | 현금 | → | 정기 |
| 유형 4 | 신청 | → | | → | 결정 | → | 급여 | → | 현금 | → | 비정기 |
| 유형 5 | 신청 | → | 조사 | → | 결정 | → | | | 현물 | | |
| 유형 6 | 신청 | → | 조사 | → | 결정 | → | | | 자금대여 | | |
| 유형 7 | 신청 | → | | → | 결정 | → | | | 현물 | | |
| 유형 8 | 신청 | → | | → | 결정 | → | | | 자금대여 | | |
| 유형 9 | | | | | 결정 | → | 급여 | → | 현금 | | |
| 유형 10 | | | | | 결정 | → | | | 현물 | | |

| 표준 업무절차 단계별 주요 기능 |

- 신청: 주민등록정보(거주지 포함) 확인, 신청서 등 구비서류 등록
- 조사: 공적자료 요청을 통한 대상자(가구원 포함) 소득재산 조사
- 결정: 소득재산 요건(소득인정액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 결정, 대상자 명부 조회 및 지급 결정
- 급여: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복지계좌로 현금 지급, 급여지급 내역 확인
- 현물: 대상자 현물 지원내역 입력 및 관리
- 사후관리: 사망·말소, 전출입 등 대상자 변동정보 확인

» 활용 요건

① 사회보장급여 해당 여부

- 지자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의 신설·변경 협의* 완료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참고하고, 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조정과로부터 협의 제외 확인(공문)

②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

- 사회보장급여 신청인의 소득·재산 및 자격 등 개인정보처리의 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 필요

* 지자체 행복이음 유형9,10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근거 마련

- 지자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별도 동의서 마련

*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동의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검토받아 사용하는 것을 권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 - 정책·법령 - 지침(가이드라인)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보장기관의 담당자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주의

» 기타 사항

- 유형9 사업 중 「기초생활보장법」 상에 따른 압류방지계좌 사용(생계주거)이 필요한 사업은 지자체 급여 해당 확인 공문 필요(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보장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및 연계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지침’,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사용자 권한관리 통합지침’을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준용하고, 논하지 않는 내용은 보장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준용

- 소득·재산 조사 업무를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 부서에서는 사무 분장 및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통합조사관리팀과 미리 논의할 것을 권고
- 지자체 행복이음 이용을 위한 기능적용은 최소 2개월이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해 이용 협의를 위한 관련 서류 준비 및 필요 기능 가능 여부 등 사전 문의
- e호조 연계사업은 행정안전부(재정정보화사업과)와 관련 협의 기간 필요(약 2주)

[서식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요청서(복지부·중앙부처)

| | | | |
|---|--|--|--|
| 구 분 | <input type="checkbox"/> 사회보장급여 신설 또는 폐지에 따른 기능 변경 <input type="checkbox"/> 사회보장급여 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 변경 <input type="checkbox"/> 사회보장급여 신규 연계 및 확대 | | |
| 사업명 | | | |
| 사업기간 | 사업부서 | | |
| | 담당자 (성함, 연락처) | | |
| 근거 | 예산 | | |
| 사업 설명 또는 사업개요 | ○ 제도 주요내용 ○ 기준 신설·변경 내용(국회 등 지적,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등 법적 근거 ※ 자세한 설명자료 첨부(필수) | | |
| 시스템 요청 사항 | ○ 전산 요청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필요성 - 기준 신설·변경사항 및 이용·연계하고자 하는 정보 목록 - 연계 방식 - 현행, 요청사항 비교 등 ※ 온라인신청 등 복지로(대국민포털) 개선이 필요한 경우 명확히 기재 ○ 시스템 보안 및 안전대책 ○ 반영시기 등 명시 | | |
| 검토의견 | 급여기준과 | | |
| | ○ 기준 표준화 이행, 타 사업 영향도, 사업 절차 및 기준의 적정성 등 | | |
| | 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 | |
| ○ 시스템 구현 가능성·타당성, 적용일정, 개인정보보호, 시스템보안 등 | | |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서식 2]

지자체 행복이음 이용 신청서

| | | | |
|-------------|---|-----------------------|--------------------------------|
| 구 분 | <input type="checkbox"/> 사회보장급여 신설에 따른 신규 이용 <input type="checkbox"/> 사회보장급여 제도 변경에 따른 기능 변경 | | |
| 급여명 | | | |
| 담당자 | 00시 00국 00과 팀장 000(044-000-000), 주무관 000(0000) | |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사업기간 및 예산(당해): ○ 추진근거: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규·변경 이용 협의 이력(가능변경 시): | | |
| 협의 요건 충족 여부 | 요 건 | | |
| | 사회보장급여 해당 여부, 제도 마련 절차 준수 등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 완료(변경협의) * 붙임0 서류 참조 |
| | | 사업추진계획 | 완료(계획수립) * 붙임0 서류 참조 |
| | | 관련 조례 마련 | 완료(조례마련) * 붙임0 서류 참조 |
| | 보안 및 안전 대책 마련 | 급여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 포함) | 완료(신청서마련) * 붙임0 서류 참조 |
| |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지침 | 완료(내부관리계획 등 수립) * 붙임0 서류 참조 |
| 신규 이용 요청 사항 | ○ 업무유형: - e호조 사용 여부: ○ 기능적용 희망 일정: | | |
| 기능 변경 요청 사항 | ○ 요청배경: * 관련 증빙자료(추진계획 등) ○ 요청 내용: * 참고자료 별첨 ○ 기능적용 희망 일정: | | |

붙임 **사업설명서**

* 지자체 행복이음 이용 신청서 붙임으로 제출

- 사업명 :
- 목 적 :
- 지원근거(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완료 여부 포함)
 - 근거 법령, 조례, 자체 기본계획 등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여부, 협의대상 제외인 경우 제외 사유 명시
- 지원 대상
 - ※ 제외대상
- 지원 규모 및 내용
 -
- 사업비 및 사업기간:
- 사업시행주체:
- 수행절차

| 구 분 | 내 용 | 담 당 |
|----------------------|-----|-----|
| 신청·접수 | . | |
| ▽ | | |
| 신청자 통보 (읍면동 → 시군) | . | |
| ▽ | | |
| 소득·재산 조사 | . | |
| ▽ | | |
| 대상자 선정 | . | |
| ▽ | | |
| 선정 통보 | . | |
| ▽ | | |
| 지원금 지급 | . | |
| ▽ | | |
| 대상자 관리 | . |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서비스
(맞춤형
급여 안내)

[서식 3]

사회보장급여 이용·연계 협의 점검표(복지부·중앙부처)

※ (작성요령) 해당하는 항목은 자세히 기입하되, 해당없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기재

| 구분 | 사업과 확인사항 | | | | | | | | | | | | |
|--------------------------|---|---------------|--|--|---|------------|---------------|---|-----------|--|---|-----------|--|
| <p>Ⅰ 기준 (급여기준과 검토사항)</p> | | | | | | | | | | | | | |
| | <p>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연계하려는 급여가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수행하는 사회보장 급여에 해당하는지?</p> <p style="margin-left: 20px;">※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 해당 시 사회보장위원회 신설·변경 협의 결과 공문 필요</p> <p>⇒</p> | | | | | | | | | | | | |
| | <p>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3">필요 법적 근거</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1</td> <td style="width: 20%;">조사·정보 요청근거</td> <td style="width: 75%;">금융재산 소득·재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colspan="2">행복이음 연계근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colspan="2">조사업무 위탁근거</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left: 20px;">※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사회보장급여법(제7조, 제23조, 제24조) 적용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 등이 이용·연계하는 경우 개별법 근거 필요</p> <p>⇒</p> | 필요 법적 근거 | | | 1 | 조사·정보 요청근거 | 금융재산 소득·재산 | 2 | 행복이음 연계근거 | | 3 | 조사업무 위탁근거 | |
| 필요 법적 근거 | | | | | | | | | | | | | |
| 1 | 조사·정보 요청근거 | 금융재산 소득·재산 | | | | | | | | | | | |
| 2 | 행복이음 연계근거 | | | | | | | | | | | | |
| 3 | 조사업무 위탁근거 | | | | | | | | | | | | |
| | <p>2-1. 신청 시 소득·재산 등 개인정보 조회·활용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았는지?</p> <p>⇒</p> | | | | | | | | | | | | |
| | <p>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시, 정보이용에 대한 원천정보 보유기관의 사용허락을 받았는지?</p> <p style="margin-left: 20px;">※ 이용하고자하는 정보의 원천정보 보유기관(예: 국세청 등)이 정보이용을 허락하는 회신 공문 필요</p> <p>⇒</p> | | | | | | | | | | | | |
| | <p>4.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급여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지?(기준표준화)</p> <p>⇒</p> | | | | | | | | | | | | |
| | <p>4-1.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사항이 다른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제도의 정합성)</p> <p>⇒</p> | | | | | | | | | | | | |
| | <p>4-2. 신설·변경하려는 사회보장급여의 변경사항이 다른 사회보장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사업과 및 급여기준과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p> <p style="margin-left: 20px;">* 예시) 공통기준을 적용하다가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예: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기본재산액 3급지 → 4급지 변경) 등</p> <p>⇒</p> | | | | | | | | | | | | |

| 구분 | 사업과 확인사항 |
|----|---|
| ② | <p>시스템(복지정보기획과, 복지정보운영과, 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검토사항)</p> <p>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 해당 신청기관(부서)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위탁하거나 자체 예산으로 소관 시스템 개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는지 여부 검토 ⇨</p> <p>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개발기간을 고려하였는지? ⇨</p> <p>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안 및 안전에 대한 대책(기술적, 물리적, 관리적)을 마련하였는지? ⇨</p> <p>3-1. (필요시) 아래 사항 기재 또는 관련 자료 제출 -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제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 제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방식, 사회보장정보의 제공 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구성 방법 및 내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방안 - 그 밖에 보장기관의 시스템 변경, 연계 가능 여부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관련자료 제출 시 보장기관의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및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 정보보호 지침' 등 제출 ⇨</p> |
| ③ | <p>전달체계 (지역복지과)</p> <p>※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 시 사회보장시스템 이용·연계 등과 관련하여 업무량 분석 등 사회보장 전달체계 영향을 분석한 경우 해당 협의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p> <p>1. 사회보장사업 기준의 신설·변경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등 수행방식 변경으로 지자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추가 부담은 없는지? - 지자체 인력 등 활용 이전에 해당부처 전달체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 - 지자체 업무부담 증가 여부(업무부담 증가 해당 없다고 검토할 경우 객관적 자료 증빙 필요) - 지자체 업무량 증가 예측 시 인력 수요 예측 및 추가인력 확보 방안 또는 임시 인력 활용 계획 포함 필요(예산 확보 방안 포함) ⇨</p> <p>2. 업무량 증가 및 업무변경 방식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는지?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수행기관 관련 의견수렴 또는 수요조사 내용 등 관련 자료 증빙 필요) - 지자체 담당자 설명 및 교육 계획을 마련하였는지? ⇨</p>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붙임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무처리 지원 개요 및 현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무처리 지원' 개요

- (의의) 소득·재산·인적·수급이력 자료 등을 연계하여 사업별 조사부담을 완화하고, 업무처리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무 흐름 |



- 업무처리 원칙
 - (부처 시스템이 완비된 경우) 부처 시스템에서 신청·접수, 급여결정, 급여실시, 사후관리 등 조사를 제외한 전 업무를 담당*
 - * (업무처리 지원 4유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소득·재산 정보 등 공적자료 요청·조회하여 조사를 실시, 조사결과를 부처 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부처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복지사업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활용하여 처리
- 업무처리 지원 유형

| 구분 | 신청 | 조사 | 결정 | 급여 |
|-----|---|------------------|----------|----------|
| 1유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 | | |
| 2유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 | | 각 부처 시스템 |
| 3유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 | 각 부처 시스템 | |
| 4유형 | 각 부처 시스템 | 사회보장정보 시스템(행복이음) | 각 부처 시스템 | |
| 5유형 | 각 부처 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한 자격 확인 | | |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현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업무처리 유형별 복지서비스 현황

○ 복지부 포함 14개 중앙부처, 264개 사업 업무처리 지원 중('26년 2월 기준)

| 유형 구분 | 부 처 명 | 자격구분 | 서비스 명 | 서비스 유형 |
|--------------|---------------|---|--|--------|
| 유형 I (79) | 보건복지부 (52) | 기초연금(1) | 기초연금 | 현금 |
| | | 긴급(9) |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현금 |
| | |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전기요금 긴급복지 주거지원 | 현물 |
| | | 기초생계급여(4)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 현금 |
| | | 기초의료급여(2) ※기초생계와 중복(2개): 장제급여, 해산급여 | 기초의료급여, 시설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 현금 |
| | | 자활근로(2) | 자활근로(기초) 자활근로(차상위) | 현금 |
| | | 자산형성지원(1) | 청년희망키움통장(근로소득공제금) | |
| | | 청년자산형성지원(1) |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소득공제금) | |
| | | 입양아동(4) | 입양수수료 지원, 장애입양아동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장애아입양아동 의료비지원 | 현금 |
| | | 가정위탁아동(1)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 현금 |
| | | 아동발달지원계좌(1)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
| | | 의사상자(1) | 의사상자 장제급여 | 현금 |
| | | 기타아동(2) | 소년소녀가정 지원금(부가급여) | |
| | | |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 |
| | | 여성장애인(1)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현금 |
| | | 장애인복지(5)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시설), 장애아동수당(시설), 장애인 급여(지자체) | 현금 |

| 유형 구분 | 부 처 명 | 자격구분 | 서비스 명 | 서비스 유형 | |
|--------------------|---|---|---------------------------------------|-------------|----|
| | | 일반장애인(4)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현물 | |
| | | | 장애인검사비 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 현금 | |
| | | 장애인연금(1) | 장애인연금 | 현금 | |
| | | 아동급식(1) | 아동급식지원 | 현물 | |
| | | 장기요양보험(3) | 특별현금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 프로그램 연계형 | |
| | | 아동수당(2) | 아동수당(현금) | 현금 | |
| | | | 아동수당(현물) | 현물 | |
| | | 자립준비청년자립수당(2)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 현금 | |
| | | 첫만남이용권(2) | 첫만남이용권(현금) | 현금 | |
| |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 바우처 | |
| | | 부모급여(2) | 부모급여(차액) | 현금 | |
| | | | 부모급여(현금) | | |
| | | 교육부 (3) | 양육수당(1) | 양육수당 | 현금 |
| | | | 장애아동양육수당(1) | 장애아동양육수당 | |
| 농어촌양육수당(1) | 농어촌양육수당 | | | | |
| 농림축산 식품부 (4) | 기초생계급여(2) | 양곡공제비, 양곡비 | 현물 | | |
| | 기초의료급여(1) | 양곡비 | | | |
| | 모자가족, 부자가족,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1) | 차상위계층양곡할인 | | | |
| 성평등가족부 (17) | 청소년한부모(4)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현금 | | |
| | |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아동교육지원(학용품비) | | | |
| | 청소년특별지원(9) | 취업지원 건강지원, 기타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생활지원, 자립지원, 학업지원, 활동지원 | 현물 현금 | |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변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유형 구분 | 부 처 명 | 자격구분 | 서비스 명 | 서비스 유형 |
|---------------|---------------|--|---|--------|
| | 국토교통부 (3) | 기초주거급여(2) ※ 기초생계와 중복(2개): 장제급여, 해산급여 | 기초주거급여, 기초청년주거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 현금 |
| | | 청년월세(1) | 청년월세 지원 | |
| 유형II (114) | 보건복지부 (90) | 의료급여(57)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5.18민주화운동관련자(2종) 노숙인1종 무호적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2종)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2종) 이재민 입양아동 의료급여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2종) 행려환자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국민기초1종 국민기초2종 군입대자(1종) 군입대자(2종) 사회복지시설입소자 의료급여 난임시술 의료급여 노인틀니 상악지원 의료급여 노인틀니 하악지원 개상(상악) 개상(하악) 교합조정-단순(상악) 교합조정-단순(하악) 교합조정-복잡(상악) 교합조정-복잡(하악)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 암환자지원 의료급여 임플란트 의료급여 중증화상환자지원 의료급여 치석제거 희귀난치성질환(결핵) 의료급여 희귀난치성환자지원 의치상 수리(상악) | 감면 |

| 유형 구분 | 부 처 명 | 자격구분 | 서비스 명 | 서비스 유형 |
|-------|-------|--------------|---|----------|
| | | | 의치상 수리(하악) 의치상 조정(상악) 의치상 조정(하악) 인공치 수리(상악) 인공치 수리(하악) 조직 조정(상악) 조직 조정(하악) 첨상-간접법(상악) 첨상-간접법(하악) 첨상-직접법(상악) 첨상-직접법(하악) 클래스프수리(단순) 클래스프수리(복잡) | |
| | | |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상한제 본인부담보상금 요양비(의료급여)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재가의료급여사업 | 현금 |
| | | 장애인복지(2) | 장애아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서비스 | 프로그램 연계형 |
| | | 자산형성지원(4) |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 현금 |
| | | 차상위자산형성지원(3) | 희망키움통장 II, 희망저축계좌 II 청년저축계좌 | |
| | | 청년자산형성지원(1) | 청년내일저축계좌 | |
| | | 사회서비스이용(17)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35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시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명칭변경), 지역이음바우처, 최종중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장애인개인예산제시범운영, 청소년 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바우처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변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유형 구분 | 부 처 명 | 자격구분 | 서비스 명 | 서비스 유형 |
|-----------|--|--|---|--------|
| | | 장애인활동지원(2) |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활동지원 | |
| |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1) | 장애인활동지원 시도/시군구 추가지원사업(88) | |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2) |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 |
| | | 차상위계층확인(1) | 차상위계층확인 | |
| | 교육부(17) | 유아학비(3) 누리(만3~5세)(1) 누리(만3~5세 법정)(1) 누리(만 3~5세 다문화)(1) 누리(만 3~5세 장애아)(1) 연장보육(만 0~2세)(1) 연장보육(만 0~2세 법정)(1) 연장보육(만 0~2세 다문화)(1) 기본보육(1) 장애아보육(1) 방과후보육(2) 방과후법정(2) 장애아방과후보육(1) | 유아학비(만 3~5세), 유아학비(만 3~5세 법정), 유아학비(만 3~5세 다문화) | 바우처 |
| | | | 누리(만 3~5세) | |
| | | | 누리(만 3~5세 법정) | |
| | | | 누리(만 3~5세 다문화) | |
| | | | 누리(만 3~5세 장애아) | |
| | | | 연장보육(만 0~2세) | |
| | | | 연장보육(만 0~2세 법정) | |
| | | | 연장보육(만 0~2세 다문화) | |
| | | | 기본보육 | |
| | | | 장애아보육 | |
| | | | 방과후보육 시간연장형 보육료 | |
| | | | 방과후법정 시간연장형 보육료 | |
| | | | 장애아방과후보육 | |
| | | | 국가보훈부(2) | |
| | 산업통상부(1) | 에너지바우처(1) | 에너지바우처 | 바우처 |
| 성평등가족부(4) | 아이돌봄서비스(2) 다문화가정방문교육서비스(1) 사회서비스이용권(1) |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 바우처 | |
| | | 다문화가정방문교육서비스 | | |
|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 |

| 유형 구분 | 부 처 명 | 자격구분 | 서비스 명 | 서비스 유형 |
|----------------|-----------------|------------------------|-------------------------------|-----------|
| 유형 III (15) | 보건복지부 (4)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1)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 감면 |
| | | 보건지원(1) |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 현물 |
| | | 일반장애인(2) | 자동차구입자금융자(장애인근로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자금대여 |
| | 교육부(5) | 초중고교육비지원(4) | 고교학비 지원(3종) | 현금 |
| | | | 급식비 | |
| | |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
| |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2종) | 바우처 | |
| | 기초교육급여(1) | 기초교육급여 | | |
| | 국토교통부 (4) | 영구임대(1) | 영구임대주택공급 | 현물 |
| | | 다가구등기주택매입임대(1) | 다가구등기주택매입임대(3종) | |
| | | 기존 주택전세임대(1) | 기존주택전세임대(2종) | |
| | |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1)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 현금 |
| | 질병관리청 (2) | 보건지원(2) |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현금 |
| 유형 IV (34) | 보건복지부 (5) | 방문보건사업(1) | 방문보건사업 | 현물 |
| |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사업(1)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4종) | 프로그램 연계급여 |
| | | 보건사업지원(3)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치매검진비사업, 영양플러스사업 | 현물 |
| | 교육부 (7) | 국가장학금(Ⅰ·Ⅱ)(1) | 국가장학금(Ⅰ·Ⅱ) | 감면 |
| |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1)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자금대여 |
| | | 일반상환학자금대출(1)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자금대여 |
| | | 푸른등대기부장학금(1) | 푸른등대기부장학금 | 감면 |
| | |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1) |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 인건비 |
| |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1)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감면 |
| | | 평생교육바우처지원(1) | 평생교육바우처지원 | 바우처 |
| 외교부 (1) | 재외국민긴급지원비 지원(1) | 재외국민긴급지원비지원 | 현금 |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유형 구분 | 부 처 명 | 자격구분 | 서비스 명 | 서비스 유형 |
|--------------------------------|----------------|---------------------------|--------------------------|--------|
| | 국가보훈부 (9) | 국가유공자등 생활조정수당(1)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현금 |
| | | 국가보훈대상수업료등 국비지원(1) | 국가보훈대상수업료등 국비지원 | 감면 |
| |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1)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 감면 |
| | |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 지급(1) |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 현금 |
| | |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1) |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 자금대여 |
| | |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 보조(1) | 장기복무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현금 |
| |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1)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현금 |
| |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1) |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지원 | 인적 |
|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1)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현금 |
| | 문화체육 관광부(1) | 창작준비금지원사업(1) | 창작준비금지원사업 | 현금 |
| | 고용노동부 (2) | 정부지원일자리사업(1) | 정부지원일자리사업 | 현금 |
| | | 국민취업지원제도(1) | 국민취업지원제도(Ⅰ·Ⅱ 유형) | 현금 |
| | 국토교통부 (9) | 국민임대주택공급(1) | 국민임대주택공급(4종) | 현물 |
| | | 공공분양주택공급(1) | 공공주택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10종) | |
| | | 전세임대주택공급(1) | 전세임대주택공급(2종) | |
| | | 매입임대주택공급(1) | 매입임대주택공급(6종) | |
| | | 장기전세주택공급(1) | 장기전세주택공급 | |
| | | 행복주택공급(1) | 행복주택공급 | |
| 장기안심주택(1) | | 장기안심주택(서울시) | | |
| 내집마련디딤돌대출(1) |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자금대여 | |
| 버팀목전세대출(1) | 버팀목전세대출 | | | |
| 자격정보 제공 등 (유형 V) (22) | 보건복지부 (5) |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1) |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 현물 |
| | |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1) |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현물 |

| 유형 구분 | 부 처 명 | 자격구분 | 서비스 명 | 서비스 유형 |
|---------------------|-------|--------------------------------------|-----------------------------------|--------|
| |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1)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현금 |
| |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1)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현물 |
| | | 장애인일자리(1) | 장애인일자리(4종) | 현금 |
| 방송통신 미디어위원회 (2) | | TV수신료면제(1) | TV수신료면제 | 감면 |
| | |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1) |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2종) | 현물 |
| 교육부(1) | | 인문100년장학금(1) | 인문100년장학금 | 감면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5) | | 유선·인터넷전화요금감면 (1) | 유선·인터넷전화요금감면 | 감면 |
| | |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1) | 초고속인터넷통신요금감면 | 감면 |
| | | 이동통신요금감면(1) | 이동통신요금감면 | 감면 |
| | |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1) |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 현물 |
| |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1)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2종) | 감면 |
| 국가보훈부 (1) | | 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1) | 국가유공자 보철구지급 | 현물 |
| 문화체육 관광부(2) | | 스포츠강좌이용권(1) | 스포츠강좌이용권 | 바우처 |
| | | 통합문화이용권(1) | 통합문화이용권 | 바우처 |
| 산업통상부 (3) | | 가스요금할인(1) | 가스요금할인 | 감면 |
| | | 저소득층, 사회적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1) | 저소득층, 사회적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 현금 |
| | | 전기요금할인(1) | 전기요금할인 | 감면 |
| 기후에너지 환경부 (지자체) (1) | |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1) | 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 감면 |
| 고용노동부 (2) | | 보조공학기기지원(1) | 보조공학기기지원 | 현물 |
| | |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 급여(1) |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 현물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 연계
협업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붙임 2 지자체 행복이음 활용사업 목록('26년 2월 기준, 291개)

| 연번 | 지자체 | 사업명 | 유형 | 시행연도 |
|----|-----------|---------------------------------|-----|------|
| 1 | 서울특별시 | 서울형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 유형1 | 2010 |
| 2 | 서울특별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유형1 | 2013 |
| 3 | 서울특별시 | 남성 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 유형4 | 2014 |
| 4 | 서울특별시 | 중증 장애인 이름통장 지원 | 유형5 | 2018 |
| 5 | 서울특별시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유형2 | 2019 |
| 6 | 서울특별시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유형1 | 2019 |
| 7 | 서울특별시 | 서울시 꿈나래통장 | 유형1 | 2019 |
| 8 | 서울특별시 |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 유형1 | 2020 |
| 9 | 서울특별시 | 돌봄 SOS센터 | 유형2 | 2021 |
| 10 | 서울특별시 | 민주화운동 관련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유형3 | 2021 |
| 11 | 서울특별시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 유형5 | 2021 |
| 12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가사돌보미 지원사업 | 유형7 | 2023 |
| 13 | 서울특별시 |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유형3 | 2023 |
| 14 | 서울특별시 | 서울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 유형3 | 2023 |
| 15 | 서울특별시 | 서울시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 유형9 | 2024 |
| 16 | 서울특별시 |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지원 특정바우처) | 유형1 | 2024 |
| 17 | 서울특별시 | 서울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 유형4 | 2024 |
| 18 | 서울특별시 |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 | 유형3 | 2025 |
| 19 | 서울특별시 |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 유형5 | 2026 |
| 20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저소득층계층 자녀 학비 지원 | 유형2 | 2011 |
| 21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급 | 유형9 | 2024 |
| 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 강북구 장학생 선발지원 사업 | 유형3 | 2018 |
| 23 | 서울특별시 강서구 | 강서구 기초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 유형9 | 2024 |
| 24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으뜸관악 청년통장 | 유형1 | 2019 |
| 25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형 에너지약자 공공요금 지원사업 | 유형1 | 2023 |
| 26 | 서울특별시 광진구 |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 | 유형1 | 2025 |
| 27 |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구로구 보훈예우수당 | 유형3 | 2018 |
| 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노원구 국민기초수급자 명절지원금 | 유형9 | 2024 |
| 29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원 | 유형4 | 2014 |
| 30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동작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사업 | 유형9 | 2025 |
| 31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 유형1 | 2010 |

| 연번 | 지자체 | 사업명 | 유형 | 시행연도 |
|----|------------|-----------------------------------|-----|------|
| 32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서울 서초구 저소득주민 명절지원금 | 유형9 | 2025 |
| 33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지원 | 유형1 | 2011 |
| 3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과학문화 이용권 | 유형7 | 2024 |
| 3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영등포구 명절위문금 | 유형9 | 2026 |
| 36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 유형1 | 2023 |
| 37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은평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 유형9 | 2024 |
| 38 |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유형3 | 2021 |
| 39 | 서울특별시 중구 |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 유형9 | 2025 |
| 40 |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 중구 청소년 진로체험 배우처 | 유형7 | 2025 |
| 41 | 부산광역시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 | 유형2 | 2010 |
| 42 | 부산광역시 | 한부모가족자녀 초등생 학용품비 지원 | 유형4 | 2014 |
| 43 | 부산광역시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 유형1 | 2016 |
| 44 | 부산광역시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원 | 유형1 | 2021 |
| 45 | 부산광역시 |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 유형4 | 2021 |
| 46 | 부산광역시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 유형1 | 2022 |
| 47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유형3 | 2025 |
| 48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재)부산사상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 유형2 | 2015 |
| 49 | 부산광역시 서구 |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유형2 | 2024 |
| 50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수영구 저소득 어르신 건강효도비 | 유형9 | 2024 |
| 51 | 부산광역시 중구 | 부산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유형2 | 2025 |
| 52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유형4 | 2015 |
| 53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선발 | 유형2 | 2011 |
| 54 | 인천광역시 | SOS 복지안전벨트 | 유형2 | 2018 |
| 55 | 인천광역시 | 취 창업 재직청년 월세 지원사업(청년월세지원) | 유형2 | 2020 |
| 56 | 인천광역시 | 효드림복지통합카드 지원사업 | 유형7 | 2021 |
| 57 | 인천광역시 | 청년 발달장애인 자선형성 지원 사업(행복씨앗통장) | 유형1 | 2021 |
| 58 | 인천광역시 | 인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 유형1 | 2022 |
| 59 | 인천광역시 | 인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원 | 유형3 | 2022 |
| 60 | 인천광역시 | 인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장례비 지원 | 유형4 | 2022 |
| 61 | 인천광역시 | 인천형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 유형1 | 2022 |
| 62 | 인천광역시 | 디딤돌 안정소득(인천형 기초보장제도) | 유형1 | 2023 |
| 63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천사지원금 | 유형7 | 2024 |
| 64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아이 꿈 수당 | 유형7 | 2024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 연계
협약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서비스
(맞춤형
급여 안내)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연번 | 지자체 | 사업명 | 유형 | 시행연도 |
|----|----------|-------------------------------|-----|------|
| 65 | 광주광역시 |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 유형2 | 2011 |
| 66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 | 유형1 | 2018 |
| 67 | 광주광역시 |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 유형1 | 2019 |
| 68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광주다움 통합돌봄 | 유형5 | 2023 |
| 69 | 광주광역시 |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사업 | 유형4 | 2023 |
| 70 | 광주광역시 서구 |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유형1 | 2024 |
| 71 | 대전광역시 |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 유형5 | 2018 |
| 72 | 대전광역시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유형3 | 2023 |
| 73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 유형5 | 2023 |
| 74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 유형1 | 2022 |
| 75 | 울산광역시 중구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제도 | 유형1 | 2011 |
| 76 | 경기도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 유형4 | 2010 |
| 77 | 경기도 | 장애인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 | 유형4 | 2014 |
| 78 | 경기도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 유형2 | 2016 |
| 79 | 경기도 | 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 유형3 | 2017 |
| 80 | 경기도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및 장제비 지급 | 유형1 | 2021 |
| 81 | 경기도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 유형1 | 2021 |
| 82 | 경기도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유형3 | 2022 |
| 83 | 경기도 |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 유형4 | 2022 |
| 84 | 경기도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 유형3 | 2022 |
| 85 | 경기도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 유형2 | 2023 |
| 86 | 경기도 |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 유형2 | 2023 |
| 87 | 경기도 | 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 유형7 | 2023 |
| 88 | 경기도 |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유형1 | 2024 |
| 89 | 경기도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 유형2 | 2024 |
| 90 | 경기도 가평군 | 참전명예수당 | 유형3 | 2015 |
| 91 | 경기도 가평군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유형3 | 2015 |
| 92 | 경기도 가평군 | 보훈명예수당 | 유형3 | 2015 |
| 93 | 경기도 고양시 | 고양시민기초생활지원사업 | 유형2 | 2010 |
| 94 | 경기도 과천시 | 과천시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 유형7 | 2024 |
| 95 | 경기도 구리시 | 구리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 유형2 | 2022 |
| 96 | 경기도 군포시 |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지원사업 | 유형4 | 2020 |
| 97 | 경기도 군포시 | 어린이집 생애최초입학준비금 지원 | 유형4 | 2021 |

| 연번 | 지자체 | 사업명 | 유형 | 시행연도 |
|-----|----------|--------------------------------|-----|------|
| 98 | 경기도 군포시 |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유형4 | 2021 |
| 99 | 경기도 남양주시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유형3 | 2017 |
| 100 |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 유형3 | 2018 |
| 101 |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유형3 | 2018 |
| 102 | 경기도 부천시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유형3 | 2015 |
| 103 | 경기도 부천시 | 부천시 청년 주거비 지원 | 유형1 | 2023 |
| 104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 유형2 | 2021 |
| 105 | 경기도 성남시 |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 유형2 | 2021 |
| 106 | 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 청년, 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 유형2 | 2022 |
| 107 | 경기도 수원시 | 수원형 통합돌봄(수원새빛돌봄) | 유형5 | 2023 |
| 108 | 경기도 시흥시 | 시흥형 주거복지사업 | 유형1 | 2016 |
| 109 |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차지원 사업 | 유형1 | 2021 |
| 110 |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 유형2 | 2022 |
| 111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시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 유형4 | 2026 |
| 112 | 경기도 안산시 | 안산시 이차지원 | 유형2 | 2019 |
| 113 | 경기도 안산시 | 안산시 영유아양육비지원 | 유형3 | 2019 |
| 114 | 경기도 안양시 | 보훈명예수당 | 유형3 | 2016 |
| 115 | 경기도 안양시 | 사망위로금 | 유형4 | 2016 |
| 116 | 경기도 안양시 | 참전명예수당 | 유형3 | 2016 |
| 117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 장수수당 | 유형3 | 2021 |
| 118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 신변처리용품(기저귀) 지원사업 | 유형3 | 2022 |
| 119 |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 | 유형1 | 2023 |
| 120 | 경기도 여주시 |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사업 | 유형3 | 2020 |
| 121 | 경기도 오산시 | 오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유형2 | 2025 |
| 122 | 경기도 용인시 | 용인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유형2 | 2022 |
| 123 | 경기도 용인시 | 용인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유형2 | 2023 |
| 124 | 경기도 용인시 | 용인시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유형2 | 2025 |
| 125 | 경기도 의왕시 |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 | 유형4 | 2016 |
| 126 | 경기도 의왕시 | 보훈명예수당 | 유형3 | 2016 |
| 127 | 경기도 의왕시 |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유형2 | 2023 |
| 128 | 경기도 의정부시 | 의정부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유형1 | 2024 |
| 129 | 경기도 이천시 |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유형3 | 2023 |
| 130 | 경기도 평택시 |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 유형1 | 2021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 연계
협업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연번 | 지자체 | 사업명 | 유형 | 시행연도 |
|-----|-------------|------------------------------|-----|------|
| 131 | 경기도 평택시 | 평택시 청년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유형2 | 2022 |
| 132 | 경기도 화성시 | 화성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유형2 | 2023 |
| 133 | 경기도 화성시 |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 | 유형1 | 2024 |
| 134 | 경기도 화성시 |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유형2 | 2024 |
| 135 | 경기도 화성시 |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유형2 | 2025 |
| 136 | 강원특별자치도 | 차상위 긴급지원 | 유형4 | 2014 |
| 137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수당 | 유형3 | 2019 |
| 138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수당 | 유형7 | 2022 |
| 139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사업 | 유형1 | 2022 |
| 140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사업 | 유형1 | 2023 |
| 141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유형4 | 2023 |
| 142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 유형1 | 2023 |
| 143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 여성 구직활동 지원 | 유형1 | 2025 |
| 144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유형3 | 2017 |
| 145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동해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 유형3 | 2017 |
| 146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 유형3 | 2016 |
| 147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유형4 | 2026 |
| 148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속초시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 유형2 | 2025 |
| 149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영월군 참전명예수당 | 유형3 | 2017 |
| 150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영월군 보훈영예수당 | 유형3 | 2017 |
| 151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유형3 | 2021 |
| 152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영월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유형7 | 2025 |
| 153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영월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유형4 | 2025 |
| 154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 | 유형7 | 2023 |
| 155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인제군 아동의료비 본인부담100만원 상한제 지원사업 | 유형2 | 2023 |
| 156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 사망위로금 | 유형3 | 2015 |
| 157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호국보훈수당 / 사망위로금 | 유형3 | 2015 |
| 158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정선군 출생아양육비 | 유형3 | 2019 |
| 159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사업 | 유형3 | 2023 |
| 160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철원군 자녀키움수당 지원 | 유형7 | 2025 |
| 161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철원군 거주군인 체육시설 이용 지원사업 | 유형7 | 2026 |
| 162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 유형3 | 2023 |
| 163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태백시 보훈명예수당 | 유형3 | 2019 |

| 연번 | 지자체 | 사업명 | 유형 | 시행연도 |
|-----|-------------|-------------------------------------|-----|------|
| 164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 유형7 | 2024 |
| 165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태백시 아동·청소년 꿈탄탄바우처 지원사업 | 유형7 | 2024 |
| 166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보훈명예수당 지원 | 유형3 | 2015 |
| 167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참전명예수당 지원 | 유형3 | 2015 |
| 168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홍천군 출산장려금 | 유형3 | 2019 |
| 169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홍천군 효행장려금 | 유형3 | 2025 |
| 170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화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 유형1 | 2024 |
| 171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횡성군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 | 유형7 | 2025 |
| 172 | 충청북도 영동군 | 영동군 어르신 백내장,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 유형4 | 2024 |
| 173 | 충청북도 옥천군 | 옥천군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 유형7 | 2023 |
| 174 | 충청북도 제천시 |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사업 | 유형7 | 2022 |
| 175 | 충청북도 청주시 | 1급 장애인교통비 | 유형1 | 2015 |
| 176 | 충청북도 청주시 |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지급 | 유형1 | 2015 |
| 177 | 충청북도 충주시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 유형7 | 2023 |
| 178 | 충청남도 | 충남 행복키움수당 | 유형3 | 2018 |
| 179 | 충청남도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 유형1 | 2021 |
| 180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 유형1 | 2022 |
| 181 | 충청남도 |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 유형3 | 2022 |
| 182 | 충청남도 |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충청남도 임원생활비 지원) | 유형2 | 2023 |
| 183 | 충청남도 | 충남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 유형5 | 2024 |
| 184 | 충청남도 금산군 | 참전명예수당 | 유형3 | 2018 |
| 185 | 충청남도 금산군 | 보훈명예수당 | 유형3 | 2018 |
| 186 | 충청남도 부여군 | 충남 부여 출산육아장려금 | 유형7 | 2025 |
| 187 | 충청남도 서산시 | 서산시 장수수당 지원 | 유형3 | 2016 |
| 188 | 충청남도 아산시 | 아산시 거동불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 구매비용 지원 | 유형4 | 2023 |
| 189 | 충청남도 청양군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 유형3 | 2021 |
| 190 | 충청남도 태안군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유형3 | 2017 |
| 191 | 충청남도 태안군 | 참전명예수당 | 유형3 | 2017 |
| 192 | 충청남도 태안군 | 태안군 아이더드림수당 | 유형7 | 2026 |
| 193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형 기초보장제도 | 유형1 | 2019 |
| 194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생활보조비 지원 | 유형1 | 2023 |
| 195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 | 유형2 | 2024 |
| 196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유형2 | 2022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업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연번 | 지자체 | 사업명 | 유형 | 시행연도 |
|-----|-------------|---------------------------|-----|------|
| 197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청소년드림카드) | 유형3 | 2020 |
| 198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 유형3 | 2022 |
| 199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아동) | 유형5 | 2023 |
| 200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청소년) | 유형7 | 2023 |
| 201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 유형4 | 2025 |
| 202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 유형4 | 2025 |
| 203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익산시 청년통장 | 유형1 | 2019 |
| 204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익산형 청년월세지원사업 | 유형1 | 2024 |
| 205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주시 주택바우처 | 유형1 | 2021 |
| 206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 | 유형3 | 2023 |
| 207 | 전라남도 |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사업 | 유형1 | 2011 |
| 208 | 전라남도 |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비 지원 사업 | 유형1 | 2018 |
| 209 | 전라남도 |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 유형1 | 2019 |
| 210 | 전라남도 | 전라남도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 유형2 | 2020 |
| 211 | 전라남도 | 전라남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유형1 | 2021 |
| 212 | 전라남도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유형4 | 2022 |
| 213 | 전라남도 |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 유형3 | 2024 |
| 214 | 전라남도 강진군 | 참전유공자명예수당및사망위로금지원 | 유형3 | 2018 |
| 215 | 전라남도 강진군 | 국가유공자보훈명예수당및사망위로금지원 | 유형3 | 2018 |
| 216 | 전라남도 강진군 | 강진군 육아수당 | 유형7 | 2023 |
| 217 | 전라남도 강진군 |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 유형1 | 2025 |
| 218 | 전라남도 고흥군 | 고흥 청년 플러스 목돈통장 지원사업 | 유형1 | 2025 |
| 219 | 전라남도 곡성군 |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유형1 | 2020 |
| 220 | 전라남도 광양시 | 광양형 한부모가족 지원 | 유형3 | 2025 |
| 221 | 전라남도 광양시 | 광양시 출생축하금 | 유형3 | 2025 |
| 222 | 전라남도 나주시 | 나주시 신혼부부지원 | 유형1 | 2019 |
| 223 | 전라남도 나주시 |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사업 | 유형5 | 2025 |
| 224 | 전라남도 순천시 | 순천아이 꿈 통장 개설 지원 | 유형3 | 2017 |
| 225 | 전라남도 영암군 | 영암군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 유형2 | 2020 |
| 226 | 전라남도 영암군 |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유형1 | 2021 |
| 227 | 전라남도 영암군 |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사업 | 유형1 | 2021 |
| 228 | 전라남도 영암군 | 영암군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 유형2 | 2024 |
| 229 | 전라남도 영암군 | 영암군 청년문화수당 지원 | 유형5 | 2024 |

| 연번 | 지자체 | 사업명 | 유형 | 시행연도 |
|-----|----------|----------------------------------|-----|------|
| 230 | 전라남도 장성군 |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 유형7 | 2023 |
| 231 | 전라남도 장흥군 |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지원 사업 | 유형1 | 2024 |
| 232 | 전라남도 진도군 |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 유형7 | 2023 |
| 233 | 전라남도 해남군 |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 유형1 | 2020 |
| 234 | 전라남도 해남군 | 해남군 다자녀가정 양육 장려금 | 유형3 | 2023 |
| 235 | 전라남도 화순군 | 화순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 | 유형3 | 2023 |
| 236 | 경상북도 | 경상북도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유형3 | 2021 |
| 237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사업 | 유형2 | 2024 |
| 238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 청년월세 지원 | 유형1 | 2024 |
| 239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지급 | 유형3 | 2024 |
| 240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 국가유공자 상수도 요금 지원 사업 | 유형3 | 2024 |
| 241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유형3 | 2024 |
| 242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유형3 | 2024 |
| 243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 참전유공자 및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사망 위로금 지급 | 유형4 | 2024 |
| 244 | 경상북도 구미시 |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 유형4 | 2025 |
| 245 | 경상북도 영천시 |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사업 | 유형1 | 2025 |
| 246 | 경상북도 청도군 | 청도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 유형2 | 2024 |
| 247 | 경상남도 | 6.25참전명예수당 | 유형3 | 2017 |
| 248 | 경상남도 |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유형1 | 2021 |
| 249 | 경상남도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및 장제비 지원사업(부마위로금) | 유형1 | 2021 |
| 250 | 경상남도 | 경남 희망지원금 | 유형4 | 2024 |
| 251 | 경상남도 거제시 | 보훈명예수당 지원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유형3 | 2016 |
| 252 | 경상남도 거제시 | 거제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 유형3 | 2018 |
| 253 | 경상남도 거제시 | 거제 청년 씨앗 통장사업 | 유형5 | 2020 |
| 254 | 경상남도 거제시 | 어린이집 생애최초 입학축하금 지원 | 유형4 | 2022 |
| 255 | 경상남도 거제시 | 거제 아동 문화, 관광 체험카드 지원사업 | 유형7 | 2022 |
| 256 | 경상남도 거제시 | 경남 거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 유형3 | 2024 |
| 257 | 경상남도 거제시 | 거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 유형7 | 2024 |
| 258 | 경상남도 고성군 |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유형3 | 2017 |
| 259 | 경상남도 고성군 | 전몰군경 유족수당 | 유형3 | 2017 |
| 260 | 경상남도 고성군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유형4 | 2017 |
| 261 | 경상남도 고성군 |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 유형5 | 2020 |
| 262 | 경상남도 고성군 | 고성군 보훈명예수당 | 유형3 | 2021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 연계
협업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변호

제5장
복지서비스
(맞춤형
급여 안내)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연번 | 지자체 | 사업명 | 유형 | 시행연도 |
|-----|----------|-----------------------------|-----|------|
| 263 | 경상남도 고성군 |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구매비용 지원 | 유형4 | 2022 |
| 264 | 경상남도 고성군 | 고성군 노인 효도권 지원 | 유형7 | 2022 |
| 265 | 경상남도 고성군 | 고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유형7 | 2022 |
| 266 | 경상남도 고성군 | 고성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 유형7 | 2022 |
| 267 | 경상남도 고성군 | 고성형 긴급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사업 | 유형5 | 2023 |
| 268 | 경상남도 김해시 | 김해시 생계구호비 | 유형4 | 2018 |
| 269 | 경상남도 김해시 | 김해시 기초수급자 부가급여 지원(명절위로금) | 유형9 | 2025 |
| 270 | 경상남도 남해군 | 남해군 청년씨앗통장 사업 | 유형5 | 2020 |
| 271 | 경상남도 창녕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유형3 | 2015 |
| 272 | 경상남도 창녕군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유형4 | 2015 |
| 273 | 경상남도 창녕군 |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 유형3 | 2017 |
| 274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월남참전유공자명예수당 | 유형3 | 2014 |
| 275 | 경상남도 창원시 | 국가유공자 위문격려금 | 유형4 | 2014 |
| 276 | 경상남도 창원시 |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구입비 | 유형3 | 2014 |
| 277 | 경상남도 창원시 | 보훈명예수당 | 유형3 | 2018 |
| 278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유형3 | 2019 |
| 279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 생활보장수급자 명절 위문 | 유형9 | 2024 |
| 280 |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 생활보장수급자 중·고생 교통비 | 유형9 | 2024 |
| 281 | 경상남도 함안군 | 국가유공자 명예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 유형3 | 2016 |
| 282 | 경상남도 함양군 | 함양군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 | 유형7 | 2023 |
| 283 | 제주특별자치도 | 조손가정 지원 | 유형1 | 2011 |
| 284 | 제주특별자치도 | 독거노인 냉·난방비 지원 | 유형4 | 2017 |
| 285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장수수당 | 유형3 | 2018 |
| 286 | 제주특별자치도 | 1천만원+ Happy I(주거임차비) | 유형3 | 2021 |
| 287 | 제주특별자치도 | 1천만원+ Happy I(육아지원금) | 유형3 | 2021 |
| 288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형 통합돌봄 | 유형7 | 2023 |
| 289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 | 유형7 | 2023 |
| 290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 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 | 유형1 | 2025 |
| 291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 | 유형1 | 2024 |

붙임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협의 관련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재산조사의 유형 등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려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명칭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하려는 사회보장정보의 명칭, 범위 및 정보보유기관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및 안전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이 되는 업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보장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선정, 조사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 전달체계 등과 관련하여 업무량 분석을 하였는지 여부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추가 개발에 필요한 적정한 개발기간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7. 그 밖에 보장기관의 시스템 변경, 연계 가능 여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을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이용 범위를 협의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용 대상 사회보장정보의 범위 제한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자 범위 및 접근 권한의 제한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방식, 사회보장정보의 제공 방법 및 사회보장정보 전달체계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예산, 시설 및 인력의 확보
 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시스템 등의 구성 방법 및 내용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방안
 7. 사회보장정보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납부방식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이나 연계 이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협의 결과를 신청기관과 해당 정보의 보유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협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⑥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시설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그 밖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단체·시설

제2장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지원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원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 업무처리 지원

1. 행복이음 자료보정 지원

» 목적

- 보장기관의 자료 오입력,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는 수급권자의 인적정보, 수급 정보 보정 지원
- ※ 단,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자료 정정·삭제는 [부록]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처리

» 대상정보

- (인적정보)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망일자 등 개인의 인적정보에 관한 사항
- (수급정보) 서비스 책정일자, 중지일자 등 복지사업 수급에 관한 사항

» 자료보정 방법 및 절차

① 시스템(행복이음)을 활용한 자료보정 처리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주요 보장의 책정·중지일자 등 18종(아래표 참조) 보정유형의 경우 자료정비 > 자료보정 요청관리 메뉴를 통해 요청·처리

| 시스템 자료보정 유형(19종) |

| 번호 | 보정 유형 | 내 용 |
|----|-------------|--|
| 1 | 보장 책정일자 | 책정일자 오입력으로 변경할 책정일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요청 ※ 관련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수당, 타법의료급여, 차상위계층 확인 |
| 2 | 보장 최초책정일자 | 최초책정일자 오입력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청 ※ 관련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수당, 타법의료급여, 차상위계층 확인 |
| 3 | 보장 중지일자 | 중지일자 오입력으로 중지일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요청 ※ 관련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수당, 타법의료급여, 차상위계층 확인 |
| 4 | 서비스 시작일자 | 서비스 시작일자 오입력으로 변경할 서비스시작일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요청 ※ 관련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수당 |
| 5 | 서비스 중지일자 | 서비스 중지일자 오입력으로 변경할 중지일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 요청 ※ 관련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수당 |
| 6 | 사망일자 | 최초 사망신고 이후, 담당자 오입력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시스템의 사망일자가 정정된 경우 요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사망일자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 7 | 신청일자 | (보장 책정 전) 신청서가 조사진행 중, 완료(종료, 종결) 상태에서 신청일자 보정이 필요한 경우 요청 ※ 관련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초중고교육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본인부담경감), 타법의료급여, 아동수당 단, 신청상태가 접수인 경우 신청관리 > 신청서식관리 > 신청자료보정관리 화면에서 전자결재로 신청일자 변경 가능 |
| 8 | 장애 재진단기한 | 장애 재진단기한 일자 보정이 필요한 경우 요청 ※ 관련 보장 : 장애인복지 |
| 9 | 신청서 진행상태 변경 | 복지대상자 해산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의 진행상태를 '완료·종결'에서 '기각·각하'로 보정이 필요한 경우 요청 • “완료(종료, 종결)된 신청서로 지급 처리 안 했습니다” 또는 “완료(종료, 종결)된 신청서로 지급 후 환수 완료되었습니다” 문구 내부결재 문서에 반드시 추가 ※ 관련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제외) |
| 10 | 출입국일자 | 출입국일자 보정이 필요한 경우 요청 ※ 관련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장애수당),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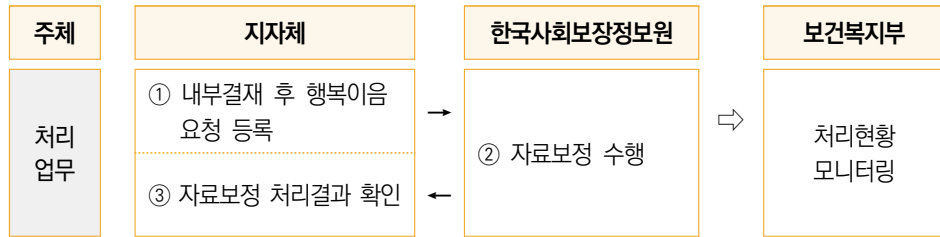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번호 | 보정 유형 | 내 용 |
|----|-------------------------|--|
| 11 |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 오기·오타로 인한 이름 및 주민번호 보정이 필요한 경우 요청 ※ 관련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영유아보육, 양육수당, 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자산형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사업 |
| 12 | 이중주민등록번호 삭제 | 이중 출생신고 등으로 주민번호말소, 주민번호 중복으로 보정이 필요한 경우 요청 ※ 관련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영유아보육, 양육수당, 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자산형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사업 |
| 13 | 주체유형변경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부여자 정정이 필요한 경우 요청 ※ 관련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영유아보육, 양육수당, 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자산형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사업 |
| 14 | 말소 해제 | 말소자 가구원 자료보정(내국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 • (내국인) 거주자가 확인되는 자료(주민등록등본) • (재외국인) 처리불가 ※ 관련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영유아보육, 양육수당, 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자산형성, 차상위계층확인사업 |
| 15 | 장애정도 판정일자 (장애인복지정도 결정일) | 장애정도 판정일자(장애정도 결정일) 오입력으로 장애정도 판정일자(장애정도 결정일) 변경 시 보정이 필요한 경우 요청 ※ 관련 보장 : 장애인복지 |
| 16 | 국적취득에 따른 장애인 자료보정 | 외국인 자격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었다가, 한국국적으로 취득으로 판정일자(장애정도 결정일) 장애정도 판정일자(장애정도 결정일) 변경 시 보정이 필요한 경우 요청 ※ 장애인 행복이음 변경사항에 대한 연금공단으로 통보하여 자료 정합성 유지 필요 |
| 17 | 장애인 공단심사번호 자료보정 | 연금공단 정밀심사를 받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진단내역 등록 화면에서 공단심사번호가 누락되어 보정이 필요한 경우 요청 ※ 관련보장 : 장애인 행복이음 장애정도심사대상자관리>장애정도결정서 조회를 통해 공단심사번호 확인 또는 공단이 발급한 장애심사결정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가능 |
| 18 | 장애인연금 특례대상자 관리 | 중전장애수당특례, 차상위급여특례, 시설수급자급여특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공문시행 및 시스템 자료보정 요청 병행 ※ 2026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26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 승인 후 지자체 담당자 → “가족사항 : 재심사 면제 보장” 변경 |
| 19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유효종료일자 보정 |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요청 ※ 관련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 아동수당,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 초·중등교육 등 |

- 처리절차

- 지자체는 요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재 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행복이음에 등록
- 사회보장정보원은 자료보정 요청내용 확인 및 보정 수행
- 보건복지부는 자료보정 처리율, 관련 질의사항 등 처리현황 모니터링



② 공문을 통한 자료보정 처리

아동보호서비스 보호조치일자 등 시스템 자료보정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서 자료보정 내용(대상자 정보, 요청내용, 사유 등)을 작성하여 공문을 통해 요청·처리

- 처리절차

- 지자체는 18종의 시스템 자료보정 유형을 확인한 후,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행복이음 자료보정 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복지정보운영과) 및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발송
- ▶ 다만, 아래 예시 등 사업 소관부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로 공문 발송, 또는 해당 부서와 시스템 운영부서(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동시발송

(예1) 기초연금 직역연금특례 적용 관련 자료보정
 ⇒ 사업부서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확인 필요. 승인 후 승인공문을 첨부하여 자료보정 요청 공문 송부

(예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주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 사업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복지정보운영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송부

- 사회보장정보원은 자료보정 요청내용 확인 및 보정 수행
- 보건복지부는 자료보정 처리율, 관련 질의사항 등 처리현황 모니터링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유형 안내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 유형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 복지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소득재산조사 유형 안내

1. 개요

» 목적

- 복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재산조사의 엄격성 필요 수준을 산정, 이를 근거로 해당 복지사업에 보다 적합한 소득재산 조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소득재산조사 엄격성 판정방법

- 해당 복지사업에 대한 소득재산조사의 엄격성 요청 수준을 참고하기 위해 10개의 사업별 특성 항목을 구성하여 소득재산조사 엄격성 수준 점수(T)를 도출
- 각 항목별로 사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수(a_k)와 각 항목별 가중치(b_k)를 곱한 뒤,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

$$T = \sum_{k=1}^n a_k \times b_k$$

| 복지사업별 특성항목의 구성 및 항목별 가중치 |

| 구분 | 연번(k) | 사업별 특성항목(a) (5점척도) | 가중치(b) |
|----------------|-------|---------------------|--------|
| 대상자의 경제력 관련 기준 | 1 |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 수준 | 0.3 |
| | 2 | 경제력 단계별 본인부담금 차등 수준 | 0.1 |
| 지원규모 | 3 | 1인당 지원금액 | 0.2 |
| | 4 | 지원기간 | 0.1 |
| | 5 | 신청 수요 대비 대상자수 | 0.1 |

| 구분 | 연번(k) | 사업별 특성항목(a) (5점척도*) | 가중치(b) |
|--------|-------|--|--------|
| 절차 복잡성 | 6 | 전달체계 복잡성 | 0.1 |
| | 7 | 자격재확인 빈도 | 0.1 |
| 결정적 요건 | 8 | 지원의 시급성 | 0.6 |
| | 9 | 소득재산조사 지원체계 완비 수준 | 0.3 |
| 기타 | 10 | 개별 사업의 고유 속성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엄격한 경제력 평가 필요성) | 0.1 |

* (1~5점) 1점에 가까울수록 완화된 소득재산조사방식, 5점에 가까울수록 엄격한 소득재산조사방식이 적합함을 의미

2. 소득재산조사 엄격성 수준 산정을 위한 사업별 특성 항목

»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 수준이 높을수록 완화된 소득재산조사를, 낮을수록 엄격한 소득재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향을 반영
- 경제력 판정방식 결정에 있어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항목임을 고려 0.3의 가중치를 부여

|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 수준에 따른 평정(5점 척도) |

| 1 | 2 | 3 | 4 | 5 |
|---------|----------------------|----------------------|---------------------|--------|
| 180% 이상 | 150% 이상 - 180% 미만 | 100% 이상 - 150% 미만 | 70% 이상 - 100% 미만 | 70% 미만 |

» 경제력 단계별 본인부담금 차등 수준

- 경제력 단계별로 본인부담금 차등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높은 경우, 엄격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경제력을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높다는 점을 반영
- 본인부담금 차등을 두는 사업들은 비교적 높은 선정기준을 책정하고 있어 (1)항목과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
- 본인부담금 차등을 둘 수 있는 객관적 경제지표 산출이 중요한 것이지 본인부담금 차등 자체가 반드시 엄격한 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0.1의 가중치를 부여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 경제력 단계별 본인부담금 차등 수준에 따른 평정(5점 척도) |

| 1 | 2 | 3 | 4 | 5 |
|----|---------|-----------------|---------------|-------|
| 없다 | 1.5배 미만 | 1.5배 이상 - 3배 미만 | 3배 이상 - 4배 미만 | 4배 이상 |

» 1인당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금액이 클수록 엄격한 소득재산조사를 필요로 하는 점을 반영
- 지원금액이 낮은 경우 엄격한 소득재산을 실시할 경우 조사 비용 및 조사부담 등의 영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0.2의 가중치를 부여

| 1인당 연간 지원금액에 따른 평정(5점 척도) |

| 1 | 2 | 3 | 4 | 5 |
|----------|---------------------|---------------------|----------------------|-----------|
| 10만 원 미만 | 10만 원 이상 - 30만 원 미만 | 30만 원 이상 - 60만 원 미만 | 60만 원 이상 - 120만 원 미만 | 120만 원 이상 |

» 지원기간

- 한번 선정된 대상자가 오랜 기간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의 경우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
- 지원기간이 길더라도 ‘지원의 시급성’ 항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영향력이 결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0.1의 가중치를 부여

| 지원기간에 따른 평정(5점 척도) |

| 1 | 2 | 3 | 4 | 5 |
|---------|----------------------------|-----------------------------|----------------------------------|----------------|
| 1일 (1회) | 1일 이상~1년 미만 (2회 이상~12회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12회 이상~24회 미만) | 2년 이상~제한된 기간까지 (24회 이상~제한된 횟수까지) | 기간, 횟수의 제한이 없음 |

» 신청수요 대비 대상자 수

- 사업의 신청 수요 대비 예산상 실제 지원가능한 대상자 수를 산정하여 그 비율이 낮을수록 엄격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한 점을 반영
- 예산으로 조절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0.1의 가중치를 부여

| 신청수요 대비 대상자 수에 따른 평정(5점 척도) |

| 1 | 2 | 3 | 4 | 5 |
|--------|-----------------|-----------------|-----------------|--------|
| 90% 초과 | 60% 초과 - 90% 이하 | 40% 초과 - 60% 이하 | 10% 초과 - 60% 이하 | 10% 이하 |

» 전달체계 복잡성

- 소득판정 주체와 관여된 전달체계 및 그 단계의 수를 고려하여 그 복잡성이 높은 경우 완화된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
- 전달체계 복잡성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엄격한 소득재산조사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중치를 0.1로 부여

| 전달체계 복잡성에 따른 평정(5점 척도) |

| 1 | 2 | 3 | 4 | 5 |
|-------------------------|--------|----|--------|----------------------|
| 복잡성이 높음 (전달체계 4개 이상) | 비교적 높음 | 보통 | 비교적 낮음 | 복잡성이 낮음 (전달체계 단일) |

» 자격재확인 빈도

- 자격재확인 빈도가 높을수록 더 엄격한 소득재산조사 필요성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반영
- 자격변동성에 따른 빈도 책정일 가능성도 있어 엄격한 소득재산조사에 대한 영향력이 반드시 높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 0.1의 가중치를 부여

| 자격재확인 빈도에 따른 평정(5점 척도) |

| 1 | 2 | 3 | 4 | 5 |
|-------|--------|--------|--------|-----------|
| 하지 않음 | 2년에 1회 | 1년에 1회 | 1년에 2회 | 1년에 3회 이상 |

» 지원의 시급성

- 소득재산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기다릴 여유 없이 지원이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가장 간소화된 판정방식 적용이 필요함을 반영
- 소득재산조사의 엄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점을 고려 0.6의 가중치를 부여

| 지원의 시급성에 따른 평정(5점 척도) |

| 1 | 2 | 3 | 4 | 5 |
|---------------------|---------------------------|-------------------------|---------------------------------|------------------------|
| 매우 시급함 (즉시 - 당일) | 약간 시급함 (1일 초과 - 3일 이하) | 보통임 (3일 초과 - 14일 이하) | 별로 시급하지 않음 (14일 초과 - 28일 이하) | 거의 시급하지 않음 (28일 초과)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기산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 것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함

» 소득재산조사 지원체계 완비 수준

- 소득재산조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 기관에서 연계하여 활용하는 편의성 정도 등 지원체계의 완비 수준이 필요함을 반영
- 지원체계 완비 수준이 소득재산조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 0.3의 가중치를 부여

| 소득재산조사 지원체계 완비 수준에 따른 평정(5점 척도) |

| 1 | 2 | 3 | 4 | 5 |
|------------|------------|-----|--------|--------|
| 거의 준비되지 않음 | 별로 준비되지 않음 | 보통임 | 약간 준비됨 | 매우 준비됨 |

» 개별사업의 고유 속성

- 상기 항목 외 개별사업의 고유 속성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이 필요할 수 있음을 반영
 -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경제력 평가 필요성에 대한 주관적 평정으로 대신함
- 개별사업의 고유 속성을 주관적으로 평정함을 감안 0.1의 가중치를 부여

| 개별사업의 고유 속성에 따른 평정(5점 척도) |

| 1 | 2 | 3 | 4 | 5 |
|------------------------|------------------------|-----|--------------------|--------------------|
| 엄격한 경제력 평가가 거의 필요하지 않음 | 엄격한 경제력 평가가 별로 필요하지 않음 | 보통임 | 엄격한 경제력 평가가 약간 필요함 | 엄격한 경제력 평가가 매우 필요함 |

3. 소득재산조사의 엄격성 수준 점수의 활용

» 소득재산조사 엄격성 점수 산출

- 아래 표를 활용하여 사업별 특성 항목에 대해 평정한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구하고, 이들 10개 항목에 대한 점수를 모두 더하여 종합 점수를 산출

| 개별사업의 고유 속성에 따른 평정(5점 척도) |

| 구분 | 연번 (k) | 사업별 특성항목 (a) | 항목별 점수 기준(5점 척도) | | | | | 가중치 (b) |
|----------------|--------|---|------------------------|--------------------------------|---------------------------------|------------------------------------|---------------------|---------|
| | | | 1 | 2 | 3 | 4 | 5 | |
| 대상자의 경제력 관련 기준 | 1 |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 수준 | 180% 이상 | 150% 이상 ~ 180% 미만 | 100% 이상 ~ 150% 미만 | 53% 이상 ~ 100% 미만 | 53% 미만 | 0.3 |
| | 2 | 경제력 단계별 본인부담금 차등 수준 | 없음 | 1.5배 미만 | 1.5배 이상 ~ 3배 미만 | 3배 이상 ~ 4배 미만 | 4배 이상 | 0.1 |
| 지원 규모 | 3 | 1인당 지원금액 |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 6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 120만원 이상 | 0.2 |
| | 4 | 지원기간 | 1일 (1회) | 1일 이상 ~ 1년 미만 (2회 이상 ~ 12회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년 이상 ~ 제한된 기간까지 (24회 이상 제한된 횟수까지) | 기간, 횟수의 제한이 없음 | 0.1 |
| | 5 | 신청 수요 대비 대상자 수 | 90% 초과 | 60% 초과 ~ 90% 이하 | 40% 초과 ~ 60% 이하 | 10% 초과 ~ 60% 이하 | 10% 이하 | 0.1 |
| 절차 복잡성 | 6 | 전달체계 복잡성 | 복잡성이 높음 (전달체계 4개 이상) | 비교적 높음 | 보통 | 비교적 낮음 | 복잡성이 낮음 (전달체계 단일) | 0.1 |
| | 7 | 자격재확인 빈도 | 하지 않음 | 2년에 1회 | 1년에 1회 | 1년에 2회 | 1년에 3회 이상 | 0.1 |
| 결정적 요건 | 8 | 지원의 시급성 | 매우 시급함 (즉시 당일) | 약간 시급함 (1일 초과 ~ 3일 이하) | 보통임 (3일 초과 ~ 14일 이하) | 별로 시급하지 않음 (14일 초과 ~ 28일 이하) | 거의 시급하지 않음 (28일 초과) | 0.6 |
| | 9 | 소득재산조사 지원체계 완비 수준 | 거의 준비되지 않음 | 별로 준비되지 않음 | 보통임 | 약간 준비됨 | 거의 준비됨 | 0.3 |
| 기타 | 10 | 개별 사업의 고유 속성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엄격한 경제력 평가 필요성) | 엄격한 경제력 평가가 거의 필요하지 않음 | 엄격한 경제력 평가가 별로 필요하지 않음 | 보통임 | 엄격한 경제력 평가가 약간 필요함 | 엄격한 경제력 평가가 매우 필요함 | 0.1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예시] 소득재산조사 엄격성 수준 점수 산정

사업명 : 발달재활서비스

(1)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 수준

-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이 180% 이하로서, 항목별 점수 기준상 180% 이상 구간에 해당하므로 1점으로 평정한다.

(2) 경제력 단계별 본인부담금 차등 수준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본인부담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면제, 차상위 계층 2만 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그룹 4만 원, 65% 초과 - 120% 이하 그룹 6만 원, 120% 초과 - 180% 이하 그룹 8만 원이다. 경제력 단계별 본인부담금의 최저/최고 금액 비율이 4배 이상에 해당하여, 차등수준에 관한 점수는 5점으로 평정해볼 수 있다.

(3) 1인당 지원금액

- 경제력 단계별로 정부지원금이 월 17만 원에서부터 월 25만 원까지 책정된다. 대상자별 연간 정부지원금 총액이 204만 원 - 300만 원으로 항목별 점수 기준상 연간 120만 원 이상 구간에 해당하므로 1인당 지원 금액에 관한 점수는 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4) 지원기간

- 대상으로 선정된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를 지원기간으로 하므로, 지원기간에 대한 점수는 4점으로 평정한다.

(5) 신청 수요 대비 대상자수

- 신청 수요 대비 대상자수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정책 목표와,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인 경우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 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수요 대비 대상자수의 비율을 높게 평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므로 1점을 부여한다.

(6) 전달체계 복잡성

- 전달체계는 지자체(읍·면·동 신청, 시·군·구 선정)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격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이 하나 더 관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복잡성이 보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3점으로 평정한다.

(7) 자격재확인 빈도

- 연 2회(반기별) 자격을 재조사하므로 4점에 해당한다.

(8) 지원의 시급성

-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정부지원이 개시되는 사업 특성과 장기적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발달재활서비스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3일 이내의 즉시적인 지원 개시가 요청되는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정도의 지원 시급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3점으로 평정한다.

(9) 소득재산조사 지원체계 완비 수준

- 소득재산조사 지원체계의 완비 수준은,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지자체의 준비 정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나, 기존 건강보험료 이용 경제력 판정 사업에 대해 4유형군 소득재산조사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현재로서는 3점으로 평정할 수 있겠다.

(10) 개별 사업의 고유 속성

- 개별 사업의 고유 속성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엄격한 경제력 평가 필요성' 항목으로 마지막 항목을 구성하는 경우,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핵심인 사업으로 장기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경제력 수준별 차등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평가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이 높고 장애아동이 2인 이상인 가정 등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등 경제력이 부수적인 고려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엄격한 경제력 평가가 약간 필요함'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4점으로 평정한다.

이처럼 (1)~(10)의 항목별로 산출된 점수에 대하여 각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모두 합산하면, 0.3+0.5+1.0+0.4+0.1+0.3+0.4+1.8+0.9+0.4=6.1로, 소득재산조사 엄격성 수준 점수는 6.1점(10점 만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연번 (k) | 사업별 특성항목 (a) | 항목별 점수 평정 사유 | 항목별 점수 | 가중치 (b) | 가중치 적용 점수 | | | | | |
|---------|---------------------|---|------------------|---------|-----------|---|---|---|---|---|
| 1 |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 수준 |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이 180% 이하 | 1 | 0.3 | 0.3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r> </thead> <tbody> <tr> <td>180% 이상</td> <td>150% 이상 - 180% 미만</td> <td>100% 이상 - 150% 미만</td> <td>70% 이상 - 100% 미만</td> <td>70% 미만</td> </tr> </tbody> </table> | | | | 1 | 2 | 3 | 4 | 5 |
| 1 | 2 | 3 | 4 | 5 | | | | | | |
| 180% 이상 | 150% 이상 - 180% 미만 | 100% 이상 - 150% 미만 | 70% 이상 - 100% 미만 | 70% 미만 | | | | | | |
| 2 | 경제력 단계별 본인부담금 차등 수준 | 경제력 단계별 본인부담금 차등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면제), 차상위 계층(2만 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이하(4만 원), 65% 초과 - 120% 이하(6만 원), 120% 초과 - 180% 이하(8만 원)으로 최저/최고 본인부담금 비율이 4배 이상에 해당 | 5 | 0.1 | 0.5 | | | | |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연번 (k) | 사업별 특성항목 (a) | 항목별 점수 평정 사유 | | | | | 항목별 점수 | 가중치 (b) | 가중치 적용 점수 |
|-----------|------------------|---|---|--|---|-------------------------|-----------|------------|-----------------|
| | | 1 | 2 | 3 | 4 | 5 | | | |
| | | 없음 | 1.5배 미만 | 1.5배 이상 - 3배 미만 | 3배 이상 - 4배 미만 | 4배 이상 | | | |
| 3 | 1인당 지원금액 | 대상자별 연간 정부지원금 총액이 204만 원 - 300만 원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에 해당 | | | | | 5 | 0.2 | 1.0 |
| | | 10만 원 미만 | 10만 원 이상 - 30만 원 미만 | 30만 원 이상 - 60만 원 미만 | 60만 원 이상 - 120만 원 미만 | 120만 원 이상 | | | |
| 4 | 지원기간 | 대상자 선정 다음 달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를 지원기간으로 함 | | | | | 4 | 0.1 | 0.4 |
| | | 1일 (1회) | 1일 이상 - 1년 미만 (2회 이상 - 12회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년 이상 - 제한된 기간까지 (24회 이상 - 제한된 횟수까지) | 기간, 횟수의 제한이 없음 | | | |
| 5 | 신청 수요 대비 대상자수 |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목표와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에 해당하더라도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등 예산 범위 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수요 대비 대상자수 비율을 높게 평정 | | | | | 1 | 0.1 | 0.1 |
| | | 90% 초과 | 60% 초과 - 90% 이하 | 40% 초과 - 60% 이하 | 10% 초과 - 60% 이하 | 10% 이하 | | | |
| 6 | 전달체계 복잡성 | 지자체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관여하여, 전달체계 복잡성이 보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 | | 3 | 0.1 | 0.3 |
| | | 복잡성이 높음(전달 체계 4개 이상) | 비교적 높음 | 보통 | 비교적 낮음 | 복잡성이 낮음(전달 체계 단일) | | | |

| 연번 (k) | 사업별 특성항목 (a) | 항목별 점수 평정 사유 | | | | | 항목별 점수 | 가중치 (b) | 가중치 적용 점수 |
|-----------|--|---|---------------------------------------|--------------------------------------|---|----------------------------------|-----------|------------|-----------------|
| 7 | 자격재확인 빈도 | 연 2회 자격을 재조사 | | | | | 4 | 0.1 | 0.4 |
| | | 1 | 2 | 3 | 4 | 5 | | | |
| | | 하지 않음 | 2년에 1회 | 1년에 1회 | 1년에 2회 | 1년에 3회 이상 | | | |
| 8 | 지원의 시급성 | 대상자 선정 시 장기간 정부지원이 개시되는 사업 특성과 장기적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발달재활서비스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3일 이내 즉시적 지원 개시 요청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어 보통 정도의 지원 시급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 | | | 3 | 0.6 | 1.8 |
| | | 1 | 2 | 3 | 4 | 5 | | | |
| | | 매우 시급함 (즉시 - 당일) | 약간 시급함 (1일 초과 - 3일 이하) | 보통임 (3일 초과 - 14일 이하) | 별로 시급하지 않음 (14일 초과 - 28일 이하) | 거의 시급하 지 않음 (28일 초과) | | | |
| 9 | 소득재산조사 지원체계 완비 수준 |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지자체 준비 정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나, 기존 건강보험료 이용 경제력 판정 사업에 대해 소득 재산조사방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바탕하여 볼 때, 현재로서는 3점으로 평정 | | | | | 3 | 0.3 | 0.9 |
| | | 1 | 2 | 3 | 4 | 5 | | | |
| | | 거의 준비되지 않음 | 별로 준비되지 않음 | 보통임 | 약간 준비됨 | 거의 준비됨 | | | |
| 10 | 개별 사업의 고유속성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엄격한 경제력 평가 필요성) |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핵심인 사업으로서 경제력 수준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평가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력 선정 기준이 높으며 예외적 지원을 허용하는 등 경제력이 부수적인 고려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엄격한 경제력 평가가 약간 필요함 구간에 해당하는 4점으로 평정 | | | | | 4 | 0.1 | 0.4 |
| | | 1 | 2 | 3 | 4 | 5 | | | |
| | | 엄격한 경제력 평가가 거의 필요하지 않음 | 엄격한 경제력 평가가 별로 필요하지 않음 | 보통임 | 엄격한 경제력 평가가 약간 필요함 | 엄격한 경제력 평가가 매우 필요함 | | | |
| 합계 | | | | | | | | 6.1 |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변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4. 소득재산조사 방식 제안

※ 소득재산조사 엄격성 수준을 평가한 점수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사업에 적합한 소득재산조사 방식을 제안

| 점수 | 0 - 3.0 이하 | 3.0 초과 - 5.0 이하 | 5.0 초과 - 7.0 이하 | 7.0 초과 - 9.0 이하 | 9.0 초과 - 10.0 이하 |
|--------------|------------------|-------------------------------|-------------------------------|---------------------------|---------------------|
| 소득재산 조사방식 | 4유형군 우선 고려 | | | 4유형군 또는 3유형군 | 1, 2, 3유형군 우선 고려 |
| | - 소득재산분리 평가방식 | - (소득인정액) - 소득재산분리 평가방식 | - 소득인정액 - (소득재산분리 평가방식) | - 소득인정액 - (소득재산분리평가방식) | |

- 10점 만점 가운데 6점 이하(각 평점의 평균값을 적용한 경우)인 경우 소득재산조사 엄격성이 크지 않음을 감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경제력 평가방식 선정에 있어서 4유형 조사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
- 총점이 3점 이하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 소득재산조사의 편의성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 4유형 중에서도 소득재산분리평가를 먼저 고려할 수 있음

[참고] 소득재산조사 엄격성 수준 평정표

| 연번 (k) | 사업별 특성항목 (a) | 항목별 점수 평정 사유 | | | | | 항목별 점수 | 가중치 (b) | 가중치 적용 점수 |
|-----------|---------------------------|-------------------------------|--|---|---|----------------------------------|-----------|------------|-----------------|
| | | 1 | 2 | 3 | 4 | 5 | | | |
| 1 |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 수준 | - (평정사유) | | | | | 0.3 | | |
| | | 180% 이상 | 150% 이상 - 180% 미만 | 100% 이상 - 150% 미만 | 70% 이상 - 100% 미만 | 70% 미만 | | | |
| 2 | 경제력 단계별 본인부담금 차등 수준 | - (평정사유) | | | | | 0.1 | | |
| | | 없음 | 1.5배 미만 | 1.5배 이상 - 3배 미만 | 3배 이상 - 4배 미만 | 4배 이상 | | | |
| 3 | 1인당 지원금액 | - (평정사유) | | | | | 0.2 | | |
| | | 10만 원 미만 | 10만 원 이상 - 30만 원 미만 | 30만 원 이상 - 60만 원 미만 | 60만 원 이상 - 120만 원 미만 | 120만 원 이상 | | | |
| 4 | 지원기간 | - (평정사유) | | | | | 0.1 | | |
| | | 1일 (1회) | 1일 이상 - 1년 미만 (2회 이상 - 12회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12회 이상 - 24회 미만) | 2년 이상 - 제한된 기간까지 (24회 이상 - 제한된 횟수까지) | 5 기간, 횟수의 제한이 없음 | | | |
| 5 | 신청 수요 대비 대상자수 | - (평정사유) | | | | | 0.1 | | |
| | | 90% 초과 | 60% 초과 - 90% 이하 | 40% 초과 - 60% 이하 | 10% 초과 - 60% 이하 | 10% 이하 | | | |
| 6 | 전달체계 복잡성 | - (평정사유) | | | | | 0.1 | | |
| | | 복잡성이 높음(전달 체계 4개 이상) | 비교적 높음 | 보통 | 비교적 낮음 | 복잡성이 낮음(전달 체계 단일) | | |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연번 (k) | 사업별 특성항목 (a) | 항목별 점수 평정 사유 | | | | | 항목별 점수 | 가중치 (b) | 가중치 적용 점수 |
|-----------|---|---------------------------------------|---------------------------------------|--------------------------------|---|-------------------------------------|-----------|------------|-----------------|
| 7 | 자격재확인 빈도 | - (평정사유) | | | | | 0.1 | | |
| | | 1 | 2 | 3 | 4 | 5 | | | |
| | | 하지 않음 | 2년에 1회 | 1년에 1회 | 1년에 2회 | 1년에 3회 이상 | | | |
| 8 | 지원의 시급성 | - (평정사유) | | | | | 0.6 | | |
| | | 1 | 2 | 3 | 4 | 5 | | | |
| | | 매우 시급함 (즉시 - 당일) | 약간 시급함 (1일 초과 - 3일 이하) | 보통임 (3일 초과 - 14일 이하) | 별로 시급하지 않음 (14일 초과 - 28일 이하) | 거의 시급하지 않음 (28일 초과) | | | |
| 9 | 소득재산조사 지원체계 완비 수준 | - (평정사유) | | | | | 0.3 | | |
| | | 1 | 2 | 3 | 4 | 5 | | | |
| | | 거의 준비되지 않음 | 별로 준비되지 않음 | 보통임 | 약간 준비됨 | 거의 준비됨 | | | |
| 10 | 개별 사업의 고유 속성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엄격한 경제력 평가 필요성) | - (평정사유) | | | | | 0.1 | | |
| | | 1 | 2 | 3 | 4 | 5 | | | |
| | | 엄격한 경제력 평가가 거의 필요하지 않음 | 엄격한 경제력 평가가 별로 필요하지 않음 | 보통임 | 엄격한 경제력 평가가 약간 필요함 | 엄격한 경제력 평가가 매우 필요함 | | | |
| 합계 | | | | | | | | | |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1. 정의 및 부여대상

- ▶ (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각급 공공기관과 업무연계 및 편의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로 구성
- ▶ (활용)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보장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책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 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 시
- ▶ (부여 대상)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①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 ②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④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사용하며, 임의 부여·사용 불가

2. 제공가능 급여

-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3조의2(신설)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제4조제5항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부모급여)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의 지원
 -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3. 운영 원칙

-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 불명자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사회보장 급여 및 관련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아래 원칙에 입각하여 관리
- ① (개인정보 보호) 전산관리번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정보가 아님
 - ② (발급의 최소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발급하여야 함
 - ③ (기간의 제한성)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④ (복지 제공의 보편성)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전산관리번호를 이용한 급여 지급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됨
 - ⑤ (관리의 철저) 복수의 전산관리번호, 또는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이중수급 등 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야 함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II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 출생미등록 아동 및 주민등록불명자에 대해 지자체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상담·안내 등의 조치 필요(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 제2항)

1. 부여 신청·승인

»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자

- 본인(또는 보호자), 의료기관의 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상담기관의 장 등

» 전산관리번호 부여 권한 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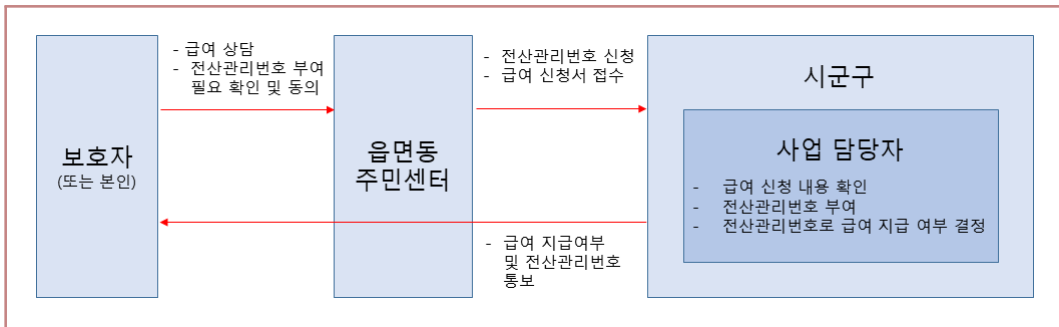
- 시군구 사업 담당자, 시군구 시설 생계·의료급여 담당자,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 ※ 시군구 여건에 따라 별도의 담당자 지정 가능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 신청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전산관리번호 부여 요청을 받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업무 담당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보호자의 확인을 거친 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는 부모, 친척, 보호시설의 장 등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단, 행려한자는 의료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불명자가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신청인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 시군구 사업 담당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 시군구 사회보장시설 담당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②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③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상담기관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

2. 사례별 부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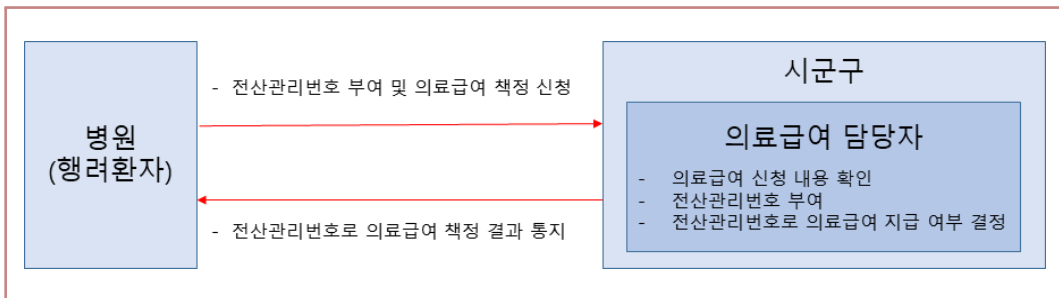
» 보호자 또는 본인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읍·면·동 및 시·군·구 업무 담당자가 본인 등의 확인을 거친 후 시스템을 통해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
-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필요성 및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통보
- 각 급여 담당자는 전산관리번호로 급여 지급 결정 통보



» 행려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책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의료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가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 결정 통보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라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담당자가 전산관리번호 부여
- 전산관리번호로 급여 지급 신청을 받은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급여 지급 여부 결정하여 통보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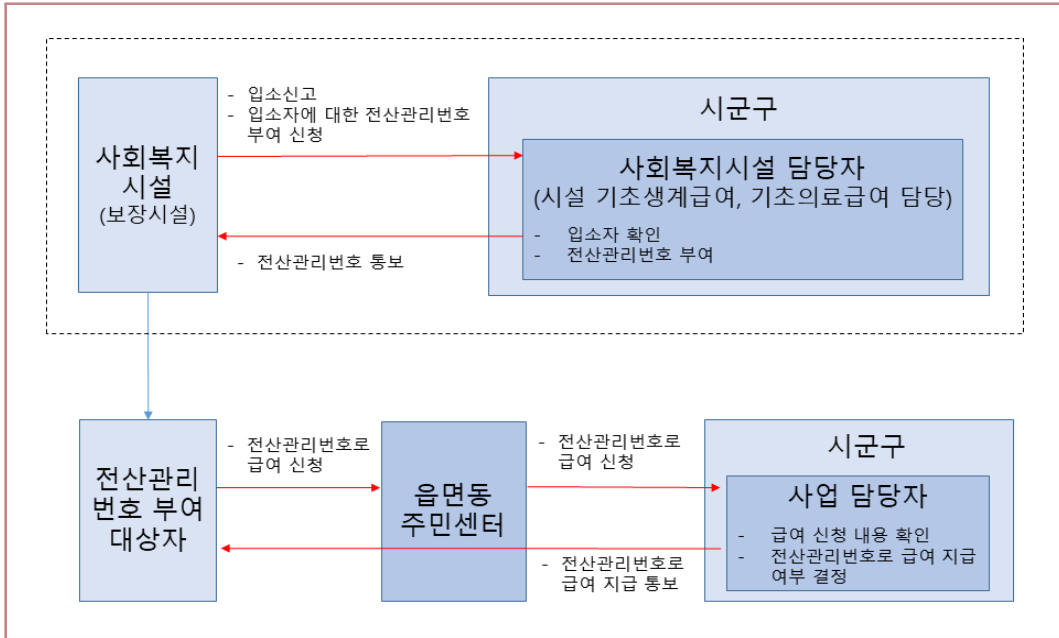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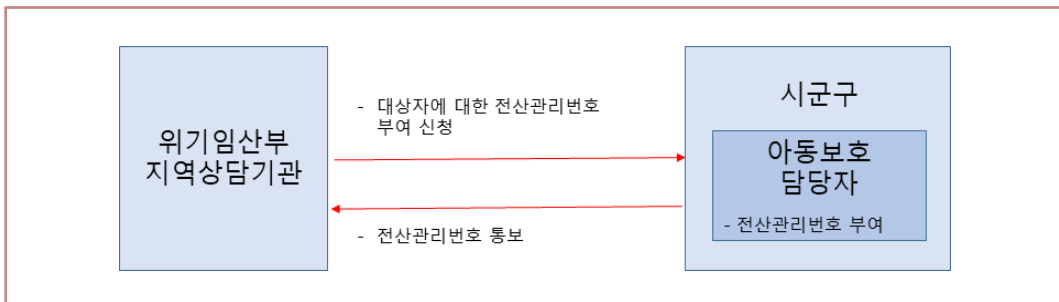


» 위기임산부에 대한 전산관리번호 부여가 필요한 경우

-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6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가 전산관리번호 부여

※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 상담 또는 전산관리번호(8번) 신청 접수 과정에서 전산관리번호(5번)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시스템 신청 화면에 입력해야 함
대상자가 전산관리번호(5번) 발급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면 의료급여 자격이 아닌 건강보험 자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

※ 전산관리번호 발급 담당자가 위기임산부의 신원(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관련 정보는 마스킹 처리



- 동일한 임신 건에 대해서는 1개의 전산관리번호만 부여하며, 2회 이상 임신 시 각각의 임신 건에 대해서 전산관리번호를 구분하여 부여*
 - * 다만, 먼저 발급받은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임신으로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전산관리번호는 사용을 종료하고 새로운 전산관리번호를 발급
- 예외적으로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인'이 기존 보장시설 입소자로서 전산관리번호(자료구분 코드 5번)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1인 1번호 원칙의 예외로서 전산관리번호(자료구분 코드 8번)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음
 - ※ 위기임산부 관련 자세한 처리 내용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사업안내 참고

3. 전산관리번호 부여 전 확인사항

-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을 받은 업무 담당자는 대상자가 기사용 중인 전산관리번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
 - ※ 1인 1전산관리번호 부여 원칙에 따라 기사용 중인 번호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금지. 단, 위기임산부로서 발급 받은 전산관리번호는 1번호 원칙 예외
-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급여 지급 등 연계 관리를 위한 필요 정보 등을 확인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 확인사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출생연월일 보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혈연관계) 정보가 없는 경우 보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정보 등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문 확인 및 인적사항 등 확인을 거쳐 기부여된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재등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출생연월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사업의 조사를 위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 확인사항 |
|---|--|
| 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②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③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 위기임산부의 가명, 출생연도, 성별, 위기임산부 상담 기관, 출산예정일 등 ※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이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관리 - 위기임산부에 대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서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를 요청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대상자의 성명(또는 가명) 외 인적 정보는 확인할 수 없음 |

4. 전산관리번호 구성 체계

»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로 구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임의로 생성할 수 없음)
- 대상자의 출생연도, 성별, 내·외국인, 유형구분, 보장기관·시설 정보, 전산관리번호 부여연도 정보 등 포함

| 구분 | 전산관리번호 구성 | 적용대상자 |
|---------------------------------------|---|--|
| [자료구분 3] • 행려환자 (주민등록 미확인자만 해당)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 ①-②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③ 자료구분(3) ④-⑥ 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부호) ⑦ 성별구분 (내국인) 남 : 1, 3 / 여 : 2, 4 (외국인) 남 : 5, 7 / 여 : 6, 8 * 1900년대 출생(남: 1, 5/ 여: 2, 6) 2000년대 출생(남: 3, 7/ 여: 4, 8) ⑧-⑨ 발생년도 마지막 두자리 ⑩-⑬ 일련번호 <예시> 서울 종로구(30000)에서 2007년도 7번째 발생한 행려환자(1960.3.30일생 남자)의 전산관리번호는? ⇒ 603300-1070007 |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 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보장기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한 자 |

| 구 분 | 전산관리번호 구성 | 적용대상자 | | | | | | | | | | | | |
|---|--|-------|--------------|---|---------|-----|-------------------------------|---|--|-----|--------------|-----|------|---|
| <p>[자료구분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호적자(보장시설 입소자 아닌 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 <p>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p> <table border="1"> <tr> <td>①-②</td> <td>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td> </tr> <tr> <td>③</td> <td>자료구분(4)</td> </tr> <tr> <td>④-⑥</td> <td>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부호)</td> </tr> <tr> <td>⑦</td> <td>성별구분 (내국인) 남 : 1, 3 / 여 : 2, 4 (외국인) 남 : 5, 7 / 여 : 6, 8 * 1900년대 출생(남: 1, 5/ 여: 2, 6) 2000년대 출생(남: 3, 7/ 여: 4, 8)</td> </tr> <tr> <td>⑧-⑨</td> <td>관리번호 부여년도</td> </tr> <tr> <td>⑩-⑬</td> <td>일련번호</td> </tr> </table> <p><예시> '07.1.15일 대전동구(3640000) 100번째 사회 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자 (1957.5.30일생 남자) ⇒ 574364-1070100</p> | ①-② |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 ③ | 자료구분(4) | ④-⑥ | 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부호) | ⑦ | 성별구분 (내국인) 남 : 1, 3 / 여 : 2, 4 (외국인) 남 : 5, 7 / 여 : 6, 8 * 1900년대 출생(남: 1, 5/ 여: 2, 6) 2000년대 출생(남: 3, 7/ 여: 4, 8) | ⑧-⑨ | 관리번호 부여년도 | ⑩-⑬ | 일련번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호적자, 출생 미신고아동, 무호적 아동*, 북한이탈주민 등 * 미혼부 아동, 보호출산 및 베이비박스 아동 등 |
| ①-② |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 | | | | | | | | | | | | |
| ③ | 자료구분(4) | | | | | | | | | | | | | |
| ④-⑥ | 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부호) | | | | | | | | | | | | | |
| ⑦ | 성별구분 (내국인) 남 : 1, 3 / 여 : 2, 4 (외국인) 남 : 5, 7 / 여 : 6, 8 * 1900년대 출생(남: 1, 5/ 여: 2, 6) 2000년대 출생(남: 3, 7/ 여: 4, 8) | | | | | | | | | | | | | |
| ⑧-⑨ | 관리번호 부여년도 | | | | | | | | | | | | | |
| ⑩-⑬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p>[자료구분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자 * 퇴소 후에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유지 | <p>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p> <table border="1"> <tr> <td>①-②</td> <td>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td> </tr> <tr> <td>③</td> <td>자료구분(5)</td> </tr> <tr> <td>④-⑥</td> <td>일련번호</td> </tr> <tr> <td>⑦</td> <td>성별구분 (내국인) 남 : 1, 3 / 여 : 2, 4 (외국인) 남 : 5, 7 / 여 : 6, 8 * 1900년대 출생(남: 1, 5/ 여: 2, 6) 2000년대 출생(남: 3, 7/ 여: 4, 8)</td> </tr> <tr> <td>⑧-⑨</td> <td>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td> </tr> <tr> <td>⑩-⑬</td> <td>시설기호</td> </tr> </table> <p><예시> '04.1.15일 ○○시 ○○시설(2349)에 입소된 150번째 노인(1930.3.30일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 305150-2042349</p> | ①-② |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 ③ | 자료구분(5) | ④-⑥ | 일련번호 | ⑦ | 성별구분 (내국인) 남 : 1, 3 / 여 : 2, 4 (외국인) 남 : 5, 7 / 여 : 6, 8 * 1900년대 출생(남: 1, 5/ 여: 2, 6) 2000년대 출생(남: 3, 7/ 여: 4, 8) | ⑧-⑨ | 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 | ⑩-⑬ | 시설기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시설에 수용된 자가 본인이 요청할 경우(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등) 보장시설에서 퇴소하더라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급여(보육료, 아동수당 등 아동급여) 수급자에 한해 인정 |
| ①-② |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 | | | | | | | | | | | | |
| ③ | 자료구분(5) | | | | | | | | | | | | | |
| ④-⑥ | 일련번호 | | | | | | | | | | | | | |
| ⑦ | 성별구분 (내국인) 남 : 1, 3 / 여 : 2, 4 (외국인) 남 : 5, 7 / 여 : 6, 8 * 1900년대 출생(남: 1, 5/ 여: 2, 6) 2000년대 출생(남: 3, 7/ 여: 4, 8) | | | | | | | | | | | | | |
| ⑧-⑨ | 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 | | | | | | | | | | | | | |
| ⑩-⑬ | 시설기호 | | | | | | | | | | | | | |
| <p>[자료구분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신청인 포함) | <p>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⑫⑬</p> <table border="1"> <tr> <td>①-②</td> <td>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td> </tr> <tr> <td>③</td> <td>자료구분(8)</td> </tr> <tr> <td>④-⑥</td> <td>지역상담기관 소재 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부호)</td> </tr> </table> | ①-② |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 ③ | 자료구분(8) | ④-⑥ | 지역상담기관 소재 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부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 | | | | | |
| ①-② |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 | | | | | | | | | | | | |
| ③ | 자료구분(8) | | | | | | | | | | | | | |
| ④-⑥ | 지역상담기관 소재 보장기관기호(해당 시·군·구 부호) | | | | | | | | | | | | |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구 분 | 전산관리번호 구성 | 적용대상자 |
|-----|---|---|
| | ⑦ 성별구분 (내국인) 남 : 1, 3 / 여 : 2, 4 (외국인) 남 : 5, 7 / 여 : 6, 8 * 1900년대 출생(남: 1, 5/ 여: 2, 6) 2000년대 출생(남: 3, 7/ 여: 4, 8) |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위기임산부로서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전산관리번호 발급 시 적용한 가명(또는 본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 | ⑧-⑨ 관리번호 부여년도 | |
| | ⑩-⑬ 일련번호 * 보장기관별로 일련번호를 달리 부여 | |
| | <예시> '24.8.3일 대전시 동구(3640000) 소재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 후 대전시 동구 내에서 150번째로 전산관리번호를 받기로 결정한 자(1998.3.30일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 988364-2240150 | |

※ 시설기호(4자리) 부여 체계 : 시설유형(1자리)+일련번호(3자리)

- 시설유형(1자리) : 시설종별을 구분하는 구분 값

- | | | | |
|-------------|--------------|--------------|--------------|
| 1: 아동복지시설 | 2, A: 노인복지시설 |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4: 장애인복지시설 |
| 5: 노숙인시설 | 6: 정신요양시설 | 7: 성폭력피해자시설 | 8: 가정폭력피해자시설 |
| 9: 기타사회복지시설 | | | |

- 일련번호(3자리) : 등재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 * 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A 시설기호 : 8001
 아동복지시설 B 시설기호 : 1001

» 유효기간 설정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이를 부여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설정
 - ※ 단, 위기임산부 관련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상담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침'에 준하여 설정
- 필요시 유효기간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을 연장(설정된 유효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 * 행복이음 변동알림 탭에서 유효기간 도래 알림 제공
-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은 없음(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필요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계속하여 연장 가능)

- 유효기간 연장 방법 <자료구분 코드 3, 4, 5번>

- ①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과에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지 여부 확인
- ②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사유를 입력하고 유효기간 연장
- ③ 시스템에서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다른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타 급여 담당자에게 유효기간이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 및 연장된 유효기간을 알림

예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아동 A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24.1.1일에 최초 부여하는 경우 유효기간은 24.12.31일 이내로 설정

- 유효기간 도래 한달 전 아동수당 담당과에서 A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부여되지 않아 '24.12.31일 이후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 연장사유를 입력하고, 적정 기간 연장(1년 이내)
-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아동수당 외 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타 급여 담당자에게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사유, 연장된 기간, 연장한 담당자 등의 정보를 알림으로 제공

※ 유효기간 종료 시, 해당 전산관리번호로 생성된 급여는 '미지급명단'으로 관리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전산관리번호 연장 필요. '유효기간 도과 후 연장'을 위해서는 해당 급여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연장 사유를 적시하여 공문으로 신청

- 유효기간 연장 방법 <자료구분 코드 8번(위기임산부)>

- ① 발급받은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담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연장 관련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군·구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

* 다만, 유효기간 연장은 출산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로 제한(지역상담기관에서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연장 요청 시 해당 내용을 고려)

- ② 시·군·구 담당자는 유효기간 연장 승인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5. 전산관리번호 부여사실 통지 및 변경사항 신고 안내

» 급여 담당자 및 시설 담당자 등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대상자에게 통지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인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통지 |
|--------------------|----------------------------|
| 보호자(또는 본인) | 아동수당 등 사업 담당자 |
| 의료기관의 장 | 의료급여 담당자 |
| 보장시설의 장 | 보장시설 담당자(시설 생계급여·의료급여 담당자) |
|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의 장 | 위기임산부 또는 아동 보호 담당자 |

» 전산관리번호 부여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 사업 담당자(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시설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안내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 변경사항 신고 안내 |
|---|--|
| (공통)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거나 확인된 경우 (보장시설 미거주자)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보장시설 거주자) 보장시설을 퇴소한 경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대상자가 보장시설을 퇴소한 경우 |

III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대상자 관리

1. 부여 대상자 관리 원칙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이므로,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의 급여 자격, 중복 지급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단, 위기임산부에 대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관할 시군구가 아니라 지역상담기관이 관리

2. 사업 담당자 주의 사항

» 사업 담당자는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지급하기 전 해당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유효기간이 도과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급여는 '미지급 명단'으로 관리

» 주민등록번호 부여·확인, 보장시설 퇴소 등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격이 종료된 경우, 해당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 자격을 중지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단, 개인정보보호시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퇴소 후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보육료 등을 계속하여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급여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사유별 중지 사유 |
|------------------------|---------------------------------------|
| • 공통 | • 사망 시(단, 첫만남이용권사업의 경우 바우처 지급 후 중지) |
| • 행려환자 | • 병원 퇴원 시 |
| • 보장시설 미거주 주민등록불명자 | • 주민등록번호 부여·확인 시, 타 시군구 전출 시 |
| • 보장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불명자 | • 주민등록번호 부여·확인 시, 보장시설 퇴소 시 |
| • 보장시설 입소자 중 개인정보보호대상자 | • 보장시설 퇴소 시 |
| • 시설 밖 개인정보보호대상자 | • 개인정보보호사유 종료 시, 연령 도래 등 급여지급 사유 종료 시 |
| • 위기임산부 관련 대상자 | • 위기임산부의 가명 처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서비스
(맞춤형
급여 안내)

3.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

-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이후 주민등록번호 부여, 타 지역 전출, 보장시설 퇴소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이를 신고받은 사업 담당자(또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담당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 자격을 중지 또는 연계하는 등 아래와 같이 신고내용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함

| 신고 내용 | 급여 담당자 처리 내용 | 급여 담당자 업무 처리에 따른 시스템 후속 처리 내용 |
|----------------------|--|--|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거나 확인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관리번호를 이용한 급여 지급을 종료 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처리(주민등록번호로 신규 신청 필요) - 해당 전산관리번호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급여 지급 종료한 날로 수정 하고, 유효기간 종료 사유 입력 및 사용 종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부여 확인 공무원 또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시스템에서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의 자격을 모두 중지하고 - 해당 사실을 해당 급여 담당자에게 알림 - 해당 알림을 받은 급여 담당자는 주민등록 번호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처리 필요 |
|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전산관리번호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급여 지급 종료한 날로 수정 하고, 유효기간 종료 사유 입력 및 사용 종료 확인 - 전출 사실 확인 후, 전입한 시군구에서도 급여를 계속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입한 시군구와 연계하여 급여가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 - 급여 연계 등이 완료된 후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종료 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입 지자체의 공무원 또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시스템에서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의 자격을 모두 중지하고 - 해당 사실을 해당 급여 담당자에게 알림 - 해당 알림을 받은 급여 담당자는 타 시군 구에서 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등을 확인 후 필요 시 급여 연계 등을 협의하여 처리 |
| 보장시설을 퇴소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담당자가 퇴소 사실 확인 - 시설 급여(생계·의료) 담당자는 전산관리 번호 부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종료 처리 - 해당 전산관리번호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급여 지급 종료한 날로 수정 하고, 유효기간 종료 사유 입력 및 사용 종료 확인 - 단, 개인정보보호시설 입소자였던 대상자가 관내에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육료 등 일부 급여에 대해서는 퇴소 후에도 기존 전산 관리번호로 지급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급여담당 공무원의 퇴소신고 등에 따라 급여 연계가 필요 없는 경우, 시스템 에서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의 자격을 모두 중지하고 - 해당 사실을 해당 급여 담당자에게 알림 - 해당 알림을 받은 급여 담당자는 주민등록 번호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처리 필요 |

| 신고 내용 | 급여 담당자 처리 내용 | 급여 담당자 업무 처리에 따른 시스템 후속 처리 내용 |
|---|---|--|
|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경우 (행려환자에 한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담당자가 퇴원 사실 확인 -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 급여 지급 종료 처리 - 해당 전산관리번호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급여 지급 종료한 날로 수정하고, 유효기간 종료 사유 입력 및 사용 종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시스템에서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의 자격을 모두 중지하고 - 해당 사실을 해당 급여 담당자에게 알림 - 해당 알림을 받은 급여 담당자는 주민등록 번호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처리 필요 |
| 보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보호자 정보 수정 | - |
| 위기임산부의 가명처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대상자가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효기간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수정하고, 유효기간 종료 사유 입력 및 사용 종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에서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사용이 종료되었음을 알림 제공 |
| 전산관리번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사망 사실 확인 -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종료 처리 ※ 단, 첫만남이용권사업의 경우 바우처 지급 후 종료 처리 -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을 급여 지급 종료한 날로 수정하고, 유효기간 종료 사유 입력 및 사용 종료 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시스템에서 해당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의 자격을 모두 정지하고, 해당 사실을 해당 급여 담당자에게 알림 ※ 위기임산부의 경우 지역상담기관에서 사망 여부를 입력함으로써 시·군·구 공무원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 - 해당 알림을 받은 급여 담당자는 급여 종료 처리 |

※ 복수의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는 마지막 급여 종료일+1일로 설정하되, 개별 급여 특성에 따라 종료일을 다르게 설정해야하는 경우는 해당 급여가 오지급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4.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처리방안

※ 위기임산부 관련 전산관리번호는 미적용

| 시스템 알림 | 급여 담당자 업무 처리 내용 업무 처리 알림 |
|---|---|
| 타 시군구로 전출 시 | - 변동사항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처리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보호자의 전출입은 보호자 또는 전출입지 공무원의 신고에 따라 확인, 해당 급여 담당 공무원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의 전출입 사실을 별도로 시스템에서 주기적 확인 필요 |
| 보장시설 퇴소 시 | - 변동사항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처리 |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도과 2개월 전 | -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계속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 - 급여를 종료하는 경우, 급여 지급을 종료 - 계속 지급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을 연장 |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 도과 (+급여 자격 정지) | -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계속 지급할 필요가 있는 확인 - 계속 지급이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을 연장 - 자격, 수혜서비스 중지 책정(의료급여의 경우 상실처리) 필수 |
| 연령 기준이 있는 급여의 경우, 연령 도과 2개월 전 연령 도과 사실 안내 |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등 연령 기준이 있는 급여의 경우, 해당 급여의 연령 기준을 확인 후 급여 계속 지급 여부를 결정 |

5. 부여 대상자별 급여 지급·중지 시 주의사항

1) 행려환자(부여사유 코드 : 3)

» 의료급여 자격 중지 사유 발생 및 신분확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재 시 전산관리번호 소멸

- 필요시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유효기간을 연장(최대 1년 이내)

2) 보장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불명자(부여사유 코드 : 4)

※ 시설 미거주 출생미등록 아동 관리 시 주의할 점

-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출생 신고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출생신고 전까지 정기적으로 출생신고 완료 여부 등 확인(유선, 방문 등)
- 또한, 필요시 지자체는 보호자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신고 방법, 절차,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할 필요

» (주민등록번호 확인 시)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모든 자격 중지,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처리

- 전산관리번호의 자격을 중지하는 경우, 추후 이력관리를 위해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상태로 타 시군구로 전출 시) 전출한 시군구에서 발급한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자격 중지. 전입한 시군구에서 새 전산관리번호 부여 후, 필요한 급여 책정

- 전입지 시군구에서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기 전, 전출지 시군구와의 연락 등을 통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적이 있는지, 해당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수령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확인 후, 새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 전출지 시군구에서는 전입지 시군구로부터의 연락 등을 통해 전산관리번호 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것을 확인 후, 기존 전산관리번호 소멸 및 부여된 모든 자격을 중지
- 이때, 전입지 시군구에서는 전출지 시군구와 협의하여,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의 급여가 누락되거나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보장시설 거주를 위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자(부여사유 코드 : 5)

»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또는 불명자(출생미등록 아동, 노숙자 限)

» 개인정보보호시설(미혼모,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 전산관리번호 부여자 보장시설 퇴소 시 처리 방안 (공통)

- 보장시설에서 퇴소 보고(희망이음)하고, 지자체 시설 담당자가 퇴소 승인(행복이음)한 경우, 시설 거주를 위한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시설 퇴소 승인 다음 날로 해당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받은 모든 자격은 중지
 - 보장시설 담당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퇴소를 승인한 다음 날로 퇴소한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에게 부여된 시설 급여 자격을 중지
 - 개인정보보호시설(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미혼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경우, 시설 생계·의료 급여 자격을 반드시 중지하여야 함
- (시설)생계급여 외 아동수당 등 시설 외 급여 담당자는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시설 퇴소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아동수당 등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시설 거주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개인정보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는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급여 자격을 중지하고, 주민등록번호로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되,
 -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필요 시 기존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처리함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또는 불명자(출생미등록 아동, 노숙자 限)

※ 시설 거주 출생미등록 아동 등 관리 시 주의할 점

- 지자체는 시설장 등 보호자가 시설에 거주중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신고 방법, 절차,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할 필요

- (주민등록번호 확인 시)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모든 급여 자격 중지,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처리
- (기존 보장시설 퇴소 후, 타 보장시설로 이동 시) 기존 시설기호가 들어간 전산관리번호는 사용 중지. 새 시설기호가 들어간 전산관리번호로 부여, 급여 신청·지급
- (보장시설 퇴소 시) 가정위탁, 입양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발급 전 보장시설을 퇴소 한 경우, 기존 시설기호가 들어간 전산관리번호를 유지하고 필요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

※ 단, 타 시군구로 전출 시에는 기존 전산관리번호는 소멸 처리하고 전입지에서 새 전산관리번호 부여

» 가정폭력피해자 등 개인정보보호시설* 입소자

* 미혼모,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개인정보보호 필요자 관리 시 주의할 점

- 개인정보보호시설 퇴소자 중 신변노출 위험* 등으로 시설 퇴소 후에도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 한정하여 지급 가능
- * 예) 보육료(아이사랑포털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노출될 우려)
- 개인정보보호 필요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사람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전산관리번호로 급여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확인 후 급여 지급 필요

- (보장시설 입소 시)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책정·지급하기 전, 주민등록번호로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 후 이중 지급 우려가 없는 경우 급여를 지급*

* 예시) ① 주민등록번호로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시설 입소 후, 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중지

② (일반)생계급여를 받고 있던 A씨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A씨에게 (시설)생계급여를 지급하기 전 A씨의 (일반)생계급여가 중지되도록 조치

- (보장시설 퇴소 시)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모든 자격을 중지, 주민등록번호로 급여 신청·수급하도록 안내

※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전산관리번호를 이용한 급여 지급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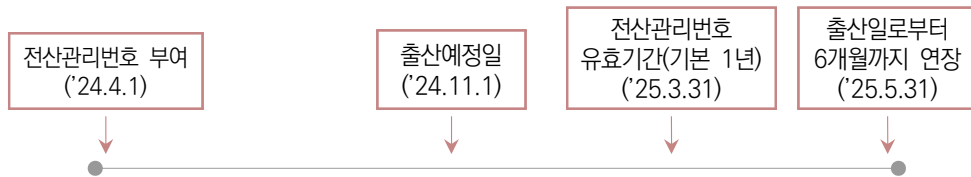
4) 보호출산을 위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 받은 자(부여사유 코드 : 8)

※ 보호출산 전산관리번호는 위기임산부의 가명 진료를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임에 유의

» 사망한 경우 전산관리번호 중지

- 전산관리번호는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발급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자동 소멸됨
-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이 전산관리번호 유효기간(1년)보다 긴 경우,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까지 유효기간 연장 가능

예시



» 위기임산부 전산관리번호로는 시스템을 통한 급여 신청 불가능하나, 대상자가 타 복지사업 대상으로서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았을 경우 해당 전산관리번호로 급여 신청 가능

- 위기임산부 전산관리번호 대상자는 시스템에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실제 신원을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경우 문제 발생 우려

IV 사후 관리

※ 위기임산부 관련 전산관리번호는 미적용

1. 과오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

» (환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급여가 잘못 지급되거나, 중복지급된 경우 등 과오지급된 급여 내역을 확인한 경우 과오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 조치

- 급여별 오지급, 중복지급 관련 조치 방안은 각 급여 사업안내를 참고
 - ※ 전산관리번호 종료 이후 신규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로 환수 신청 시, 종료된 전산관리번호로 급여지급 이력을 확인하여 환수신청 가능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참고 중복지급 사례

-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를 지급받던 여성분 A씨가 입소 후, 시설에서 생계비를 지원받음. 그동안 A씨와 같이 살던 A씨의 가족이 A씨의 생계급여를 수급
 - A씨가 시설 생계비를 지원받는 동안 A씨의 일반생계비가 중지되었어야 하나, 중지되지 않아 중복 지급됨
- (아동수당) 시설 입소 후 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에 대해 시설 퇴소 후 주민등록번호로도 아동수당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 발생
- (양육수당) 가정폭력시설 입소 전 주소지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에 대해 아이 엄마는 시설 입소 후 전산관리번호로 어린이집을 보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중복 수급함
 - * 시설에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 시설장 명의의 카드(아이사랑카드)로 결제가 됨

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정기 실태점검

» (실태점검)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지급하는 각 보장기관은 전산관리번호로 급여를 수급하는 대상자에 대해 전산관리번호 사용의 적정성*, 급여 지급 적정성**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실태점검 실시

*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해당 보장시설에 거주하고 있는지, 출생신고를 완료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았는지 등

**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급여가 이중 지급되지 않는지, 보육료와 부모급여·양육수당 등이 이중 지급되지 않는지 등

-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급여 지급을 결정한 보장기관이 조사 주체가 되며, 자격이 부여된 급여별로 미사용 전산관리번호는 해당 급여 자격을 중지하고, 급여가 중복 지급된 경우 환수 처리

- (점검 주기) 실태점검은 연 1회(매년 7~8월)로 하되, 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사업별로 실태점검 주기를 정하여 운영 가능(예: 분기별 1회, 월 1회 등)

- (점검 방법) 사업별 전산관리번호 자격 부여자를 조회, 전산관리번호 부여 사유 충족 여부를 확인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부정수급 의심사례 및 유효기간 도과한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지자체에 제공하여 실태점검 지원

- ▶ (출생미등록 아동 등) 출생신고 완료 여부
- ▶ (아동급여 대상 아동) 연령 기준 초과 여부
- ▶ (보장시설 수급자) 시설 거주 여부
- ▶ (보장시설 밖 수급자) 해당 시군구 거주 여부

» (점검결과 보고) 전산관리번호 부여·소멸 등 관리 현황, 전산관리번호 연계 급여 현황, 급여 중복 지급 및 관련 조치 등 실태점검 결과는 각 사업의 주관 부처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보고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제5장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개요

1. 정 의

» 가입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21.9.~)

※ (가입대상) 전 국민, (안내사업) '26.4월 기준 163종(중앙부처 84종, 지자체 79종)

2. 가입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같은 법 제6조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외국인등록번호 부여자 포함

3. 관련 근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 다. 「기초연금법」
 - 라. 「장애인연금법」
 - 마. 「장애인복지법」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자
- 가. 「장애인연금법」
 - 나. 「기초연금법」
 - 다. 「장애인복지법」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을 한정한다)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급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조사, 안내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II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업무 흐름도

| 단 계 |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 행정복지센터 방문 |
|-------------|---|---|
| 가입신청 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 안내 사항 확인 * 온라인 가입의 경우는 '단독가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안내 * 가입 구분(신청간주, 동시신청, 단독가입)하여 안내 |
| ↓ | | |
| 가입신청서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급여 안내'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가입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처리 -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기본정보 입력 및 안내 수단 선택 - 주민세대정보 조회된 가구원 정보 확인 - 신청인 및 가구원 금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처리(동의, 미동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서류 없으나, 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유의사항 제8,9호 안내 (동시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호] 의 선택적 동의 제8호에 동의 체크 (단독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서식 제1호의2]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신청서' 작성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는 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호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p>※ '26.4월부터 안내 방법으로 카카오톡이 추가 되어, 카카오톡(기본)으로 발송함을 안내하고, 카카오톡 서비스에 안내 체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로 안내를 원하실 경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체크 |
| ↓ | | |
| 가입신청서 등록·접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 신청 완료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간주), 2. (동시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제출 (단독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서식 제1호의2] 및 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호의3](선택) 제출 |

| | | |
|---|--|---|
| ↓ | <p>가입 처리</p> <p>(신청간주, 동시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접수 화면 하단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탭에서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등 가입 처리 - 신청간주의 경우 가입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인으로부터 거부확인서를 제출받아 등록 (단독가입) -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메뉴에서 신청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가구원으로 입력하고,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용하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단독가입의 경우 조회된 주민세대정보로 가입되며 신청인이 가구원 변동 등의 사유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이용하여 변경 <p>※ '26.4월부터 안내 방법으로 카카오톡이 추가되어, 카카오톡(기본)으로 발송함을 안내하고, 안내 방법에 카카오톡 서비스로 가입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로 안내를 원하실 경우, 문자메시지서비스로 가입 처리 | <p>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p> |
| ↓ | <p>자료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후 신청인과 가구원의 성별·연령·수급자 여부·소득·재산 등 정보를 수집 - 이후, 가구원의 출산·연령·가구원 변동·수급 자격 등 변동 정보 수집(매월) | <p>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p> |
| ↓ | <p>수급가능성 예측,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맞춤형 급여 안내' 안내 사업별 수급가능성을 예측하고,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신청인의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 - 신청 후 7일 이내: 성별·연령·수급자 여부 등 분석 후 최초 수급가능성 안내 - 신청 후 30일 이내(금융정보제공 동의 시):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2차 수급가능성 안내 | <p>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p> |
| ↓ | <p>안내 현황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는 '맞춤형 급여 안내' 상세 현황 메뉴에서 안내된 소관별 사업으로 안내 된 현황을 통해 대상자에게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등 업무에 활용 가능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주요 현금성 급여의 경우에는 사각지대 발굴 연계정보로 전송(한국사회보장정보원) | <p>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p> |

참고 안내 사업 목록(163개)

※ 매년 보장기관 신청을 받아 사업을 확대하고, 폐기 등 안내 대상 사업은 상시 변경될 수 있음

| 번호 | 사업명 | 보장기관 |
|----|---------------------------|-------|
| 1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보건복지부 |
| 2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
| 3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보건복지부 |
| 4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보건복지부 |
| 5 | 장애인보조기구교부 | 보건복지부 |
| 6 | 장애인일자리지원 | 보건복지부 |
| 7 | 다함께 돌봄 사업 | 보건복지부 |
| 8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돌봄 필요 중장년) | 보건복지부 |
| 9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
| 10 |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지원 | 보건복지부 |
| 11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보건복지부 |
| 12 | 장애인활동지원 | 보건복지부 |
| 13 | 영양플러스 | 보건복지부 |
| 14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 15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보건복지부 |
| 16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 보건복지부 |
| 17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보건복지부 |
| 18 | 장애수당 | 보건복지부 |
| 19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 보건복지부 |
| 20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
| 21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보건복지부 |
| 22 |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
| 23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보건복지부 |
| 24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보건복지부 |
| 25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보건복지부 |
| 26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

| 번호 | 사업명 | 보장기관 |
|----|--------------------|-------|
| 27 | 차상위계층확인사업 | 보건복지부 |
| 28 | 의료급여(맞춤형 급여) | 보건복지부 |
| 29 | 아동수당 지급 | 보건복지부 |
| 30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보건복지부 |
| 31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보건복지부 |
| 32 | 발달재활서비스 | 보건복지부 |
| 33 | 언어발달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
| 3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
| 35 | 장애아동수당 | 보건복지부 |
| 36 | 해산급여 | 보건복지부 |
| 37 | 첫만남이용권 | 보건복지부 |
| 38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보건복지부 |
| 39 |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
| 40 | 부모급여 지원 | 보건복지부 |
| 41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보건복지부 |
| 42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보건복지부 |
| 43 | 장애인연금 | 보건복지부 |
| 44 |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 보건복지부 |
| 45 | 의사상자지원 | 보건복지부 |
| 46 | 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교육부 |
| 47 | 고교 학비 지원 | 교육부 |
| 48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교육부 |
| 49 | 가정양육수당 지원 | 교육부 |
| 50 |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 교육부 |
| 51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교육부 |
| 52 | 시간제보육 | 교육부 |
| 53 | 장애아보육료지원 | 교육부 |
| 54 | 다문화보육료지원 | 교육부 |
| 55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교육부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번호 | 사업명 | 보장기관 |
|----|-----------------------------|------------|
| 56 |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
| 57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 고용노동부 |
| 58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고용노동부 |
| 59 | 보조공학기기지원 | 고용노동부 |
| 60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 61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 성평등가족부 |
| 62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 | 성평등가족부 |
| 63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 성평등가족부 |
| 64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성평등가족부 |
| 65 | 아이돌봄서비스 | 성평등가족부 |
| 66 | 이동통신요금감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67 | 과학문화바우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68 |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69 |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체육관광부 |
| 70 | 장애인스포츠통과이용권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 71 | 스포츠통과이용권 | 문화체육관광부 |
| 72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질병관리청 |
| 73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질병관리청 |
| 74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질병관리청 |
| 75 | 가스요금할인 | 산업통상부 |
| 76 | 저소득층 전기요금할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
| 77 | 에너지바우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 78 | 환경보건이용권 | 기후에너지환경부 |
| 79 |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 국가보훈부 |
| 80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 국가보훈부 |
| 81 | TV수신료면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82 |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83 | 양곡할인 | 농림축산식품부 |
| 84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 국토교통부 |

| 번호 | 사업명 | 보장기관 |
|-----|--------------------------|-----------|
| 85 | 서울형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서울특별시 |
| 86 | 서울런(Seoul- Learn) 교육 서비스 | 서울특별시 |
| 87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 서울특별시 |
| 88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서울특별시 |
| 89 | 서울형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 서울특별시 |
| 90 | 서울형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
| 91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 서울특별시 |
| 92 |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 서울특별시 |
| 93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수도요금 감면 | 서울특별시 |
| 94 | 강충강충 성장양육지원금 지급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95 | 아장아장 관악첫돌축하금 지급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96 | 응애응애 관악탄생축하함 지급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97 |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 부산광역시 |
| 98 | 부산형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급 | 부산광역시 |
| 99 |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
| 100 |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부산광역시 서구 |
| 101 |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서구 |
| 102 | 부산광역시 서구 장수축하물품 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서구 |
| 103 | 대구형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 대구광역시 |
| 104 | 대구형 다자녀가정 아이조아카드 지원사업 | 대구광역시 |
| 105 | 인천형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
| 106 |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 대전광역시 |
| 107 | 대전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대전광역시 |
| 108 |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 대전광역시 |
| 109 | 대전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 | 대전광역시 |
| 110 | 장애인활동지원 울산시 시비추가지원사업 | 울산광역시 |
| 111 | 울산형 산후조리비지원사업 | 울산광역시 |
| 112 |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 세종특별자치시 |
| 113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세종특별자치시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번호 | 사업명 | 보장기관 |
|-----|-----------------------------|-------------|
| 114 | 효행장려금 | 세종특별자치시 |
| 115 |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세종특별자치시 |
| 116 | 세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 | 세종특별자치시 |
| 117 | 노인급식지원사업 | 세종특별자치시 |
| 118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경기도 |
| 119 | 용인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 경기도 용인시 |
| 120 | 용인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 경기도 용인시 |
| 121 |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경기도 오산시 |
| 122 | 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 경기도 화성시 |
| 123 |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
| 124 | 강릉시 저소득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 125 |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 126 | 홍천군 효행장려금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127 |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128 |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129 | 충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충청남도 |
| 130 | 충남형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충청남도 |
| 131 | 충남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충청남도 |
| 132 |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 충청남도 |
| 133 | 충청남도 입원생활비 지원 | 충청남도 |
| 134 | 충남형 임산부 우대금리 저금 지원 | 충청남도 |
| 135 | 충남형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충청남도 |
| 136 | 충남형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충청남도 |
| 137 | 충남형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 충청남도 |
| 138 | 계룡시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 충청남도 계룡시 |
| 139 | 계룡시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 충청남도 계룡시 |
| 140 | 똑똑안부확인서비스 | 충청북도 음성군 |
| 141 | 전북형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
| 142 | 전북형 장애인 신문보급 | 전북특별자치도 |

| 번호 | 사업명 | 보장기관 |
|-----|---------------------------|----------|
| 143 | 전북형 학기중아동급식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
| 144 | 전북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
| 145 | 전북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가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
| 146 | 전북형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
| 147 | 전북형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
| 148 | 전북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
| 149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
| 150 | 전북형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
| 151 | 전라남도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전라남도 |
| 152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전라남도 |
| 153 | 전라남도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전라남도 |
| 154 |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 전라남도 |
| 155 | 청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전액 지원사업 | 전라남도 보성군 |
| 156 | 50세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 전라남도 보성군 |
| 157 | 인플루엔자 전 군민 무료 예방접종 지원사업 | 전라남도 보성군 |
| 158 | 광양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전라남도 광양시 |
| 159 | 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고흥군) | 전라남도 고흥군 |
| 160 | 경남형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 경상남도 |
| 161 | 제주형 아이돌봄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 162 | 제주형 출산여성 한약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 163 | 제주형 (BIG3) 1천만원+HAPPY I정책 | 제주특별자치도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III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구분

1. 신청간주

» (정의)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로 간주하여 처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이용 사업임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 (안내사항)

- 신청간주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유의사항 제8호, 제9호에 고지하고 있는 사항임

| 유 의 사 항 | | 확 인 (✓체크) |
|------------------------|--|--------------|
|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 <p>8.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거부 의사가 없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가구 단위로 신청되며, 가구원은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해 안내된 사회보장 급여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9.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자산형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거부 의사가 없으면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p> | [] |

- 가입을 거부하는 자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간주 대상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제출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에도 활용됨
- **’26.4월부터 안내 방법으로 카카오톡이 추가되어, 카카오톡(기본)으로 발송함을 안내하고, 안내 방법에 카카오톡 서비스로 가입 처리**
 * 문자로 안내를 원하실 경우, 문자메시지서비스로 가입 처리

2. 동시신청

» (정의)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을 신규로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가입 처리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이용 사업을 대상으로 동시신청 대상 사회보장급여로 확대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안내사항)

- 동시신청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선택적 동의 제8호에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선택적 동의 (아래 선택적 동의 항목은 각각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항목 미동의시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동 의 (✓체크) |
|---|--|--------------|
| 맞춤형 급여안내 (복지멤버십) | 8.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정보, 금융·신용·보험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에 한함) | []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2026 사회보장급여 공동업무안내

- 동시신청 대상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제출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에도 활용됨
- **’26.4월부터 안내 방법으로 카카오톡이 추가되어, 카카오톡(기본)으로 발송함을 안내하고, 안내 방법에 카카오톡 서비스로 가입 처리**
 - * 문자로 안내를 원하실 경우, 문자메시지서비스로 가입 처리

3. 단독신청

- » (정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을 가입하고자 하는 국민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가입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에서 직접 가입 가능
- » (제출서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서식 제1호의2]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안내사항)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서식 제1호의2]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신청서’ 작성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관련 신청인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선택사항이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더 많은 사업에 대한 수급가능성 안내를 위하여 관련 취지 설명 및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안내
 - **’26.4월부터 안내 방법으로 카카오톡이 추가되어, 카카오톡(기본)으로 발송함을 안내하고, 안내 방법에 카카오톡 서비스로 가입 처리**
 - * 문자로 안내를 원하실 경우, 문자메시지서비스로 가입 처리

참고 가입 구분별 업무 요약

| 구분 | 신청간주 | 동시신청 | 단독신청 |
|--------|---|--|--|
| 신청 | 가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급여 신청자 -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자립,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급여 신청자 -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 |
| | 가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 공동서식 고시 [별지 제1호] - 가입 거부 의사 없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 제출 시 미가입 가능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서식 1의3호] - (추가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선택), * 공동서식 고시 [별지 제1호의3]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신청인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간주 대상 급여 신청 시 자동 가입 처리 * 신청거부절차는 동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 공동서식 고시 [별지 제1호] - 신청서 '선택적 동의' 제8호에 맞춤형 급여 안내 란에 동의 표시 - (추가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선택), * 공동서식 고시 [별지 제1호의3]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신청인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동시신청 대상 급여 신청 시 - 신청서 '선택적 동의' 제8호에 맞춤형 급여 안내 란에 동의 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복지센터 방문,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신청서 제출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서식 제1호의2] - (추가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선택), * 공동서식 고시 [별지 제1호의3]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신청인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신청 |
| | 가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4월부터 안내 방법으로 카카오톡이 추가되어, 카카오톡(기본)으로 발송함을 안내하고, 안내 방법에 카카오톡 서비스로 가입 처리 * 문자로 안내를 원하실 경우, 문자메시지서비스로 가입 처리 | | |
| 조사 | 가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구성된 가구로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구성된 가구로 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대정보 반영 * 가족관계증명서 등 통해 수정 반영 가능 |
| | 가구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반영) 신청인·가구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시 자동종료 - 가구의 단순 전출입은 가구 구성의 변동 요인으로 반영하지 않음 • (수동반영) 신청인의 신청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활용하여 보완 가능 | | |
| 예측, 안내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총 163종 (중앙부처 사업 84개, 지자체 사업 79개) | | |
| |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안내)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시 - 신청 후 7일 이내: 성별·연령·수급자 여부 등 분석 후 최초 수급가능성 안내 - 신청 후 30일 이내(금융정보제공 동의 시): 소득·재산 등을 분석하여 2차 수급가능성 안내 • (수시안내) 가구의 출산, 연령 도래, 사망 등 가구원 및 자격 변동 발생 시 수급가능성 안내 | | |
| |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신청 시 선택한 문자 또는 이메일로 수급 가능 복지서비스 안내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가입자인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 메뉴에서 내용 확인 가능 | | |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IV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 ▶▶ (방법) 신청인 본인이 직접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앱 접속하여, '맞춤형 급여 안내' 온라인 가입 신청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동의) 후 신청인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입력, 안내 수단(문자 또는 이메일) 선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선택동의) 사항 선택
 - 신청인과 함께 소속된 가구원 내역 확인 및 개인정보 입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선택동의) 사항 선택 후 가입 신청 완료
- ▶▶ (접수 및 가입 처리) 가입 신청 완료 동시에 접수 처리되며, 당일 가입 완료
 - * 주말·공휴일에도 가입 완료되며,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자 조회 가능

2. 방문 신청

- ▶▶ (방법) 신청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가입 신청
 - * 신청인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접수받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즉시 가입 처리
- ▶▶ (접수 및 가입 처리)
 - (신청간주, 동시신청) 해당 사회보장급여 담당자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처리
 - * 사회보장급여 신청 처리 상태와 별개로 시스템 등록 이후 완료(종료, 종결) 처리하여야 가입이 완료됨
 - (단독가입) 복지업무 담당자가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가입신청서 등 제출받아 가입 처리
 - * 가입신청서 접수, 시스템 등록 이후 완료(종료, 종결) 처리하여야 가입이 완료됨

3. 안내 사항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수급 가능성 안내 후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신청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이 아니며,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예측해 안내하는 것임을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통해 안내받은 수급 가능 사회보장급여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상 급여를 신청해야 함을 안내
- 예측하여 안내한 사회보장급여는 해당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자료 등을 통해 전산으로 예측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급여 신청 후 조사결정 단계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설명

»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 관련 사항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을 통해 수급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안내 대상 사업별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준용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이 중 소득인정액을 반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등 제공에 관한 동의가 필요함을 안내
- 금융정보 등 제공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므로 소득인정액을 반영하는 사업에 대한 수급 가능성 안내가 불가함을 안내
- 금융정보 등 제공에 관하여 동의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이 직접 동의 처리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반영할 수 있음을 안내
- 금융정보 등 제공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수급 가능성 예측을 위해 금융기관 등(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게 되고, 제공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및 가구원의 주소지로 우편 통지됨을 안내
- 금융정보제공 통지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통지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통지하지 않으며, 최초 통지 거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복지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거부 처리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거부 처리 할 수 있음을 안내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변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사업 종류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은 매년 보장기관의 신청을 받아 확대하고 있음을 안내

* '23년 80종, '24년 127종, '25년 163종(36개 사업 확대)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방법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는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안내하며, 신청인이 안내 방법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복지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변경 가능함을 안내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변경 처리

* '26.4월부터 안내 방법으로 카카오톡이 추가되어, 카카오톡(기본)으로 발송함을 안내하고, 안내 방법에 카카오톡 서비스로 가입 처리(문자로 안내를 원하실 경우, 문자메시지서비스로 가입 처리)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수급 가능 안내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판단에 의해 전자적 방법으로는 신청인에게 통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시기

- 최초 가입 이후 성별·연령·수급자 여부 등을 통해 수급 가능성 예측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는 신청 후 7일 이내, 금융정보제공에 동의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포함해 수급 가능성 예측이 가능한 급여는 30일 이내에 안내함
- 최초 안내 이후에는 가구의 출산, 연령 도래, 수급 자격변동 등 주요 변동이 발생한 경우 안내될 수 있음

» 가구원 공적 자료 등 조회에 관하여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는 가구 단위로 수급 가능성 예측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인 및 가구원에 대한 자료를 이용함(사회보장급여법 제7조 등 준용)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근로 능력 및 취업상태 등에 관한 사항
 - 신청인 및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이력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신청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급여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급 가능성을 신뢰도 있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에 대하여 정확하여야 하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정비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V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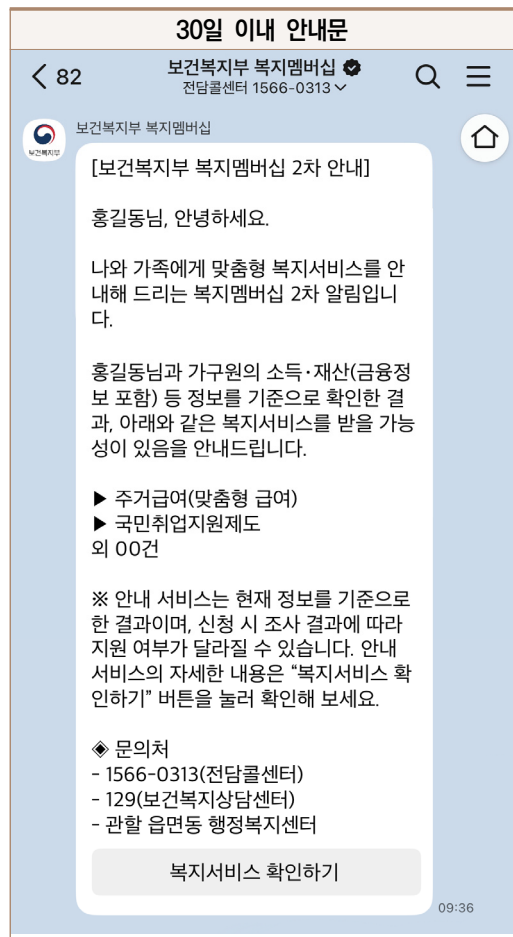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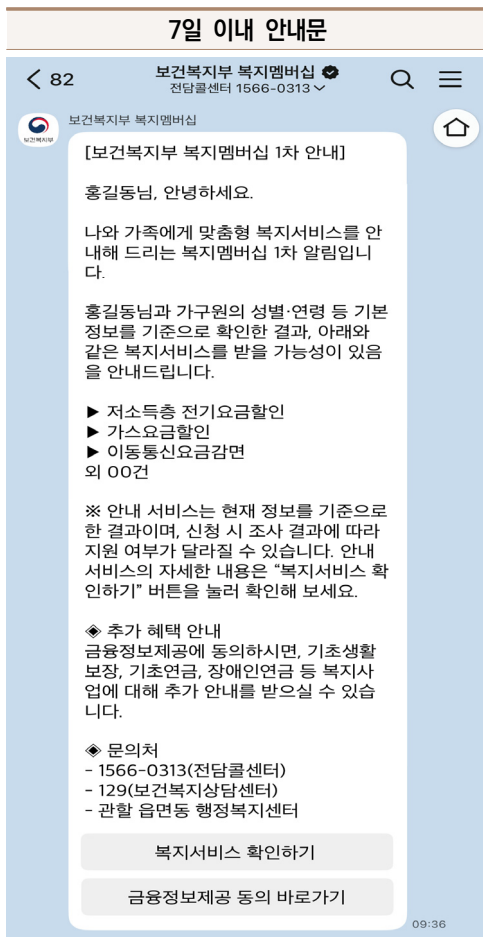
1. 안내 개요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추가 안내가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가능

2. 안내 내용

» 카카오톡 서비스



제1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제2장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지원

제3장
복지사업
소득재산
조사 유형
안내

제4장
사회보장
전산관리
변호

제5장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

» 문자메시지서비스

| 7일 이내 안내문 |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맞춤형서비스 안내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나와 가족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드리는 복지멤버십 1차 알림입니다.

홍길동님과 가구원의 성별, 연령 등 정보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 전기요금할인, 가스요금할인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된 서비스는 귀하와 가구원의 현재 정보를 확인한 결과이며, 신청 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서비스는 연중 신청접수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복지포 (<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본 안내는 계좌번호 또는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566-0313(전담콜센터)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30일 이내 안내문 |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맞춤형서비스 안내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나와 가족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안내해드리는 복지멤버십 2차 알림입니다.

홍길동님과 가구원의 소득·재산(금융정보 포함) 등 정보를 확인한 결과,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내된 서비스는 귀하와 가구원의 현재 정보를 확인한 결과이며, 신청 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서비스는 연중 신청접수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복지포 (<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본 안내는 계좌번호 또는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1566-0313(전담콜센터)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안내 주기

» (최초안내)

- 신청 후 7일 이내 : 신청인의 연령, 성별, 수급 자격 여부 등을 통해 수급 가능성 안내
- 신청 후 30일 이내 :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조사를 포함하여 수급 가능한 안내
 - * 신청인 및 가구원 모두 금융정보 등 제공에 관하여 동의하여야 함
 - ※ 일수 산정에는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공적자료 또는 금융기관 자료의 재회신 및 지연 회신 등으로 인해 시일 소요 가능

» (수시안내) 가구원의 주요 변동(출산, 연령도래, 사망, 수급 자격 등)이 발생한 경우, 변동 사항에 따른 급여를 안내

* 수시안내 전 30일 이내 최초판정 결과를 통보한 대상에 대해서는 안내 제외

2026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

발행일 2026년 4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인쇄처 덕성기획

